

DIPLOMATIC SERVICE EXAM · ESSAY

외교관후보자 2차 기출 완성

제1권 학제통합논술

2016~2026년 제2차시험 기출 · 자습용 · 2026년 10월 판

차례

일러두기	3
제0장 시험 이해	4
0-1 문제지에서 확인되는 구조	5
0-2 11개년 출제 지도	5
0-3 주제와 도구의 빈도	6
0-4 학제통합논술 답안 쓰는 법	6
0-5 학습 계획	7
제1부 방법	8
제1장 제시문 연결과 답안의 방법	9
1-1 문 유형 네 가지	10
1-2 제시문-문 연결표 만들기	10
1-3 게임이론 문항의 다섯 형태	11
1-4 그래프와 계산 문항	12
1-5 학문별 문장 형식과 답안 구조	12
1-6 짧은 풀이 예시	12
제2부 주제별 기출	14
제2장 분쟁·침략·동맹	15
2-1 핵심 개념	16
2-2 기출 풀이	19
2017 학제통합논술 II 동맹의 방위비 분담과 전시지원	19
2025 학제통합논술 그린란드와 미국의 강압, 관세 분쟁	26
2026 학제통합논술 우크라이나 침략과 베네수엘라 석유	33
제3장 인권·난민·인도적 개입	40
3-1 핵심 개념	41
3-2 기출 풀이	44
2017 학제통합논술 I 실패국가, 인도적 개입과 국제형사재판소	44
2022 학제통합논술 I 소년병: 원인, 균형, 국제의무와 처벌	50
2024 학제통합논술 I 크메르루즈, 환경난민과 난민 캠프 계약	57
2020 학제통합논술 II 혼합이주, 해상난민과 보상 계약	64
제4장 국제기구·UN·지역통합	70
4-1 핵심 개념	71
4-2 기출 풀이	74
2021 학제통합논술 I 국제기구의 역할: 관세·협력·특권면제	74
2019 학제통합논술 II UN 제재, 회원국 지위와 총회·안보리	80
2018 학제통합논술 I 유럽통합: 안보·통화·사법	86
제5장 개발·원조	92
5-1 핵심 개념	93
5-2 기출 풀이	95
2016 학제통합논술 I 공적개발원조: 인권, 동기, 시장	95
2018 학제통합논술 II 해외원조의 동기, 부작용과 부패	102
제6장 통상·제재·국제정치경제	108
6-1 핵심 개념	109
6-2 기출 풀이	112
2016 학제통합논술 II 특혜관세, 전략적 무역정책과 무역구제	112
2020 학제통합논술 I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와 반덤핑	118
2022 학제통합논술 II 경제제재: 근거, 후생, 표적제재와 인권	125

2023 학제통합논술 II 미중 기술패권, 공정무역과 중견국	132
제7장 환경·기후 협력	139
7-1 핵심 개념	140
7-2 기출 풀이	143
2019 학제통합논술 I 월경성 미세먼지와 한중 협력	143
2023 학제통합논술 I 미국·캐나다 협력과 한중 환경협력	150
2021 학제통합논술 II 파리협정, 감축 게임과 패권	157
2024 학제통합논술 II 기후 레짐, 유럽 기후법과 규제 수단	164
부록 참조 자료	171
부록 A 연도별 문항 일람	172
부록 B 주제 색인	173
부록 C 자주 쓰는 조문과 공식	175

일러두기

■ 이 권의 구성

이 책은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학제통합논술의 2016~2026년 기출 문제지 20개(2016~2024년 학제통합논술 I·II 각 9개, 2025~2026년 통합 시험 2개)를 모두 수록하고, 69개 문(問) 전부에 예시답안을 붙인 자습서이다.

- **0장 시험 이해:** 문제지에서 확인되는 구조, 11개년 출제 지도, 주제와 도구의 빈도, 답안 쓰는 법, 8주 학습 계획.
- **1부 방법(1장):** 문 유형, 제시문-문 연결표, 게임이론 다섯 형태, 그래프와 계산, 학문별 문장 형식, 짧은 풀이 예시.
- **2부 주제별 기출(2~7장):** 분쟁·침략·동맹, 인권·난민·인도적 개입, 국제기구·UN·지역통합, 개발·원조, 통상·제재·국제정치경제, 환경·기후 협력. 장마다 핵심 개념 카드 뒤에 그 주제의 문제지를 원문 → 출제 포인트 → 답안 개요 → 문별 예시답안 순서로 실었다. 문제지 하나는 한 장에만 실었고, 문제지 안의 문은 원래 순서대로 풀었다.
- **부록:** 연도별 문항 일람, 주제 색인, 자주 쓰는 조문과 공식.

■ 공부하는 법

문제지를 먼저 혼자 읽고 개요를 짰 다음, 한 문을 실제 시간에 맞추어 써 본 뒤 예시답안과 비교한다. 예시답안은 정답이 아니라 ‘채점 요소를 빠짐없이 담은 하나의 모범’이다. 같은 결론을 다른 이론으로 써도 좋지만, 계산 문항의 수치와 법적 요건은 예시답안과 일치해야 한다. 개념 카드의 ‘답안 속 문장’은 그대로 외우기보다 자기 문장으로 바꾸어 적어 두기를 권한다.

■ 표기 기준

- 기출 원문은 문제지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되, 띄어쓰기는 문제지 이미지와 대조하여 바로잡았다. 영문 제시문은 원문의 철자(오기 포함)를 고치지 않았다. 문제지의 〈 〉 와 [] 표기, 조문 인용은 원문을 따랐다.
- 문제지의 그림과 그래프는 원본 문제지에서 잘라 실었고, 보수행렬과 표는 다시 조판하였다.
- 예시답안의 분량은 배점 1점당 약 45~60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답안 상자 아래의 작은 글씨는 핵심 수치와 근거를 요약한 것이다.
- 게임의 균형, 계약, 후생 변화 등 모든 수치 답은 별도의 계산 스크립트로 독립 검산하였고, 답안용 그래프도 같은 수치로 그렸다.
- 조약 조문과 판례는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인용하였다. 2025~2026년 문제지의 시사 사실은 문제지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전제로 썼다.
- 국제법 문서는 다음과 같이 줄여 쓴다: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국가책임 초안),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외교적 보호 초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조약법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 저작권 주의

기출 문항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공개된 문제지에서 옮겼다. 외부 배포·판매 전에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예시답안과 해설은 이 책을 위해 새로 쓴 것이며, 출제기관의 공식 답안이 아니다.

제0장

시험 이해

학제통합논술 2016~2026년 문제지 20개(학제통합논술 I·II 각 9개, 통합 시험 2개)에서 확인되는 사실 |
출제 지도·빈도·답안 쓰는 법·학습 계획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0-1 문제지에서 확인되는 구조	5
0-2 11개년 출제 지도	5
0-3 주제와 도구의 빈도	6
0-4 학제통합논술 답안 쓰는 법	6
0-5 학습 계획	7

0-1 문제지에서 확인되는 구조

이 장의 서술은 공개된 문제지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만을 근거로 한다. 시험 시간, 과목 편성, 배점 비중, 합격 기준처럼 문제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매년 인사혁신처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구분	2016~2024년	2025~2026년
문제지 명칭	「학제통합논술 I」과 「학제통합논술 II」 두 종류	「학제통합논술시험」 한 종류(I·II 표기 없음)
문항 수	I: 제1~4문(4문) / II: 제1~3문(3문)	제1~3문(3문)
배점	문제지마다 합계 100점. I은 25점 4문 또는 문항별 차등(예: 22·22·22·34), II는 문마다 30~40점에 소문 1)·2) 배점 표시	합계 100점, 문마다 30~35점, 소문 1)·2) 배점 표시
제시문	<제시문 1> 형식, 4~6개	[제시문 1] 형식, 2025년 6개·2026년 5개
분량	4~6쪽	6쪽
언어	국문 제시문과 영문 제시문(조약 원문, 결의, 논문·기사)이 섞임	같음

2025년 통합의 의미 — 문제지에서 보이는 것만

2024년까지는 I과 II가 별개의 문제지였고, 각각 100점 만점에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었다. 2025년부터는 「학제통합논술시험」이라는 하나의 문제지로 바뀌었고, 문항 수는 II와 같은 3문, 형식은 소문(1), 2))을 둔 구조이다. 제시문 표기가 < > 에서 []로 바뀌었고, 두 해 모두 당해 연도의 국제 시사(2025년 그린란드와 미중 관세, 2026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베네수엘라)를 소재로 삼았다. 시험 시간과 다른 과목과의 관계 등 그 밖의 변화는 문제지로 알 수 없으므로 공고로 확인한다.

세 학문의 결합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 **세 학문이 모두 나온다.** 20개 문제지 모두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게임이론 포함)을 각각 적어도 한 번 이상 묻는다. 대개 한 문이 한 학문을 주로 담당하고, 마지막 문(또는 마지막 소문)이 앞의 결과를 종합하게 한다.
- **같은 사안을 세 렌즈로 본다.** 예컨대 2022년 학제 I의 소년병 문제지는 원인(국제정치), 차출 규모의 균형(게임), 국제의무 위반(국제법)을 차례로 묻고, 제4문에서 원조·처벌·NGO를 하나의 정책으로 묶는다.
- **계산 문항은 정답이 있다.** 게임의 균형, 계약의 지원 수준, 관세의 후생 변화는 숫자로 채점된다. 서술만으로는 점수를 얻기 어렵다.

0-2 11개년 출제 지도

연도	학제통합논술 I (수록 장)	학제통합논술 II (수록 장)
2016	ODA와 국제인권법, 원조 동기, 모기장 원조의 시장 효과 (5장)	GSP와 GATT 제1조, 전략적 무역정책 게임, 세이프가드 대 반덤핑 (6장)
2017	실패국가, 주권과 인권, 내전 개입·ICC 기소 게임 (3장)	동맹 방위비 분담 반응함수, SOFA·국회 동의, 민주 국가의 전쟁 지출 (2장)
2018	EU 안보통합과 주권, 최적통화지역, 현장 제103조와 카디 (4장)	원조 동기와 원조 의무, 네덜란드병, 부패 모형과 반부패협약 (5장)
2019	미세먼지 협력의 한계, 국가책임, MAC·MD 그래프, 합의 조건 (7장)	포괄적·스마트 제재, 기대보수 게임, 가입 요건, 총회와 안보리 (4장)

연도	학제통합논술 I (수록 장)	학제통합논술 II (수록 장)
2020	중국 시장경제지위의 후생, 반덤핑 판정, 중상주의 (6장)	혼합이주와 난민 규범, 보상 계약, 자유주의 질서, 해상난민 (3장)
2021	관세 인하 후생, 조화게임과 죄수의 딜레마, UN 특권면제 (4장)	NDC, 공공재 감축 비교, 협약 안정성, 패권과 기후레짐 (7장)
2022	소년병: 분석 수준, 보수함수와 균형, 연령별 국제의무, 원조·처벌 (3장)	경제제재의 근거, 수입 금지의 후생, 표적제재와 인권 (6장)
2023	미·캐 대 한중 환경협력, 협정 제5조, 반복게임, MOI·MOU 지위 (7장)	미중 기술패권, WTO 원칙, 수용과 외교적 보호, 가격차별, RS·RD (6장)
2024	크메르루즈 정책, 환경난민·외교적 보호, NGO 귀속, 주인-대리인 계약 (3장)	기후 문서의 법원 지위, 유럽 기후법, 가격 대 수량, 양면게임, 혼합정책 (7장)
2025년부터 「학제통합논술시험」 단일 문제지		
2025	그린란드: 강압외교와 제도적 균형화, 무력 편입의 위법성, 베이스-내쉬균형, 제3국의 의무, 대국의 관세 후생, 패권안정이론 (2장)	
2026	우크라이나 침략: 안보리·총회·ICC, 억지 실패와 신기능주의 / 베네수엘라: 국유화의 후생, 투자분쟁 해결 방식, 수요독점·쌍방독점, BIT·ISDS (2장)	

0-3 주제와 도구의 빈도

주제(수록 장)	문제지 수	반복되는 도구	문제지 수
분쟁·침략·동맹 (2장)	3	게임이론(보수행렬·전개형·반복·베이스·계약)	11
인권·난민·인도적 개입 (3장)	4	그래프 작성을 명시한 문항	6
국제기구·UN·지역통합 (4장)	3	영문 제시문 포함	15
개발·원조 (5장)	2	UN 헌장 조문 해석	8
통상·제재·국제정치경제 (6장)	4	WTO 협정 조문	4
환경·기후 협력 (7장)	4		
합계	20		

게임이론은 20개 문제지 가운데 11개(2016Ⅱ, 2017Ⅰ, 2019Ⅰ, 2019Ⅱ, 2020Ⅱ, 2021Ⅰ, 2021Ⅱ, 2022Ⅰ, 2023Ⅰ, 2024Ⅰ, 2025)에 나왔다. 형태는 동시게임 보수행렬(우월전략·내쉬균형), 전개형 게임(역진귀납), 반복게임(할인인자 조건), 기대보수와 임계 확률, 불완전정보 게임(베이스-내쉬균형), 주인-대리인 계약으로 나뉜다. 그래프 작성을 명시한 문항은 2017Ⅱ(반응곡선), 2018Ⅱ(뇌물 비용선), 2019Ⅰ(MAC·MD), 2020Ⅰ(반덤핑관세), 2021Ⅰ(소국 관세), 2026(쌍방독점)이다. 이 밖의 계산 문항도 그래프를 곁들이면 설명이 쉬워진다.

실전 팁

빈도표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게임이론은 거의 해마다 나오므로 다섯 가지 형태의 풀이 절차를 손에 익혀야 한다(1장 1-3절). 둘째, 환경·인권·통상은 각각 4회로 가장 자주 나왔지만, 2025~2026년의 통합 시험은 모두 분쟁·강압·침략을 다루었다.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2장을 먼저 공부해도 좋다.

0-4 학제통합논술 답안 쓰는 법

답안의 기본 틀은 **개요 → 서론 한 줄 → 소문별 번호 → 짧은 결론**이다.

단계	할 일	비중
개요	문제지 전체를 읽고 제시문-문 연결표를 만든 뒤(1장 1-2절), 문마다 쓸 이론·조문·식을 한 줄로 적는다	시간의 10~15%
서론	그 문이 묻는 핵심 질문과 결론을 한두 문장으로 먼저 쓴다	답안의 5%
본론	문제의 소문 번호 1), 2)와 ①, ②를 그대로 따른다. 계산은 식 → 수치 → 해석의 순서	답안의 85%
결론	소문들의 결과를 잇는 한두 문장, 또는 정책적 함의	답안의 10%

분량은 배점에 비례시킨다. 이 책의 예시답안은 배점 1점당 대략 45~60자를 기준으로 썼다(25점이면 약 1,100~1,500자).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분량은 시험 시간과 답안지 형식에 따라 다르므로, 연습할 때는 이 비율을 기준으로 줄이거나 늘린다.

0-5 학습 계획

주	학습 내용	점검
1	0장, 1장 정독. 1장 예제를 직접 풀어 보기	게임 다섯 형태의 절차를 백지에 쓸 수 있는가
2	2장(최근 통합 시험 3개)	시사 제시문에서 ‘주어진 사실’만 뽑아 쓰는 연습
3	3장(인권·난민) 4개 문제지	역진귀납, 주인-대리인 계산을 손으로
4	4장(국제기구·지역통합) 3개 문제지	헌장 조문 번호와 내용 대조
5	5장·6장 전반(원조, 무역구제)	관세·보조금 그래프의 면적 이름
6	6장 후반(제재, 미중 경쟁)	후생 계산을 기호로 일반화
7	7장(환경·기후) 4개 문제지	MAC·MD, 가격 대 수량, 반복게임 조건
8	부록 A·B로 전체 복습, 2025·2026 실전 연습	실전 시간 안에 한 문제지 전체 작성

각 문제지는 ① 문제지만 보고 개요를 짠다 → ② 한 문을 실제 시간 안에 쓴다 → ③ 출제 포인트와 예시답안으로 채점한다 → ④ 개념 카드의 ‘답안 속 문장’을 자기 문장으로 바꾸어 적는다는 순서로 공부한다.

제1부

방법

학제통합논술은 세 학문의 지식을 따로 묻는 시험이 아니다. 한 사안을 국제 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의 세 렌즈로 차례로 보고, 그 결과를 하나의 판단으로 묶는 능력을 묻는다. 1부는 제시문을 학문별로 나누어 문과 연결하는 법, 게임이론과 그래프 문항을 정해진 절차로 푸는 법, 학문마다 다른 문장 형식을 하나의 답안 구조에 담는 법을 다룬다.

제1장

제시문 연결과 답안의 방법

1부 방법 | 문 유형 · 제시문-문 연결표 · 게임이론 다섯 형태 · 그래프와 계산 · 학문별 문장 형식 · 짧은 풀이 예시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1-1 문 유형 네 가지	10
1-2 제시문-문 연결표 만들기	10
1-3 게임이론 문항의 다섯 형태	11
1-4 그래프와 계산 문항	12
1-5 학문별 문장 형식과 답안 구조	12
1-6 짧은 풀이 예시	12

1-1 문 유형 네 가지

20개 문제지의 문(問)과 소문은 다음 네 유형으로 나뉜다. 한 문 안에 두 유형이 섞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를 읽을 때 소문마다 유형을 표시해 두면 답안의 형식이 정해진다.

유형	문제의 신호어	답안의 형식	대표 기출
이론 설명형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 “국제정치적 요인”	이론의 핵심 가정 → 제시문 사례 적용 → 한계·반론	2024 I 제1문, 2021 II 제2문 2)
법적 판단형	“국제법상 ~인지 논하시오”, “요건”, “효력”	쟁점 → 근거 조문·판례 → 요건별 포섭 → 결론	2021 I 제3문, 2022 I 제3문
계산·그래프형	“구하시오”, “그래프를 이용하여”, “보수행렬”	식 → 수치 → 그래프 → 해석	2024 I 제4문, 2022 II 제1문 2)
통합형	“제시문 1~5를 참고하여 ①②③”	앞 문의 결과를 재료로 학문별 소답을 잇고 결론으로 묶음	2022 I 제4문, 2023 I 제4문

통합형 문의 비밀

마지막 문은 대개 앞선 문의 결과를 다시 쓰게 한다. 2022년 학제 I 제4문 ①은 제2문의 보수행렬에 원조를 더하는 문제이고, 2024년 학제 I 제4문은 제3문 3)과의 비교를 요구한다. 앞 문의 계산이 틀리면 뒤 문까지 무너지므로, 계산 문항은 반드시 검산하고 결과를 표로 남겨 두어 뒤에서 인용한다.

1-2 제시문-문 연결표 만들기

문제지를 받으면 먼저 제시문마다 학문 꼬리표를 붙이고, 각 문이 지정한 제시문과 연결한다. 2022년 학제 II(경제제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내용과 꼬리표	제1문	제2문	제3문
1	안보리 제재의 개념, 포괄·표적 구분 — 법·정치	1)		1)·2)
2	제재의 정의, 성공률 연구(허프바우어·페이프) — 정치	1)·2)	1)·2)	1)
3	안보리 결의 원문, 카디 판결 — 법(영문)			1)·2)
4	전도된 무역자유화, 수요·공급식 — 경제	2)	1)	
5	소국·대국 제재 사례 — 정치		2)	

이 표를 만들면 세 가지가 보인다. 첫째, 어느 제시문이 여러 문에 걸쳐 쓰이는지(제시문 2). 둘째, 어떤 문이 어떤 학문의 답을 요구하는지(제1문 2)와 제2문 1)은 경제 계산). 셋째, 제시문에 없는 지식을 끌어와야 하는 곳(헌장 제39·41·25조, 자유권규약). 문이 지정한 제시문은 반드시 답안에서 한 번 이상 언급한다. 채점자는 제시문의 활용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실전 팁

영문 제시문은 번역하지 말고 핵심 구절만 인용한다. 예를 들어 파리협정 제4조 제2항의 “shall prepare, communicate and maintain”과 “with the aim of achieving”을 대비시키면, NDC의 ‘제출은 의무, 달성은 비구속’이라는 결론이 제시문에서 바로 나온다.

1-3 게임이론 문항의 다섯 형태

형태	풀이 절차	자주 하는 실수	기출
동시게임 보수행렬	① 행렬을 (행, 열) 순서로 정리 ② 각 경기자의 최적 반응에 표시 ③ 표시가 겹치는 칸 = 내쉬균형 ④ 파레토 비교로 게임 유형(죄수의 딜레마·치킨·조화·조정) 명명	보수 순서를 거꾸로 읽음, 균형이 두 개인데 하나만 씀	2016 II, 2021 I, 2022 I, 2023 I
전개형(순차) 게임	① 마지막 마디의 선택 ② 그 결과를 앞 마디에 대입 ③ 부분게임완전균형을 ‘모든 마디의 전략’으로 표기 ④ 신빙성 없는 위협 언급	균형 경로만 쓰고 경로 밖 마디의 전략을 생략	2017 I 제3·4문
반복게임	① 1회 균형 확인 ② 방아쇠 전략의 협력 가치 $R/(1-\delta)$ 와 배신 가치 비교 ③ 임계 할인인자 $(T-R)/(T-P)$	‘할인율’의 의미(인자/이자율)를 밝히지 않음	2023 I 제4문, 2019 I 제4문
기대보수·불완전정보	① 유형별 최적반응표 ② 상대 전략(또는 확률) 고정 ③ 기대보수 비교로 임계 확률 ④ 경계값에서의 무차별 명시	유형별 보수를 확률로 가중하지 않음	2019 II, 2025 제2문
주인-대리인 계약	① 참여계약 ② 유인계약 ③ 허용된 값(이산)에서 비용 최소 계약 ④ 관찰 가능시와 비교해 대리인 비용	이산 조건을 무시하고 미분	2024 I 제3·4문, 2020 II

게임 문항의 해석 문장은 거의 정해져 있다. 균형이 파레토 비효율이면 “개별적 합리성이 집단적 비합리성을 낳는 죄수의 딜레마”이고, 이를 극복하는 수단은 반복(미래의 그림자), 제도(감시·정보·보복의 조직화), 보수 변경(보상·처벌), 구속력 있는 약속이다. 이 네 수단을 국제정치 이론(신자유제도주의 대 신현실주의)과 국제법(조약과 비구속적 합의, 분쟁해결)에 연결하면 통합형 문의 답이 된다.

자주 하는 실수

경계값의 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학제 I 제4문에서 원조가 정확히 45이면 무징집과 징집이 무차별이 되어 균형이 유일하지 않다. “유일한 균형”을 요구하면 부등호를 엄격하게($A > 45$) 써야 한다. 반대로 “협력이 유지될 조건”은 보통 약부등호($\geq$)로 쓴다.

1-4 그래프와 계산 문항

그래프 문항의 채점 요소는 ① 축의 정의 ② 곡선의 이름과 기울기의 근거 ③ 균형점과 그 좌표 ④ 변화의 방향 (이동 화살표) ⑤ 면적의 이름(잉여·관세수입·자중손실) ⑥ 말로 하는 해석이다. 문제가 축을 지정하면(2019 I 제3문 “배출량은 수평축”, 2018 II 제3문 “x축은 B”) 반드시 그대로 따른다.

모형	핵심 식·결과	쓰인 기출
소국 관세	순후생 변화 = $b + d$ (인하 시 증가)	2021 I 제1문, 2020 I 제1문
대국 관세	교역조건 이득 - 자중손실	2025 제3문 1)
수입 금지	$\Delta W = 1/2(P_A - P_w)M$	2022 II 제1문 2)
독점·경쟁	MR = MC 대 $P = MC$, DWL 삼각형	2026 제2문 1)
가격차별	$P_A(1 - 1/\varepsilon_A) = P_B(1 - 1/\varepsilon_B)$	2023 II 제2문 2)
수요독점	MRP = ME, 착취 = MRP - 가격	2026 제3문 1)
공공재 감축	자율 $b/(2c)$ 대 할당 $Nb/(2c)$	2021 II 제1문 2)
가격 대 수량	MAC가 MB보다 가파르면 부과금 우위	2024 II 제2문 2)

계산 결과는 반드시 경제적 의미로 번역한다. “순후생 -2”에서 멈추지 말고 “교역조건 이득 2가 자중손실 4를 메우지 못한다”까지, “대리인 비용 100”에서 멈추지 말고 “위험회피적 NGO에게 위험을 지우는 대가”까지 써야 다른 학문과 연결된다.

1-5 학문별 문장 형식과 답안 구조

학문	문장 형식	예
국제법	쟁점 → 근거(조약·조문·판례) → 요건 나열 → 사안 포섭 → 결론	“협약 제6조 제22절은 ○○를 규정한다. 특별보고관은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이고, 논평은 임무와 관련된다. 따라서 면제된다.”
국제정치학	이론의 핵심 가정 → 제시문 사례에 적용 → 대립 이론의 반론 → 평가	“신고전 현실주의는 체제를 독립변수, 국내요인을 매개변수로 본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 다만 …”
경제학	모형 설정 → 식 → 수치 → 그래프 → 해석·정책 함의	“MR = MC에서 $Q = 45$ 이다. 경쟁 산출 60과의 차이에서 자중손실 337.5가 생긴다. 이는 국유화의 배분적 비효율이다.”

세 형식을 한 답안에 답을 때는 소문 번호를 경계로 삼는다. 소문 하나 안에서 학문이 바뀌어야 하면(예: 2022 I 제4문의 ①②③) 소제목을 달아 형식을 전환한다. 결론에서는 앞의 결과를 하나의 판단으로 잇는다. 예컨대 “원조(경제)는 무장집을 우월전략으로 만들고, 처벌(국제법)은 그 비용을 보탠다. 그러나 둘 다 정보에 의존하므로 NGO의 감시(국제정치)가 필요하다.”

1-6 짧은 풀이 예시

다음은 이 책의 방법을 한 번에 연습하기 위해 만든 짧은 예제이다(기출 아님).

〈예제〉 공해 어장의 남획 (총 20점)

A국과 B국 어선단은 공해의 같은 어장을 이용한다. 두 국가가 모두 어획을 제한하면 각각 6, 모두 남획하면 각각 2, 한 국가만 제한하면 제한한 국가는 0, 남획한 국가는 8의 이익을 얻는다.

- (1) 두 국가가 한 번만 선택할 때의 균형과 그 성격을 설명하시오. (8점)
- (2) 공해 생물자원에 관한 양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설명하고, 양국이 매년 반복해서 선택한다면 제한이 유지될 조건과 이를 돕는 국제정치적 장치를 제시하시오. (12점)

■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도구
(1)	남획이 강우월전략 → (남획, 남획) = (2, 2), 죄수의 딜레마	보수행렬, 파레토 비교
(2)	보존을 위한 협력 의무, 반복게임의 조건, 지역수산기구	유엔해양법협약 공해 생물자원 조항, $(T - R)/(T - P) = 1/3$, 신자유제도주의

예시답안 — 〈예제〉

(1) 보수(A, B)를 행렬로 정리하면 (제한, 제한) = (6, 6), (제한, 남획) = (0, 8), (남획, 제한) = (8, 0), (남획, 남획) = (2, 2)이다. A국은 B국이 제한하면 남획($8 > 6$), B국이 남획해도 남획($2 > 0$)을 택하므로 남획이 강우월전략이다. B국도 같다. 따라서 유일한 내쉬균형은 (남획, 남획)이고 보수는 (2, 2)이다. 둘 다 제한하면 (6, 6)으로 모두 나아지므로 균형은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개별적 합리성이 공유자원의 고갈을 낳는 죄수의 딜레마, 곧 공유지의 비극이다.

(2) 공해에서는 어업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은 그 자유가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조건에 따르도록 하고, 각국이 자국민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하고 다른 국가와 보존·관리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규정한다. 다만 이 의무는 구체적 어획 한도를 정하지 않으므로, 협력의 내용은 국가 간 합의로 채워야 한다. 양국이 매년 반복해서 선택하고, 상대가 한 번이라도 남획하면 이후 계속 남획하는 방아쇠 전략을 쓴다고 하자. 제한을 계속하면 $6/(1 - \delta)$, 이번에 남획하면 $8 + 2\delta/(1 - \delta)$ 를 얻으므로, 제한이 유지될 조건은 $\delta \geq (8 - 6)/(8 - 2) = 1/3$ 이다. 미래를 충분히 중시하면 협력이 균형이 된다.

이를 돕는 장치는 신자유제도주의가 말하는 제도이다. 지역수산기구가 어획량을 할당하고, 승선 감시와 어획 보고로 배신을 드러내며, 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미리 정하면 미래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배신의 유혹이 줄어든다. 결국 (1)의 딜레마는 (2)의 협력 의무를 구체화하는 제도를 통해서만 풀리며, 법은 협력의 의무를, 제도는 그 의무가 지켜질 유인을 제공한다.

약 900자. 계산(1)과 법·정치(2)를 소문 번호로 나누고, 마지막 문장에서 세 학문을 잇는다

제2부

주제별 기출

20개 문제지를 여섯 주제로 나누었다. 장마다 핵심 개념 카드로 그 주제에 반복해서 쓰인 세 학문의 도구를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문제지를 연도순으로 실었다. 문제지마다 원문, 출제 포인트, 답안 개요, 문별 예시답안이 차례로 이어진다. 2025~2026년 통합 시험은 최근 경향을 먼저 보도록 2장에 두었다.

제2장

분쟁·침략·동맹

2부 주제별 기출 | 수록: 2017 학제 II (동맹과 방위비 분담), 2025(그린란드와 관세), 2026(우크라이나 침략과 베네수엘라 석유)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2-1 핵심 개념	16
2-2 기출 풀이	19
2017 학제통합논술 II 동맹의 방위비 분담과 전시지원	19
2025 학제통합논술 그린란드와 미국의 강압, 관세 분쟁	26
2026 학제통합논술 우크라이나 침략과 베네수엘라 석유	33

2-1 핵심 개념

이 장의 세 문제지는 모두 ‘힘의 사용과 그 비용’을 다룬다. 동맹 안에서 누가 비용을 내는가(2017), 동맹국을 강압할 때 무엇이 깨지는가(2025), 침략을 억지하지 못했을 때 국제제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2026)가 각각의 질문이다. 세 문제지에 반복해서 쓰인 도구를 먼저 정리한다.

동맹 공공재와 무임승차

동맹이 제공하는 억지력은 한 동맹국이 누려도 다른 동맹국의 몫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분담을 적게 한 국가도 보호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비배제성). 그래서 각국은 상대의 분담에 무임승차하려 하고, 분담금은 상대가 늘리면 자국은 줄이는 전략적 대체재가 된다. 올슨과 제크하우저는 큰 국가가 비례 이상으로 부담하는 현상을 “작은 국가에 의한 큰 국가의 착취”라고 불렀다.

대립 구도

공공재 이론(무임승차·과소공급) ↔ 비대칭 동맹론(자율성과 안보의 교환)

쓰이는 기출 2017 학제Ⅱ 제1문 1)·2)

답안 속 문장

“반응함수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은 분담금이 전략적 대체재라는 뜻이며, 교점의 충분담은 두 국가의 이익의 합을 극대화하는 수준보다 작다. 각국이 상대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무력행사 금지와 침략의 법적 결과

UN 헌장 제2조 제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의 위협과 행사를 금지하며, 이는 강행규범으로 인정된다. 예외는 자위권(제51조)과 안보리의 승인뿐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취득은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될 수 없고,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모든 국가는 협력하여 종식시키고, 상황을 승인하지 않으며, 그 유지를 돕지 않을 의무를 진다(국가책임 초안 제41조). 지원 국가는 제16조의 ‘지원 또는 원조’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립 구도

영토보전·무력행사 금지 ↔ 주민의 자결권(영토 귀속 변경은 주민 의사로만)

쓰이는 기출 2025 제1문 2), 제2문 2), 2026 제1문

답안 속 문장

“무력으로 편입하더라도 권원은 생기지 않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침략국에 병참을 제공하는 국가는 위법행위를 알면서 지원한 책임을 함께 진다.”

억지의 두 유형

억지는 상대가 행동할 때의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고 믿게 하여 행동을 단념시키는 전략이다. 거부적 억지는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목적 달성 가능성을 낮추고, 응징적 억지는 공격 후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한다. 성공 조건은 능력, 위협의 신뢰성, 그리고 상대가 그 위협을 걸린 이익보다 크게 인식하는 것이다. 걸린 이익이 비대칭이면(상대에게는 사활적 이익) 신뢰성이 무너진다.

대립 구도

거부(방어 능력과 공약) ↔ 응징(제재·보복의 위협)

쓰이는 기출 2026 제1문 2)

답안 속 문장

“러시아는 NATO 확대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사활적 이익으로 보았고, 이익의 비대칭이 서방 제재 위협의 신뢰성을 잠식하였다.”

불완전정보 게임과 베이즈－내쉬균형

상대의 유형(적극적 지원국인지 형식적 지원국인지)을 모를 때, 각 유형은 자신의 보수에 따라 최적반응을 정하고, 정보가 없는 쪽은 유형의 확률로 가중한 기대보수로 전략을 정한다. 균형을 구하는 순서는 ① 각 유형의 최적반응 표 작성 → ② 정보 없는 쪽의 후보 전략별로 유형들의 대응 확정 → ③ 기대보수 비교로 확률 조건 도출이다.

대립 구도

완전정보(확실한 대응) ↔ 불완전정보(확률에 따른 대응, 균형의 복수성·부재)

쓰이는 기출 2025 제2문 1), 2019 학제Ⅱ 제2문 1)(2)

답안 속 문장

“A국이 적극 지원국일 가능성이 3분의 1 이상일 때에야 덴마크는 협상을 안정적으로 택할 수 있다. 동맹 지원에 대한 신뢰가 협상의 전제라는 뜻이다.”

패권안정이론

개방적 국제경제질서는 공공재이며, 이를 공급할 능력과 의사를 함께 가진 패권국이 있을 때 유지된다(킨들버거). 양차 대전 사이에 영국은 의사는 있었으나 능력이, 미국은 능력은 있었으나 의사가 없어 대공황이 깊어졌다. 신자유제도주의(코헤인)는 패권 쇠퇴 후에도 제도가 협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반론한다.

대립 구도

패권안정이론(패권 = 공공재 공급자) ↔ 신자유제도주의(패권 이후의 협력)

쓰이는 기출 2025 제3문 2), 2021 학제Ⅱ 제2문 2), 2016 학제Ⅱ 제1문 1)

답안 속 문장

“오늘날 미국은 능력은 있으나 개방 질서를 유지할 의사를 철회하고 있다. 패권국이 공공재 공급자에서 지대 추구자로 바뀌면 체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대국의 관세와 교역조건

수입국이 세계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해외 공급곡선이 우상향) 관세의 일부를 외국 공급자가 부담한다. 관세의 후생효과는 ‘교역조건 이득(수출가격 하락분 × 수입량)’과 ‘자중손실(생산 왜곡 + 소비 왜곡)’의 비교로 결정된다. 관세가 높으면 수입이 급감하여 교역조건 이득보다 자중손실이 커진다. 상대의 보복이 있으면 이득은 더 줄어든다.

대립 구도

최적관세론(대국의 이득) ↔ 보복과 무역전쟁(죄수의 딜레마)

쓰이는 기출 2025 제3문 1), 2023 학제Ⅱ 제3문 1)

답안 속 문장

“관세 4 가운데 국내가격 상승분 2는 미국 소비자가, 수출가격 하락분 2는 중국 공급자가 부담한다. 교역 조건 이득 2가 자증손실 4를 메우지 못해 순후생은 2 감소한다.”

수요독점과 쌍방독점

유일한 구매자는 구매량을 늘리려면 기존 구매분의 가격도 올려야 하므로 한계지출(ME)이 공급가격보다 높다. 이윤극대화 조건은 $MRP = ME$ 이고, 가격은 공급곡선 위의 낮은 점에서 정해진다. MRP와 지급 가격의 차이가 수요독점적 착취이다. 판매자도 하나뿐이면(쌍방독점) 가격은 수요독점 가격과 공급독점 가격 사이에서 협상력으로 정해지고, 효율적 협상이면 거래량은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MRP = MC$ 수준이 된다.

대립 구도

수요독점(구매자의 지대 흡수) ↔ 쌍방독점(지대 분배의 협상)

쓰이는 기출 2026 제3문 1)

답안 속 문장

“원유 1단위가 A에게 주는 한계수입생산 88과 지급 가격 74의 차이 14가 수요독점적 착취이다.”

외교적 보호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외교적 보호는 국적국이 자국민의 피해를 자국의 청구로 채택하는 국가의 재량적 권리이며, 국적(법인은 원칙적으로 설립지국)과 그 계속성, 국내구제 완료가 요건이다(ILC 2006 초안). ISDS는 투자협정상 국가의 사전 동의에 근거해 투자자가 직접 중재를 청구한다. ICSID 협약 제26조는 달리 정하지 않으면 중재가 다른 구제를 배제한다고 보며, 계약국은 국내구제 완료를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대립 구도

국가—국가(정치적 재량, 국내구제 완료) ↔ 투자자—국가(탈정치화, 직접 청구)

쓰이는 기출 2026 제2문 2), 제3문 2), 2023 학제Ⅱ 제2문 1)

답안 속 문장

“ISDS는 투자자가 국가의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게 직접 청구하게 하여 분쟁을 탈정치화하지만, 판정의 집행은 결국 국가의 힘에 의존한다.”

2-2 기출 풀이

2017 학제통합논술 II

동맹의 방위비 분담과 전시지원

총 100점 · 제1문 35점, 제2문 30점, 제3문 35점 · 국제정치 + 국제법 + 경제(반응함수·사회후생함수)

〈제시문 1〉

(1) 대등하지 않은 동맹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비례적으로 부담해야 할 군사비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즉, 동맹국 중 GDP가 큰 국가일수록 GDP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커진다.

(2) A국의 동맹국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작은 국가보다 A국의 방위비 증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A국의 방위비 분담 압력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보다 큰 국가에게 더욱 부담을 준다. A국이 동일한 정치적 비용을 가지고 방위비 분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큰 국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똑같이 1%씩 증가시키는 경우에 GDP가 작은 국가보다 큰 국가의 방위비 증가가 그 동맹의 총 방위비 수준을 더 높인다. 더구나 큰 국가는 작은 국가보다 방위의 필요성이 더 크다. 차등세율의 원칙은 어떤 종류의 집합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방위비 분담과 연관될 때에는 지불능력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3) 동맹국 갑국과 을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갑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감과 을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감 간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이다. 이런 관계를 반응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동맹국 갑국과 을국의 반응함수는 각각 $X_{\text{갑}} = a - bX_{\text{을}}$ 과 $X_{\text{을}} = c - dX_{\text{갑}}$ 이다. 여기서 $X_{\text{갑}}$ 과 $X_{\text{을}}$ 은 갑국과 을국의 방위비 분담금이고 a, b, c, d 는 양(+)의 상수이다.

〈제시문 2〉

(1) 자주국방은 한 국가가 스스로 군사력을 증강시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국방은 가장 신뢰할 만한 안보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가재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외부 위협수준에 따라 국방비 지출 부담이 과도해질 수도 있다. 자주국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채택하는 것이 바로 동맹이다.

(2) A국과 B국은 동맹국으로 안보라는 효용을 얻고 있다. 두 국가의 안보에 대한 효용인 사회후생함수를 $SW = SW(U_A, U_B)$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U_A 와 U_B 는 A국과 B국의 안보에 대한 효용수준이다. 사회후생함수는 가치판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모

습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안보라는 효용에 기초한 사회후생함수는 공리주의적(utilitarian), 평등주의적, 롤즈(Rawls)적 가치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다.

〈제시문 3〉

(1)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인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시만으로 당사국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조약을 고시류 조약이라고 한다. 고시류 조약이 국내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고시류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법적으로는 당사국에 대한 조약의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는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행사에 대한 정치적 견제 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시문 4〉

(1)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한미상호방위조약)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2)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주한미군지위협정)

Article 5 (Facilities and Areas—Cost and Maintenance)

1. It is agre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ar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without cost to the Republic of Korea all expenditures incident to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those to be borne by the Republic of Korea as provided in paragraph 2.
2. It is agre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furnish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without cost to the United States and make compensation where appropriate to the owners and suppliers thereof all facilities and areas and rights of way...

Article 28 (Joint Committee)

1. A Joint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s the means for consultation... In particular, the Joint Committee shall serve as the means for consultation in determining the facilities and areas...

(3) Umbrella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Wartime Host Nation Support(한미전시지원협정)

Article 3 (Existing Support Agreements, Arrangements and Plans)

a. This Agreement wi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existing agreements, arrangements and plans which provide WHNS and which were approved by authorized agents of the Parties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Annex 1 lists existing agreements, arrangements and plans which provide WHNS and are based on previously identified U.S. requirements...

Article 4 (Additional Support Agreements, Arrangements and Pl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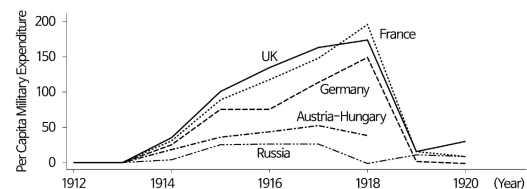
The Parties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identify any required WHNS not included in existing support agreements, arrangements or plans and shall develop and conclude additional support agreements, arrangements or plans for the provision

of WHNS... Any such agreements, arrangements or plans will be added to Annex 1 when concluded, as mutually agreed...

Article 9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This Agreement will enter into force upon completion of an Exchange of Notes confirming that the ROK has ratified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that the U.S. has approved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제시문 5〉



The above figure plots the military expenditures of the primary combatants in World War I. On a per capita basis, Russia spent the least. Even with low per capita expenditures, the costs of war became sufficiently unpalatable that the war effort, along with other considerations, provoked the October Revolution and Russian withdrawal from the war. Germany and Austria-Hungary, both non-democracies, made substantially smaller efforts than Britain and France, both democracies. While everyone spent more once the war began than they had been doing beforehand, from 1915 on, when it was evident the war was not going to be short and easy for anyone, we see little ramping up by the non-democracies with the exception of Germany.

Democracies, unlike non-democracies, were surprised when victory proved elusive. As the war continued, they discovered that the war was harder to win than they had expected. Having learned that victory was tougher than expected, they had two choices : (1) bail out or (2) try harder. They chose to try harder by increasing military expenditures.

〈문제〉

제1문.

1) 〈제시문 1〉을 참고하여 동맹관계인 갑국(경제규모가 큰 국가)과 을국(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의 방위비 부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반응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의 방위비 부담 감소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정치적 요인들을 〈제시문 1〉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제시문 2〉, 〈제시문 3〉 및 〈제시문 4〉를 참고하여, 두 국가 간 동맹을 통한 안보와 방위비 부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공리주의적, 평등주의적, 롤즈(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하여, A국과 B국의 효용수준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단, A국과 B국 간의 한계효용대체율은 양(+)이 아니다) (10점)

2) 한미 간 방위비 부담을 위한 협의(consultation)의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고, 협의 결과로 도출된 방위비 부담 합의의 성격에 따라 그 합의가 우리나라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절차 및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3문.

1) 〈제시문 4〉의 (3)과 〈제시문 5〉를 참고하여 전쟁 발발 이후 민주국가들이 비민주국가들보다 더 많은 1인당 군사비를 지출하고, 전쟁을 중간에 그만두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2) 한미 간 방위비 부담에 관한 재협상을 통해 기존 합의사항 내에 전시지원에 관한 특별내용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합의를 현재의 ‘한미전시지원협정’ 부록(Annex) 1에 추가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합의는 전시상태에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동맹 안보를 공공재로 보고(경제), 한미 방위비 부담의 법적 근거와 국내 절차를 확인하며(국제법·헌법), 민주국가의 전쟁 수행 행태를 설명하게(국제정치) 한 문제지이다.

연결 개념 반응함수와 내쉬균형, 무임승차, 사회후생함수 세 유형, SOFA 제5조와 특별협정, 헌법 제60조 제1항, 포괄협정의 부록 구조, 선출인단 이론.

합정 ① 반응곡선의 교점을 식으로 구하지 않고 말로만 쓰는 답안. ② 제2문 1)에서 ‘한계효용대체율이 양이 아니다’는 단서를 무시하는 답안. ③ 부록 1에 추가하면 국회 동의를 자동으로 대체된다고 쓰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 반응곡선 교점과 분담 결정 2) 작은 국가 분담 감소 요인	교점 $X^* = \frac{a-bc}{1-bd}$, 올슨·제크하우저, 지불능력 원칙	1,600~2,100자
2	1) 세 사회후생함수 비교 2) 협의 근거·절차와 합의의 효력	합·곱·min 함수, SOFA 제5·28조, 헌법 제6·60조, 조약법협약 제27조	1,400~1,800자
3	1) 민주국가의 전쟁 지출 2) 부록 1 추가 합의의 전시 효력	선출인단 이론·청중비용, 포괄협정 제3·4·9조	1,600~2,100자

예시답안 — 2017 학제통합논술 II 제1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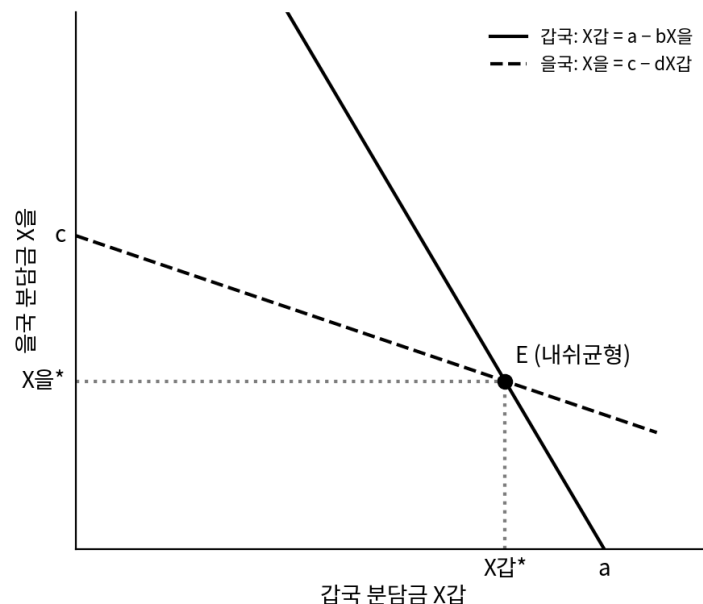
동맹이 제공하는 억지력은 한 동맹국이 누리더라도 다른 동맹국의 몫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분담을 적게 한 동맹국도 보호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비배제성). 따라서 동맹 안보는 순수공공재에 가깝고, 분담금 결정은 공공재 자발적 공급 게임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반응곡선에 의한 분담의 결정

〈제시문 1〉 (3)의 반응함수 $X_{\text{갑}} = a - bX_{\text{을}}$, $X_{\text{을}} = c - dX_{\text{갑}}$ 은 상대가 분담을 늘리면 자국은 분담을 줄이는 관계, 즉 분담금이 전략적 대체재임을 뜻한다. 기울기 b, d 는 상대의 기여에 대한 무임승차의 정도이고, 절편 a, c 는 상대가 전혀 부담하지 않을 때 각국이 스스로 부담하려는 수준으로 각국이 안보에 부여하는 가치를 반영한다. 두 반응곡선의 교점에서 어느 국가도 일방적으로 분담을 바꿀 유인이 없으므로 이 점이 내쉬균형이다. 연립하면 다음과 같다.

$$X_{\text{갑}}^* = \frac{a-bc}{1-bd}, \quad X_{\text{을}}^* = \frac{c-ad}{1-bd}$$

균형이 안정적이려면 $bd < 1$ 이어야 하고, 두 분담금이 모두 양수이려면 $a > bc, c > ad$ 이어야 한다.



갑국은 경제규모가 크고 방위의 필요성도 커서 절편 a 가 크다. 반면 을국은 갑국의 분담에 크게 기대므로 d 가 상대적으로 크고 c 는 작다. 그 결과 교점은 갑국 쪽으로 치우쳐 $X_{\text{갑}}^*$ 은 크고 $X_{\text{을}}^*$ 은 작다. 〈제시문 1〉 (1)이 말한 “GDP가 큰 국가일수록 방위비 비율도 커진다”는 현상이 이렇게 균형으로 설명된다. 또 이 균

형의 충분담 $X_{\text{합}}^* + X_{\text{총}}^*$ 은 두 국가의 이익의 합을 극대화하는 수준보다 작다. 각국이 자국의 한계편익만 고려하고 상대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비교정확으로 보면, 맹주국 A의 압력으로 갑국의 자율적 부담 의사 a 가 커지면 갑국의 반응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X_{\text{합}}^*$ 은 늘고 $X_{\text{총}}^*$ 은 줄어든다($\partial X_{\text{총}}^* / \partial a = -d / (1 - bd) < 0$). 큰 국가에 대한 압력이 오히려 작은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반대로 을국의 c 가 커져도 갑국의 부담이 줄어 충분담의 증가는 일부 상쇄된다. 이는 동맹 공공재에서 한 국가의 기여 증가가 다른 국가의 기여 감소로 부분적으로 밀려나는 구축효과를 보여준다.

2) 작은 국가의 부담 감소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정치적 요인

첫째, 올슨(M. Olson)과 제크하우저(R. Zeckhauser)가 지적한 “작은 국가에 의한 큰 국가의 착취”이다. 큰 국가는 동맹 안보에서 얻는 절대적 이익이 커서 작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더라도 공공재를 스스로 공급할 유인이 있다. 작은 국가는 이를 알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도 안보가 크게 줄지 않는다.

둘째, 맹주국 A의 압력 배분이다. 〈제시문 1〉 (2)에 따르면 같은 정치적 비용으로 총 방위비를 가장 많이 늘리는 방법은 큰 국가에 압력을 거는 것이다. GDP 대비 1%의 증가가 큰 국가에서 더 큰 절대액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력은 큰 국가에 집중되고 작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압력을 덜 받는다.

셋째, 지불능력 원칙이라는 규범이다. 차등세율처럼 능력에 비례한 부담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동맹 내부에서 공유되면 작은 국가의 낮은 부담은 무임승차가 아니라 정당한 몫으로 받아들여진다.

넷째, 비대칭 동맹의 교환 구조이다. 작은 국가는 기지 제공, 전략적 위치, 정책 지지 등 비금전적 기여로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안보를 얻는다. 이런 기여가 인정되면 금전적 부담은 낮게 유지된다.

결국 작은 국가의 부담 감소는 공공재의 성격, 맹주국의 압력 효율성, 공정성 규범이 함께 만든 결과이다. 다만 맹주국이 공약 축소를 위협할 수 있게 되면, 즉 큰 국가의 반응곡선 자체가 바뀌면 이 균형은 흔들린다.

그래프: 반응곡선 교점 E가 내쉬균형. 교점 식은 check/games.py로 계산

예시답안 — 2017 학제통합논술 II 제2문

1) 사회후생함수와 두 국가의 효용수준

한계효용대체율이 양이 아니라는 단서는 사회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하거나 L자 모양이라는 뜻이다. 즉 한 국가의 안보효용을 늘리면서 사회후생을 유지하려면 다른 국가의 효용을 줄여야 하거나(우하향), 줄여도 후생이 늘지 않는다(L자).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SW = U_A + U_B$ 이다. 사회무차별곡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어서 효용의 합만 중요하고 분배는 문제되지 않는다. 효용가능곡선과 접하는 점이 최적이므로 한쪽 국가의 효용이 훨씬 큰 비대칭 배분도 최적일 수 있다.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예컨대 $SW = U_A \times U_B$ 처럼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곡선을 가진다. 효용이 한쪽에 몰릴수록 같은 후생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보상이 필요하므로, 공리주의보다 두 국가의 효용이 높은 점을 택한다.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SW = \min(U_A, U_B)$ 이며 무차별곡선이 L자이다. 사회후생은 형편이 나쁜 국가의 효용으로만 결정되므로 최적점은 효용가능곡선 위에서 $U_A = U_B$ 에 가장 가까운 점이다. 따라서 동맹 안보의 배분에서 공리주의는 총안보의 극대화를, 롤즈적 기준은 취약한 동맹국의 안보 보장을 우선하며, 평등주의는 그 중간에 위치한다.

2) 한미 방위비분담 협의의 근거·절차와 합의의 국내적 효력

협정의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다. SOFA 제5조 제1항은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고, 제2항은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한국이 인건비·군사건설비 등 경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제5조에 대한 예외이며, 이를 위해 양국은 별도의 특별협정을 맺어 왔다. 시설·구역의 결정과 같은 SOFA 시행 문제는 제28조의 합동위원회가 협의의 수단이 된다.

절차는 정부 간 교섭과 서명, 국회 동의, 비준과 공포의 순서이다. 이때 합의의 성격이 결정적이다.

첫째, 합의가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동의를 거쳐 체결·공포된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 즉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수년간 거액의 예산 지출을 약속하므로 이 유형에 해당한다.

둘째, 이미 동의를 받은 조약의 범위 안에서 집행 세부를 정하는 합의(예: 합동위원회 합의, 고시류 조약)는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체결할 수 있다. <제시문 3> (1)처럼 정부는 이 경우에도 국제법상 준수 의무를 진다는 입장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법상 절차를 이유로 국제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법상으로는 법률이 아니라 명령 수준의 효력에 그칠 수 있다.

셋째, 법적 구속 의사가 없는 정치적 합의라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에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국회의 동의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을 대체하는 장치가 아니라 견제 장치이며, 재정 부담이 큰 분담 합의일수록 국회 동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국내법적 효력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SOFA 제5조의 예외로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헌법 제60조 제1항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핵심

예시답안 — 2017 학제통합논술 II 제3문

1) 민주국가가 더 많이 지출하고 전쟁을 중단하기 어려운 이유

<제시문 5>의 그림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1915년 이후에도 1인당 군사비를 계속 늘렸지만, 비민주국가는 독일을 제외하면 증액이 거의 없었다. 이 차이는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의 차이로 설명된다.

첫째, 선출인단 이론이다.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큰 승리연합(유권자 다수)의 지지로 권력을 유지한다. 큰 연합에게 사적 보상을 나눠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도자는 정책 성공이라는 공공재로 지지를 얻어야 하며,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곧 실각을 뜻한다. 그래서 민주국가 지도자는 승리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 자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반면 작은 승리연합에 기대는 비민주국가 지도자는 패전하더라도 측근에게 사적 보상을 계속 주면 권력을 지킬 수 있으므로 전쟁에 자원을 덜 쏟는다.

둘째, 기대의 오류와 청중비용이다. 민주국가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전쟁을 골라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시문 5>처럼 승리가 예상보다 어려워지면 “포기”는 그동안의 판단이 틀렸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일이 된다. 이는 큰 정치적 비용(청중비용)을 낳으므로 “더 노력하기”가 선택된다.

셋째, 제도적 사전 공약이다. <제시문 4> (3)의 한미전시지원협정처럼 민주국가는 전시 지원을 의회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 미리 약속한다. 이런 공약은 동맹의 신뢰도를 높이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지원을 철회하기 어렵게 만들어 전쟁 지속의 경로의존성을 강화한다.

이 세 요인이 합쳐져 민주국가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지출을 늘리고 중도 이탈하기 어렵다.

2) 새 합의를 전시지원협정 부록 1에 추가할 때 전시의 효력

한미전시지원협정은 일종의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이다. 제3조는 협정 발효 이전에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기존 전시지원 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목록을 부록 1에 둔다고 정하고, 제4

조는 추가로 필요한 전시지원을 식별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체결 시 상호 합의에 따라 부록 1에 추가한다고 정한다. 협정 자체는 제9조에 따라 한국의 비준과 미국의 승인을 확인하는 각서 교환으로 발효하였다. 따라서 방위비 재협상에서 마련한 전시지원 특별내용을 부록 1에 추가하면, 그 합의는 포괄협정의 틀 안에 편입된 시행 약정이 된다. 전시가 되면 포괄협정이 예정한 전시지원 체계가 작동하므로, 부록에 등재된 약정은 별도의 협상 없이 전시지원의 근거로 집행된다. 동맹국 간 조약은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당연히 종료되거나 정지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이 협정은 전시에 비로소 본래의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추가 합의가 새로운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운다면 부록 등재만으로 국회 동의를 대신할 수 없고,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국내법적 효력이 확보된다. 둘째, 부록은 상호 합의로만 추가되므로 일방이 전시에 내용을 확대할 수는 없다. 1)에서 본 것처럼 민주국가는 사전 공약을 쉽게 철회하지 못하므로, 이 등재는 전시 지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이자 한국의 재정적 구속을 장기화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1)은 선출인단 이론(Bueno de Mesquita 외)과 청중비용, 2)는 포괄협정 제3·4·9조의 구조로 답한다

2025 학제통합논술

그린란드와 미국의 강압, 관세 분쟁

총 100점 · 제1문 30점, 제2문 35점, 제3문 35점 · 통합 시험 첫해 · 국제정치 + 국제법 + 경제(베이즈 게임·대국 관세)

〈제시문 1〉

(1) 2025년 1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적 또는 경제적 강압 수단을 사용하는 선택지를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두 사안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확언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경제 안보를 위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엄연히 타국의 주권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2) Deeply rattled by President Trump's insistence that he wants to acquire Greenland, Prime Minister Mette Frederiksen of Denmark met European and NATO leaders on a whirlwind tour on Tuesday, traveling to Berlin, Paris and Brussels to garner public support and discuss how best to respond to the sudden demands of one of Denmark's closest allies. The Danes are seeking allied solidarity while at the same time urging their European partners in both the European Union and NATO not to inflame the situation and make matters worse before Mr. Trump's strategy becomes clear, if he has formulated one.

“Frederiksen doesn't want to get into a one-on-one fight with Donald Trump, because she will lose,” said Ulrik Pram Grad of the Da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She's trying to get colleagues to commit to the fact that this is not just her problem, but a problem for Europe, if tariffs are imposed” — referring to Mr. Trump's threat of tariffs if he does not get his way — “and a problem for NATO, if an ally threatens to take away sovereign territory of another.”

The European Union is itself divided, said Fabian Zuleeg, chief executive of the European Policy Centre in Brussels. “There will be some countries that will support Trump no matter what, given their ideologies and a bit of glee about how liberal

democracies are under pressure,” he said. The Danish prime minister's trip was more about “shoring up support among like-minded countries” and inside NATO itself.

〈제시문 2〉

그린란드는 약 30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가 1953년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덴마크 자치령이 되었다. 그린란드는 1979년 자치법에 따라 ‘덴마크왕국 내 국가’로서 자체 의회와 정부를 통해 내부 자치권을 획득했다. 그린란드는 일부 법적 책임이 있는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천연자원 분야는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공동으로 관리했다. 2009년 자치권이 일부 확대되어 그린란드는 북극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다만, 현재까지 덴마크는 대법원, 시민권, 통화, 국방과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1979년 제한된 자치법과 2009년 확대된 자치정부법 사이의 큰 변화는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북극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자원 개발과 항로 가능성이 증대했다. 실제로 그린란드의 기온은 지구 평균기온보다 4배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그린란드에 약 300년 만에 독립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실제로 그린란드 내 독립 열망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2019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성인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그린란드에서 최초의 토착민으로 구성된 이누이트 국가 건설은 가능한가? 그린란드의 독립 과정에서 덴마크는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은 독자적 혹은 진영 안팎으로 각축의 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란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후변화, 영토의 크기, 위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가치는 모든 북극항로의 물류 중심지이자 다양한 자원의 보고인 지역이라는 데 있다. 러시아와 북미 이누이트 공동체와는 달리 그린란드는 섬이기에 이누이트 국가 건설의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린란드의 자치와 독립을 위한 여정은 전 세계 토착주민들에게 희망의 등불 역할을 하고 있다.

〈제시문 3〉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XXXX
The General Assembly,
...

Concerned that indigenous peoples have suffered from historic injustices as a result of, inter alia, their colonization and dispossession of their lands, territories and resources, thus preventing them from exercising, in particular, their right to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needs and interests,

Recognizing the urgent need to respect and promote the inherent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which derive from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and from their cultures, spiritual traditions, histories and philosophies, especially their rights to their lands, territories and resources,

Recognizing also the urgent need to resp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ffirmed in treaties, agreements and other constructive arrangements with States,
...

Solemnly proclaims that the following Declaration as a standard of achievement to be pursued in a spirit of partnership and mutual respect:

Article 1

Indigenous peoples have the right to the full enjoyment, as a collective or as individual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recogniz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Article 4

Indigenous peoples, in exercising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have the right to autonomy or self-government in matters relating to their international and local affairs, as well as ways and means for financing their autonomous functions.

〈제시문 4〉

덴마크는 미국의 강압정책에 대해 외교적 협상으로 대응할지 또는 무력으로 대응할지를 결정하고, 동시에 EU 회원국인 A국은 덴마크에 무역특혜를 제공할지 아니면 군병력을 지원할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덴마크는 A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모른다고 가정하자. A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Type 1)의 보수행렬은 〈표 1〉,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경우(Type 2)의 보수행렬은 〈표 2〉와 같다.

〈표 1〉 보수행렬: Type 1

		덴마크	
		협상	무력 대응
A국	무역특혜 제공	(8, 5)	(3, 3)
	군병력 지원	(4, 3)	(5, 4)

〈표 2〉 보수행렬: Type 2

		덴마크	
		협상	무력 대응
A국	무역특혜 제공	(1, 2)	(1, 0)
	군병력 지원	(2, 1)	(0, 2)

〈제시문 5〉

(1) 국제평화와 같은 안보 이슈 영역뿐 아니라 무역·통화와 같은 비안보적 이슈 영역에서의 국제질서·국제협력·국제제도도 강력한 세계적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영국의 강력한 지도력이 존재했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의 지도력이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차 대전 사이에 영국은 지도력을 발휘할 의사는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고, 미국은 능력은 있었으나 의사가 없었기에 세계 경제대공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2) 2025년 2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4월 대중국 상호 관세율을 125%로 상향하여 미국의 대중국 총 관세율이 145%가 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중국도 미국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했다. 특히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 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그린란드를 욕심내는 보다 큰 이유는 그린란드가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린란드는 석유, 가스, 그리고 전기차와 군사 장비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매장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시문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이 미국 경제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는 미국의 주요 수입국인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

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경우 2027년 미국 국내총생산 규모를 1.1% 감소시켜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소노 이쿠모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은 “트럼프의 자국 중심 고관세 정책은 미국에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7년 멕시코와 캐나다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관세 인상이 없을 경우와 비교해 각각 3.8%와 1.2%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생산 부문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돼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성장은 각각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

제1문. (총 30점)

- 1) [제시문 1]을 참조하여 미국과 덴마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덴마크의 접근방식과 한계를 국제정치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15점)
- 2)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을 참조하여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린란드를 편입시킬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국제법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15점)

제2문. (총 35점)

- 1) [제시문 1]과 [제시문 4]를 참조하고 덴마크가 A국의 유형(Type)을 모른다고 가정하자. A국이 Type 1일 확률을 β 라고 할 때, β 에 따른 덴마크의 순수전략 베이스-내쉬균형(Bayesian-Nash Equilibrium)을 구하시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양국 후생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15점)
- 2)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을 참조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① 제3국이 부담하는 국제의무에 대해 설명하시오.
 - ② 제3국이 미국에 병참 지원을 할 경우 발생하는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제3문. (총 35점)

- 1) 어떤 상품 A에 대한 미국 내 공급과 수요가 각각 $Q_{\text{국내공급}} = P - 2$, $Q_{\text{국내수요}} = 9 - P$ 이고, 이 상품에 대한 해외 공급은 $Q_{\text{해외공급}} = 2P - 1$ 이다. [제시문 5]와 [제시문 6]을 참조하여 중국과의 교역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와 무역 분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단위당 관세(t) = 4) 간 후생 변화를 미국 내 경제주체별(생산자, 소비자 및 정부)로 논하시오. (20점)
- 2) [제시문 5]와 [제시문 6]을 참조하여 미국의 대외 정책이 국제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정치이론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통합 시험 첫해의 문제지로, 시사 사안(그린란드, 대중 관세)을 국제정치 이론, 무력행사 금지와 자결권, 불완전정보 게임, 대국의 관세 분석으로 동시에 다루게 했다. 제시문에 주어진 사실만 전제로 써야 한다.

연결 개념 강압외교와 제도적 균형화, 헌장 제2조 제4항, 동부 그린란드 사건, 원주민 자결권, 국가책임 초안 제 16·41조, 베이즈-내쉬균형, 교역조건 효과, 패권안정이론.

함정 ① 베이즈 게임에서 $\beta < 1/3$ 일 때 순수전략 균형이 없다는 점을 놓치는 답안. ② 관세 후생을 소국 모형으로 계산하는 답안(해외 공급이 우상향하므로 대국). ③ 원주민 권리 선언의 법적 성격(총회 결의)을 조약처럼 쓰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 미국·덴마크 접근의 이론적 설명과 한계 2) 무력 편입의 국제법적 문제	공격적 현실주의, 제도적 균형화, 헌장 제2조 제4항·제51조, 자결권	1,400~1,800자
2	1) β 별 베이즈-내쉬균형과 후생 2) 제3국 의무와 병참 지원의 쟁점	최적반응표, $1 + 4\beta$ 대 $2 + \beta$, 제41조·제16조, 침략 정의 결의 제3조 (f)	1,600~2,100자
3	1) 관세 전후 경제주체별 후생 2) 미국 정책과 체제 안정성	$P: 3 \rightarrow 5$, 외국 수취가 1, $\Delta CS - 10 \cdot \Delta PS + 4 \cdot$ 관세수입 4, 패권안정이론	1,600~2,100자

예시답안 — 2025 학제통합논술 제1문

1) 미국과 덴마크의 접근방식과 한계

미국의 접근은 현실주의적 강압외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군사적·경제적 강압 수단을 배제하지 않았고, 관세 위협도 거론하였다. 국가이익을 권력으로 확보한다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논리이며, 동맹국에게도 상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다. 첫째, 동맹국 영토를 위협하면 NATO의 결속과 미국 공약의 신뢰성이 훼손된다. 동맹은 공동 위협에 대한 균형에서 나오는데, 맹주가 위협의 원천이 되면 동맹 내부의 연대가 흔들린다. 둘째, 강압은 상대가 굴복할 때만 싸게 끝나며, 저항이 생기면 군사적·평판적 비용이 급격히 커진다.

덴마크의 접근은 자유주의 제도론에 가깝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미국과 일대일로 맞서면 진다는 판단 아래 베를린·파리·브뤼셀을 돌며 EU와 NATO의 연대를 구하였다. 문제를 “유럽의 문제이자 NATO의 문제”로 만들어 제도 안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며, 비대칭 관계에서 약소국이 쓰는 제도적 균형화이다. 동시에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요청한 것은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관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도 한계가 있다. 제시문이 지적하듯 EU 내부는 이념에 따라 분열되어 있어 집단행동 문제가 생긴다. 또 덴마크와 유럽의 안보 자체가 미국이 이끄는 NATO에 의존하므로 미국에 대한 실질적 균형은 어렵다. 제도는 강대국이 규범을 존중할 때 효과적이며, 강대국이 이를 무시하면 약소국을 보호하는 힘이 약해진다.

2) 미국이 무력으로 그린란드를 편입할 경우의 국제법적 문제

첫째, 무력행사 금지 원칙 위반이다. UN 헌장 제2조 제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의 위협과 행사를 금지한다. 군사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무력의 위협이 될 수 있고, 실제 편입은 침략에 해당한다. 무력행사 금지는 강행규범으로 인정되므로 조약이나 경제적 필요로 정당화될 수 없다. 덴마크는 헌장 제51조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영토 취득의 무효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취득은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될 수 없다(우호관계선언, 1970).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동부 그린란드 사건(1933)에서도 확인되었다. 무력으로 편입하더라도 권원은 생기지 않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셋째,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 침해이다. 〈제시문 2〉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자치정부를 갖고 있고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독립을 지지한다. 〈제시문 3〉의 원주민 권리 선언은 원주민이 자결권을 행사하여 자치와 자치정부를 가질 권리를 확인한다. 이 선언은 총회 결의로서 그 자체로 구속력은 없지만, 자결권은 헌장 제1조 제2항과 국제인권규약 공통 제1조에 근거한 확립된 원칙이다. 그린란드의 장래는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어야 하며 제3국이 무력으로 귀속을 바꿀 수 없다.

넷째, 국가책임과 집단안보의 문제이다. 미국은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위법행위의 중지와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그러나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므로 거부권 때문에 헌장 제7장의 조치가 어렵고, 동맹국이 동맹국을 공격하는 사태에서 NATO의 집단방위 조항이 어떻게 작동할지도 불확실하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법이지만 집행 수단이 약하다는 점이 이 사안의 본질적 문제이다.

시사 사실은 제시문에 주어진 것만 전제로 함. 1)은 현실주의·자유주의 제도론, 2)는 무력행사 금지·영토보전·자결권

예시답안 — 2025 학제통합논술 제2문

1) 덴마크의 순수전략 베이즈-내쉬균형

A국은 자신의 유형을 알고, 덴마크는 Type 1의 확률이 β 라는 것만 안다. 먼저 각 유형의 A국이 덴마크의 선택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한다. Type 1은 덴마크가 협상하면 무역특혜($8 > 4$), 무력 대응하면 군병력 지원($5 > 3$)을 택한다. Type 2는 덴마크가 협상하면 군병력 지원($2 > 1$), 무력 대응하면 무역특혜($1 > 0$)를 택한다.

(가) 덴마크가 “협상”을 택하는 균형: A국은 (Type 1 무역특혜, Type 2 군병력)으로 대응한다. 이때 덴마크의 기대보수는 협상 $5\beta + 1(1 - \beta) = 1 + 4\beta$, 무력 대응으로 이탈하면 $3\beta + 2(1 - \beta) = 2 + \beta$ 이다. 협상이 최적이라면 $1 + 4\beta \geq 2 + \beta$, 즉 $\beta \geq \frac{1}{3}$ 이다.

(나) 덴마크가 “무력 대응”을 택하는 균형: A국은 (Type 1 군병력, Type 2 무역특혜)로 대응한다. 덴마크의 기대보수는 무력 대응 $4\beta + 0(1 - \beta) = 4\beta$, 협상으로 이탈하면 $3\beta + 2(1 - \beta) = 2 + \beta$ 이다. 무력 대응이 최적이라면 $4\beta \geq 2 + \beta$, 즉 $\beta \geq \frac{2}{3}$ 이다.

β 의 범위	순수전략 베이즈-내쉬균형 (덴마크; Type 1, Type 2)
$\beta < \frac{1}{3}$	순수전략 균형 없음(혼합전략 균형만 존재)
$\frac{1}{3} \leq \beta < \frac{2}{3}$	(협상; 무역특혜, 군병력 지원) — 유일
$\beta \geq \frac{2}{3}$	(협상; 무역특혜, 군병력 지원)과 (무력 대응; 군병력 지원, 무역특혜) 두 개

양국 후생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협상 균형에서 실현되는 보수는 Type 1이면 (8, 5), Type 2이면 (2, 1)이다. 무력 대응 균형에서는 Type 1이면 (5, 4), Type 2이면 (1, 0)이다. 두 유형의 A국과 덴마크 모두 협상 균형에서 더 높은 보수를 얻으므로 협상 균형이 무력 대응 균형을 파레토 우월한다. 덴마크의 기대보수도 $1 + 4\beta > 4\beta$ 이다.

함의는 세 가지이다. 첫째, A국이 적극 지원국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때($\beta \geq \frac{1}{3}$)에야 덴마크는 외교적 협상을 안정적으로 택할 수 있다. 동맹 지원에 대한 신뢰가 협상의 전제라는 뜻이다. 둘째, β 가 높아지면 오히려 무력 대응 균형도 함께 생긴다. 지원이 확실할수록 덴마크가 강경하게 나설 유인도 생기므로, 어느 균형이 선택될지는 조정의 문제가 된다. 셋째, β 가 낮으면 순수전략 균형이 없어 서로의 행동을 예측

할 수 없고 결과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A국이 자신의 유형을 신호로 드러내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롭다.

2)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력 점령한 경우

① 제3국의 국제의무. 침략 금지는 강행규범이므로 그 중대한 위반에 대해 모든 국가는 국가책임 초안 제 41조에 따라 세 가지 의무를 진다. 첫째, 합법적 수단으로 위반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할 의무이다. 둘째, 위반으로 생긴 상황(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을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하지 않을 의무이다. 셋째, 그 상황의 유지를 돕지 않을 의무이다. 또한 UN 회원국은 헌장 제2조 제5항에 따라 UN이 취하는 조치에 원조를 다하고 강제조치 대상국에 원조를 삼가야 한다. 다만 미국의 거부권으로 안보리 조치가 어려우면, 총회의 권고나 덴마크의 집단적 자위 요청에 응하는 방식이 고려된다. 집단적 자위는 피해국의 요청을 전제로 허용된다.

② 병참 지원의 국제법적 쟁점. 첫째, 국가책임 초안 제16조의 “지원 또는 원조” 책임이다. 제3국이 위법 행위의 사정을 알면서 지원하고, 그 행위를 자국이 했어도 위법이라면 지원국은 지원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침략을 위한 보급·수송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둘째, 위의 제41조 제2항의 “상황 유지에 대한 원조 금지” 위반이다. 셋째, 총회 침략 정의 결의(1974) 제3조 (f)는 자국 영토를 다른 국가가 침략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자체를 침략 행위로 본다. 기지나 영공을 병참에 내주면 지원국도 침략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넷째, 중립의 문제이다. 전통적 중립법은 교전국을 공평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는데, 헌장 체제에서는 침략국과 피해국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제한적 중립”의 논의가 있다.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침략국에만 병참을 지원하는 것은 중립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다. 다섯째, 기존 동맹조약상의 지원 의무를 근거로 들 수 없다. 헌장 제103조에 따라 헌장상 의무가 우선하고,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 의무는 원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균형 경제 $\beta = 1/3, 2/3$ 은 check/games.py에서 β 를 바꿔 가며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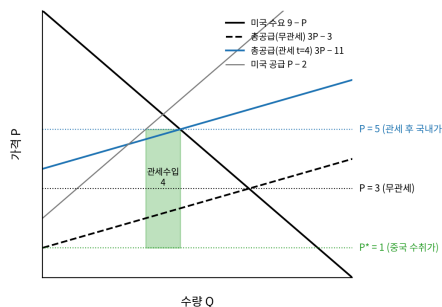
예시답안 — 2025 학제통합논술 제3문

1) 관세 부과 전후 미국 내 경제주체별 후생 변화

해외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미국은 이 상품 시장의 대국이다. 관세를 매기면 국내 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중국 수출업자가 받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관세가 없을 때 국내 공급과 해외 공급의 합이 국내 수요와 같아야 한다. $(P - 2) + (2P - 1) = 9 - P$ 에서 $P = 3$ 이다. 국내 수요 6, 국내 공급 1, 수입 5이다.

단위당 관세 $t = 4$ 를 부과하면 중국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P - 4$ 이므로 해외 공급은 $2(P - 4) - 1 = 2P - 9$ 가 된다. $(P - 2) + (2P - 9) = 9 - P$ 에서 국내 가격 $P = 5$, 중국 수취가격 $P^* = 1$ 이다. 국내 수요 4, 국내 공급 3, 수입 1이다. 관세 4 가운데 국내 가격 상승분 2는 미국 소비자가, 수출가격 하락분 2는 중국 공급자가 부담한다.



경제주체별 후생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 잉여: $\frac{1}{2} \times 6 \times 6 = 18$ 에서 $\frac{1}{2} \times 4 \times 4 = 8$ 로 **10 감소**한다.
- 생산자 잉여: $\frac{1}{2} \times 1 \times 1 = 0.5$ 에서 $\frac{1}{2} \times 3 \times 3 = 4.5$ 로 **4 증가**한다.
- 정부 관세수입: $4 \times 1 = 4$ **증가**한다.
- 순후생: $-10 + 4 + 4 = -2$ 로 **2 감소**한다.

순후생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교역조건 이득은 수출가격 하락분 $(3 - 1) \times 1 = 2$ 이고, 자중손실은 생산 왜곡 $\frac{1}{2} \times 2 \times 2 = 2$ 와 소비 왜곡 $\frac{1}{2} \times 2 \times 2 = 2$ 를 합한 4이다. 대국이라도 관세 4는 최적관세보다 높아 교역조건 이득(2)이 자중손실(4)을 메우지 못한다. 수입이 5에서 1로 급감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제시문 6〉의 “관세가 미국 경제에 자충수”라는 경고와 같은 방향이다. 소비자와 수입 중간재를 쓰는 산업이 손실을 보고, 이익은 보호받는 생산자와 정부에 집중된다. 여기에 중국이 125%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대응하면(〈제시문 5〉) 미국의 수출과 공급망에서도 손실이 생겨 순손실은 더 커진다.

정책적으로 보면, 이 분석은 관세가 ‘중국이 부담한다’는 주장이 부분적으로만 맞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세 4 가운데 2는 중국 공급자가, 2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했으며, 미국 생산자 잉여의 증가(4)는 소비자 손실(10)의 일부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관세가 더 낮아 교역조건 이득이 자중손실보다 큰 범위에 있었다면 미국의 순후생이 늘 수도 있었겠지만, 이는 상대국이 보복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

2) 미국의 대외정책이 국제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패권안정이론에 따르면 개방적 국제경제질서는 공공재이며, 이를 공급할 능력과 의사를 함께 가진 패권국이 있어야 유지된다. 〈제시문 5〉(1)의 킨들버거식 설명처럼 양차 대전 사이에는 영국이 능력을, 미국이 의사를 결여하여 대공황이 깊어졌다.

이 틀에서 보면 오늘날 미국은 능력은 있으나 개방 질서를 유지할 의사를 철회하고 있다. 동맹국을 포함한 무차별 관세, 동맹국 영토에 대한 강압(〈제시문 1〉)은 미국이 공공재 공급자에서 지대 추구자로 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그 결과 첫째, 보복관세와 수출통제의 연쇄로 1930년대식 근린국뺨화 경쟁이 재현될 위험이 커진다. 둘째, 동맹국은 미국의 공약을 신뢰하지 못해 해징과 자강에 나서고, 동맹 체제의 결속이 약해진다. 셋째, 중국은 희토류처럼 공급망 장악력을 무기로 삼아 대응하므로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확산된다.

반론도 있다. 신자유제도주의(코헤인)에 따르면 WTO 등 제도는 패권이 쇠퇴해도 거래비용을 낮추고 정보를 제공하여 협력을 지속시킨다. 그러나 패권국 자신이 제도의 규칙을 우회하면 제도의 효과도 약해진다.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는 미중 격차가 좁혀지는 시기에 패권국의 일방주의가 도전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체제의 불안정을 키운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의 정책은 단기적 협상력은 높일 수 있으나, 체제 수준에서는 개방 질서의 공공재 공급을 줄여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낮춘다.

수치: 무관세 P=3, 수입 5 / 관세 후 국내가 5, 중국 수취가 1, 수입 1. ΔCS -10, ΔPS +4, 관세수입 4, 순후생 -2 (check/games.py)

2026 학제통합논술

우크라이나 침략과 베네수엘라 석유

총 100점 · 제1문 35점, 제2문 30점, 제3문 35점 · 국제법(안보리·총회·ICC, 투자분쟁) + 국제정치(역지·신기능주의) + 경제(독점·수요독점)

〈제시문 1〉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은 2014년 2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실각으로 재개되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는 2014년 3월 크림반도 내 군사활동을 승인하고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귀속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는 2014년 10월 EU-우크라이나 제휴협정을 비준하고 NATO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했으며, 2019년 2월 NATO와 EU 가입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친서방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2021년 9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NATO의 어떠한 군사적 기반도 우크라이나로 확대되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2021년 12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우크라이나 손에 달린 것임을 확인하였고, 2022년 2월 NATO는 북대서양조약 제10조에 의거한 개방정책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면으로 전격 침공했다.

〈제시문 2〉

(1) One week after the invasion of Ukraine by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voted overwhelmingly in favor of a resolution condemning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General Assembly invoked the 1950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Recalling also its previous resolutions on aggression, the General Assembly was unequivocal in its condemnation.

(2) Empowering the General Assembly to refer situations to the ICC may not prevent aggression in the future, but it would serve to reinforce the norm prohibiting the unlawful use of force. Allowing for General Assembly referrals to the ICC could also enhance the legitimacy of the Court. Its selectivity to date has seen all of those charged or tried before the Court coming from Africa, even if there are a handful of ongoing investigations beyond the continent.

〈제시문 3〉

(1)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물자 부족에 빠졌다. 석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유화와 통제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실험이 석유 산업의 생산 능력을 붕괴시킨 결과이다.

최근 미 경제 매체인 A사는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던 시기에서 빈곤국으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며, 빈곤국으로 전락한 핵심 원인으로 석유 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국유화 정책을 지목했다. 동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가 민간기업의 역할을 배제하고 국영 석유회사를 중심으로 석유 산업을 통제하면서 생산 기반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도 빈곤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의 현실은, 자원 보유 여부보다 생산과 운영 체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Venezuela’s oil exports bounced to some 800,000 barrels per day (bpd) in January under U.S. control, from 498,000 bpd in December, following the capture of President Nicolas Maduro and the end of an oil blockade on the country, which has allowed traders to carry most exports, shipping data showed.

The Treasury Department last week issued a broad license authorizing the business between U.S. companies and PDVSA(Petróleos de Venezuela, S.A.) to export, store, transport and refine Venezuelan oil.

The United States last month regained its position as the main individual destination of Venezuela’s crude oil with some 284,000 bpd exported there, of which 220,000 bpd were shipped by Chevron, a large increase from the 99,000 bpd it sent the previous month.

〈제시문 4〉

미국 석유기업들은, 2007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석유 산업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현지에 투자했던 자산을 몰수당하고 철수했다. 당시 차베스 정권은 서방 기업들이 보유한 석유 사업 지

분에 대해 ‘수용(expropriation)’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코노코필립스는 미국 법인뿐 아니라 네덜란드 법인 명의로 네덜란드-베네수엘라 양자투자협정(BIT)을 활용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와 미국 법원 소송 등을 통해 수년간 채권 회수를 시도해왔다. 코노코필립스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의 미국 자회사 시트고(CITGO)가 미국 연방파산법원에서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엑손모빌의 경우 이 기업이 주장한 채권 중 140억 달러 규모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 엑손모빌은 이를 인정받기 위해 추가 중재를 신청했으나, 대부분의 채권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에 미국 투자를 더 많이 수용하도록 압박하면서, 미국 석유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베네수엘라 사업을 유지해 온 세브런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 석유기업들은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압송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향후 대응을 협의해 왔으나,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신규 투자는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에 대한 통제권을 무기한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협상이 양국 정부 간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공공정책 전문 비영리 채널 C-스팬과의 인터뷰에서 “석유 판매 대금은 우선 베네수엘라 경제 안정화에 사용될 것”이라며, 미국 석유기업들에 대한 보상은 이후 논의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시문 5〉

네덜란드 왕국과 베네수엘라 공화국 간의 투자 장려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제6조

계약당사자는 다른 계약당사자 국민의 투자를 수용하거나 국유화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러한 투자와 관련하여 국유화 또는 수용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치가 공익 차원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그 조치를 하는 계약당사자가 한 약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조치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보상은 조치가 있기 직전 또는 예정된 조치

가 공지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해당 투자의 시장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지급일까지 통상적인 상업적 금리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야 하고, 청구인에게 효과적일 수 있도록, 청구인이 지정한 국가로, 청구인의 국적국 통화 또는 청구인이 수락하는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로 지급되고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제26조

본 협약에 따른 중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른 구제 수단을 배제하고 해당 중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국은 본 협약에 따른 중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국내 행정적 또는 사법적 구제 수단의 소진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제1문. (총 35점)

1)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조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관련 사태를 다루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연합총회의 관계를 헌장 규정과 실행에 기반하여 정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 개시나 중지를 다루는 양자의 권한을 재판소 규정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 (15점)

2) 2022년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지하려 했다는 전제 아래, [제시문 1]을 참조하여 미국의 억지가 실패로 이어지는 과정을 억지의 두 유형별로 각각 기술하시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총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현상을 신기능주의로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 (총 30점)

1)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PDVSA)의 평균비용함수가 $AC = 10 + Q$ 이고, 베네수엘라 석유의 시장수요곡선은 $Q = 190 - P$ 이다.

① 국영기업에 의한 독점시장과 민영화를 통한 경쟁시장의 사회적 후생을 비교하고, 독점에 의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구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석유 산업 국유화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10점)

② 정부가 독점에 대한 방안으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자중손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단, 정부는 독점기업의 비용곡선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5점)

2)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참조하여 청구의 방식, 청구의 법적 연원, 청구의 당사자, 청구의 대상, 청구의 절차적 선행 요건을 기준으로 국가-국가 간

분쟁 해결 방식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방식을 비교하시오. (15점)

제3문. (총 35점)

1)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 기업 A가 X재를 생산하는데 오로지 원유 y 만을 사용하며, X재의 생산함수는 $Q_X = 2Q_y$ 이다. X재의 시장수요는 $Q_X = 50 - \frac{1}{2}P_X$ 이며, 베네수엘라 기업 B의 원유 공급함수는 $Q_y = \frac{1}{2}P_y - 30$ 이다. 여기서 P_X 는 X재의 가격이며, P_y 는 원유 y 의 가격이다. 기업 A는 X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협약에 의해 기업 B가 생산하는 원유는 기업 A만 구매할 수 있다.

① 기업 A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 원유의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고, 기업 A에 의한 수요독점적 착취(monopsonistic exploitation)를 설명하시오. (10점)

② 베네수엘라는 ①에서 나타난 상황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기업 A도 기업 B를 통해서만 원유 y 를 구입하도록 하는 협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이 개정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참조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에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완화하는 수단으로써 BIT와 ISDS가 활용되는 현상을 신자유제도주의와 신현실주의의 측면에서 논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안보리 마비 상황에서 총회와 ICC의 역할(국제법), 억지 실패와 제도 변화(국제정치), 자원 국유화의 후생 효과와 수요독점(경제), 투자 분쟁의 두 해결 방식(국제법)을 연결하게 했다. 마두로 체포 등 시사 사실은 제시문에 적힌 범위에서만 쓴다.

연결 개념 헌장 제12·24조,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로마규정 제13조 (b)·제16조, 거부적·응징적 억지, 신기능주의 파급, 독점의 자중손실, 가격 상한과 정보 비대칭, $MRP = ME$, 쌍방독점, 진부화 협상, BIT·ISDS.

합정 ① 총회에도 ICC 회부권이 있다고 쓰는 답안(현행 로마규정상 없음). ② 경쟁시장의 공급곡선을 평균비용으로 잡는 답안(한계비용 $10 + 2Q$ 가 공급곡선). ③ 쌍방독점에서 가격을 하나의 값으로 확정하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 안보리·총회 관계와 ICC 관련 권한 2) 억지 실패 과정과 총회 결의의 신기능주의적 설명	헌장 제10~12·24·25조, 일정경비 사건, 로마 규정 제13·16조, 스나이더, 하스	1,600~2,100자
2	1) 독점 대 경쟁 후생, 가격 상한제 2) 국가—국가 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Q_m = 45$, $Q_c = 60$, DWL 337.5, ILC 외교적 보호 초안, ICSID 제26·27조	1,400~1,800자
3	1) 수요독점 가격·거래량과 착취, 쌍방 독점 2) FDI의 정치적 위험과 BIT·ISDS	$Q_y = 7$, $P_y = 74$, 착취 14, 가격 범위 74~134.1, 진부화 협상, 신자유제도주의 대 신현실주의	1,600~2,100자

예시답안 — 2026 학제통합논술 제1문

1)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관계, ICC에 대한 양자의 권한

헌장 제24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하고,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7장의 강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도 안보리뿐이다. 총회는 제10조·제11조·제14조에 따라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권고할 수 있지만,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안보리가 어떤 분쟁에 관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안보리의 요청 없이 권고를 할 수 없다. 즉 헌장 문언상 총회의 권한은 이차적·권고적이다.

실행은 이 관계를 바꾸어 왔다.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보리가 일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총회가 즉시 문제를 다루어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일정경비 사건(1962)에서 안보리의 책임이 “일차적”일 뿐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고, 장벽 사건 권고적 의견(2004)에서는 총회와 안보리가 같은 사안을 병행하여 다루는 관행이 제12조와 양립한다고 보았다. <제시문 2> (1)처럼 2022년 총회는 이 결의를 원용하여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였다. 다만 총회 결의는 권고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관련하여 로마규정은 안보리에 두 권한을 준다. 제13조 (b)에 따라 안보리는 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면서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하여 재판소의 활동을 개시시킬 수 있고, 제16조에 따라 제7장 결의로 수사나 소추를 12개월 동안 개시·진행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갱신될 수 있다. 반면 총회에는 회부권도 연기 요청권도 없다. <제시문 2> (2)가 총회에 회부권을 주자고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침략범죄의 경우 비당사국 국민에 대한 관할은 안보리 회부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임이사국이 침략국이면 거부권 때문에 사실상 재판소의 활동이 막힌다.

2) 억지 실패의 과정과 총회 결의의 신기능주의적 설명

억지는 상대가 행동할 경우 얻을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고 믿게 하여 행동을 단념시키는 전략이며, 거부적 억지와 응징적 억지로 나뉜다(G. 스나이더).

거부적 억지는 침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목적 달성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제시문 1>에서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회원국이 아니어서 북대서양조약의 집단방위 공약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가입 문제가 우크라이나의 손에 달렸다고 했을 뿐 직접 방어를 약속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를 향한 신속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을 바꿀 만한 방어 능력과 공약이 사전에 제시되지 않아 거부적 억지가 실패하였다.

응징적 억지는 침략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제재를 경고했지만, 러시아는 NATO 확대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사활적 이익으로 보았다. 걸린 이익의 비대칭 때문에 러시아는 처벌 비용을 감수할 의지가 컸고, 서방의 제재 위협은 상대적으로 작고 신뢰가 낮게 인식되었다. 억지의 성공에는 능력, 위협의 신뢰성, 상대의 이익 인식이 모두 필요한데, 2022년에는 이익의 비대칭이 신뢰성을 잠식하였다.

다음으로 총회의 결의 채택을 신기능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하스(E. Haas)의 신기능주의는 한 영역의 협력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spillover)되고 행위자의 기대와 충성이 새로운 제도로 옮겨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첫째, 기능적 확산이다. 침략으로 생긴 인도적 위기, 난민, 인권 침해는 총회가 원래 다루는 영역이어서 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고, 총회의 개입이 자연스럽게 안보 영역으로 넓어진다. 둘째, 정치적 확산이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으로 안보리가 마비되자 회원국들이 기대를 총회로 옮겼고,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라는 선례가 이 이동의 통로가 되었다. 셋째, 제도의 학습과 축적이다. 총회의 반복된 실행은 제12조를 좁게 해석하는 관행을 굳히고, 〈제시문 2〉 (2)처럼 총회의 ICC 회부권 논의로까지 기능 확장 요구를 낳는다. 다만 강대국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확산은 권고의 수준에 머물며, 강제력의 이전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현장 제12·24조,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1950), 로마규정 제13조 (b)·제16조. 억지 두 유형은 거부적 억지와 응징적 억지

예시답안 — 2026 학제통합논술 제2문

1) 독점과 경쟁의 후생 비교, 가격 상한제

① 평균비용 $AC = 10 + Q$ 에서 총비용은 $TC = 10Q + Q^2$, 한계비용은 $MC = 10 + 2Q$ 이다. 수요는 $P = 190 - Q$, 한계수입은 $MR = 190 - 2Q$ 이다.

국영 독점은 $MR = MC$ 에서 $190 - 2Q = 10 + 2Q$, 즉 $Q_m = 45$, $P_m = 145$ 이다. 소비자 잉여는 $\frac{1}{2} \times 45 \times 45 = 1012.5$, 생산자 잉여(이윤)는 $145 \times 45 - (450 + 2025) = 4050$ 으로 사회적 후생은 5,062.5이다.

민영화로 경쟁시장이 되면 한계비용곡선이 공급곡선이 되어 $P = MC$ 에서 $190 - Q = 10 + 2Q$, 즉 $Q_c = 60$, $P_c = 130$ 이다. 소비자 잉여 1,800, 생산자 잉여 $\frac{1}{2} \times 120 \times 60 = 3600$ 으로 사회적 후생은 5,400이다. 독점의 자중손실은 $5400 - 5062.5 = 337.5$ 이며, 이는 $\frac{1}{2} \times (145 - 100) \times (60 - 45)$ 로도 확인된다(독점 산출량에서 $MC = 100$).

국유화의 장점은 석유 지대를 국가가 흡수하여 재분배와 공공지출에 쓸 수 있고, 외국 자본에 대한 자원 주권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독점 이윤 4,050은 경쟁 시의 3,600보다 크므로 단기 재정 수입도 늘어난다. 그러나 단점이 크다. 산출이 45로 줄고 가격이 오르는 배분적 비효율이 생기며, 〈제시문 3〉처럼 민간의 역할을 배제한 국영기업은 경쟁 압력과 투자 유인이 약해 생산 능력이 무너지는 동태적 비효율을 낳는다. 수용에 대한 보상 분쟁(〈제시문 4〉)으로 외국인 투자가 끊기는 것도 비용이다.

② 가격 상한을 경쟁가격 130으로 정확히 정하면 독점기업은 상한 아래에서 가격수용자처럼 행동하여 $Q = 60$ 을 생산하고 자중손실은 사라진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한계비용곡선을 정확히 알 때만 가능하다. 정부가 비용을 모르면 상한을 130보다 높게 정해 산출이 60에 못 미치고 자중손실이 남거나, 130보다 낮게 정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어져 초과수요와 새로운 자중손실이 생긴다. 기업은 비용을 부풀려 보고할 유인도 있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 아래에서 가격 상한제는 자중손실을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2) 국가-국가 간 분쟁 해결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의 비교

기준	국가-국가 (외교적 보호 등)	투자자-국가 (ISDS)
청구 방식	국적국이 자국민의 피해를 자국의 청구로 채택하여 외교교섭, 국제재판·중재에 제기	투자자가 직접 중재(ICSID 등)를 신청
법적 연원	외교적 보호에 관한 관습국제법(ILC 2006 초안), 국가책임법	BIT(예: 네덜란드-베네수엘라 협정 제6조)와 ICSID 협약 등 조약상 동의
당사자	국적국 대 가해국. 법인은 설립지 등 국적 요건 충족 필요	투자자 대 투자유치국. 협정상 “국민”에 해당하는 법인이면 됨
청구 대상	국적국 자신의 권리 침해로 구성되며, 배상금의 처분은 국가 재량	투자자 자신의 협정상 권리(수용 보상 등)와 손해배상
선행 요건	국적의 계속성, 국내구제 완료(초안 제14조)	ICSID 제26조: 국가가 요구하지 않는 한 국내구제 완료 불요, 중재가 다른 구제를 배제

외교적 보호는 국가의 재량이어서 국적국이 정치적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수 있고, 국내구제 완료 요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ISDS는 투자자가 국가의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을 탈정치화한다. <제시문 4>에서 코노코필립스가 네덜란드 법인 명의로 BIT를 활용한 것은 협정상 국민의 범위를 이용한 사례이다. 또 ICSID 협약 제27조는 중재에 회부된 분쟁에 대해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하지 못하게 하되, 상대 국가가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를 둔다. 두 방식은 대체 관계이면서, 판정 불이행 단계에서는 국가 간 방식이 다시 등장한다는 점에서 보완 관계이기도 하다.

독점 Q=45, P=145 / 경쟁 Q=60, P=130 / 자중손실 337.5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26 학제통합논술 제3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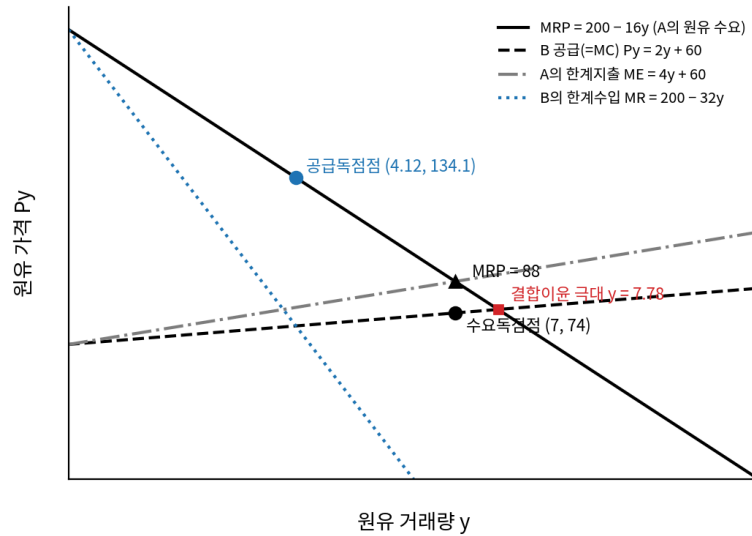
1) 원유 거래의 수요독점과 쌍방독점

① 기업 A의 X재 역수요는 $P_X = 100 - 2Q_X$ 이고 $Q_X = 2Q_y$ 이므로 원유 1단위의 한계수입생산은 $MRP = d(P_X Q_X)/dQ_y = 200 - 16Q_y$ 이다. 원유 공급은 $P_y = 2Q_y + 60$ 이고, 유일한 구매자인 A가 원유를 1단위 더 사려면 기존 구매분의 가격도 올려야 하므로 한계지출은 $ME = 4Q_y + 60$ 이다.

A의 이윤 $(100 - 4Q_y)(2Q_y) - (2Q_y + 60)Q_y = 140Q_y - 10Q_y^2$ 을 극대화하면 $MRP = ME$ 에서 $200 - 16Q_y = 4Q_y + 60$, 즉 $Q_y = 7$ 이다. 원유 가격은 공급곡선에서 $P_y = 74$ 이다. 이때 X재는 14단위가 가격 72에 팔린다.

수요독점적 착취는 원유 1단위가 A에게 가져다주는 한계수입생산과 B에게 지급되는 가격의 차이 $88 - 74 = 14$ 이다. A는 수요독점력 때문에 구매량을 줄여 가격을 공급곡선 위의 낮은 점으로 끌어내린다. 덧붙여 A는 X재 시장의 독점자이기도 하므로 원유의 한계생산물가치 $P_X \times 2 = 144$ 와 MRP 88의 차이 56은 판매독점에 따른 착취이다.

② 협약이 개정되어 A도 B에게서만 원유를 사야 한다면, B는 유일한 판매자, A는 유일한 구매자인 쌍방독점이 된다.



B가 판매독점자로 행동하면 A의 원유 수요곡선(MRP)을 수요로 보고 자신의 한계수입 $200 - 32Q_y$ 를 한계비용(공급곡선) $2Q_y + 60$ 과 같게 한다. 그러면 $Q_y = 70/17 \approx 4.12$, $P_y = 2280/17 \approx 134.1$ 이다. A가 수요독점자로 행동하면 ①의 $Q_y = 7$, $P_y = 74$ 이다. 쌍방독점에서 가격은 두 극단 사이, 즉 $74 \leq P_y \leq 134.1$ 에서 양측의 협상력으로 결정되며 이론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두 기업이 효율적으로 협상한다면 거래량은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MRP = MC$, 즉 $200 - 16Q_y = 2Q_y + 60$ 에서 $Q_y = 70/9 \approx 7.78$ 로 정해지고, 가격은 이윤을 나누는 역할만 한다. 따라서 협약 개정의 예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네수엘라(B)의 협상력이 커져 원유 가격이 74보다 높아지고 수요독점적 착취가 줄어든다. 둘째, 효율적 협상이 이루어지면 거래량도 7보다 늘어 자원배분이 개선된다. 셋째, 협상이 결렬되거나 각자 독점력을 고집하면 거래량이 4.12 수준으로 줄어 양측 모두 손실을 볼 수 있다. 협약 개정은 지대의 분배를 바꾸는 동시에 협상 실패의 위험을 만든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치적 위험과 BIT-ISDS

외국인직접투자는 설비와 같은 회수 불가능한 매몰자본을 상대국 영토에 묶어 둔다. 투자 전에는 유치국이 우호적 조건을 약속하지만, 투자가 이루어지면 협상력이 유치국으로 넘어가 수용이나 계약 변경의 유인이 생긴다. 이것이 버논(R. Vernon)의 “진부화 협상(obsolescing bargain)”이며, 정권 교체나 자원 민족주의가 이 위험을 키운다. <제시문 4>의 2007년 석유 산업 국유화와 보상 분쟁, 정권 교체 후 신규 투자 위축이 그 예이다.

신자유제도주의는 BIT와 ISDS를 신뢰할 수 있는 공약 장치로 본다. 유치국은 수용 시 공익·비차별·적법 절차·정당한 보상(<제시문 5> 제6조)이라는 조건을 조약으로 미리 묶고, 독립된 중재에 동의함으로써 미래의 자신을 구속한다. 제도는 거래비용을 낮추고 정보를 제공하며, 판정이 축적되면서 평판 비용이 작동하여 반복게임에서 협력이 유지된다.

신현실주의는 같은 현상을 힘의 관계로 해석한다. BIT의 기준은 자본수출국이 설계했고, 자본을 필요로 하는 약소국이 비대칭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또 제도의 효력은 결국 집행력에 달려 있다. <제시문 4>에서 엑손모빌은 판정을 받고도 대부분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국 법원의 CITGO 경매와 미국 정부의 마두로 체포, 석유 판매 통제라는 국가 권력의 행사에서 생겼다. 신현실주의는 국가가 상대적 이익을 이유로 제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결국 BIT와 ISDS는 정치적 위험을 낮추는 제도이지만, 그 실효성은 투자국과 유치국 사이의 힘의 배분에 의해 제약된다.

수요독점 $y=7$, $P_y=74$, $MRP=88$, 착취 14 / 쌍방독점: 가격 74~134.1, 결합이윤 극대 $y=70/9$ (check/games.py)

제3장

인권·난민·인도적 개입

2부 주제별 기출 | 수록: 2017 학제 I (실패국가·인도적 개입·ICC), 2022 학제 I (소년병), 2024 학제 I (크메르루즈와 난민), 2020 학제 II (혼합이주와 해상난민)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3-1 핵심 개념	41
3-2 기출 풀이	44
2017 학제통합논술 I 실패국가, 인도적 개입과 국제형사재판소	44
2022 학제통합논술 I 소년병: 원인, 균형, 국제의무와 처벌	50
2024 학제통합논술 I 크메르루즈, 환경난민과 난민 캠프 계약	57
2020 학제통합논술 II 혼합이주, 해상난민과 보상 계약	64

3-1 핵심 개념

이 장의 네 문제지는 인간을 보호 대상으로 놓았을 때 주권, 강대국 정치, 유인 구조가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지를 묻는다. 법적 보호의 범위(누가 난민인가, 누가 처벌되는가), 국제정치의 동기(누가 왜 개입하거나 외면하는가), 경제학의 유인 설계(어떤 계약이 보호 노력을 끌어내는가)가 한 문제지 안에서 연결된다.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R2P)

인도적 개입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타국의 무력 사용이다. 현장상 무력 사용의 예외는 자위권과 안보리 승인뿐이어서 일방적 개입의 적법성은 다툼이 있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의 결과문서의 보호책임은 ① 국가가 집단살해·전쟁범죄·인종청소·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지고, ② 국제사회가 이를 돕고, ③ 국가가 명백히 실패하면 안보리를 통해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는 세 축으로 정리된다.

대립 구도

주권·불간섭(헌장 제2조 제1·4·7항) ↔ 인권 보호(제1조 제3항, 제55·56조, 제7장 예외)

쓰이는 기출 2017 학제 I 제2문, 2024 학제 I 제3문 1)

답안 속 문장

“인권보호는 주권을 대체하는 원칙이 아니라 주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무력 개입의 결정권은 여전히 안보리에 있다.”

역진귀납과 신빙성 없는 위협

순차적 완전정보 게임은 마지막 결정 마디부터 최적 선택을 구해 거꾸로 올라간다. 이렇게 얻은 부분게임 완전균형은 실행되지 않을 위협(상대가 그 상황에 이르면 스스로 손해라 실행하지 않을 행동)에 기대는 내쉬균형을 걸러 낸다. 앞선 행위자가 결과를 바꾸려면 상대의 보수 자체를 바꾸거나, 위협을 실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약 장치가 필요하다.

대립 구도

내쉬균형(위협 포함) ↔ 부분게임완전균형(신빙성 있는 전략만)

쓰이는 기출 2017 학제 I 제3문, 제4문

답안 속 문장

“B국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해도, A국이 실제로 개입하면 B국은 협상을 택한다. 신빙성 없는 위협으로는 개입을 막을 수 없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원칙

ICC는 보충성 원칙(로마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내 사법이 수사·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 관할권을 행사한다. 관할권은 범죄지국이나 피의자 국적국이 당사국일 때 성립하고(제12조), 안보리가 제7장에 따라 회부하면 비당사국 사태에도 미친다(제13조 (b)). 안보리는 수사·기소를 12개월간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6조). 공적 지위는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제27조), 18세 미만인 자는 관할 대상이 아니다(제26조).

대립 구도

국가주권의 존중(보충성·동의) ↔ 불처벌 종식(안보리 회부·공적 지위 무관)

쓰이는 기출 2017 학제 I 제4문, 2022 학제 I 제4문 ②, 2026 제1문 1)

답안 속 문장

“ICC 관할권은 주권을 존중하는 보충적 장치이면서, 주권이 인권침해의 방패가 되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치킨게임과 보수 구조의 변경

두 국가 모두 강경하면 최악, 한쪽만 강경하면 강경한 쪽이 최선인 게임에서는 순수전략 균형이 두 개((강경, 양보), (양보, 강경))이고, 혼합전략 균형에서는 충돌이 확률적으로 실현된다. 바람직한 결과를 유일한 균형으로 만들려면 원조(양보에 대한 보상)나 처벌(강경에 대한 비용)로 보수를 바꾸어 원하는 전략을 강우월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때 등호 조건에서는 균형이 유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한다.

대립 구도

최수의 딜레마(우월전략이 비효율) ↔ 치킨게임(복수 균형, 조정 실패의 위험)

쓰이는 기출 2022 학제 I 제2문, 제4문 ①

답안 속 문장

“원조 A가 45를 넘으면 무장집이 강우월전략이 되어 (0, 0)이 유일한 균형이 된다. A가 정확히 45이면 무차별이 생겨 다른 균형이 남는다.”

주인-대리인 문제

대리인의 노력을 관찰할 수 없으면 주인은 성과에 보수를 연동해야 하고, 계약은 참여계약(대리인이 유보 효용 이상을 얻음)과 유인계약(원하는 노력을 스스로 택함)을 만족해야 한다. 위험회피적 대리인에게 성과 연동 보수는 위험을 지우므로 더 많은 기대 보수가 필요하며, 관찰 가능할 때와의 기대효용 차이가 대리인 비용이다. 노력을 관찰할 수 있으면 고정 보수로 최선(first-best)을 달성한다.

대립 구도

유인 제공(성과 연동) ↔ 위험 분담(고정 보수)

쓰이는 기출 2024 학제 I 제3문 3)·제4문, 2020 학제 II 제1문 2)·제2문 2)

답안 속 문장

“요구하는 노력은 같지만 정부의 기대효용은 475에서 375로 줄었다. 이 100이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대리인 비용이다.”

난민의 정의와 강제송환금지

1951년 협약 제1조 A(2)의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이다. 1967년 의정서는 시간적·지리적 제한을 없앴다. 환경·경제적 이유의 이주자는 원칙적으로 협약 난민이 아니다. 강제송환금지(협약 제33조)는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되며 국경과 해상에서도 적용된다.

대립 구도

영토주권(입국 통제) ↔ 인도적 원칙(송환금지, 해상 구조 의무)

쓰이는 기출 2024 학제 I 제2문 1), 2020 학제 II 제1문 1)·제3문 2)

답안 속 문장

“강제송환금지는 상륙을 허가할 의무와 같지 않지만, 상륙을 거부하려면 박해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책임의 귀속

국가는 국가기관의 행위(국가책임 초안 제4조), 법률로 정부권한의 요소를 위임받은 실체가 그 자격으로 한 행위(제5조), 국가의 지시나 지휘·통제 아래 한 사인의 행위(제8조), 국가가 사후에 자기 행위로 인정 한 행위(제11조)에 책임을 진다. 귀속되지 않더라도 국가는 관할 아래의 위해를 방지할 상당한 주의 의무를 지므로, 그 부작위가 독자적 위반이 될 수 있다.

대립 구도

귀속(사인의 행위를 국가 행위로) ↔ 상당한 주의(국가 자신의 부작위)

쓰이는 기출 2024 학제 I 제3문 2), 2022 학제 I 제3문, 2019 학제 I 제2문

답안 속 문장

“난민 보호와 캠프 운영은 국가의 공적 기능이므로, A국이 법령으로 이 권한을 NGO에 위임했다면 NGO의 행위는 A국에 귀속될 수 있다.”

인간안보와 안보화

인간안보는 보호 대상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옮겨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에 따르면 지도자가 어떤 문제를 실존적 위협으로 선언하고 청중이 받아들이면 통상의 정치를 넘는 비상조치가 정당화된다. 난민·이주 문제는 안보화를 거쳐 국경 봉쇄와 해상 차단 같은 전통안보의 수단으로 다루어진다.

대립 구도

인간안보(개인·예방·다자) ↔ 전통안보(국가·역지·군사)

쓰이는 기출 2020 학제 II 제3문 1), 2019 학제 II 제1문 1)

답안 속 문장

“로힝야 난민의 위협은 외국 군대가 아니라 자국 정부의 박해와 바다 위의 굶주림이다. 그러나 수용국이 이들을 불법이주자로 규정하는 순간 문제는 국경 안보의 문제로 바뀐다.”

3-2 기출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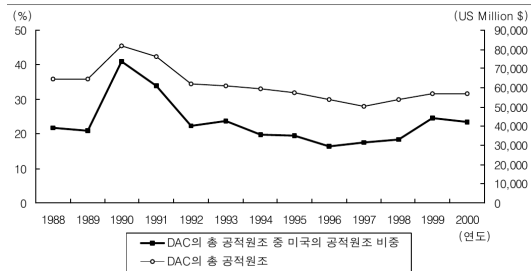
2017 학제통합논술 I

실패국가, 인도적 개입과 국제형사재판소

총 100점 · 제1·2·3문 각 22점, 제4문 34점 · 국제정치(구성주의) + 국제법(헌장·로마규정) + 게임이론(전개형 게임)

〈제시문 1〉

(1) 다음은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참여한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 총액과 미국 공적개발원조의 비중을 나타낸 그림이다.



(2) 1990년대 제3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정부가 국가 영토의 상당 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실패 국가가 등장했다. 2013년 16개 국가가 내전과 무정부 상태에 의하여 붕괴할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54개 국가는 실패국가가 될 위험에 놓였다.

〈제시문 2〉

구성주의는 물질적, 주관적, 간주관적인 세계가 현실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해하려 한다. 이 이론은 구조가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행위자들이 구조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3〉

(1) A controversial issue in recent years is whether it is acceptable for states and international actors to use force (or the threat of force) against a state that is abusing the human rights of its own citizens. This is sometimes justified as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those taking the actions. However, the state that is the target of such an intervention can object that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its sovereignty and hence of international law.

(2) 인도적 개입이란 한 국가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인도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이를 수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타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그 사태를 종식시키려는 행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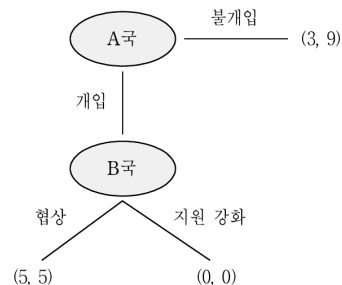
말한다. 대상국의 영토적 단일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려는 의도에서 감행된 개입이 아닌 한, 이의 정당성이 대체로 긍정되고 있으나 UN헌장 체제하에서 인도적 개입이 허용되느냐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3)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다. 한편에서는 ICC가 정의와 인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주권 중심의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4〉

C국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국민의 8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4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A국은 C국의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B국은 C국의 정부군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A국의 전략은 내전에 개입하여 반군을 지원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B국의 전략은 C국의 정부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협상을 통해 내전을 종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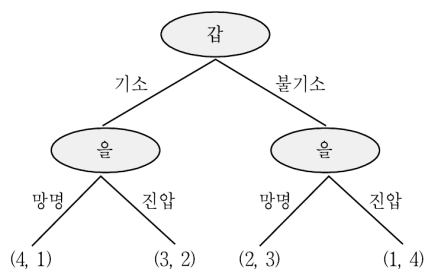
아래는 게임나무(game tree) 형태로 나타낸 전개형 게임이다. 먼저 A국이 내전에 개입 혹은 불개입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B국이 A국의 선택을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A국과 협상을 하여 내전을 종식할 것인지, 혹은 정부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두 국가가 결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보수(payoff)는 아래 그림과 같다.



※ 각국의 보수 (a, b)에서 a는 A국의 보수를 의미하고, b는 B국의 보수를 의미한다.

〈제시문 5〉

ICC 소추관 갑은 ICC 관할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권한을 갖는다. 을은 20년 동안 대통령으로 X국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소수민족의 반정부시위를 계기로 을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국의 소수민족을 살해하였다. X국의 소수민족은 이에 맞서 반정부 무장 세력을 조직하였고, 그 결과 내전에 직면하였다. 갑은 을을 기소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아래는 게임나무 형태로 나타낸 전개형 게임이다. 먼저 갑이 기소 혹은 불기소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을이 갑의 선택을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망명하거나, 혹은 무장 세력을 진압하여 정권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한다. 갑과 을이 결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보수는 아래 그림과 같다.



※ 각각의 보수 (a, b)에서 a는 갑의 보수를 의미하고, b는 을의 보수를 의미한다.

〈문제〉

제1문. 〈제시문 1〉을 참고하여 1990년대 이후 실패국가가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22점)

제2문. 〈제시문 3〉을 참고하여 국제법상 국가주권 원칙과 인권보호 원칙의 관계를 UN헌장의 해석 및 실제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시오. (22점)

제3문. 〈제시문 4〉를 참고하여 각 부분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의 보수가 결정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부분게임완전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을 구하시오. 그리고 A국이 내전에 불개입하도록 하려면, A국이 불개입하는 경우의 보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설명하시오. (22점)

제4문. 〈제시문 2〉, 〈제시문 3〉 및 〈제시문 5〉를 참고하여 ICC의 등장을 구조와 행위자 간의 관계로 논하고, 제시된 국제법 원칙들이 ICC의 관할권 행사 원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또한, ICC의 기소와 관련된 갑과 을의 부분게임 완전균형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34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탈냉전 실패국가(그림 해석) → 주권과 인권의 충돌(헌장 해석) → 내전 개입 게임 → ICC의 등장과 기소 게임으로 이어지는 구성이다. 같은 전개형 게임 도구를 국가 간 개입과 국제형사 소추에 두 번 적용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연결 개념 냉전 종식과 원조 감소, 유사국가, 현장 제2조 제4·7항과 제7장, 니카라과 사건, 보호책임, 구성주의(구조와 행위자), 로마규정 제12·13·16·17·27조, 역진귀납.

합정 ① 제1문에서 그림의 두 지표(DAC 총액과 미국 비중)를 읽지 않는 답안. ② 제3문에서 (불개입, 지원 강화)를 균형으로 제시하는 답안(내쉬균형이지만 부분게임완전균형은 아님). ③ 제4문에서 을의 선택을 기소·불기소 각각에 대해 쓰지 않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990년대 실패국가 급증의 원인	그림(1990 정점 후 감소, 미국 비중 41%→16%), 유사국가론	1,000~1,300자
2	주권과 인권의 관계: 현장 해석과 사례	제2조 제4·7항, 제55·56조, 니카라과(1986), 소말리아·르완다·코소보·리비아, R2P	1,000~1,300자
3	역진귀납, SPE, 불개입 유도 조건	B: 협상($5 > 0$) → A: 개입($5 > 3$), 불개입 보수 > 5	1,000~1,300자
4	ICC 등장의 구조-행위자, 관할 원칙, 기소 게임	구성주의, 로마규정 제12·13·16·17·27조, SPE (기소; 진압, 진압)	1,500~2,000자

예시답안 — 2017 학제통합논술 I 제1문

1990년대 실패국가의 급증은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체제의 구조 변화가 약한 국가들의 대외적 생존 기반을 무너뜨린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강대국 후원의 철회이다. <제시문 1> (1)의 그림을 보면 DAC 총 공적원조는 1990년 무렵 정점(약 800억 달러)에 이른 뒤 감소하여 1997년 약 5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DAC 원조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도 1990년 약 41%에서 1996년 약 16%로 급락하였다. 냉전기에 원조는 진영 경쟁의 도구였고, 미국과 소련은 정통성이 약한 정권이라도 자기 진영에 묶어 두기 위해 원조와 무기를 제공했다. 냉전이 끝나자 전략적 가치가 사라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줄었고, 원조에 의존하던 정권은 군대와 관료에게 보상을 줄 재원을 잃어 영토 통제력을 상실했다.

둘째, ‘유사국가’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탈식민 과정에서 독립한 많은 국가는 국제법상 주권(법률적 주권)은 인정받았지만 실제로 영토와 주민을 통치하는 능력(경험적 주권)은 부족했다. 냉전기 국제체제는 이러한 국가들의 존속을 외부에서 보장했는데, 이 보장이 사라지자 국가 능력의 공백이 드러났다.

셋째, 억눌려 있던 내부 갈등의 분출이다. 냉전기 권위주의 정권은 외부 지원으로 민족·종교 갈등을 억압했다. 지원이 끊기고 정치적 자유화가 진행되자 종족 갈등과 지역 군벌이 등장했고, 냉전기에 대량 공급된 소형무기가 내전을 장기화했다. <제시문 1> (2)가 말하는 “내전과 무정부상태”는 이 과정의 결과이다.

넷째, 경제적 압박이다. 1980~90년대 부채 위기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공공 서비스와 보조금을 줄여 국가가 주민에게 제공하던 최소한의 혜택을 악화시켰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정통성이 더 낮아졌다.

이 요인들은 서로 맞물린다. 원조 감소가 재정 위기를 낳고, 재정 위기가 통치 능력을 떨어뜨리며, 통치의 공백이 내전을 부르고, 내전이 다시 경제를 파괴하는 악순환이다. 2013년에도 16개국이 붕괴 고위험, 54개국이 실패국가 위험에 놓였다는 사실은 이 악순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탈냉전 체제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패국가 문제는 단순한 원조 확대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 능력과 정통성을 세우는 장기적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림 해석(원조 총액과 미국 비중의 동반 하락)을 냉전 종식이라는 구조 변화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

예시답안 — 2017 학제통합논술 I 제2문

국제법은 국가주권 원칙과 인권보호 원칙을 함께 기본 원칙으로 삼지만, 둘은 인도적 개입의 문제에서 정면으로 충돌한다. UN 헌장의 해석과 실행은 이 충돌을 주권의 절대성에서 ‘책임으로서의 주권’으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조정해 왔다.

1. UN 헌장의 구조

헌장 제2조 제1항은 주권평등을, 제2조 제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 금지를, 제2조 제7항은 본질상 국내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한 UN의 불간섭을 규정한다. 반면 제1조 제3항은 인권 존중의 촉진을 UN의 목적으로 들고, 제55조와 제56조는 회원국이 인권 존중을 위해 UN과 협력할 의무를 정한다. 두 원칙을 잇는 열쇠는 제2조 제7항 단서이다. 불간섭 원칙은 제7장의 강제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보리가 대규모 인권침해를 제39조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하면 국내 문제라는 항변은 배제된다.

2. 해석의 쟁점

첫째, 인권은 더 이상 본질상 국내관할 사항이 아니라는 해석이 확립되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집단살해방지협약 이후 중대한 인권침해는 국제적 관심사이다. 둘째, 안보리 승인 없는 일방적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은 여전히 다툼이 있다. 개입 찬성론은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것은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무력행사이므로 순수한 인도적 목적의 개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시문 3> (2)의 “대상국의 영토적 단일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면 정당하다는 견해가 이것이다. 반대론은 헌장의 예외가 자위권(제51조)과 안보리 승인뿐이며, 국제사법재판소도 니카라과 사건(1986)에서 무력 사용은 인권 존중을 확보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점을 든다.

3. 실제의 사례

1992년 소말리아에서 안보리는 인도적 재앙 자체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제7장에 따라 무력 사용을 승인하였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아 대량 학살을 막지 못했고, 이는 주권 존중이 인권 방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999년 코소보에서는 NATO가 안보리 승인 없이 공습하여 “불법이지만 정당하다”는 평가와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맞섰다. 이후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는 보호책임(R2P)을 채택하여, 국가가 집단살해·전쟁범죄·인종청소·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지고, 국가가 명백히 실패하면 국제사회가 안보리를 통해 집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2011년 리비아에 대한 안보리 결의 제1973호는 이를 적용한 사례이나, 정권 교체로 이어지면서 남용 논란을 낳았다.

4. 결론

두 원칙의 관계는 대립에서 조정으로 바뀌고 있다. 주권은 주민 보호의 책임을 전제로 인정되며, 중대한 인권침해는 국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무력 개입의 결정권은 여전히 안보리에 있고, 일방적 인도적 개입은 관습국제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인권보호는 주권을 대체하는 원칙이 아니라 주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헌장 제2조 제4항·제7항 대 제1조 제3항·제55조·제56조, 제7장 예외. 사례는 소말리아·르완다·코소보·리비아

예시답안 — 2017 학제통합논술 I 제3문

<제시문 4> 는 A국이 먼저 움직이고 B국이 이를 관찰한 뒤 움직이는 완전정보 전개형 게임이다. 이런 게임의 해는 마지막 결정 마디에서부터 거꾸로 최적 선택을 구하는 역진귀납법으로 구한다.

1단계: B국의 부분게임. A국이 개입한 뒤 시작되는 부분게임에서 B국은 협상하면 5, 지원을 강화하면 0을 얻는다. 따라서 이 부분게임의 내쉬균형은 B국의 협상이며, 이때의 보수는 (5, 5)로 결정된다. 지원 강화는 B국 자신에게도 손해이므로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다.

2단계: A국의 선택. A국은 B국이 개입 이후 협상할 것을 예상한다. 개입하면 5, 불개입하면 3을 얻으므로 개입을 택한다.

부분게임완전균형. 따라서 부분게임완전균형은 (A국: 개입, B국: 협상)이며 균형 경로의 결과는 (5, 5)이다. 내전에 개입하여 반군을 지원하면 협상을 통한 종전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하나 더 짚을 점이 있다. (A국: 불개입, B국: 지원 강화)도 전체 게임의 내쉬균형이다. B국이 “개입하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하면 A국은 개입 시 0을 얻으므로 불개입(3)을 택하고, B국은 9를 얻는다. 그러나 이 위협은 A국이 실제로 개입했을 때 B국이 실행하지 않을 것($0 < 5$)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부분게임완전균형은 이처럼 신빙성 없는 위협에 의존하는 균형을 제거한다. B국이 C국 정부군을 지원하겠다는 강경 발언만으로는 A국의 개입을 막을 수 없다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여기서 나온다.

A국이 불개입하도록 하려면. A국은 개입 시 (5, 5)의 5를 얻으므로, 불개입의 보수가 5보다 커야 불개입을 택한다(5와 같으면 무차별). 즉 불개입의 보수를 3에서 2 넘게 높이면 된다. 현실에서 이는 국제사회가 불개입에 대해 보상하거나(예: 외교적 이익, 원조), 개입에 따른 비용을 높여(예: 제재, 국제여론) 상대적으로 불개입이 유리하게 만드는 것에 해당한다. 다른 방법으로 B국이 지원 강화를 사전에 약속하는 신빙성 있는 공약 장치를 마련하여 개입 후 B국의 선택을 지원 강화로 바꿀 수도 있다. 이 경우 A국의 개입 보수는 0이 되어 불개입이 최적이 된다. 다만 이 방법은 내전의 장기화와 C국 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어서 인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불개입의 보수를 높이는 방식이 내전 종식이라는 목표와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이다.

부분게임완전균형 (개입; 협상), 결과 (5, 5). (불개입; 지원 강화)는 신빙성 없는 위협에 기댄 내쉬균형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17 학제통합논술 I 제4문

1. ICC의 등장: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구성

구성주의는 구조가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하고, 행위자가 다시 구조를 바꾼다고 본다(〈제시문 2〉). ICC의 등장은 이 상호작용의 전형이다.

구조 측면에서 냉전 종식은 안보리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고, 구유고(1993)와 르완다(1994)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불처벌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간주관적 이해를 확산시켰다. 이 규범 구조 안에서 국가들은 인권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행위자 측면에서 중견국 중심의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NGO 연합은 규범 선도자로서 상설 재판소를 제안하고 협상을 주도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1998년 로마규정이 채택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ICC는 다시 구조의 일부가 되어 국가 지도자의 행동 기대와 정체성을 바꾼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불참은 이 규범이 아직 보편적으로 내면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제시문 3〉 (3)).

2. 국제법 원칙의 관할권 행사 원칙에의 반영

〈제시문 3〉의 국가주권 원칙과 인권보호 원칙은 로마규정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주권 존중의 측면에서, 첫째 보충성 원칙(제17조)에 따라 국내 사법체계가 수사·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만 ICC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일차적 처벌 권한은 국가에 있다. 둘째, 관할권은 국가의 동의에 기초한다. 제12조에 따라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당사국 국민일 때 관할권이 성립하며,

비당사국은 선언으로 관할권을 수락할 수 있다. 셋째, 제16조는 안보리가 제7장 결의로 수사·기소를 12개월간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평화 유지와의 조화를 꾀한다.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첫째 제13조 (b)에 따라 안보리가 제7장에 따라 사태를 회부하면 비당사국 사태에도 관할권이 미친다. 둘째, 제27조는 국가원수 등 공적 지위가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권 면제의 방패를 제거한다. 셋째, 개인 형사책임(제25조)을 통해 국가가 아닌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책임을 실질화한다. 이처럼 ICC 관할권은 주권을 존중하는 보충적 장치이면서, 주권이 인권침해의 방패가 되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3. 갑과 을의 부분게임완전균형

역진귀납법으로 푼다. 갑이 기소한 경우 을은 망명하면 1, 진압하면 2를 얻으므로 진압한다(결과 (3, 2)). 갑이 불기소한 경우에도 을은 망명 3, 진압 4이므로 진압한다(결과 (1, 4)). 을은 어느 경우에도 진압을 택한다. 이를 예상한 갑은 기소하면 3, 불기소하면 1을 얻으므로 기소한다. 따라서 부분게임완전균형은 (갑: 기소; 을: 기소 시 진압, 불기소 시 진압)이고 결과는 (3, 2)이다.

이 결과는 ‘평화와 정의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기소는 을의 보수를 4에서 2로 낮추어 정의 실현의 효과가 있지만, 을의 행동을 망명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을에게는 진압이 늘 우월전략이기 때문이다. 기소가 내전 종식으로 이어지려면 망명의 보수가 진압보다 커지도록, 예컨대 국제사회의 신병 확보와 진압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합해야 한다. 반대로 기소가 망명의 길을 막아 독재자가 끝까지 버티게 만든다는 비판도 이 게임에서 읽을 수 있다.

로마규정 제12·13·16·17·27조. 게임의 부분게임완전균형은 (기소; 진압, 진압), 결과 (3, 2)

2022 학제통합논술 I

소년병: 원인, 균형, 국제의무와 처벌

총 100점 · 제1문 24점, 제2문 26점, 제3문 24점, 제4문 26점 · 국제정치(분석 수준) + 게임이론(연속 전략) +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국제형사법

〈제시문 1〉

(1) UN에 따르면, 분쟁지역에서 징집된 소년병의 수는 2005년 4,000여 명에서 2017년 7,734명으로 늘었다.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최소 135명의 어린이를 자살폭탄 테러에 동원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봉쇄지역 어린이들을 인간방패로 몰아넣는 바람에 저격수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소말리아에서도 2018년 10월까지 어린이 1,740여 명이 무장단체 등에 의해 소년병으로 징집됐다.

(2) 아프리카 소말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소년병으로 납치됐던 아이들이 구출된 뒤에도 정부의 착취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아이들을 스파이로 활용하는 등 작전에 다시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말리아 정보기관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소년병을 이슬람 무장단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말리아에 거액을 지원하고 있는 강대국 정부들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제시문 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39 (2004)
The Security Council, [...]
Recalling the responsibilities of States to end impunity and to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other egregious crimes perpetrated against children, [...]
Noting the fact that the conscription or enlistm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or using them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in both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s classified as a war crime by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noting also that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requires States parties to set a minimum age of 18 for compulsory recruitment and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and to raise the minimum age for

voluntary recruitment from that set out in article 3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o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members of their armed force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

〈참조조문〉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38 (3) States Parties shall refrain from recruiting any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into their armed forces. In recruiting among those persons who have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years,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give priority to those who are oldest.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Article 77 (2)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in order that children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and, in particular, they shall refrain from recruiting them into their armed forces. In recruiting among those persons who have attained the age of fifteen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years,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endeavour to give priority to those who are oldest.

〈제시문 3〉

(1)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해 징집된 아동들은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위험한 임무도 기꺼이 떠맡는다.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군 생활을 통해 피난처와 식량을 제공받고, 생존을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에라리온 소년병 출신 청년은 “우리는 사람을 무참히 때

리고 죽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은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전혀 두렵지 않았고, 어떤 범죄라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2)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5 May 2000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Declaration made upon signature and confirmed upon ratific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wi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members of its armed force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The United Kingdom understands that article 1 of the Optional Protocol would not exclude the deployment of members of its armed forces under the age of 18 to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where: -

a) there is a genuine military need to deploy their unit or ship to an area in which hostilities are taking place; and
b) by reason of the nature and urgency of the situation: -

i) it is not practicable to withdraw such persons before deployment; or
ii) to do so would undermine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ir ship or unit, and thereby put at risk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military mission and/or the safety of other personnel.” […]

(3) 1998년 5월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와 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등 여러 비정부기구(NGO)가 소년병 활용을 금지하기 위한 연합체를 형성했다. 이 연합체는 분쟁 중 아동학대를 공론화하고, 소년병의 사회 복귀와 재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을 위한 초국가적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규범을 소개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2005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 중 아동권리의 중대한 침해를 추적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감시·보고 메커니즘(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MRM)을 설치했다. 유니세프 및 UN 평화유지활동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작동하는 MRM은 무력분쟁 중 자행되는 아동권 침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는 정보를 수집해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다.

중대한 침해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된 분쟁당사자는 UN 사무총장 연간보고서의 부록에 기재된다.

〈제시문 4〉

모든 면에서 동일한 i 국과 j 국이 있다. i 국과 j 국이 서로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 N_i (단위: 천 명)와 N_j (단위: 천 명)의 소년병을 차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국이 차출할 수 있는 소년병의 수(단위: 천 명)는 0에서 20까지이다. 각국이 소년병 차출을 통해 전쟁으로부터 얻게 되는 보수(payoff)는 다음과 같다.

$$i\text{국의 보수} : \pi_i = \frac{3}{16}(N_i)^2 - \frac{3}{16}N_jN_i - \frac{3}{2}N_i + 25$$

$$j\text{국의 보수} : \pi_j = \frac{3}{16}(N_j)^2 - \frac{3}{16}N_iN_j - \frac{3}{2}N_j + 25$$

〈문제〉

제1문.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참고하여, 소년병의 무력분쟁 참여가 지속되는 이유를 개인, 국가, 구조(체제)의 차원에서 분석하시오. (24점)

제2문. 〈제시문 1〉과 〈제시문 4〉를 참고하여, i 국과 j 국이 전쟁으로부터의 보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출하는 소년병의 수를 결정한다고 할 때 ① i 국의 보수가 극소화되는 N_i 를 구하시오. 또한, ② i 국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순수전략(pure strategy) N_i^* 를 도출과정과 함께 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③ 보수행렬과 순수전략 내쉬균형을 도출하시오. (26점)

제3문.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바탕으로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국가가 18세 미만의 소년병을 강제로 징집하여 적대행위에 가담시키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24점)

제4문.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를 참고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사회는 소년병 징집에 대해 처벌하고, 소년병을 징집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① 〈제시문 4〉에 언급된 두 국가 모두 소년병을 전혀 징집하지 않는 전략이 유일하고 안정적인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되도록 하는 원조의 최소 규모를 보수행렬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또한, ② 소년병 징집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국제법적 처벌 방안과 그 한계를 논하고, ③ 이러한 원조 및 처벌 조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NGO의 역할과 그 한계를 논하시오. (26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같은 현상을 분석 수준(국제정치), 보수함수의 최적화와 균형(경제), 연령별 조약 의무(국제법)로 해부한 뒤, 제4문에서 원조·처벌·NGO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게 했다.

연결 개념 월츠의 세 이미지, 볼록함수의 경계해, 치킨게임, 우월전략으로 만드는 보조금, 아동권리협약 제38조 제3항, 선택의정서의 18세 기준, 제1추가정서 제77조 제2항, 로마규정의 15세 미만 징집 범죄, NGO 규범 선도.

합정 ① 1계 조건의 해 $N_i = 4 + N_j/2$ 를 극대점으로 착각하는 답안(2계 도함수가 양수이므로 극소). ② 원조 최소 규모를 '45'로 쓰는 답안(45이면 균형이 유일하지 않으므로 45 초과). ③ 15~17세 강제징집을 모든 국가에 대한 관습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개인·국가·체제 차원의 지속 원인	월츠의 세 이미지, 취약국가, 무정부상태와 강대국 묵인	1,100~1,400자
2	① 극소점 ② 최적 순수전략 ③ 보수행렬과 NE	$\partial^2 \pi / \partial N_i^2 = 3/8 > 0$, $\pi(20) = 70 - 15/4 N_j$, NE (20,0)·(0,20)	1,200~1,600자
3	18세 미만 강제징집·가담의 국제의무 위반 여부	아동권리협약 제38조 제3항, 선택의정서, 제1·2추가정서, 로마규정	1,100~1,400자
4	① 최소 원조 ② 개인 처벌과 한계 ③ NGO의 역할과 한계	$25 + A > 70 \rightarrow A > 45$, ICC(루방가), 제26조, MRM	1,200~1,600자

예시답안 — 2022 학제통합논술 I 제1문

소년병 문제는 국제규범이 강화되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다. 〈제시문 1〉에 따르면 분쟁지역에서 징집된 소년병은 2005년 4,000여 명에서 2017년 7,734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그 원인은 월츠(K. Waltz)가 제시한 개인, 국가, 체제의 세 분석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

1. 개인 차원

징집하는 쪽에서 보면 아동은 순종적이고 위험한 임무를 기꺼이 떠맡으며(〈제시문 3〉 (1)), 무기가 소형화되어 체력이 약해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다. 비용이 적고 통제하기 쉬운 병력이라는 계산이 작동한다. 징집되는 쪽에서 보면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군대는 피난처와 식량을 제공하는 생존 수단이다.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었다는 증언처럼, 아동은 짧은 시간에 폭력에 사회화되어 무장집단의 정체성을 내면화한다. 탈출하더라도 사회로 돌아갈 기반이 없으면 다시 무장집단으로 돌아가기 쉽다.

2. 국가 차원

소년병이 지속되는 주된 무대는 영토를 실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취약국가이다. 정부는 무장단체의 징집을 막을 능력이 없고, 처벌하는 사법체계도 작동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국가 자신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제시문 1〉 (2)에서 소말리아 정보기관은 구출된 소년병을 스파이로 다시 작전에 투입했다. 내전의 압박 속에서 국가 안보의 논리가 아동의 권리보다 앞서는 것이다. 영국의 해석선언(〈제시문 3〉 (2))처럼 선진국조차 군사적 필요가 있으면 18세 미만의 직접 적대행위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은, 국가가 군사적 유연성을 규범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구조(체제) 차원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므로 국제규범을 강제할 중앙 권위가 없다.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는 국가를 구속하지만 비국가 무장단체를 직접 구속하기 어렵고, 감시·보고 메커니즘(MRM)도 정보를 수집하고 명단을 공개할 뿐 강제력이 없다. 또 강대국은 전략적 이익 때문에 동맹 정부의 위반을 묵인한다. <제시문 1> (2)의 “소말리아에 거액을 지원하는 강대국 정부들의 묵인·방조” 비판이 이를 보여준다. 냉전 이후 확산된 소형무기 시장과 내전의 국제화도 소년병 활용을 쉽게 만든다.

4. 종합

세 수준은 서로 맞물린다. 체제 수준의 강제력 부재가 국가의 규범 위반을 허용하고, 취약국가의 통치 공백이 무장단체의 징집을 가능하게 하며, 생존 위기에 놓인 아동은 징집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대책도 개인 수준의 사회 복귀 지원, 국가 수준의 통치 능력 강화와 책임 추궁, 체제 수준의 감시·처벌 메커니즘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윌츠의 세 이미지(개인·국가·체제)로 나누어 제시문의 근거를 각 층위에 배치

예시답안 — 2022 학제통합논술 I 제2문

① i 국의 보수가 극소화되는 N_i

i 국의 보수 $\pi_i = \frac{3}{16}N_i^2 - \frac{3}{16}N_jN_i - \frac{3}{2}N_i + 25$ 를 N_i 로 미분하면

$$\frac{\partial \pi_i}{\partial N_i} = \frac{3}{8}N_i - \frac{3}{16}N_j - \frac{3}{2}, \quad \frac{\partial^2 \pi_i}{\partial N_i^2} = \frac{3}{8} > 0$$

이다. 2계 도함수가 양수이므로 보수함수는 N_i 에 대해 아래로 볼록하고, 1계 조건이 성립하는 점은 극대점이 아니라 극소점이다. 1계 조건에서 $N_i = 4 + \frac{N_j}{2}$ 일 때 i 국의 보수가 극소화된다. 예컨대 상대가 소년병을 쓰지 않으면($N_j = 0$) $N_i = 4$ (천 명)에서 보수가 가장 낮다.

② 보수를 극대화하는 순수전략 N_i^*

볼록함수의 최댓값은 정의역 $[0, 20]$ 의 경계에서 얻는다. 두 경계의 보수를 비교한다.

$$\pi_i(0) = 25, \quad \pi_i(20) = \frac{3}{16} \cdot 400 - \frac{3}{16} \cdot 20N_j - 30 + 25 = 70 - \frac{15}{4}N_j$$

$70 - \frac{15}{4}N_j > 25 \Leftrightarrow N_j < 12$ 이다. 따라서 최적반응은 상대의 차출 규모가 12(천 명)보다 작으면 $N_i^* = 20$, 12보다 크면 $N_i^* = 0$, 12이면 두 값이 무차별이다. 상대도 같은 이유로 0 또는 20만 선택하므로, 상대가 0이면 $N_i^* = 20$, 상대가 20이면 $N_i^* = 0$ 이다. 즉 소년병을 쓰려면 최대한 쓰고, 상대가 대규모로 쓰면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③ 보수행렬과 순수전략 내쉬균형

전략을 0과 20으로 놓고 보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둘 다 20이면 $\pi_i = 75 - 75 - 30 + 25 = -5$ 이다.

i 국 \ j 국	$N_j = 0$	$N_j = 20$
$N_i = 0$	(25, 25)	(25, 70)
$N_i = 20$	(70, 25)	(-5, -5)

j 국이 0이면 i 국은 20($70 > 25$), j 국이 20이면 i 국은 0($25 > -5$)을 택한다. 대칭이므로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N_i, N_j) = (20, 0)$ 과 $(0, 20)$ 두 개이다.

순수전략 균형 외에 혼합전략 균형도 있다. 상대가 확률 q 로 20을 택할 때 20의 기대보수는 $70(1-q) - 5q = 70 - 75q$ 이고 0의 보수는 25이므로, 두 값이 같아지는 $q = 3/5$ 에서 무차별이 된다. 즉 두 국가가 각각 60%의 확률로 2만 명을 차출하는 혼합전략 균형에서는 36%의 확률로 둘 다 차출하는 최악의 결과(—

5, -5)가 실현된다. 대칭적인 두 국가가 서로 상대의 의도를 모를 때 이 균형이 현실적인 예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더 크다.

이 게임은 치킨게임 구조이다. 한 국가만 소년병을 대규모로 차출하면 그 국가가 큰 이득(70)을 보지만, 둘 다 차출하면 둘 다 최악(-5)이 된다. 균형이 두 개이므로 어느 쪽이 차출할지를 두고 서로 먼저 강경한 공약을 하려는 경쟁이 생기고, 조정에 실패하면 둘 다 차출하는 파국이 올 수 있다. 또 어느 균형에서든 한 국가는 소년병을 2만 명 차출하므로, 국가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맡겨 두면 소년병이 사라지지 않는다. 〈제시문 1〉에서 소년병 수가 줄지 않는 현상을 이 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제4문의 원조·처벌 같은 외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보수함수가 N_i 에 대해 볼록하므로 극대는 경계(0 또는 20)에서. 순수전략 내쉬균형 (0, 20), (20, 0) — 치킨게임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22 학제통합논술 I 제3문

국가가 18세 미만의 소년병을 강제로 징집하여 적대행위에 가담시키는 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인지는 대상 아동의 연령(15세 미만인지 15~17세인지)과 해당 국가가 어떤 조약의 당사국인지에 따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1.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명백한 위반

아동권리협약 제38조 제3항은 당사국이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에 징집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77조 제2항은 국제적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15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징집을 삼가도록 한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해서도 제2추가의정서가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과 적대행위 참여를 금지한다. 〈제시문 2〉의 안보리 결의 제1539호가 확인하듯, 로마규정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 모두에서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입대 또는 적대행위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전쟁범죄로 규정한다. 이 금지는 광범위한 조약 참여와 국가 실행에 비추어 관습국제법으로도 인정된다. 따라서 조약 당사국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책임자 개인은 전쟁범죄의 형사책임을 진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선택의정서 당사국 여부에 따라

아동권리협약 제38조 제3항은 15~17세를 징집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부과하므로, 이 연령대의 징집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제1추가의정서 제77조 제2항도 같다. 그러나 〈제시문 2〉에 언급된 무력충돌에서의 아동의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기준을 18세로 높였다. 당사국은 18세 미만 군대 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18세 미만인 자를 강제로 징집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선택의정서 당사국이 15~17세 아동을 강제징집하면 그 자체로 의무 위반이다. 적대행위 가담에 관한 의무는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행위의무이므로, 국가가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전투에 투입했다면 위반이 된다. 〈제시문 3〉(2)의 영국 선언은 진정한 군사적 필요와 상황의 긴급성이 있으면 18세 미만 군인의 배치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선언이다. 그러나 이 선언은 자원 입대한 군인의 배치에 관한 것이며, 강제징집 금지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또 해석선언이 조약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축소한다면 유보로 보아 허용성을 따져야 한다.

반면 선택의정서의 비당사국이 15~17세를 징집한 경우에는 조약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18세 기준이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에는 국가 실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국가책임의 성립

국가기관인 군대나 정보기관이 징집·투입한 경우 그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고(ILC 국가책임 초안 제4조), 국제의무 위반이므로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제시문 1> (2)에서 소말리아 정보기관이 구출된 소년병을 정보작전에 다시 투입한 것은 이러한 귀속 요건을 충족한다. 국가는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피해 아동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포함한 배상 의무를 진다.

4. 결론

15세 미만의 강제징집과 적대행위 가담은 모든 국가에 대해 국제의무 위반이다. 15~17세의 강제징집은 선택의정서 당사국에 대해 위반이며, 적대행위 가담은 실행 가능한 조치를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국제규범은 15세에서 18세로 기준을 높여 가는 과정에 있다.

연령 기준 정리: 15세 미만(아동권리협약 제38조 제3항, 제1추가의정서 제77조 제2항, 로마규정) / 18세 미만 강제징집(선택의정서 제2조)

예시답안 — 2022 학제통합논술 I 제4문

① 무징집이 유일하고 안정적인 균형이 되는 원조의 최소 규모

소년병을 전혀 징집하지 않는 국가($N = 0$)에 원조 A 를 준다고 하자. 보수행렬은 다음과 같다.

$i\text{국} \setminus j\text{국}$	$N_j = 0$	$N_j = 20$
$N_i = 0$	$(25 + A, 25 + A)$	$(25 + A, 70)$
$N_i = 20$	$(70, 25 + A)$	$(-5, -5)$

$N = 0$ 이 상대의 선택과 관계없이 최선이 되려면 상대가 0일 때 $25 + A > 70$, 상대가 20일 때 $25 + A > -5$ 이어야 한다. 둘째 조건은 항상 성립하므로 조건은 $A > 45$ 이다. 이때 무징집은 강우월전략이 되어 $(0, 0)$ 이 유일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되고, 어느 국가도 이탈할 유인이 없으므로 안정적이다. $A = 45$ 이면 상대가 무징집일 때 무차별이 되어 $(0, 20)$, $(20, 0)$ 도 균형으로 남으므로 유일성이 깨진다. 따라서 원조는 45를 넘어야 한다(보수 단위 기준). 처벌을 함께 쓰면 징집국 보수를 F 만큼 낮추는 효과가 있어 $A + F > 45$ 이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원조와 처벌은 치킨게임을 무징집이 우월한 게임으로 바꾸는 보수 구조 변경 장치이다.

② 책임 있는 개인에 대한 국제법적 처벌 방안과 한계

처벌 방안은 첫째, 국제형사재판소이다. 로마규정은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입대·적대행위 참여를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ICC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무장단체 지도자 루방가에게 이 범죄로 첫 유죄판결(2012)을 내렸다. 둘째,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와 같은 혼합재판소이다. 셋째, 보편관할권이나 속지·속인주의에 근거한 국내 법원의 기소이다.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규정의 범치는 15세 미만에 한정되어 15~17세의 징집은 ICC에서 처벌하기 어렵다. 둘째, ICC는 보충성 원칙(제17조)에 따라 국내 사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만 개입하고, 영토국이나 국제국이 비당사국이면 안보리 회부가 필요한데 거부권의 제약을 받는다. 셋째, ICC는 자체 경찰력이 없어 체포와 증거 수집을 국가 협력에 의존한다. 넷째,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으므로(제26조) 소년병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책임 공백을 남긴다. 다섯째, 평화협상 과정의 사면 요구와 정의의 요구가 충돌한다.

③ 원조·처벌 도입 과정에서 NGO의 역할과 한계

역할은 첫째, 규범 선도이다. <제시문 3> (3)의 1998년 NGO 연합은 소년병 문제를 공론화하고 18세 기준을 확산시켰다. 둘째, 정보 제공과 감시이다. 현지 접근성을 바탕으로 피해 실태를 기록하여 MRM과 ICC 소추관에게 증거를 제공한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①의 원조가 실제 무징집 국가에만 가도록 하는 감

시자 역할을 한다. 셋째, 이름 공개를 통한 평판 압력과 공여국 여론 동원이다. 넷째, 소년병의 무장해제·동원해제·사회 복귀(DDR)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정집을 막는다.

한계는 첫째, 강제력이 없어 국가와 무장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제한된다. 둘째, 분쟁지역 접근이 어렵고 활동가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셋째, 재원을 공여국에 의존하므로 공여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제시문 1〉 (2)처럼 강대국이 동맹 정부의 위반을 묵인하면 이를 넘어서기 어렵다. 넷째, 비국가 무장단체는 평판 압력에 둔감하다. 따라서 NGO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원조·처벌 장치를 대체하지 못하고, 그 정보 기반과 정당성을 보강하는 보완적 행위자로 기능한다.

원조 A: $25+A > 70 \Leftrightarrow A > 45$. $A = 45$ 이면 (0,0) 외 균형이 남아 유일하지 않음 (check/games.py)

2024 학제통합논술 I

크메르루즈, 환경난민과 난민 캠프 계약

총 100점 · 제1문 20점, 제2문 20점, 제3문 40점, 제4문 20점 · 국제정치(현실주의) + 국제법(난민·외교적 보호·국가책임) + 경제(주인-대리인)

〈제시문 1〉

After Vietnam had invaded Cambodia and set up a new government, the ousted Khmer Rouge leadership, including Pol Pot and Nuon Chea, retreated to the jungle along the Thailand-Cambodia border. Instead of becoming pariahs, they continu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Cambodian politics for the next two decades. The Khmer Rouge would likely not have survived without the support of its old patron China and a surprising new ally: the United States. Norodom Sihanouk, now in exile after briefly serving as head of state under the Khmer Rouge, formed a loose coalition with the guerillas to expel the Vietnamese from Cambodia. The United States gave the Sihanouk-Khmer Rouge coalition millions of dollars in aid while enforcing an economic embargo against the Vietnamese-backed Cambodian government. The Carter administration helped the Khmer Rouge keep its seat at the United Nations, tacitly implying that they were still the country's legitimate rulers.

The U.S. government's refusal to recognize the new Cambodian government and its unwillingness to distance itself from the Khmer Rouge was motivated by several factors, primarily animosity toward its former foe, Vietnam, and Vietnam's Soviet backers.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did not want to sour its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Khmer Rouge's longtime patron, China. What started as a diplomatic decision to manipulate the Sino-Soviet split and isolate and punish Vietnam became a moral blunder that ensured the survival of the genocidal Khmer Rouge.

Its people still traumatized by the massacres of the late 1970s, Cambodia entered a decade of brutal guerilla war between the Sihanouk-Khmer Rouge coalition and the Vietnamese-sponsored government.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fled their homes and sought refuge in Thailand and Vietnam. Between 1979 and 1989, almost 150,000 Cambodians came to the United States. The refugees' plight and the publicity received by genocide survivors led to a belated understanding among Americans of the legacy of the Khmer Rouge and the United States' role in Cambodia's troubles.

〈제시문 2〉

The twentieth century is the century of the refugee, and nowhere has this been more tragically evident than in Thailand, a country of first asylum for Indochinese refugees. After communist victories in the three Indochinese states of Laos, Cambodia and Vietnam in 1975, refugees began streaming into neighboring Thailand. This refugee outflow repeated itself every year since then in varying degrees of intensity. After 1975, Thailand has had to accept over one million Indochinese men, women and children escaping political repression, torture, war and economic insecurity in their homeland. As of mid-1989, over 419,000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remain in camps in Thailand. Although hundreds of thousands have thus resettled in third countries, and some have repatriated to their own countries, refugees continue to exert demands on Thailand's limited resources while more of them enter the Kingdom and the remainder of refugees still in Thai camps face dimmer resettlement prospects.

Large movements of Cambodian refugees took place in 1979 and 1980, after Vietnamese troops invaded Cambodia and the Hanoi-supported Heng Samrin regime overthrew Pol Pot's Khmer Rouge regime in December, 1978. In late 1979, thousands of Cambodians, victims of a political tragedy that would

momentarily shock the world, staggered into Thailand fleeing war, starvation and disease. Then, in late 1984 and early 1985, after intensive Vietnamese attacks on the Thai-Cambodian border, approximately 200,000 more Cambodian displaced persons evacuated to Thai border camps.

〈제시문 3〉

최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난민 문제이다. 냉전 이후 많은 국제전문가들은 분쟁의 감소와 이에 따른 난민의 감소를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되고 있다. 난민의 증가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민족이나 지역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는 민족 간의 갈등으로 야기된 내전이나 지역분쟁 이외에 각종 종교분쟁,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인권탄압, 빈곤 및 기아를 비롯한 경제적 이유, 전쟁, 테러 등이 난민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원인에 따른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문제로 인한 난민이 심각하다. ‘환경난민’은 환경파괴, 정부의 자연재해 방지 및 대처 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환경난민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시문 4〉

The UN Charter, Article 2

1. The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

...

7. Nothing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authorize the United Nations to intervene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or shall require the Members to submit such matters to settlement under the present Charter; but this principle shall not prejudice the application of enforcement measures under Chapter VII.

〈제시문 5〉

최근 이웃한 B국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인해 A국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었다. A국 정부는 난민 보호와 지원을 위해 비정부기구(NGO)인 ‘난민의 친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 계약을 통

해 NGO에게 적절한 재정지원 g 를 제공하고, NGO는 난민 캠프를 운영할 것이다.

NGO는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에 따라 난민 캠프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할 때 NGO가 높은 노력을 투입하여 난민 캠프를 관리하길 기대한다.

재정지원 g 는 0, 25, 100, 400 중 하나의 값을 가진다. NGO의 노력 수준은 $e = (e_h, e_l)$ 이고 e_h 는 높은 노력 수준을, e_l 은 낮은 노력 수준을 나타낸다. NGO는 높은 노력 수준에 대하여 비용 $c_h = 5$ 가 들고 낮은 노력 수준에 대하여 비용 $c_l = 0$ 이 든다.

NGO의 운영 성과 x 는 세 가지 결과 $(x_1, x_2, x_3) = (100, 400, 900)$ 중 하나이다. 운영 성과에 대한 확률은 NGO가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때 $(p_1, p_2, p_3) = (\frac{1}{4}, \frac{1}{4}, \frac{2}{4})$ 이고, 낮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때 $(q_1, q_2, q_3) = (\frac{2}{4}, \frac{1}{4}, \frac{1}{4})$ 이다.

끝으로 위험중립적인 정부는 효용함수 $v = x - g$ 를 가지며, 위험회피적인 NGO는 $k = h, l$ 에 대하여 효용함수 $u = \sqrt{g} - c_k$ 를 가진다. 또한 NGO의 유보효용(reservation utility)은 5이다.

〈문제〉

제1문.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조하여 대량 난민을 발생시켰던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 (총 20점)

1) 〈제시문 3〉을 참고하여 ‘환경난민’이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제시문 3〉을 참고하여 난민 및 무국적자에 대하여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와 요건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2006년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총 40점)

1) 〈제시문 5〉의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B국에 대해 A국은 인도주의적 개입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시문 4〉를 참고하여 A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 B국이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15점)

2) 〈제시문 5〉를 참고하여 NGO ‘난민의 친구’가 난민 캠프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제시문 5〉에서 NGO의 노력 수준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 A국 정부는 NGO의 노력 수준 $e =$

(e_h, e_l) 에 따라 재정지원 $g = (g_h, g_l)$ 을 제공한다. A국 정부가 ① NGO에게 노력 e_h 를 요구하는 경우, ② 노력 e_l 을 요구하는 경우에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A국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과 기대효용을 각각 구하시오. A국 정부가 NGO에게 요구할 노력 수준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제4문. <제시문 5>에서 NGO의 노력 수준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A국 정부는 NGO의 운영 성과 $x = (x_1, x_2, x_3)$ 에 따라 재정지원 $g = (g_1, g_2, g_3)$ 을 제공한다. A국 정부가 ① NGO에게 노력 e_h 를 원하는 경우, ② 노력 e_l 을 원하는 경우에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A국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과 기대효용을 각각 구하시오. A국 정부가 NGO에게 원하는 노력 수준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제3문 3)의 결과와 비교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영문 제시문으로 냉전기 미국의 대캄보디아 정책을 현실주의로 설명하게 하고, 난민 보호의 법적 공백(환경난민, 외교적 보호)과 NGO 행위의 국가 귀속을 묻는다. 제3문 3)과 제4문은 노력 관찰 가능/불가능의 계약을 비교하는 정통 주인-대리인 문제이다.

연결 개념 세력균형과 삼각외교, 난민협약 제1조 A(2)와 1967년 의정서, ILC 외교적 보호 초안 제8조, 헌장 제2조 제1·7항, 국가책임 초안 제5·8·11조, 참여계약·유인계약, 대리인 비용.

합정 ① 재정지원이 0, 25, 100, 400 중 하나라는 이산 조건을 무시하고 연속 최적화로 푸는 답안. ② 관찰 불가능한 경우 s_2 를 불필요하게 양수로 두는 답안(비용만 늘어남). ③ 난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국적국이 행사한다고 쓰는 답안(거주국이 행사, 국적국이 가한 피해는 제외).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미국의 크메르루즈 정책의 현실주의적 설명	세력균형, 중소 분열과 삼각외교, 승인의 도구화, 모겐소외 신중성	900~1,200자
2	1) 환경난민의 난민 지위 2) 난민·무국적자의 외교적 보호	협약 제1조 A(2), 의정서, 초안 제8·14조	900~1,200자
3	1) B국의 반박 논거 2) NGO 인권침해의 귀속 3) 노력 관찰 시 계약	헌장 제2조 제1·7항, 초안 제5·7·8·11조, $g_h = 100(475)$, $g_l = 25(350)$	1,800~2,400자
4	노력 관찰 불가 시 계약과 비교	유인계약 $s_3 - s_1 \geq 20$, $g = (0, 0, 400)$, 375 대 350, 대리인 비용 100	900~1,200자

예시답안 — 2024 학제통합논술 I 제1문

현실주의는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가가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을 추구하며, 대외정책은 도덕이 아니라 세력균형의 계산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크메르루즈 정권이 대량학살로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켰는데도 미국이 이 세력을 사실상 지원한 것은 이 관점으로 일관되게 설명된다.

첫째, 세력균형 논리이다. 〈제시문 1〉에 따르면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해 친베트남 정부를 세웠고, 베트남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었다. 미국에게 이는 소련 진영이 동남아에서 세력을 넓히는 것을 뜻했다. 미국은 소련의 위협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련의 대리 세력인 베트남을 고립시키고 처벌하려 했으며, 그 수단으로 반베트남 연합인 시아누크-크메르루즈 연합에 원조를 제공하고 베트남이 세운 정부에 경제봉쇄를 가했다. “적의 적”과 손잡는 전형적 균형 행동이다.

둘째, 중소 분열의 활용이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며 중국을 소련 견제의 축으로 삼는 삼각외교를 추진했다. 크메르루즈의 오랜 후원국은 중국이었으므로, 미국이 크메르루즈와 거리를 두면 막 개선되던 미중 관계가 손상될 수 있었다. 미국은 강대국과의 관계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약소국 내부의 인권 문제를 후순위로 돌렸다.

셋째, 승인과 국제기구를 도구로 사용했다. 카터 행정부가 크메르루즈의 UN 의석 유지를 도운 것은 국제법상 정부 승인과 UN 대표권 문제를 세력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무대라고 보는데, 이 사례가 그렇다.

넷째, 난민은 현실주의 계산에서 부차적 비용으로 취급되었다. 〈제시문 2〉처럼 태국은 100만 명이 넘는 인도차이나 난민을 받아야 했고 국경 캠프에는 수십만 명이 남았다. 그러나 이 비용은 주로 인접국과 국제사회가 부담했고, 미국은 일부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수준에서 대응했다.

평가하면, 이 정책은 냉전의 전략적 목표에는 부합했지만 제시문이 말하듯 “도덕적 실책”이 되었다. 모겐소(H. Morgenthau)조차 현실주의 외교의 덕목으로 결과를 헤아리는 신중성을 강조했는데, 학살 정권의 생존을 보장한 결과는 10년간의 내전과 대량 난민, 그리고 미국의 도덕적 권위 손상이라는 장기 비용으로 돌아왔다. 현실주의는 이 정책의 동기를 잘 설명하지만, 국가이익을 좁고 단기적으로 정의했을 때 생기는 비용도 함께 보여준다.

냉전기 세력균형(미·중·소 삼각관계)과 국가이익 우선의 논리로 설명하고, 도덕적 비용을 현실주의 내부의 신중성 개념으로 평가

예시답안 — 2024 학제통합논술 I 제2문

1) 환경난민의 국제법상 난민 지위

1951년 난민협약 제1조 A(2)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으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원래 협약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난민에 한정되었고 유럽 사건으로 제한할 수도 있었는데, 1967년 의정서가 이 시간적·지리적 제한을 없애 정의를 보편화하였다.

환경난민은 이 정의를 충족하기 어렵다. 첫째, 환경파괴나 자연재해는 특정한 가해자에 의한 ‘박해’가 아니다. 둘째, 피해가 다섯 가지 사유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 셋째, 상당수는 국경을 넘지 않은 국내 실향민이다. 따라서 〈제시문 3〉의 환경난민은 원칙적으로 협약상 난민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특정 민족이나 정치집단에게만 재해 구호를 고의로 거부하는 등 환경 피해가 협약상 사유에 따른 박해의 수단이 된 경우, 또는 환경 악화가 분쟁과 결합하여 박해를 낳은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현재는 지역 협약의 확대된 난민 정의, 인권법상의 강제송환금지에 근거한 보충적 보호, 일시적 보호 등으로 보호 공백을 메우고 있다.

2) 난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외교적 보호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국적국이 행사한다(초안 제3조). 그러나 무국적자는 국적국이 없고, 난민은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호의 공백이 생긴다. ILC의 2006년 외교적 보호 초안 제8조

는 이를 메우기 위해 거주국의 외교적 보호를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 관습법을 넘어선 점진적 발전에 해당한다.

주체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일과 청구의 공식 제기일에 그 국가에 합법적이고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거주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난민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였고, 같은 두 시점에 합법적이고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거주국이 행사할 수 있다. 셋째, 난민의 경우 그 난민의 국적국이 가한 피해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박해를 피해 온 국적국을 상대로 한 청구까지 허용하면 국가 간 관계가 크게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외교적 보호 일반의 요건으로 가해국에서의 국내구제 완료(제14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외교적 보호는 국가의 권리이므로 거주국이 행사할지 여부는 재량이다.

이 규정을 환경난민에 적용하면 한계가 드러난다.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환경난민은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적을 유지하는 한 무국적자도 아니다. 결국 환경난민은 협약상 보호와 외교적 보호 모두에서 공백에 놓여 새로운 국제규범이 필요하다.

난민협약 제1조 A(2), 1967년 의정서의 시간·지리적 제한 제거, ILC 외교적 보호 초안 제8조·제14조

예시답안 — 2024 학제통합논술 I 제3문

1)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B국의 반박 논거

B국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첫째, 주권평등과 불간섭이다. <제시문 4>의 헌장 제2조 제1항은 주권평등을, 제7항은 본질상 국내관할 사항에 대한 불간섭을 규정한다. 내전의 수습은 B국 정부의 고유한 통치 영역이며, 안보리가 제7장의 강제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이상 개입의 근거가 없다. 둘째, 동기의 불순성이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가는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자국 이익을 추구한다. A국은 대규모 난민 유입의 부담을 덜고, B국 내전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세력을 세워 지역 영향력을 넓히려 할 수 있다. 셋째, 선택성과 이중기준이다. 인도적 위기는 여러 곳에 있지만 개입은 개입국의 이익이 걸린 곳에서만 일어난다. 이는 개입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넷째, 결과의 불확실성이다. 외부 개입은 내전을 국제화하고 장기화하여 오히려 민간인 피해와 난민을 늘릴 수 있다. 2011년 리비아처럼 보호를 명분으로 시작된 개입이 정권 교체로 이어진 선례는 보호책임의 남용 우려를 키웠다. 다섯째, 선례의 위험이다. 일방적 개입을 허용하면 강대국이 약소국에 개입하는 명분이 되어 국제질서의 안정이 흔들린다. 여섯째, 보호책임의 절차이다. 보호책임은 일차적으로 B국의 책임이며, 국제사회의 강제조치는 안보리를 통해야 하므로 A국의 일방적 개입은 그 틀에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제정치적으로 B국은 비동맹과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이 사안을 강대국의 간섭 대 약소국의 주권이라는 구도로 바꾸려 할 것이다. 난민 문제는 A국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A국은 공정한 제3자가 아니라는 논리,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선 B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논리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2) NGO의 인권침해와 국가책임 초안상의 쟁점

핵심 쟁점은 사인인 NGO의 행위를 A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이다. NGO는 A국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귀속은 어렵다. 그러나 첫째, 제5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실체가 그 자격으로 행동했다면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가 된다. 난민 보호와 캠프 운영은 국가의 공적 기능이므로, A국이 법령에 근거해 이 권한을 NGO에 위임했다면 귀속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권한을 넘어서 행위도 그 자격으로 한 것이면 국가에 귀속된다. 둘째, 제8조에 따라 NGO가 A국의

지시나 지휘·통제 아래 행동했다면 귀속된다. 계약이 운영의 세부를 정하고 정부가 감독했다면 이 요건이 문제된다. 셋째, 제11조에 따라 A국이 사후에 그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고 채택하면 귀속된다.

귀속이 부정되더라도 A국은 자신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국가는 관할 아래 있는 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상당한 주의 의무를 지므로, 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지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국제의무 위반이다. 책임이 성립하면 A국은 위반을 중지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의 방식으로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이 책임을 누가 추궁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피해자가 B국 국적의 난민이라면 B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지만, 박해국인 B국이 난민을 보호할 가능성은 낮다. 이때 생명권 보호와 같은 인권 의무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로서 피해국이 아닌 국가도 위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초안 제48조). 아울러 NGO 자체는 국가가 아니므로 국가책임 초안상의 책임 주체가 되지 않고, 그 구성원의 범죄는 A국의 국내 형사절차로 다루어야 한다.

3) 노력 관찰이 가능한 경우의 재정지원

노력이 관찰되면 정부는 요구한 노력을 했을 때만 지원하는 계약을 쓸 수 있으므로 NGO의 참여조건(유보비용 5)만 충족시키면 된다.

① e_h 를 요구하는 경우: $\sqrt{g_h} - 5 \geq 5$, 즉 $\sqrt{g_h} \geq 10$ 이어야 한다. 가능한 값 중 최소는 $g_h = 100$ 이다. 기대 성과는 $100 \cdot \frac{1}{4} + 400 \cdot \frac{1}{4} + 900 \cdot \frac{2}{4} = 575$ 이므로 정부의 기대효용은 $575 - 100 = 475$ 이다.

② e_l 을 요구하는 경우: $\sqrt{g_l} \geq 5$ 에서 $g_l = 25$ 이다. 기대 성과는 $100 \cdot \frac{2}{4} + 400 \cdot \frac{1}{4} + 900 \cdot \frac{1}{4} = 375$ 이므로 기대효용은 $375 - 25 = 350$ 이다.

정부는 기대효용이 큰 e_h ($475 > 350$)를 요구한다. 높은 노력이 기대 성과를 200 늘리는 반면 추가 지원 비용은 75에 그치기 때문이다. 노력이 관찰되므로 위험회피적인 NGO에게 위험을 지우지 않는 고정 지원이 최적이며, 이는 위험의 효율적 배분과 유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최선(first-best)의 결과이다.

3) 관찰 가능: e_h 는 $g=100$, 기대효용 475 / e_l 은 $g=25$, 기대효용 350 → e_h 요구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24 학제통합논술 I 제4문

노력을 관찰할 수 없으면 정부는 성과 x 에만 지원을 연동할 수 있다. 정부는 NGO가 계약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제약과, 원하는 노력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제약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기대 지원액을 최소화한다. $s_k = \sqrt{g_k}$ 라 하면 g 가 0, 25, 100, 400이므로 s_k 는 0, 5, 10, 20 중 하나이다.

① e_h 를 원하는 경우

참여제약: $\frac{1}{4}s_1 + \frac{1}{4}s_2 + \frac{1}{2}s_3 - 5 \geq 5$

유인제약: $\frac{1}{4}s_1 + \frac{1}{4}s_2 + \frac{1}{2}s_3 - 5 \geq \frac{1}{2}s_1 + \frac{1}{4}s_2 + \frac{1}{4}s_3$

유인제약을 정리하면 $\frac{1}{4}(s_3 - s_1) \geq 5$, 즉 $s_3 - s_1 \geq 20$ 이다. 가능한 값 가운데 이를 만족하는 것은 $s_3 = 20, s_1 = 0$ 뿐이다. 이를 참여제약에 넣으면 $\frac{1}{4}s_2 + 10 - 5 \geq 5$, 즉 $s_2 \geq 0$ 이므로 비용이 가장 적은 $s_2 = 0$ 을 택한다. 따라서 최적 계약은 $g = (g_1, g_2, g_3) = (0, 0, 400)$ 이다. 기대 지원액은 $400 \times \frac{2}{4} = 200$ 이고, 정부의 기대효용은 $575 - 200 = 375$ 이다. NGO의 기대효용은 $10 - 5 = 5$ 로 유보비용과 같고, 낮은 노력을 하면 400을 받을 확률이 $\frac{1}{4}$ 이어서 기대효용이 역시 5이므로 두 제약이 모두 등호로 성립한다.

② e_l 을 원하는 경우

낮은 노력은 유인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위험회피적인 NGO에게 위험을 지우지 않는 고정 지원이 최적이다. $s \geq 5$ 에서 $g = 25$ 를 모든 성과에 지급하면 된다. 정부의 기대효용은 $375 - 25 = 350$ 이다.

③ 정부가 원하는 노력 수준

375 > 350이므로 정부는 여전히 e_h 를 원한다. 높은 노력에 따른 기대 성과 증가(200)가 유인을 주는 데 드는 기대 지원액 증가($200 - 25 = 175$)보다 크기 때문이다.

④ 제3문 3)과의 비교와 의의

구분	노력 관찰 가능	노력 관찰 불가능
요구 노력	e_h	e_h
지원 방식	고정 100	성과 900일 때만 400
기대 지원액	100	200
정부 기대효용	475	375

요구하는 노력은 같지만 정부의 기대효용은 475에서 375로 100 줄었다. 이 차이가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대리인 비용이다. 노력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성과에 따라 지원을 크게 달리하는 계약으로 유인을 주어야 하고, 그 결과 위험회피적인 NGO가 성과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NGO는 이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위험 프리미엄)를 요구하므로 같은 참여 수준을 보장하는 데 더 많은 기대 지원이 든다. 이는 유인 제 공과 위험 분담 사이의 상충관계를 보여준다.

정책적으로는 첫째, 난민 캠프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노력을 감시하는 정보 체계에 투자하면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최대 100까지 지불할 가치가 있다). 둘째, 성과 연동 계약은 성과가 운영자의 통제 밖 요인(난민 유입 규모, 분쟁 상황)에 좌우될수록 NGO에게 과도한 위험을 지우므로, 독립적 평가나 복수의 지표를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성과 기준만 강조하면 측정되지 않는 인권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제3문 2)의 인권침해 방지 의무를 계약의 조건으로 함께 규정해야 한다.

관찰 불가: e_h 는 $g=(0, 0, 400)$, 기대효용 375 / e_l 은 $g=25$ 고정, $350 \rightarrow e_h$. 대리인 비용 100 (check/games.py 전수 탐색)

2020 학제통합논술 II

혼합이주, 해상난민과 보상 계약

총 100점 · 제1문 30점, 제2문 35점, 제3문 35점 · 국제법(난민법·해양법) + 국제정치(자유주의 질서·인간안보) + 경제(성과 연동 계약)

〈제시문 1〉

(1) Mixed movements (or mixed migration) refers to flows of people travelling together, generally in an irregular manner, over the same routes and using the same means of transport, but for different reasons. The men, women and children travelling in this manner often have either been forced from their homes by armed conflict or persecution, or are on the move in search of a better life.

People travelling as part of mixed movements have varying needs and may include asylum-seekers, refugees, stateless people, victims of trafficking, unaccompanied or separated children, and migrants in an irregular situation. Mixed movements are often complex, and can present challenges for all those involved.

(2) 난민이란 국제난민법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일컫는다. 국제정치에서 난민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정치적 박해 그리고 내전 혹은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과 분쟁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난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일방통행적 접근이나 설명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환경이나 경제와 같은 비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난민은 정부 탄압이나 폭력분쟁의 ‘수동적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이나 환경파괴의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 혹은 ‘의도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2〉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2015년 7월 1일자 보고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에 도착한 해상난민은 약 137,000명에 이른다. 상당수 해상난민은 목적지 없

이 해상을 표류하거나 목적지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굶주림, 폭행, 파선 등으로 바다에서 생명을 잃기도 한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 해상난민에 관한 가장 큰 관심사는 종교적 박해로 인해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를 떠나 파선 위험에 처한 선박에 의존한 채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Rohingya)족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인접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기본적으로 이들의 상륙을 거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어가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로힝야족 문제에 대하여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유엔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수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가들은 해상난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이주자(illegal migrants)로 간주하여 이들의 자국 해안 상륙을 막고 있다.

〈제시문 3〉

해상난민 문제의 쟁점은 국가주권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해상난민의 입국을 불허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 해상난민을 영해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시 공해로 내보내는 행위가 국제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두 입장 간의 갈등은 국제난민법의 전형적인 문제인 영토주권과 인도적 원칙들 간의 대립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난민의 보호 문제는 국제난민법상의 문제를 넘어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이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상난민 문제는 국제난민법의 적용영역이기도 하며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의 적용대상이기도 하다.

〈제시문 4〉

(1) H국과 F국은 난민에 대한 보호와 비호 관련 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H국은 자국의 후생극대화를 원한다. H국은 F국을 거쳐 자국으로 입국하려는 E국 난민을 받지 않아야 후생이 증진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H국의 후생은 F국이 난민을 H국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F국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높아지고, 이외에 주변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편 H국은 F국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현되는 자국의 후생수준을 바탕으로 F국의 노력수준을 추측한다.

F국은 적은 노력(Low)을 투입할 수도 있고 많은 노력(High)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H국의 후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F국이 적은 노력을 투입하는 경우 H국의 후생은 10 혹은 30이 각각 50%의 확률로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F국이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경우 H국의 후생은 30 혹은 60이 각각 50%의 확률로 발생한다. 이때 H국의 후생이 30이 되면, H국은 F국이 적은 노력을 투입했는지 아니면 많은 노력을 투입했는지 알 수 없다.

F국은 자국에서 E국의 난민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F국은 자국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H국의 후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F국이 투입한 노력의 대가로 H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에서 F국의 노력에 들어간 비용을 뺀 순지원금을 F국의 '순기대보수'라 하며, H국의 후생에서 F국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뺀 순후생을 H국의 '순기대후생'이라고 한다. H국과 F국은 각각 순기대후생과 순기대보수를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단, 단순화를 위해 F국이 적은 노력을 투입하는 경우 노력의 비용을 0,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경우 노력의 비용을 10이라고 가정한다.

(2) H국이 F국의 노력을 관찰할 수 없고 실현되는 자국의 후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H국의 목적은 자국의 순기대후생 극대화이다. H국이 F국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F국의 노력이 아니라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되는데, H국은 F국이 최대한 자국의 목적에 맞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H국이 제시하는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F국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0인 경우이다. 둘째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H국의 후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H국이 F국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H국의 후생이 10 또는 30이면 지원금이 0, H국의 후생이 60이면 지원금이 46이다. 셋째는 후생공유 방식으로, H국의 후생을 F국과 공유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S = W - 24$ 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W 가 24보다 작으면 지원금이 0이 된다(S 는 F국에 대한 지원금이고, W 는 H국의 후생이다).

첫 번째 방식의 경우 F국이 많은 노력을 투입할 유인이 없지만, 나머지 방식들의 경우 F국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금 수준이 존재한다. 인센티브 방식과 후생공유 방식 중 어느 지급방식을 선호하는지는 H국과 F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시문 5〉

비정규적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온 B국은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규모 이민에 대해서 심각한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른 EU 회원국들은 B국이 제기하는 비정규적 이주민 문

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B국은 북아프리카인 일부를 그들의 본국으로 강제 송환시켰고, 나머지 수천 명에게 거주허가증을 발급해 주었다. B국이 발급한 거주허가증은 이들 이주민들의 유럽 내 다른 국가로의 여행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체결한 쉐겐협정(Schengen Agreement)에 따른 것이었다. B국이 발급한 허가증으로 인해 수천 명의 북아프리카인들이 또 다른 EU 회원국인 A국으로 이동했고, 이로 말미암아 A국과 B국 간의 갈등이 촉발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의 정상은 쉐겐협정의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두 국가는 협정의 기본정신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 이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허락하여 EU 회원국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

제1문. (총 30점)

1)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5〉를 참고하여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 및 난민의 범위에 대한 시대적 변화와 이들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법 규범의 발전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에 나타난 난민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문 4〉를 참고하여 H국이 제시한 세 가지의 지원금 지급방식별 H국의 순기대후생과 F국의 순기대보수를 각각 구하고, F국이 어떤 노력을 선택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총 35점)

1) 난민문제가 상징하듯 최근 들어 국가이기주의의 문제가 고조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근본적인 위기를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 〈제시문 5〉에서 보여주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의 찬반 입장을 논하시오. (20점)

2) (1) 〈제시문 4〉를 참고하여 H국과 F국이 각각 선호하는 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7점)
(2)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제시문 4〉의 인센티브 지급방식에서 H국이 F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S_1 으로 축소된다면 F국이 선호하는 지원금 지급방식이 바뀌는 조건을 제시하시오. (8점)

제3문. (총 35점)

1)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5〉를 참고하여 인간안보 사안이 '핵심원칙, 문제해결 과정, 국가와 국제기구의 역할' 등의 관점에서 전통안보 사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고, 인간안보 사안이 전통안보 영역의 사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시오. (15점)

2)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해상난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상륙허가 여부에 대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논하고, 해상난민 보호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의 내용을 기술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난민 개념의 확장과 국경 통제 강화라는 상반된 흐름을 법(보호 규범의 발전), 정치(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론), 경제(난민 체류국에 대한 보상 계약)로 분석하게 했다. 제4문 계약 문제가 제1문과 제2문에 나뉘어 출제된 점에 주의한다.

연결 개념 1967년 의정서, 강제송환금지, 혼합이주, 글로벌 컴팩트, 유엔해양법협약 제98조와 SOLAS·SAR 협약, 안보화, 성과 연동 보상과 유인 조건.

함정 ① 후생공유 방식에서 낮은 노력일 때 F국의 보수를 0으로 계산하는 답안(후생 30이면 지원금 6이므로 3). ② 제2문 2)(2)에서 $S_1 < 20$ 일 때 F국이 인센티브 방식에서 낮은 노력으로 바꾼다는 점을 놓치는 답안. ③ 상륙 거부가 언제나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 보호 대상과 규범의 발전 2) 세 지급방식별 보수와 F국의 선택	협약·의정서, 지역 협약, 글로벌 컴팩트, 무지원(20, 0)·인센티브(22, 13)·후생공유(24, 11)	1,400~1,800자
2	1)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기론 찬반 2) 선호 방식과 S_1 조건	제시문 2~5의 사례, H: 후생공유, F: 인센티브, $S_1 < 42$	1,600~2,100자
3	1) 인간안보 대 전통안보, 전환 상황 2) 해상난민 상륙과 국제적 합의	UNDP 인간안보, 안보화, 협약 제33조, 해양법협약 제98조, SOLAS·SAR, 난민법	1,600~2,100자

예시답안 — 2020 학제통합논술 II 제1문

1) 국제적 보호 대상의 시대적 변화와 국제법 규범의 발전

보호 대상의 범위는 좁고 법적인 난민 개념에서 출발해 혼합이주 전체로 넓어져 왔다. 1951년 난민협약은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협약 난민만을 대상으로 했고, 1951년 1월 1일 이전 사건이라는 시간적 제한과 유럽 사건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리적 제한을 두었다. 1967년 의정서는 이 제한을 없애 난민 개념을 보편화했다. 이후 아프리카통일기구 협약(1969)처럼 외부 침략이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사건을 피해 온 사람까지 포함하는 지역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1954년과 1961년의 무국적 관련 협약은 무국적자의 보호와 감소를, 2000년 인신매매 의정서와 이주자 밀입국 의정서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밀입국자의 보호를 다루었다.

<제시문 1> (1)의 혼합이주 개념은 비호신청자, 난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자 없는 아동, 비정규 이주민이 같은 경로로 함께 이동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제시문 1> (2)가 지적하듯 환경과 경제 등 비정치적 원인과 분쟁의 상호작용도 주목받는다. 규범적으로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난민협약 제33조를 넘어 고문방지협약 등 인권조약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되고, 공해상 해상 차단과 송환에도 적용된다는 실행이 쌓였다. 2016년 뉴욕 선언과 2018년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책임 분담과 이주 거버넌스의 틀을 제시하였다. 반면 <제시문 2>의 로HINGA

해상난민 상륙 거부, <제시문 5>의 센겐협정 개혁 요구처럼 국가들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보호 대상의 확대와 국가 주권 사이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2) 지원금 지급방식별 순기대후생과 순기대보수

F국의 노력별 H국 후생은 낮은 노력이면 10 또는 30(기대 20), 높은 노력이면 30 또는 60(기대 45)이며, 높은 노력의 비용은 10이다.

① 지원금 0: F국은 높은 노력 시 $0 - 10 = -10$, 낮은 노력 시 0이므로 낮은 노력을 택한다. F국의 순기대보수 0, H국의 순기대후생 20이다.

② 인센티브 방식(H국 후생 60일 때만 46): 높은 노력 시 F국은 $\frac{1}{2} \times 46 - 10 = 13$, 낮은 노력 시 후생 60이 나올 수 없으므로 0이다. F국은 높은 노력을 택한다. H국의 순기대후생은 $\frac{1}{2} \times 30 + \frac{1}{2} \times (60 - 46) = 22$ 이다.

③ 후생공유 방식($S = W - 24$, 음수면 0): 높은 노력 시 지원금은 후생 30이면 6, 60이면 36이므로 F국의 순기대보수는 $\frac{1}{2}(6 + 36) - 10 = 11$ 이다. 낮은 노력 시에는 후생 10이면 0, 30이면 6이므로 $\frac{1}{2} \times 6 = 3$ 이다. $11 > 3$ 이므로 높은 노력을 택한다. H국의 순기대후생은 $45 - 21 = 24$ 이다.

지급방식	F국의 선택	F국 순기대보수	H국 순기대후생
지원금 0	낮은 노력	0	20
인센티브	높은 노력	13	22
후생공유	높은 노력	11	24

결국 노력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과에 연동된 지원만이 F국의 높은 노력을 끌어낸다. 이는 난민 문제의 책임 분담이 선의가 아니라 유인 구조의 설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2) 무지원: F 낮은 노력, H 20·F 0 / 인센티브: F 높은 노력, H 22·F 13 / 후생공유: F 높은 노력, H 24·F 11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20 학제통합논술 II 제2문

1)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기론의 찬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개방된 국경과 무역, 다자주의 제도, 인권과 법의 지배라는 원칙 위에 서 있다. 난민 문제는 이 원칙들이 국가이익과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낸다.

위기론을 지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 규범의 후퇴이다. <제시문 2>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로힝야 해상난민을 불법이주자로 규정하고 상륙을 막았다. <제시문 3>의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영토주권이 충돌할 때 국가들이 주권을 택하고 있다. 둘째, 다자주의의 약화이다. <제시문 5>에서 다른 EU 회원국들은 B국의 이주민 문제에 공동 대처하지 않았고, B국은 거주허가증 발급으로 부담을 이웃에 떠넘겼으며, A국과 B국은 이동의 자유라는 센겐의 핵심을 제한하자고 요구했다. 셋째, 부담 전가의 거래화이다. <제시문 4>에서 H국은 난민을 받지 않기 위해 F국에 돈을 주고 난민을 붙잡아 두게 한다. 보호가 보편적 의무가 아니라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반대 근거도 있다. 첫째, 제도는 여전히 작동한다. UNHCR이 실태를 보고하고 유엔사무총장이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는 등 국제기구가 문제를 의제화하고 있다. 둘째, 개혁 요구는 해체가 아니라 조정이다. A국과 B국은 센겐의 “기본정신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예외적 상황의 통제를 요구했다. 셋째, <제시문 4>의 보상체계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협력의 한 형태이다. 국가들이 비용과 편익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상대의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를 설계한다. 넷째, 자유주의 질서는 과거에도 위기를 겪으며 제도를 고쳐 적응해 왔다.

종합하면 현재의 현상은 질서의 붕괴라기보다 자유주의 질서 내부의 긴장, 즉 보편적 인권 규범과 국가 주권·국내 정치의 압력 사이의 재조정 과정이다. 그러나 부담 전가와 국경 폐쇄가 반복되어 규범이 선택적으로만 지켜지면 질서의 정당성 자체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책임 분담 제도를 실효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2) (1) H국과 F국이 선호하는 지급방식

제1문 2)의 결과에 따르면 두 방식 모두 F국의 높은 노력을 유도한다. H국의 순기대후생은 후생공유 방식에서 24, 인센티브 방식에서 22이므로 H국은 후생공유를 선호한다. F국의 순기대보수는 인센티브 방식에서 13, 후생공유 방식에서 11이므로 F국은 인센티브를 선호한다. 같은 노력을 유도하면서 기대 지원액이 21(후생공유)과 23(인센티브)으로 달라, 지원금을 주는 H국과 받는 F국의 선호가 정반대가 된다. 실제 방식은 양국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된다.

2) (2) 인센티브 지원금이 S_1 으로 축소될 때 F국 선호가 바뀌는 조건

인센티브 방식에서 F국은 높은 노력 시 $\frac{1}{2}S_1 - 10$, 낮은 노력 시 0을 얻으므로 순기대보수는 $\max(\frac{1}{2}S_1 - 10, 0)$ 이다. 후생공유 방식의 순기대보수는 11이다. F국이 후생공유를 선호하게 되는 조건은

$$\max\left(\frac{1}{2}S_1 - 10, 0\right) < 11 \Leftrightarrow S_1 < 42$$

이다. 즉 지원금이 42보다 작아지면 F국의 선호가 후생공유로 바뀐다($S_1 = 42$ 이면 무차별). 특히 $S_1 < 20$ 이면 인센티브 방식에서 F국은 낮은 노력으로 돌아서므로, H국의 입장에서도 인센티브 방식은 노력 유도 기능을 잃는다. 이 경우 두 국가 모두 후생공유를 택할 이유가 생겨 선호가 일치하게 된다.

(2) 인센티브 지원금 S_1 에서 F국의 보수는 $\max(S_1/2 - 10, 0)$. 후생공유(11)를 선호하게 되는 조건은 $S_1 < 42$

예시답안 — 2020 학제통합논술 II 제3문

1) 인간안보 사안과 전통안보 사안의 차이

관점	전통안보	인간안보
핵심원칙	보호 대상은 국가(영토·주권·체제), 위협은 외부의 군사력	보호 대상은 개인,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문제해결 과정	억지·동맹·군사력 균형, 대개 양자적이고 제로섬	예방·개발·인권 보호의 종합적 접근, 다자적이고 포지티브섬
국가와 국제기구의 역할	국가가 유일한 안보 제공자, 국제기구는 국가 간 조정	국가는 보호자이자 위협의 원천일 수 있음, UNHCR 등 국제기구와 NGO가 직접 보호

난민 문제는 인간안보의 전형이다. 로힝야 난민(〈제시문 2〉)의 위협은 외국 군대가 아니라 자국 정부의 박해와 바다 위의 굶주림이며, 해결에는 수용국, 출신국, 국제기구, 선박이 함께 관여해야 한다.

인간안보 사안은 다음 상황에서 전통안보 사안으로 전환된다. 첫째, 대규모 유입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될 때이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에 따르면 지도자가 난민을 실존적 위협으로 선언하고 청중이 이를 받아들이면 비상조치(국경 봉쇄, 해군 투입, 해상 차단)가 정당화된다. 〈제시문 2〉의 상륙 거부와 불법이주자 규정이 이에 가깝다. 둘째, 난민 이동이 국가 간 분쟁을 낳을 때이다. 〈제시문 5〉에서 B국의 허가증 발급은 A국과 B국 사이의 외교 갈등으로 번졌다. 셋째, 〈제시문 1〉(2)처럼 난민이 무장세력과 결합해 ‘의도적 가해자’가 되면 난민 캠프가 분쟁의 기지가 되어 이웃국가와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진다.

2) 우리나라에서 해상난민이 발생할 경우의 상륙 허가과 국제적 합의

국가는 영토주권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 권리는 국제법상 의무에 의해 제한된다.

첫째, 강제송환금지 원칙이다. 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영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원칙은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된다. 송환금지는 국경이나 영해에서도 적용되므로, 박해 우려가 있는 사람을 공해로 다시 밀어내 사실상 박해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공해상 차단 후 송환이 강제송환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Hirsi Jamaa 사건, 2012). 이 원칙은 상륙을 허가할 의무와 같지는 않지만, 상륙을 거부하려면 박해 위험이 없는 안전한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당사국이고 난민법을 두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륙을 허가해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

둘째, 해양법상 구조 의무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8조는 기국이 자국 선박의 선장에게 해상에서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규정한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과 해상수색구조협약(SAR)은 구조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도록 하고, 연안국이 하선 장소를 마련하는 데 협력할 책임을 규정한다. 무해통항 중에도 조난자 구조를 위한 정선은 허용된다. 따라서 조난 상태의 해상난민은 우선 구조되어 안전한 장소에 하선해야 한다.

셋째, 반론으로 이민법에 위반되는 사람의 하선은 통항을 무해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대규모 유입은 국가의 수용 능력을 넘을 수 있다. 그러나 조난과 박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주권적 입국 통제는 생명 보호와 송환금지에 우선할 수 없다.

해상난민 보호에 적용할 국제적 합의로는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송환금지, 유엔해양법협약의 구조 의무, SOLAS·SAR 협약과 국제해사기구의 해상 구조자 처우 지침에 따른 안전한 장소로의 하선,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의 책임 분담 원칙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상난민을 구조하여 상륙시키고 난민심사 절차를 보장하되, 대량 유입에는 일시적 보호와 국제적 책임 분담을 결합해 대응해야 한다.

1) 인간안보(UNDP 1994)와 안보화 이론, 2) 강제송환금지, UNCLOS 제98조, SOLAS·SAR 협약의 '안전한 장소', 난민법

제4장

국제기구·UN·지역통합

2부 주제별 기출 | 수록: 2021 학제 I (국제기구와 무역자유화·특권면제), 2019 학제 II (UN 제재·회원국 지위·총회와 안보리), 2018 학제 I (유럽통합의 안보·통화·사법)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4-1 핵심 개념	71
4-2 기출 풀이	74
2021 학제통합논술 I 국제기구의 역할: 관세·협력·특권면제	74
2019 학제통합논술 II UN 제재, 회원국 지위와 총회·안보리	80
2018 학제통합논술 I 유럽통합: 안보·통화·사법	86

4-1 핵심 개념

강제력이 없는 국제기구가 어떻게 국가의 행동을 바꾸는가 이 장의 공통 질문이다. 경제학은 관세 인하의 후생과 공동통화의 비용·편익을, 게임이론은 협력의 조건을, 국제법은 기구의 권한과 특권·면제, 법질서 사이의 충돌을 다룬다.

소국의 관세 인하와 후생

세계가격을 받아들이는 소국이 관세 t 를 없애면 국내가격이 t 만큼 내린다. 생산은 줄고 소비와 수입은 늘며, 소비자 잉여 증가($a + b + c + d$)가 생산자 잉여 감소(a)와 관세수입 상실(c)보다 커서 순후생이 $b + d$ (생산·소비 왜곡의 해소)만큼 늘어난다. 소국에는 교역조건 효과가 없다는 점이 대국과의 차이이다.

대립 구도

자유무역의 순이익 ↔ 수입경쟁 산업의 집중된 손실(국내 정치적 반대)

쓰이는 기출 2021 학제 I 제1문·제4문 ①, 2020 학제 I 제1문, 2022 학제 II 제1문 2)

답안 속 문장

“관세 인하는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지만 손실이 수입경쟁 산업에 집중되므로, 국제기구는 상호 양허를 묶어 각국 정부가 국내 반대를 넘어설 명분을 준다.”

죄수의 딜레마, 반복게임과 상호주의

각자에게 배신이 강우월전략인데 모두 협력하면 더 나은 게임이 죄수의 딜레마이다. 무한 반복에서 방아쇠 전략을 쓰면 할인인자 $\delta \geq (T - R)/(T - P)$ 일 때 협력이 균형이 된다(T : 배신의 유혹, R : 상호협력, P : 상호배신). 티포탯 같은 상호주의 전략, 제도의 감시와 정보 제공이 협력을 지탱한다. 신현실주의는 상대적 이익과 기만의 우려를 들어 이 낙관론에 반박한다.

대립 구도

신자유주의(절대적 이익·제도) ↔ 신현실주의(상대적 이익·무정부상태)

쓰이는 기출 2021 학제 I 제2문, 2023 학제 I 제3·4문, 2019 학제 I 제4문, 2016 학제 II 제2문

답안 속 문장

“상호주의 원칙, 즉 주고받기식 양보와 약속 위반 시 보상 또는 보복의 감수는 반복 죄수의 딜레마의 협력 전략을 제도화한 것이다.”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국제기구와 그 직원·전문가는 기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헌장 제105조, 1946년 협약). 근거는 기능적 필요이며, 면제는 개인이 아니라 기구를 위한 것이다.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는 임무 중 말하거나 쓴 내용에 대해 소송으로부터 면제되며(협약 제6조 제22절), 사무총장의 판단은 국내 법원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ICJ 권고적 의견, 1999). 비회원국과는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

대립 구도

기구의 기능 보장 ↔ 소재국의 사법주권·피해자의 재판청구권(면제 포기 제도)

쓰이는 기출 2021 학제 I 제3문·제4문 ③

답안 속 문장

“국가는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기관의 행위에 책임을 지므로, 법원이 면제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그 자체가 국가의 협약 위반이다.”

안보리와 총회의 권한 배분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헌장 제24조)과 구속력 있는 결정권(제25조, 제7장)을 가지며, 실질사항 결정에는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국 찬성이 필요하다(제27조 제3항). 총회는 토의와 권고의 권한(제10~14조)을 갖고, 안보리가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의 권고는 제한된다(제12조 제1항).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1950)와 일정경비 사건(1962)은 안보리의 책임이 일차적이지만 배타적이지 않다는 실행과 해석을 보여준다.

대립 구도

안보리(강대국 합의·구속력) ↔ 총회(다수의 정당성·권고)

쓰이는 기출 2019 학제Ⅱ 제3문, 2026 제1문

답안 속 문장

“안보리는 강대국 합의가 있을 때만 작동하는 협조체제의 성격을, 총회는 다수의 규범을 대변하는 의회적 성격을 띤다.”

기대보수와 혼합전략

상대가 확률 q 로 어떤 전략을 쓸 때 각 전략의 기대보수를 비교하면 자신의 최적 선택이 바뀌는 임계 확률이 나온다. 강우월전략이 있으면 확률과 무관하게 그 전략을 택한다. 불확실성(상대의 유형이나 자신의 지위)이 있으면 유형별 보수를 확률로 가중하여 임계값을 다시 구한다.

대립 구도

확실한 지위(단일 표) ↔ 불확실한 지위(가중 평균한 기대보수)

쓰이는 기출 2019 학제Ⅱ 제1문 2)·제2문 1), 2022 학제Ⅰ 제2문(혼합전략 균형)

답안 속 문장

“UN은 A국이 반군을 군사지원할 확률이 3분의 1보다 낮을 때만 경제지원을 한다. 지원의 효과가 상대의 행동에 대한 기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최적통화지역(OCA)

공동통화의 효율성 이익(거래비용·환위험 제거, 교역 증가)과 안정화 손실(독자적 통화정책·환율 조정 수단의 상실)을 비교한다. 역내 교역 비중이 크고, 경기가 동조화되어 있으며, 노동 이동성이 높고(먼델), 재정 이전 체계가 있으면(케넌) 이익이 손실을 넘는다. 교역 확대가 경기 동조화를 높이므로 조건이 사후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다.

대립 구도

효율성 이익(미시) ↔ 안정화 손실(거시·비대칭 충격)

쓰이는 기출 2018 학제 I 제2문·제4문

답안 속 문장

“네 지표 모두에서 A지역은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잘 충족하고 B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마스트리히트 수렴 조건은 명목 수렴만 요구했다는 한계가 있다.”

법체제의 충돌: 헌장 제103조와 카디 판결

UN의 관점에서는 헌장 제25조와 제103조에 따라 안보리 결의상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에 우선한다. EU의 관점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카디 판결(2008)에서 EU 법질서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근거로, 결의를 이행하는 EU 규칙을 심사하여 무효로 판단했다(이원론적 접근). 이 충돌은 안보리 제재 절차의 개혁(연락창구, 옴부즈퍼슨)으로 이어졌다.

대립 구도

헌장 체제의 통일성 ↔ 지역 법질서의 기본권 보장

쓰이는 기출 2018 학제 I 제3문, 2022 학제 II 제3문 2)

답안 속 문장

“법원은 안보리 결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EU 규칙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청문권과 실효적 사법심사권을 침해한 규칙을 무효로 판단하였다.”

신기능주의와 파급효과

하스(E. Haas)의 신기능주의는 한 분야의 통합이 연관 분야의 통합 필요를 낳는 기능적 파급, 행위자의 기대와 충성이 새 제도로 옮겨 가는 정치적 파급을 통해 통합이 심화된다고 본다. 안보처럼 주권의 핵심에 가까운 분야에서는 파급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대립 구도

신기능주의(파급) ↔ 정부간주의(국가의 통제)

쓰이는 기출 2018 학제 I 제1·4문, 2026 제1문 2)

답안 속 문장

“공동통화는 재정 협력과 금융 감독의 통합을 요구하고, 공동시장과 통화의 운영은 공통의 법 해석을 요구한다.”

4-2 기출 풀이

2021 학제통합논술 I

국제기구의 역할: 관세·협력·특권면제

총 100점 · 제1문 20점, 제2문 25점, 제3문 25점, 제4문 30점 · 경제(소국 관세) + 게임이론(조화게임·죄수의 딜레마) + 국제법(UN 특권면제)

〈제시문 1〉

국제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협력을 통해 모든 국가 또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국가 간의 협력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쟁 상황에서 국제기구는 분쟁 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권국가로서 각 국가는 자신의 분쟁을 국제기구에 자유롭게 상정할 수 있고, 국제기구가 관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국제기구는 강제력을 동원할 독자적 수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분쟁과 갈등의 대가를 피하고자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제시문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출범은 순탄치 못했지만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라는 GATT의 당초 목표는 1970년대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1947년 1차 제네바라운드에서 1960~61년 5차 딜론라운드에 이르기까지 협상 주제는 관세인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40%까지 높아진 관세율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낮출 수 있었으며, 1973~79년 7차 도쿄라운드에 이르러서는 선진국의 평균관세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관세감축 방식 역시 초기의 품목별 인하 방식에서 일괄인하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나아가 7차 도쿄라운드에서는 높은 관세 부문에 더 큰 관세인하율을 적용하는 비선형인하 방식이 적용되었다.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목표는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계승·발전되었다.

〈제시문 3〉

(1) WTO의 핵심원칙 중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은 회원국들이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무역자유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관세인하나 시장개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 부분에서 양보를 얻어내면 그 대가로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제공하는 주고받기식의 협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합의된 무역자유화의 약

속을 파기하거나 회피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조치를 감내해야 한다. 국제관계 전반에서 상호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정 부상태의 국제체제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2) 무역자유화 협상의 성격은 다음의 게임모형과 같이 <A 상황> 과 <B 상황> 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갑, 을, 병, 정 의 4개국이 존재하고, 각국은 시장개방이나 보호주의의 두 가지 무역정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괄호 안의 수치는 각국이 특정 무역정책을 선택한 결과로 얻게 되는 만족(혹은 이득) 수준을 나타낸다.

<A 상황>

구분		을국	
		시장개방	보호주의
갑국	시장개방	(4, 4)	(3, 2)
	보호주의	(2, 3)	(1, 1)

<B 상황>

구분		정국	
		시장개방	보호주의
병국	시장개방	(3, 3)	(1, 4)
	보호주의	(4, 1)	(2, 2)

〈제시문 4〉

(1) UN은 비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특권·면제를 향유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련 국가들과 별도의 개별협정을 체결해 왔다. 예를 들어, 1978년 6월 6일 한국 정부와 UN은 한국 내에서의 UN의 특권·면제를 위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동년 7월 6일 새로운 교환서한(exchange of letters)이 발표되었다. 이 교환서한에서 한국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UN과 그 기관, UN의 재산·자금·자산, UN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 한국은 UN 가입 후 1992년 4월 9일자로 1978년 교환서한을 종료시키고, 동시에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2) A국의 법률가 甲은 1994년 UN 인권위원회로부터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甲은 1995년 B국에서 발간되고 A국에서도 판매되는 International Commercial Litigation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A국 법원에서의 몇몇 소송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는데, 이때 언급된 2개의 A국 회사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총 1억 1,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다. 소송이 제기되자 UN은 사건을 조사한 후, 甲의 논평이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소송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고 결론 내렸다. UN 사무총장은 이러한 입장을 A국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A국 정부는 사법부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1998년 8월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권고적 의견을 묻기로 결의하였다.

〈문제〉

제1문.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고하여 관세에 관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수입국의 자국시장과 수입시장에서 생산량과 소비량, 시장가격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단, 수입국은 소국으로 가정한다) (20점)

제2문.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참고하여 갑, 을, 병, 정국이 무역자유화 협상을 할 때 〈A 상황〉과 〈B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임의 특징을 비교·설명하고, 〈B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임을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25점)

제3문. 〈제시문 1〉과 〈제시문 4〉를 참고하여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논평이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A국에서 소송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논하시오. (25점)

제4문.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를 참고하여 국제기구와 국가의 관계에서 ① ‘경제적 후생의 개선’, ②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가 간 상호협력’, ③ ‘비회원국 내에서의 UN의 특권·면제 향유’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각각 설명하시오. (3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제시문 1〉의 ‘강제력 없는 국제기구’라는 주제를 경제(관세 인하의 후생), 국제정치(협력 게임), 국제법(특권·면제) 세 영역에 적용하게 하고, 제4문에서 세 역할을 종합하게 했다. 제3문은 ICJ 1999년 권고적 의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연결 개념 소국 부분균형 분석, 조화게임과 죄수의 딜레마, 상호주의,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 논쟁, 헌장 제105조, 협약 제6조 제22절·제8조 제30절.

합정 ① 소국 문제에서 교역조건 효과를 쓰는 답안. ② A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로 오인하는 답안(협력이 우월전략인 조화게임). ③ 특별보고관을 ‘UN 직원’으로 분류하는 답안(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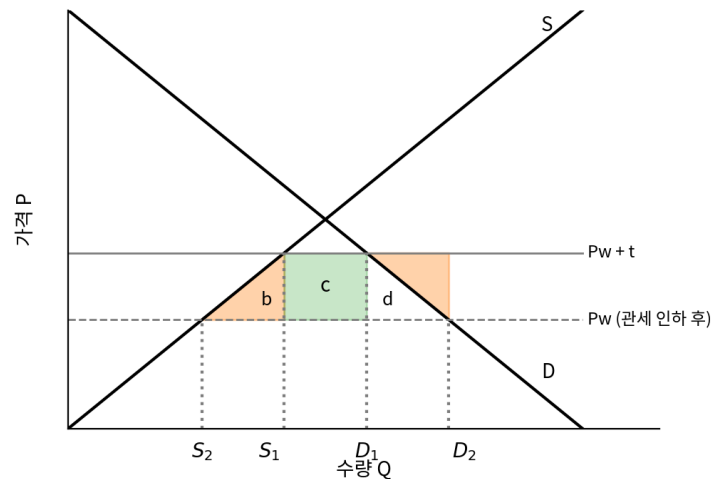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관세 인하가 가격·생산·소비·수입에 미치는 영향	소국 그래프, 면적 a, b, c, d , 순후생 $b + d$	900~1,200자
2	A·B 상황 비교, B 상황의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 논쟁	A: 조화게임 (4,4), B: 죄수의 딜레마 (2,2), 그리코·코헤인·엑셀로드	1,100~1,500자
3	특별보고관 논평의 소송면제	헌장 제105조, 협약 제6조 제22절·제8조 제30절, ICJ 1989·1999 의견	1,100~1,500자
4	① 후생 ② 상호협력 ③ 특권면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제1~3문 종합, 최혜국대우·양허, 분쟁해결, 국제법인격	1,400~1,800자

예시답안 — 2021 학제통합논술 I 제1문

GATT와 WTO는 회원국들이 다자협상으로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그 인하를 양허로 묶어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장을 제공한다. <제시문 2>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40%에 이르던 관세율이 도쿄라운드에서 이르러 선진국 평균 5% 이하로 낮아졌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소국인 수입국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균형 그래프로 분석한다.

소국은 세계시장 가격 P_w 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관세 t 가 있을 때 국내가격은 $P_w + t$ 이고, 국제기구를 통한 협상으로 관세가 철폐(또는 인하)되면 국내가격은 관세 인하분만큼 내려간다.



- 1. 시장가격.** 국내가격이 $P_w + t$ 에서 P_w 로 하락한다. 소국이므로 세계가격은 변하지 않고 관세 인하의 효과가 모두 국내가격에 전가된다.
- 2. 생산량.** 국내 생산자는 낮아진 가격에서 공급량을 S_1 에서 S_2 로 줄인다.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이 축소된다.
- 3. 소비량.**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서 수요량을 D_1 에서 D_2 로 늘린다.
- 4. 수입량.** 수입량은 $D_1 - S_1$ 에서 $D_2 - S_2$ 로 늘어난다.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가 함께 수입을 키운다.
- 5. 후생.** 그림에서 두 가격선 사이의 면적을 보자. 소비자 잉여는 두 가격선과 수요곡선 사이 전체 면적 ($a + b + c + d$)만큼 증가한다. 여기서 a 는 공급곡선 왼쪽의 사다리꼴로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이고, c 는 관

세 철폐로 사라진 관세수입(가운데 직사각형)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순후생은 $b + d$ 만큼 증가한다. b 는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이 줄어든 데 따른 생산 왜곡의 해소, d 는 소비 왜곡의 해소이다. 관세가 있을 때 자 중손실이던 두 삼각형이 회복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역할은 이 순후생 증가를 실현하게 만드는 데 있다. 관세 인하는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지만 수입경쟁 산업의 생산자는 손실 a 를 집중적으로 입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 반대가 강하다. <제시문 1>처럼 국제기구는 강제력이 없지만 상호 양허를 묶어 각국 정부가 국내 보호주의 압력에 맞설 명분을 주고, 관세 인하를 약속으로 고정해 후퇴를 막는다. 또 품목별 인하에서 일괄 인하, 고관세 부문에 더 큰 인하율을 적용하는 비선형 인하로 방식을 바꾸어 협상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관세 구조의 왜곡을 줄였다. 다만 소득 재분배 효과 때문에 패자에 대한 보상과 조정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개방이 정치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소국은 세계가격 수용자: 관세 인하분만큼 국내가격이 내려간다. 순후생 증가 = $b + d$

예시답안 — 2021 학제통합논술 I 제2문

1. 두 상황의 게임 분석

<A 상황>에서 갑국은 을국이 개방하면 개방($4 > 2$), 을국이 보호하면 개방($3 > 1$)을 택한다. 시장개방이 강우월전략이며, 을국도 대칭적으로 개방이 강우월전략이다($4 > 2, 3 > 1$). 유일한 내쉬균형은 (시장개방, 시장개방)이고 보수는 (4, 4)이다. 이 결과는 파레토 최적이기도 하다.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일치하는 조화게임이며, 협력을 강제할 장치 없이도 자유무역이 실현된다.

<B 상황>에서 병국은 정국이 개방하면 보호($4 > 3$), 정국이 보호해도 보호($2 > 1$)를 택한다. 보호주의가 강우월전략이고 정국도 같다. 유일한 내쉬균형은 (보호주의, 보호주의)로 보수는 (2, 2)이다. 그러나 둘 다 개방하면 (3, 3)으로 모두 더 나아지므로 균형은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이다. 상대가 개방할 때 보호하면 4를 얻는 배신의 유혹과, 혼자 개방하면 1에 그치는 착취의 두려움이 동시에 작동한다.

두 상황의 차이는 협력의 필요성에 있다. A에서는 이익이 조화되어 국제기구가 할 일이 거의 없지만, B에서는 공동의 이익이 있는데도 개별적 합리성이 이를 가로막으므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실의 무역자유화 협상은 대부분 B에 가깝다. 국내 산업 보호와 교역조건 개선의 유혹 때문이다.

2. B 상황에 대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논쟁

신자유주의(코헤인, 액셀로드)는 B 상황의 비협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무역협상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 무한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미래의 이익을 충분히 중시하면 상대의 협력에 협력으로, 배신에 보복으로 대응하는 상호주의 전략(티포택)으로 (3, 3)을 유지할 수 있다. <제시문 3> (1)의 상호주의 원칙, 즉 주고받기식 양보와 약속 위반 시 보상 또는 보복의 감수는 바로 이 전략을 제도화한 것이다. 둘째, 국제제도는 정보를 제공해 배신을 감시하고, 분쟁해결절차로 보복을 질서 있게 조직하며, 거래비용을 낮춘다. 셋째, 국가는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므로 둘 다 3을 얻는 협력에 만족한다.

신현실주의(그리코, 윌츠)는 이 낙관론에 두 가지로 반박한다. 첫째, 무정부상태에서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상대적 이익에 민감하다. 협력의 이득이 상대에게 더 많이 돌아가 상대의 국력이 커진다면, 절대적 이익이 생기더라도 협력을 거부할 수 있다. 둘째, 배신의 두려움이다. 중앙 권위가 없으므로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1을 얻는 위협을 감수해야 하며, 반복게임이라도 상대가 마지막에 배신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신현실주의는 제도가 국가의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협력은 강대국의 이익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지속된다고 본다.

정리하면 두 이론은 B 상황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반복과 제도와 상호주의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현실주의는 상대적 이익과 기만의 우려 때문에 협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 GATT와 WTO의 관세 인하 성과는 신자유주의의 설명력을, 최근 강대국 간 무역분쟁은 신현실주의의 경고를 뒷받침한다.

A 상황: 조화게임, 균형 (개방, 개방)=(4,4) / B 상황: 죄수의 딜레마, 균형 (보호, 보호)=(2,2)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21 학제통합논술 I 제3문

결론부터 말하면 甲의 논평은 협약에 따라 A국에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그 근거를 국제기구의 기능적 필요, 협약의 해석,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 순으로 검토한다.

1. 국제기구의 특권·면제의 근거

〈제시문 1〉처럼 국제기구는 독자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회원국의 간섭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UN 헌장 제105조는 기구와 그 직원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고 규정하고,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이를 구체화하였다. 특권·면제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기구의 기능 보장을 위한 것이다(기능적 필요설). 〈제시문 4〉(1)처럼 협약 비당사국에서는 별도 협정으로 같은 보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A국은 협약의 적용을 전제로 UN과 협의하고 있으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2. 甲은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인가

협약 제6조 제22절은 UN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experts on missions)에게 임무 수행 중 말하거나 쓴 내용과 그 행위에 대해 모든 종류의 소송으로부터 면제를 부여하고, 이 면제는 임무가 끝난 후에도 지속된다고 규정한다. UN 인권위원회가 임명한 특별보고관은 UN 직원은 아니지만 UN을 위해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 전문가에 해당한다. 국제사법재판소도 1989년 권고적 의견에서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논평이 ‘임무 수행 중’의 행위인가

쟁점은 잡지 인터뷰에서의 논평이 임무의 범위 안에 있는가이다. 甲의 임무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조사와 보고이며, 특정 국가 법원의 소송에 대한 평가는 그 주제와 직결된다. 또 특별보고관이 언론을 통해 활동을 알리는 것은 실행상 인정되어 온 임무 수행 방식이다.

누가 이를 판단하는가도 중요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99년 권고적 의견(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소송면제에 관한 분쟁)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사무총장이 어떤 행위가 임무 수행 중의 것인지 판단할 일차적 권한을 가지며, 사무총장의 판단은 국내 법원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추정을 낳아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만 뒤집힐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면제 문제는 소송의 첫 단계에서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사무총장의 판단을 자국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4. A국 정부의 항변과 국가책임

A국 정부는 사법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제법상 국가는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기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법원이 면제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그 자체가 A국의 협약 위반이며, 국내법을 이유로 조약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협약 제8조 제30절에 따라 UN과 회원국 사이의 분쟁에서 요청된 권고적 의견은 당사자가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사안의 권고적 의견은 통상의 권고적 의견과 달리 A국을 구속한다.

5. 결론

甲은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이고, 논평은 임무와 관련된 발언이며, 사무총장의 판단을 뒤집을 강력한 이유가 없으므로 甲은 A국에서 소송면제를 받는다. 다만 면제는 기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사무총장은 면제가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기구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이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甲에게 소송비용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며, 손해가 발생하면 UN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다.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6조 제22절(임무 수행 중 전문가), 제8조 제30절(권고적 의견의 결정적 효력). ICJ 권고적 의견(1999)

예시답안 — 2021 학제통합논술 I 제4문

〈제시문 1〉은 국제기구가 강제력이 없고 국가가 관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국가들이 분쟁의 대가를 피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한다고 말한다. 국제기구는 국가 위에 서는 권위가 아니라, 국가들이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얻도록 돕는 수단이다. 세 영역에서 그 역할을 살펴본다.

① 경제적 후생의 개선

제1문에서 보았듯 소국이 관세를 철폐하면 소비자 잉여의 증가가 생산자 잉여의 감소와 관세수입의 상실을 넘어서 순후생이 늘어난다. 그런데도 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대국은 관세로 교역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 서로 관세를 매기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다. 둘째, 손실이 수입경쟁 산업에 집중되어 국내 정치적 반대가 크다. GATT/WTO는 다자 라운드에서 관세를 상호 인하하게 하고, 최혜국대우 원칙으로 양자 간 인하를 모든 회원국에 확산시키며, 양허로 인하를 고정한다. 〈제시문 2〉의 관세율 하락은 이 역할의 성과이며, 국제기구는 상호 양보를 묶어 각국 정부가 국내 반대를 넘어설 수 있게 함으로써 후생을 개선한다.

②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가 간 상호협력

제2문의 〈B 상황〉은 보호주의가 우월전략인 죄수의 딜레마이다. 국제기구는 이 게임의 구조를 바꾼다. 첫째, 협상을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으로 만들어 미래의 이익이 현재의 배신 유혹을 누르게 한다. 둘째, 무역정책 검토와 통보 의무로 정보를 제공해 배신을 감시한다. 셋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위반을 판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된 보복조치를 허용함으로써 〈제시문 3〉 (1)의 상호주의를 질서 있게 집행한다. 이로써 국가들은 (보호, 보호)의 균형에서 (개방, 개방)의 협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

③ 비회원국 내에서의 UN의 특권·면제 향유

국제기구가 임무를 수행하려면 그 활동이 개별 국가의 사법·행정 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헌장 제105조와 1946년 협약은 회원국 안에서 이를 보장하고, 비회원국 안에서는 〈제시문 4〉 (1)처럼 개별 협정이 그 역할을 한다. 한국이 UN 가입 전 1978년 교환서한으로 협약 적용을 약속한 것이 그 예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는 단순한 국가의 집합이 아니라 독자적 국제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국가와 조약을 체결한다. 또한 〈제시문 4〉 (2)처럼 특권·면제가 다투어지면 사무총장이 기구의 입장을 판단하여 전달하고, 경제사회이사회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등 기구의 기관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기능을 방어한다.

종합

세 역할은 공통적으로 국제기구가 국가의 주권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국가 간 협력의 조건을 만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 영역에서는 후생을 늘리는 약속을 고정하고, 정치 영역에서는 협력의 딜레마를 완화하며, 법적 영역에서는 기구 자신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국제기구의 실효성은 강제력이 아니라 국가들이 협력의 이익을 인식하고 제도를 이용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

①은 제1문의 후생 분석, ②는 제2문의 죄수의 딜레마, ③은 제3문의 특권·면제를 국제기구의 역할로 묶어 쓴다

2019 학제통합논술 II

UN 제재, 회원국 지위와 총회·안보리

총 100점 · 제1문 30점, 제2문 35점, 제3문 35점 · 국제정치(제재·인간안보) + 게임이론(기대보수) + 국제법(헌장 제2·4·12·24조)

〈제시문 1〉

- (1) 경제제재란 대상 국가 혹은 단체의 관련 정책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관계의 제한 혹은 단절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제재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규제 중심의 포괄적 제재와 선별적 타격 중심의 스마트 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UN(국제연합)은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소말리아, 아이티, 탈레반 등 국가 혹은 단체에 스마트 제재를 채택하였다.
- (2) UN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간안보 개념은 국가 중심의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굶주림, 질병, 억압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시문 2〉

UN은 A국 회원국 인정 여부와 M국의 반군에 대한 경제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A국은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M국의 반군에 대한 군사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UN은 A국의 회원국 인정 여부를 알지만, A국은 UN의 A국에 대한 회원국 인정 여부를 모르는 상황이다.

UN이 A국을 회원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은 b 이고, UN이 반군에게 경제지원을 할 확률은 p 이며, A국이 반군에게 군사지원을 할 확률은 q 이다. UN은 확률 b 와 p 를 알고 있고, A국은 확률 q 를 알고 있다. 〈표 1〉의 경우 UN의 강우월전략은 반군에게 경제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표 2〉의 경우 A국의 반군 지원이 예상되면 UN은 경제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반대로 A국의 반군 지원 포기가 예상되면 UN이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UN의 전략은 A국이 반군 지원을 할 확률에 달려 있다. 반면, A국의 반군 지원 여부는 UN의 경제지원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UN이 경제지원을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면 A국은 반군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고, UN이 경제지원을 할 확률이 높다면 A국은 반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표 1〉 UN이 A국을 회원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A국	
		반군 군사지원	반군 군사지원 포기
UN	경제지원	1, -1	4, 0
	경제지원 포기	5, 2	5, 0

〈표 2〉 UN이 A국을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경우

		A국	
		반군 군사지원	반군 군사지원 포기
UN	경제지원	1, -2	7, 0
	경제지원 포기	3, 2	6, 0

〈제시문 3〉

제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시문 4〉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Expressing grave concern at the disproportionate use of force by the Syrian authorities against civilians,

1. Demands that the Syrian regime adhere fully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2. Reaffirms the Syrian authorities' responsibility for enforced disappearances, which amounts to a crime against humanity;
3. Demands that the Syrian authorities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tect the Syrian population;
4. Urges all parties to the conflict to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United Nations;
5. Confirms that the Security Council will take further measures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with its resolutions.

〈제시문 5〉

The Security Council,

Reaffirming its strong commitment to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Syria, and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alling on all parties to immediately end all violence which has led to human suffering in Syria,

Strongly condemning the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the Syrian authorities, as well as the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armed groups,

Determining that the situation in Syria continues to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 Decides that all parties immediately take all necessary means to put an end to all forms of violence;
2. Decides all member states to take all necessary means to use their influence with the government of Syria and the

Syrian opposition to advance the peace process.

〈제시문 6〉

UN 총회는 미국이 반대하는 결의안을 자주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부시, 클린턴, 오바마 정부는 주요 군사적 개입의 법적, 정치적, 도덕적 지지를 얻기 위해 UN을 활용했다. 미국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등에 대한 전쟁, 군사행동, 경제제재에서 UN의 절차를 이용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큰 부채에 시달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어서 시리아 국민에 대한 아사드 정권의 폭력에 성공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문제〉

제1문.

1) 〈제시문 1〉을 참고하여 UN의 포괄적 제재와 스마트 제재를 경제제재의 의도와 효과의 관점에서 비교·설명하고,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포괄적 제재의 한계를 논하시오. (15점)

2) 〈제시문 2〉의 〈표 1〉과 〈표 2〉에서 UN이 M국의 반군에 경제지원을 하게 될 조건을 UN의 기대보수를 이용하여 각각 구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1) (1) 〈제시문 2〉의 〈표 2〉에서 A국이 반군에게 군사지원을 하게 될 조건을 A국의 기대보수를 이용하여 구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2) 〈제시문 2〉에서 A국이 UN의 회원국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A국이 반군에게 군사지원을 하게 될 조건을 A국의 기대보수를 이용하여 구하고, $b = \frac{1}{3}$ 인 경우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2)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참고하여 A국이 UN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현장상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고, A국이 일방적으로 지원군을 파견하여 반군을 지원하는 경우 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시오. (15점)

제3문.

1) 〈제시문 4〉, 〈제시문 5〉, 〈제시문 6〉을 참고하여 의사결정 방식, 결의 내용 및 성사 가능성, 결의 효과 등에서 나타나는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차이를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설명하시오. (20점)

2) 〈제시문 4〉, 〈제시문 5〉와 같은 문제 또는 상황을 다룰 일차적 책임이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중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제시한 후, 다른 한 기

관이 이를 다룰 수 있는지를 국제법적 차원에서 설명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포괄적 제재의 등장 배경(인간안보), UN의 경제지원과 A국의 군사지원이 상호의존하는 동시게임, 회원국 가입 요건과 무력행사 금지,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총회와 안보리의 차이를 연결한다.

연결 개념 포괄적 제재 대 스마트 제재, 기대보수와 임계 확률, 헌장 제4조(가입), 제2조 제3·4항, 니카라과 사건, 헌장 제18·24·25·27조,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합정 ① 표 1에서도 확률 조건을 구하려는 답안(지원 포기가 강우월전략이므로 조건 없음). ② 제2문 1)(2)에서 표 1과 표 2의 보수를 확률 b 로 가중하지 않는 답안. ③ 총회가 시리아 문제를 전혀 다룰 수 없다고 쓰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 포괄적 제재와 스마트 제재, 인간안보 2) UN의 경제지원 조건	표 1: $-1 - 3q < 0$, 표 2: $q < 1/3$	1,400~1,800자
2	1) A국의 군사지원 조건(확실/불확실) 2) 가입 요건과 일방적 파병	$p < 1/2, p < 2/(4-b), b = 1/3 \rightarrow 6/11$, 헌장 제4조, 니카라과	1,600~2,100자
3	1) 총회와 안보리의 차이 2) 일차적 책임과 다른 기관의 관여	제18·24·25·27조, 제10~14조, 제12조 제1항, 일정경비 사건, 2004년 권고적 의견	1,600~2,100자

예시답안 — 2019 학제통합논술 II 제1문

1) 포괄적 제재와 스마트 제재의 비교, 인간안보 관점의 한계

포괄적 제재는 대상국과의 교역과 금융 관계 전반을 차단하여 경제 전체에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이 국민의 불만을 거쳐 지도부에 정책 변경 압력으로 전달되기를 의도한다. 즉 사회 전체를 통한 간접 압박이다. 스마트 제재는 정책 결정에 책임 있는 지도자와 엘리트, 특정 단체를 겨냥하여 자산동결, 여행금지, 무기금수, 특정 품목 수출입 금지 등을 부과한다. 정책 결정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우면서 일반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효과 면에서 포괄적 제재는 경제적 타격은 크지만 정치적 효과는 불확실하다. 권위주의 정권은 희소해진 자원을 측근에게 배분하여 오히려 통제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제재를 명분으로 국민을 결집시키며, 밀수와 암시장으로 지도부는 피해를 피한다. 스마트 제재는 표적이 분명하여 인도적 비용이 작고 국제적 지지를 얻기 쉽지만, 자산을 제3국으로 옮기거나 대리인을 이용하는 회피가 쉽고, 대상자 선정의 정보가 부족하며 절차적 권리 침해 논란이 생긴다. <제시문 1> (1)에서 UN이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탈레반 등에 스마트 제재를 채택한 것은 포괄적 제재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안보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굶주림, 질병,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제시문 1> (2)). 이 관점에서 포괄적 제재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첫째, 제재의 고통이 정책에 책임이 없는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식량·의약품 부족, 보건체계 붕괴, 아동 사망률 상승이 대표적이다. 둘째, 국민을 정책 변화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개인을 목적으로 보는 인간안보의 원칙과 모순된다. 셋째, 억압 정권을 강화하여 제재가 막으려던 인권 침해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 인도적 예외 조항을 두더라도

행정 절차와 금융 차단 때문에 실제 공급은 제한된다. 따라서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제재는 표적화되고, 인도적 영향 평가와 예외 절차를 갖추어야 정당성을 얻는다.

2) UN이 반군에 경제지원을 하게 될 조건

A국이 반군에 군사지원을 할 확률을 q 라 하자.

〈표 1〉 (A국 비회원국): 경제지원의 기대보수는 $q \cdot 1 + (1 - q) \cdot 4 = 4 - 3q$, 경제지원 포기의 기대보수는 $5q + 5(1 - q) = 5$ 이다. 차이는 $-1 - 3q < 0$ 이므로 어떤 q 에서도 지원하지 않는다. 경제지원 포기가 강우월전략이라는 제시문의 서술과 일치한다.

〈표 2〉 (A국 회원국): 경제지원의 기대보수는 $q + 7(1 - q) = 7 - 6q$, 포기의 기대보수는 $3q + 6(1 - q) = 6 - 3q$ 이다. 지원 조건은 $7 - 6q > 6 - 3q$, 즉 $q < \frac{1}{3}$ 이다($q = \frac{1}{3}$ 이면 무차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A국이 회원국이 아니면 UN은 A국의 행동을 규율할 수단이 없고, 반군 지원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경제지원을 하지 않는다. A국이 회원국이면 UN은 A국이 반군을 군사지원할 가능성이 3분의 1보다 낮을 때만 경제지원을 한다. 군사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지원은 효과가 없거나 분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UN의 지원 결정은 상대 국가의 행동에 대한 기대에 좌우되며, 회원국 지위는 UN이 그 국가의 행동을 신뢰하고 협력적 정책을 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2) 표 1: 지원-포기 = $-1 - 3q < 0 \rightarrow$ 지원하지 않음 / 표 2: 지원-포기 = $1 - 3q \rightarrow q < 1/3$ 이면 지원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19 학제통합논술 II 제2문

1) (1) 〈표 2〉에서 A국이 군사지원을 할 조건

UN이 경제지원을 할 확률을 p 라 하자. A국의 군사지원 기대보수는 $p(-2) + (1 - p)2 = 2 - 4p$ 이고, 군사지원 포기의 기대보수는 0이다. 따라서 $2 - 4p > 0$, 즉 $p < \frac{1}{2}$ 일 때 A국은 반군에 군사지원을 한다($p = \frac{1}{2}$ 이면 무차별). UN이 경제지원을 할 가능성이 절반보다 낮으면 반군을 군사적으로 밀어 이길 기대가 커지고, UN이 경제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면 회원국으로서 UN과 충돌하는 비용(-2)이 커지므로 지원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UN의 경제지원 의지는 A국의 군사 개입을 억지하는 신호가 된다.

1) (2) 회원국 인정 여부를 모를 때의 조건과 $b = \frac{1}{3}$ 의 의미

A국은 확률 b 로 비회원국(〈표 1〉), $1 - b$ 로 회원국(〈표 2〉)이다. 제시문처럼 UN의 경제지원 확률을 p 로 두면, 군사지원의 기대보수는

$$b[p(-1) + (1 - p)2] + (1 - b)[p(-2) + (1 - p)2] = 2 - 4p + bp$$

이고 포기의 기대보수는 0이다. 따라서 군사지원 조건은 $p < \frac{2}{4-b}$ 이다. $b = \frac{1}{3}$ 이면 $p < \frac{6}{11} \approx 0.545$ 이다.

이는 회원국 지위가 확실한 (1)의 기준 $\frac{1}{2}$ 보다 높다. 비회원국일 가능성이 있으면 UN과 충돌할 때의 손실이 -2에서 -1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A국은 UN의 경제지원 가능성이 더 높아도 군사지원을 감행한다. 회원국 지위의 불확실성이 A국을 덜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UN 회원국 지위는 그 국가의 대외 행동을 규율하는 기능을 하며, 지위가 불확실할수록 그 규율 효과가 약해진다. (만약 〈표 1〉 상황에서 UN이 우월전략대로 반드시 지원하지 않는다고 보면 기대보수는 $2b + (1 - b)(2 - 4p)$ 이고 조건은 $p < \frac{3}{4}$ 가 되어, 결론의 방향은 같고 효과는 더 커진다.)

2) UN 회원국의 요건과 A국의 일방적 반군 지원

헌장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 지위는 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기구가 판단하기에 그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평화애호국에 개방된다. 요건은 국가일 것, 평화애호국일 것, 헌장 의무를 수락할 것, 의무 이행의 능력과 의사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48년 권고적 의견에서 이 요건이 열거적이어서 다른 조건을 추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가입은 안보리의 권고에 기초한

총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1950년 권고적 의견은 안보리의 권고 없이 총회가 단독으로 가입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안보리 권고는 실질사항이므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A국이 일방적으로 지원군을 파견해 M국 반군을 지원하는 경우를 평가하면, 첫째 이는 〈제시문 3〉의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사건(1986)에서 반군에 대한 무장과 훈련 제공이 무력행사와 불간섭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직접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더욱 명백하다. 둘째, 제2조 제3항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에 반한다. 셋째, 이러한 행동은 A국이 평화애호국이 아니며 헌장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A국의 행동은 가입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보리와 총회가 가입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 1)의 분석과 연결하면, A국이 회원국 지위를 원한다면 반군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UN은 가입 심사를 통해 A국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다.

1)(2) 제시문의 '경제지원 확률 p'를 두 표에 공통으로 적용하면 $p < 2/(4-b)$, $b=1/3$ 이면 $p < 6/11$. 표 1에서 UN이 우월전략(지원 포기)을 쓴다고 보면 $p < 1/(2(1-b)) = 3/4$ (확인 필요 항목)

예시답안 — 2019 학제통합논술 II 제3문

1)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차이

기준	총회 (〈제시문 4〉)	안전보장이사회 (〈제시문 5〉)
의사결정	1국 1표, 중요문제는 출석·투표 3분의 2(제18조)	15개국 중 9개국 찬성, 실질사항은 상임이사국 동의 필요(제27조 제3항)
결의 내용	인권 침해 규탄, 반인도범죄 확인 등 선명한 규범적 표현	주권·영토보전 재확인과 양측 모두 비난, 구체적 강제조치 없는 절충
성사 가능성	다수 국가의 지지로 쉽게 통과, 강대국 반대에도 가결	거부권 때문에 강대국 이해가 걸리면 어려움
효과	권고로서 구속력 없음, 정치적 정당성 부여	제7장 결정은 구속력(제25조), 다만 내용이 약하면 실효성 한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이 차이는 권력과 정당성의 분리이다. 총회는 국가 수의 다수를 대표하므로 국제사회의 규범적 여론과 정당성을 표출하는 장이며, 〈제시문 6〉처럼 미국이 반대하는 결의도 자주 통과된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강대국의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 안보리는 강대국의 권력 배분을 반영하므로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만, 상임이사국 사이의 이해가 엇갈리면 마비된다. 시리아 사태에서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에 무기와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후원국이었으므로, 안보리 결의는 제7장을 원용하면서도 모든 당사자에게 폭력 중단을 요구하고 회원국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미국도 안보리 승인이 없어 개입하지 못했다. 반대로 미국은 강대국의 합의가 가능한 사안에서는 UN 절차를 활용해 군사행동과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즉 안보리는 강대국 합의가 있을 때만 작동하는 협조체제의 성격을, 총회는 다수의 규범을 대변하는 의회적 성격을 띤다.

2) 일차적 책임의 소재와 다른 기관의 관여 가능성

시리아처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사태를 다룰 일차적 책임은 안보리에 있다. 헌장 제24조 제1항은 회원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이하 제7장의 강제조치 결정권도 안보리에만 있다.

총회도 이를 다룰 수 있다. 제10조는 헌장 범위 안의 모든 문제를 토의하고 권고할 권한을, 제11조 제2항은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권고할 권한을, 제14조는 일반적 복지나 우호관계를 해칠 상황의

평화적 조정 조치를 권고할 권한을 준다. 인권 침해에 관해서는 제13조에 따라 인권 실현을 위한 연구와 권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제한이 있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안보리가 그 분쟁이나 사태에 관해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안보리의 요청 없이 권고할 수 없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치(action)’가 필요한 문제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

실행은 이 제한을 완화해 왔다.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는 상임이사국의 불일치로 안보리가 일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총회가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일정경비 사건(1962)에서 안보리의 책임은 ‘일차적’일 뿐 ‘배타적’이 아니며, 제11조 제2항의 ‘조치’는 제7장의 강제조치를 뜻한다고 보았다. 또 2004년 권고적 의견에서는 총회와 안보리가 같은 사안을 병행하여 다루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총회는 시리아 사태를 토의하고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권고할 수 있지만, 회원국을 구속하는 강제조치는 결정할 수 없다. 〈제시문 4〉의 총회 결의가 “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권한 배분을 반영한다.

헌장 제18·24·25·27조, 제10~14조, 제12조 제1항.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1950), 일정경비 사건(1962)

2018 학제통합논술 I

유럽통합: 안보·통화·사법

총 100점 · 각 25점 · 국제정치(안보통합과 주권) + 경제(최적통화지역) + 국제법(헌장 제103조와 EU법)

〈제시문 1〉

(1) 유럽통합의 출범에서는 안보적 동기가 작동하였다.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위험 회피적인 안보 분야에서의 통합은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안전보장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잘 추진되지 않는다. 1950년대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의 설립이 제안되었으나 실패하였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유럽군비청(European armaments agency)의 창설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영국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국가들만의 군비 관련 공급독점 체제가 방위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유럽군비청 창설에 반대하였다.

(2) Petersberg Declaration (19 June 1992)

II. On Strengthening WEU's Operational Role

3. Decisions to use military units answerable to Western European Union(WEU) will be taken by the WEU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 Charter. Participation in specific operations will remain a sovereign decision of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stitutions.

4. Apart from contributing to the common defence ..., military units of WEU member States, acting under the authority of WEU, could be employed for:

- humanitarian and rescue tasks;
- peacekeeping tasks;
- tasks of combating forces in crisis management, including peacemaking.

(3) 2004년 6월 브뤼셀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안보방위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SDP) 지원의 일환으로 유럽방위청(European Defence Agency)을 창설하기로 합의되었다. 유럽방위청은 브뤼셀에 두되 EU 고위대표, 회원국 국방장관, 집행위원회 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가중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유럽방위청은 방위비 지출의 효율성 증대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무기구매나 연구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는 유럽방위청이 미국

주도의 NATO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 내 거대 군산 복합체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영국은 유럽방위청이 NATO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EU 회원국에게 EU에서 생산된 무기를 구매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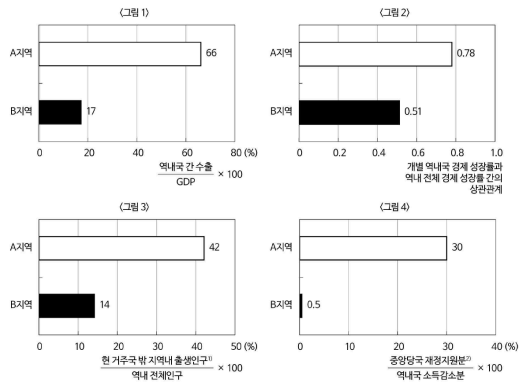
〈제시문 2〉

(1) 19세기의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모든 나라가 고유의 통화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극히 원시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오래전부터 자국만의 통화를 당연히 보유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그 결과 통화동맹(currency union)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제학자들도 이런 현실적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공동통화가 더 편리하고 효율성 이익(efficiency gain)을 가져다주지만, 이에 따른 안정화 손실(stability loss)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개별 국가의 통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공동통화의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 각 나라가 통화동맹의 결성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 즉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이런 원칙에 따라 조직되는 통화동맹을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 OCA)이라고 할 수 있다.

(2) Agreed in Maastricht by the EU Member States in 1991 as part of the preparations for introduction of the euro, the convergence criteria are formally defined as a set of macroeconomic indicators which measure:

- Price stability, to show inflation is controlled;
-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through limits on government borrowing and national debt to avoid excessive deficit;
- Exchange-rate stability,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 for at least two years without strong deviations from the ERM II central rate;
- Long-term interest rates, to assess the durability of the convergence achieved by fulfilling the other criteria.

(3) 다음 〈그림〉은 각각의 공동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A지역과 B지역의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 1) 예를 들어, A지역 내 X국가에서 출생하였으나, 현재 A지역 내 타국에 거주하는 인구
2) 예를 들어, A지역 내 X국가의 소득 감소에 따른 A지역 중앙당국의 재정지출분

〈제시문 3〉

(1) 2001년 EU 이사회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33호를 이행하기 위해 ‘빈 라덴’ 및 ‘제재위원회’가 특정한 대상에 관계된 개인 및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EU 이사회 규칙(EU council regulation)을 제정하였다. EU조약(Treaty of European Union: TEU)에 의해 제정된 EU 이사회 규칙은 TEU의 하위법으로서 회원국 내에서 직접 적용되고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EU 법체제를 구성하는 법원(法源) 중 하나이다. EU 이사회 규칙으로 인해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카디(Yassin Abdullah Kadi)의 인권이 침해되었다. 이후 카디는 해당 규칙이 EU 법체제에 반한다는 결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유럽 1심재판소(CFI)에 제기하였다. CFI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EU 법체제에 대한 우위성을 근거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EU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급법원인 유럽 공동체사법재판소(CJEU)는 EU와 EU 회원국의 국제의무는 공동체 법질서의 일부인 EU법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한다고 할지라도 TEU에 반하는 EU 이사회 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CFI와 CJEU는 카디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2) EU조약(TEU) 제6조 제3항

“유럽인권협약에 의하여 보장되고 회원국들에게 공통되는 헌법전통으로부터 유래하는 기본권들은 EU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Union’s law)을 구성한다.”

(3) UN 헌장

제1조 제3항 “...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

한다.”

제25조 “UN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103조 “이 헌장 하의 UN 회원국의 의무와 다른 어떤 국제협정 하의 그들의 의무 사이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이 헌장 하의 그들의 의무가 우선한다.”

〈문제〉

제1문. 〈제시문 1〉은 EU의 안보통합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가 국가주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지역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25점)

제2문. 〈제시문 2〉를 참고하여 최적통화지역 형성에 따른 효율성 이익을 확대하고 안정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조건과 유럽의 통화동맹 수립으로 인하여 유로존(Eurozone) 회원국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을 설명하시오. (25점)

제3문. 〈제시문 3〉을 참고하여 EU 회원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와 EU 법체제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어떤 의무가 우선 적용되는지 UN 법체제의 관점과 EU 법체제의 관점에서 각각 기술하시오. 그리고 UN 법체제에 따른 의무를 우선 적용하여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EU 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접근방법들을 설명하시오. (25점)

제4문.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을 참고하여 유럽지역통합의 공고화를 위해 공동의 안보정책, 통화동맹, 사법재판제도가 운영됨으로써 EU 회원국 또는 EU 회원국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설명하시오. (2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EU를 사례로 지역통합의 세 축(안보, 통화, 사법)을 각각 한 학문으로 분석하고, 제4문에서 통합의 이득으로 종합하게 했다. <그림> 네 개는 최적통화지역의 네 조건에 정확히 대응한다.

연결 개념 주권의 공동 행사, EDC 실패, 페터스베르크 임무, NATO·AU·ASEAN 비교, 먼델-케넨 기준, 수렴 조건, 헌장 제25·103조, 카디 판결, 옴부즈퍼슨.

함정 ① 그림의 수치를 읽지 않고 이론만 쓰는 답안. ② 카디 판결이 안보리 결의 자체를 무효로 했다고 쓰는 답안(EU 이행 규칙을 무효화). ③ 제4문에서 회원국의 이득과 국민의 이득을 구분하지 않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안보통합의 주권 제한 주장 평가	EDC, 페터스베르크 선언, 유럽방위청(가중다수결), NATO·AU·ASEAN	1,100~1,500자
2	OCA 조건과 유로존의 비용	그림 1~4(66/17, 0.78/0.51, 42/14, 30/0.5), 먼델-케넨	1,100~1,500자
3	UN·EU 관점의 우선 적용과 해결 접근	헌장 제25·103조, 로커비, 카디, 조화적 해석, 옴부즈퍼슨, 인도적 예외	1,100~1,500자
4	세 제도가 주는 이득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제거, 직접효력·우위, 신기능주의	1,100~1,500자

예시답안 — 2018 학제통합논술 I 제1문

안보 분야의 지역통합이 국가주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안보 통합은 주권을 초국가 기구로 이전하기보다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pooling)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핵심 결정권은 여전히 국가에 남아 있다. EU와 다른 지역의 사례로 검토한다.

1. EU의 사례

첫째, 주권 제한의 한계를 보여준 실패가 있다. <제시문 1> (1)의 유럽방위공동체(EDC)는 회원국 군대를 통합한 초국가적 유럽군을 구상했지만, 주권 상실에 대한 반발로 프랑스 의회가 비준을 거부해 무산되었다. 안보가 가장 위험 회피적인 분야라는 제시문의 지적처럼, 국가는 생존과 직결된 영역의 주권 이전을 꺼린다.

둘째, 이후의 통합은 정부 간 협력의 틀을 유지했다. <제시문 1> (2)의 페터스베르크 선언은 서유럽연합 군대를 인도적 구호, 평화유지, 평화조성을 포함한 위기관리에 쓸 수 있게 했지만, “특정 작전 참여는 각국 헌법에 따른 주권적 결정”으로 남겨 두었다. 결정 자체도 UN 헌장에 따라 이사회가 내린다.

셋째, 일부 주권 제한도 나타났다. <제시문 1> (3)의 유럽방위청은 가중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개별 국가가 반대해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은 방위비 지출의 조정에 그치고 독자 예산으로 무기를 구매하지 않는다. 영국은 NATO와의 협력과 무기 구매의 자율을 요구하며 유럽 중심의 군비 독점에 반대했다. 결국 EU의 안보 통합은 효율성을 위한 조정 기능에서 제한적인 다수결을 받아들였을 뿐, 무력 사용의 결정권은 국가에 남겨 두었다.

2. 다른 지역의 사례

NATO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집단방위 공약을 두지만, 각 회원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스스로 결정하며 의사결정은 합의제이다. 통합 군사지휘체계라는 주권 제약을 받아들이는 대신 동맹의 억지력이라는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아프리카연합은 설립규약에서 전쟁범죄, 집

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등 중대한 상황에서 회원국에 개입할 권리를 규정하여, 안보 통합이 전통적 불간섭 원칙을 제한한 사례이다. 반면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내정 불간섭과 합의를 강조하는 ‘ASEAN 방식’을 유지하며, 안보 협력은 신뢰구축과 대화에 머물러 주권 제한이 거의 없다.

3. 평가

사례들을 종합하면 안보 통합이 주권을 제한하는 정도는 지역의 위협 인식, 강대국 후원, 국내 정치에 따라 크게 다르다. 공통적으로 국가는 안보 분야에서 주권을 초국가 기구에 넘기기보다는 결정권을 유지한 채 협력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한다. 또한 주권의 제한은 일방적 손실이 아니다. 국가는 공동 행사를 통해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안보와 영향력을 확보하므로, 이는 주권의 상실이라기보다 주권 행사 방식의 변화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안보 통합이 국가주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결정 절차의 일부에서는 맞지만, 무력 사용이라는 핵심 주권에 관해서는 과장되었다.

주권의 '이전'과 '공동 행사(pooling)'를 구별하는 것이 논지의 핵심

예시답안 — 2018 학제통합논술 I 제2문

1. 효율성 이익과 안정화 손실

공동통화의 효율성 이익은 환전 비용과 환위험이 사라지고 가격이 투명해져 역내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는 데서 생긴다. 안정화 손실은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 조정 수단을 잃어 특정 회원국에만 닥친 비대칭 충격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공동통화가 유리하려면 효율성 이익이 크고 안정화 손실이 작아야 한다.

2. 효율성 이익을 늘리고 안정화 손실을 줄이는 조건

첫째, 역내 교역의 비중이 커야 한다. 회원국 간 교역이 많을수록 환율 변동이 사라지는 이익이 크다. 〈그림 1〉에서 역내국 간 수출의 GDP 대비 비율은 A지역 66%, B지역 17%이므로 A지역의 효율성 이익이 훨씬 크다.

둘째, 경기 변동이 동조화되어야 한다. 회원국의 경기가 함께 움직이면 공동 통화정책이 모두에게 맞아 안정화 손실이 작다. 〈그림 2〉에서 개별국 성장률과 역내 전체 성장률의 상관계수는 A지역 0.78, B지역 0.51로 A지역이 더 동조화되어 있다.

셋째, 생산요소, 특히 노동의 이동성이 높아야 한다(먼델). 비대칭 충격으로 한 지역의 실업이 늘 때 노동자가 호황 지역으로 이동하면 환율 조정 없이도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림 3〉에서 출생지 밖 역내 거주 인구 비중은 A지역 42%, B지역 14%이다.

넷째, 재정 이전 체계가 있어야 한다(케넌). 충격을 받은 지역에 중앙 재정이 자동으로 이전되면 충격이 완충된다. 〈그림 4〉에서 역내국 소득 감소분 대비 중앙당국 재정지원은 A지역 30%, B지역 0.5%이다. 이 밖에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 경제의 개방도(매키넨), 정치적 통합 의지도 조건이 된다. 네 지표 모두에서 A지역은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잘 충족하고, B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제시문 2〉 (2)의 마스트리히트 수렴 조건은 물가, 재정, 환율, 장기금리의 명목 수렴을 요구했지만, 위의 실물 조건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3. 유로존 회원국이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

첫째, 독자적 통화정책의 상실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전체의 평균 상황에 맞춰 금리를 정하므로, 경기가 나쁜 회원국에는 금리가 너무 높고 과열된 회원국에는 너무 낮은 ‘획일적 정책’의 문제가 생긴다.

둘째, 환율 조정 수단의 상실이다. 경쟁력이 떨어진 회원국은 평가절하를 할 수 없어 임금과 물가를 낮추는 내적 평가절하라는 고통스러운 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업이 장기화된다.

셋째, 재정정책의 제약이다. 수렴 조건과 재정 규율로 적자와 부채가 제한되어 경기 침체에 재정으로 대응할 여력이 줄어든다. 동시에 B지역처럼 중앙 재정 이전이 거의 없으므로 충격의 완충 장치가 부족하다. 넷째, 노동 이동성이 낮아 비대칭 충격이 지역 실업으로 고착된다.

다섯째, 위기의 전염이다. 한 회원국의 재정·금융 위기가 공동통화를 통해 다른 회원국으로 번지고, 국제 금융의 비용이 회원국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결론적으로 공동통화의 이익을 키우려면 역내 교역과 노동 이동을 촉진하고 재정 이전 장치를 만드는 등 통화통합을 넘어선 경제·재정 통합이 필요하다. 역내 교역이 늘면 경기 동조화도 높아지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은 통화통합 이후 사후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다.

최적통화지역 기준(먼델·매키넨·케넨): 역내 교역, 경기 동조화, 노동 이동성, 재정 이전. 〈그림〉 1~4가 각각 대응

예시답안 — 2018 학제통합논술 I 제3문

1. UN 법체제의 관점

UN 법체제에서는 안보리 결의상 의무가 우선한다. 헌장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해야 하며, 제103조는 헌장상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충돌하면 헌장상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로커비 사건의 잠정조치 명령(1992)에서 이 우선성이 안보리 결정에서 나오는 의무에도 미친다고 보았다. EU조약도 회원국이 맺은 ‘다른 국제협정’이므로, UN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은 EU법을 이유로 결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시문 3〉 (1)의 유럽 1심재판소(CFI)는 이 관점에 따라 안보리 결의의 EU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결의를 강행규범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2. EU 법체제의 관점

EU 법체제에서는 EU법의 일반원칙, 특히 기본권이 우선한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카디 판결(2008)에서 EU 법질서는 자율적인 헌법적 질서이며, 국제협정에서 나오는 의무도 EU조약의 헌법적 원칙, 특히 기본권 존중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시문 3〉 (2)의 EU조약 제6조 제3항처럼 유럽인권협약과 회원국 공통의 헌법전통에서 나온 기본권은 EU법의 일반원칙이다. 법원은 안보리 결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EU 규칙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청문권과 실효적 사법심사권, 재산권을 침해한 규칙을 무효로 판단하였다. 이는 국제법과 국내(역내)법을 별개의 질서로 보는 이원론적 접근이다.

3.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의 접근방법

UN 의무를 우선 적용하여 인권침해가 생긴 경우 해당 EU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첫째, 조화적 해석이다. 헌장 제1조 제3항과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안보리는 UN의 목적과 원칙, 즉 인권 존중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결의는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해석하고, 회원국에 남겨진 이행 재량 안에서 인권과 양립하는 방식을 택한다.

둘째, UN 안의 절차를 활용한다. 회원국은 제재위원회에 대상자의 명단 삭제를 요청하고, 대상자가 직접 해제를 청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연락창구와 옴부즈퍼슨 절차를 지원하며, 기본 생계비와 같은 인도적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안보리 이사국이나 다른 회원국과 협력하여 지정 근거의 통지, 청문, 정기 재검토 등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국내적·역내적 구제를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자국 법원과 EU 법원에서 이행 조치를 다룰 기회를 주고, 지정 근거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이론적으로는 강행규범에 반하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이나, 명백히 권한을 넘은 결의에 대한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UN 체제의 통일성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최후의 수단이다.

결국 두 법체제의 충돌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우위로 해결되기 어렵고, UN 제재 절차 안에 인권 보장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카디 판결 이후 UN이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역 법원의 저항이 국제제도의 개혁을 끌어낸 사례이다.

UN 관점: 현장 제25·103조. EU 관점: 카디 판결(유럽사법재판소, 2008), EU법 질서의 자율성과 기본권. 해결방안: 조화적 해석, 제재 해제 절차, 인도적 예외

예시답안 — 2018 학제통합논술 I 제4문

유럽지역통합은 안보, 통화, 사법이라는 세 영역의 제도가 서로를 뒷받침하며 공고화되었다. 각 제도가 회원국과 그 국민에게 주는 이득을 정리한다.

1. 공동의 안보정책

회원국 차원에서 첫째, 규모의 경제와 중복 제거로 방위비 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제시문 1〉 (3)의 유럽방위청은 회원국 방위비 지출을 조정하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페터스베르크 임무처럼 인도적 구호, 평화유지, 위기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개별 국가로는 어려운 대외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회원국 사이의 전쟁 가능성을 제거하는 안보공동체를 형성한다. 유럽통합의 출범 동기 자체가 안보였다는 점에서 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득이다. 넷째, 결정은 국가에 남겨 두므로 주권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협력의 이익을 얻는다. 국민 차원에서는 평화가 보장되고, 방위비 절감분이 다른 공공 지출로 돌아갈 수 있다.

2. 통화동맹

회원국 차원에서 첫째, 환율 변동이 사라져 역내 무역과 투자가 늘어난다. 둘째, 신뢰도 높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공유하여 물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경험이 있던 국가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셋째, 공동통화는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높여 대외 협상력을 키운다. 국민 차원에서는 환전 비용이 사라지고, 국경을 넘는 가격 비교가 쉬워져 경쟁이 촉진되며, 여행과 취업 등 이동의 편의가 커진다. 다만 제2문에서 본 것처럼 이 이득은 역내 교역, 노동 이동, 재정 이전의 조건이 갖추어질수록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정화 손실이 이득을 상쇄할 수 있다.

3. 사법재판제도

회원국 차원에서 첫째, EU법이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되고 우선 적용되며(〈제시문 3〉 (1)), 사법재판소가 통일적으로 해석하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다. 둘째, 회원국 간 분쟁이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법적 절차로 해결되어 통합의 신뢰가 유지된다. 셋째, 단일시장의 규칙이 모든 회원국에 똑같이 집행되어 무임승차를 막는다. 국민 차원에서는 개인도 EU법상 권리를 국내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고, 국내 법원이 사법재판소에 해석을 구하는 절차를 통해 권리가 실현된다. 특히 카디 판결은 UN 안보리 결의의 이행 조치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면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국제 제재 속에서도 개인의 청문권, 사법심사권, 재산권을 보호하였다.

4. 세 제도의 상호작용과 공고화

세 제도는 서로를 강화한다. 안보 협력은 통합의 정치적 기반을, 통화동맹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사법제도는 법적 신뢰를 제공한다. 신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한 영역의 통합이 다른 영역의 통합 필요를 낳는 파급효과가 작동한다. 공동통화는 재정 협력과 금융 감독의 통합을 요구하고, 공동시장과 통화의 운영은 공통의 법 해석을 요구한다. 이렇게 회원국은 협력의 효율과 영향력을, 국민은 평화와 경제적 편익과 권리 보호를 얻으며, 그 이득이 다시 통합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회원국(국가)의 이득과 회원국 국민(개인)의 이득을 구별하여 정리하면 채점 기준을 놓치지 않는다

제5장

개발·원조

2부 주제별 기출 | 수록: 2016 학제 I (공적개발원조와 인권, 모기장 원조), 2018 학제 II (원조의 동기·부작용·부패)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5-1 핵심 개념	93
5-2 기출 풀이	95
2016 학제통합논술 I 공적개발원조: 인권, 동기, 시장	95
2018 학제통합논술 II 해외원조의 동기, 부작용과 부패	102

5-1 핵심 개념

원조 문제지는 두 해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진다. 원조의 근거(국제인권법), 원조의 동기(국제정치), 원조의 부작용(경제학)을 차례로 묻고, 마지막에 원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종합하게 한다. 핵심은 ‘선의의 원조가 왜 나쁜 결과를 낳는가’를 유인과 제도로 설명하는 것이다.

인권기반접근과 국제협력 의무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은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국제적 원조와 협력을 통하여 규약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개발권선언(1986)은 국가의 협력 의무를, 마스트리히트 원칙(2011)은 역외 인권의무를 말한다. 인권기반접근은 원조의 운영 원칙으로 참여, 책무, 비차별, 권한부여, 국제인권기준과의 연계를 요구한다. 다만 특정 수준의 원조를 제공할 구체적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립 구도

원조 = 시혜(재량) ↔ 원조 = 인권 실현을 위한 협력 의무의 이행

쓰이는 기출 2016 학제 I 제1·4문, 2018 학제 II 제1문 2)

답안 속 문장

“원조의 정당성은 규모가 아니라 권리 주체의 참여와 책무성, 취약계층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무상 배포의 시장 왜곡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양을 가격 0에 배포하면 현지 생산자가 마주하는 잔여수요가 0이 되어 시장에서 퇴출된다. 단기 보급은 늘지만 생산 기반, 고용, 학습이 사라져 원조 종료 후 공급이 끊기는 의존이 생긴다. 해결의 원리는 원조를 시장 안으로 넣는 것이다. 현지 구매(수요 이동), 바우처·가격 보조(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의 분리), 공급 보조(공급곡선 이동)가 그 수단이다.

대립 구도

단기 보급의 극대화 ↔ 장기 자립과 시장의 유지

쓰이는 기출 2016 학제 I 제3문

답안 속 문장

“무상 배포가 단기 보급과 장기 자립을 맞바꾸었다면, 시장 친화적 원조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

네덜란드병과 지대국가

천연자원 수출로 외화가 대량 유입되면 실질환율이 절상되고(지출효과) 생산요소가 자원·비교역재 부문으로 이동하여(자원이동효과) 제조업이 위축된다. 무상원조도 값을 필요 없는 외화 유입이라는 점에서 같은 효과를 낳고, 정부가 세수에 의존할 필요를 줄여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약화시킨다(지대국가 효과).

대립 구도

원조 = 투자 자원(빅 푸시) ↔ 원조 = 불로소득(자원의 저주)

쓰이는 기출 2018 학제 II 제2문 1)

답안 속 문장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 필요가 줄어들면 국민에 대한 책무성이 약해지고, 지대를 장악하려는 경쟁과 부패가 커진다.”

원조의 유인 문제

원조 배분은 수원국의 필요만이 아니라 공여국의 전략적 이익(예: 안보리 이사국 표결), 원조 기관의 관료적 유인(포트폴리오 규모로 평가), 수원국 관료의 생계와 권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 때문에 효과가 낮거나 부패한 국가에도 원조가 지속된다. 인권 개선이 소득 증가와 민주주의를 이끌지만 소득 증가는 인권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실증은, 인권과 무관한 원조가 독재 정권의 지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립 구도

국가 수준(전략·상업·인도주의) ↔ 비국가 수준(기관·관료의 이해)

쓰이는 기출 2018 학제Ⅱ 제1문 1)·제2문 2), 2016 학제Ⅰ 제2·4문

답안 속 문장

“원조를 공여하는 사람들의 생계도 원조에 달려 있다. 원조 기관은 효과보다 집행 규모를 늘리려는 유인을 갖는다.”

부패의 합리적 선택 모형

담당자는 뇌물의 편익 B 가 처벌 비용 $C(B)$ 와 양심 비용 $E(B)$ 의 합보다 클 때 뇌물을 받는다. 비용이 선형이면 $\pi = (1 - \alpha - \gamma)B - (\beta + \delta)$ 이므로, 한계비용 합 $\alpha + \gamma \geq 1$ 이면 언제나 거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계액 $B^* = (\beta + \delta)/(1 - \alpha - \gamma)$ 를 넘는 뇌물만 받는다. 적발 확률·처벌(α, β)과 윤리·사회적 비난(γ, δ)을 높이는 것이 정책 수단이다.

대립 구도

처벌 강화(억지) ↔ 투명성·참여(적발 확률과 규범의 내면화)

쓰이는 기출 2018 학제Ⅱ 제3문

답안 속 문장

“UN 반부패협약의 이행은 부패의 기대 비용을 높이고 편익을 줄여 담당자의 합리적 선택을 ‘거절’로 바꾸는 유인 설계이다.”

연성법(soft law)

총회 결의, 선언, 전문가 원칙, 당사국총회의 정치적 결정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조약의 해석에 고려되고,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모아 관습국제법으로 발전하거나 후속 조약의 원칙이 된다. 답안에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의 기능을 한다”는 형식으로 성격과 기능을 함께 쓴다.

대립 구도

경성법(조약·관습) ↔ 연성법(선언·결의·지침)

쓰이는 기출 2018 학제Ⅱ 제1문 2), 2021 학제Ⅱ 제3문 2), 2024 학제Ⅱ 제1문 1), 2025 제1문 2)

답안 속 문장

“원조 의무는 연성법 규범을 통해 형성 중인 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5-2 기출 풀이

2016 학제통합논술 I

공적개발원조: 인권, 동기, 시장

총 100점 · 각 25점 · 국제법(국제인권법) + 국제정치(자유주의·국가이익) + 경제(수요·공급)

〈제시문 1〉

(1) 빈곤은 다양한 인권의 박탈을 야기하고, 역으로 인권의 박탈은 빈곤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의식주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등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와 발언권도 상대적으로 제약된다. 이러한 상황은 빈곤이나 불평등이 지속되고 다음 세대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낳기 쉽다. 빈곤은 단순한 결핍 상태가 아닌 인권이 박탈된 상태이다. 국제인권조약상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조건 하에서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 지리적 접근 가능성의 확보, 성별, 연령, 장애, 경제·문화적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실은 ‘개발에 대한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개발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은 인간개발의 과정에 필요한 개념적 틀이다. 이는 규범적으로는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는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에 따르면 개발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 참여(Participation)
- 책무(Accountability)
- 비차별(Non-discrimination)
- 권한부여(Empowerment)
- 국제인권기준 및 메커니즘과 연계(Link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Mechanisms)

〈제시문 2〉

(1) 한국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방안’을 채택하였다.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은 ODA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ODA 시스템의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의 일환으로 ODA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자 유·무상 원조를 통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주요 개발기구와의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해소와 피해자들의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다. 2007년 3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10년 5월 ‘해외긴급구호 선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각종 인도적 메커니즘 및 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조율 및 원조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 일본은 중국에 많은 규모의 원조를 제공해왔다. 초기에 일본의 대중국 원조는 연해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 건설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0년부터 환경보호 및 내륙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사회개발, 인력개발, 제도개선, 기술이전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대중국 원조는 주로 무상자금지원과 기술협력 및 엔차관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제시문 3〉

아프리카의 유일한 모기장 제조업체 A사는 일주일에 약 500개의 모기장을 생산한다. A사에 종사하는 10명의 직원들은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각각 15명 이상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모기장 공급량은 현재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퇴치할 만큼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할리우드 스타 B씨가 이 지역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의 모기

장을 원조하라고 서구의 정부들을 압박하여 결국 이 지역 주민들에게 모기장이 무상으로 배포된다. B씨는 분명 ‘좋은’ 일을 했다. 그러나 원조로 모기장이 공급되면서 A사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되고 A사에 종사한 10명의 직원들은 더 이상 150명 이상의 딸린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다.

〈제시문 4〉

OECD에 의하면 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한 국가(공여국)가 다른 국가(수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주는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이다. 그러나 경제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와 지출 등의 경제활동을 하며 정부는 집합적인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을 때, 한 국가의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을 다른 국가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이 원조를 제공한 국가와 그 국민에게 어떠한 효과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원조를 제공한 국가와 국민이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

제1문.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고하여 공적개발원조를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논하시오. (25점)

제2문.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고하여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 동기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25점)

제3문. 〈제시문 3〉에 나타난 ‘모기장 원조’의 효과를 모기장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3〉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기장 원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기장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기초로 제시하시오. (25점)

제4문.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를 참고하여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이 수원국에 주는 영향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그리고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 실현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2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같은 ODA를 국제인권법의 협력 의무(제1문), 자유주의의 동기(제2문), 시장 분석(제3문), 국제법과 국가이익의 긴장(제4문)으로 차례로 보게 한 문제지이다. 제3문의 모기장 사례는 원조가 현지 시장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사례로 널리 인용된다.

연결 개념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 인권기반접근의 다섯 요소, 상호의존·제도·규범, 잔여수요, 바우처와 현지 구매, 원조효과성(주인의식), 구속성 원조와 국가이익.

합정 ① 제2문에서 현실주의 동기를 중심으로 쓰는 답안(자유주의적 관점으로 한정). ② 제3문에서 그래프 없이 ‘시장이 망가진다’고만 쓰는 답안. ③ 제4문 후반을 비판만 하고 국가이익의 논리를 설명하지 않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ODA의 국제인권법적 의미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 헌장 제55·56조, 개발권선언, 인권기반접근	1,100~1,500자
2	자유주의 관점의 원조 동기	상업적 자유주의, 신자유제도주의, 민주평화론, 국가 정체성	1,100~1,500자
3	모기장 원조의 효과와 해결 방안	잔여수요 = 0, 외부효과, 현지 구매·바우처·공급 보조	1,100~1,500자
4	수원국에 대한 국제법적 영향과 공여국 이익	불간섭·자결,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 파리선언, 현실주의	1,100~1,500자

예시답안 — 2016 학제통합논술 I 제1문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공적개발원조(ODA)는 시혜가 아니라 인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의 수단이며, 원조의 목적과 방법 모두 인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빈곤의 인권적 이해

〈제시문 1〉 (1)은 빈곤을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인권이 박탈된 상태로 본다. 빈곤층은 적절한 생활수준, 건강, 교육, 사회보장, 인간다운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도 제약된다. 이러한 박탈은 빈곤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따라서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는 곧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2. 원조의 국제법적 근거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은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또한 국제적 원조와 협력을 통하여 규약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UN 헌장 제55조와 제56조도 회원국이 생활수준 향상과 인권 존중을 위해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게 한다. 1986년 개발권선언은 개발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협력 의무를 강조한다. 이 규범들은 특정 액수의 원조 의무를 정하지는 않지만, 원조가 국제인권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협력 의무의 이행이라는 성격을 부여한다.

3. 인권기반접근의 적용

〈제시문 1〉 (2)의 인권기반접근은 원조의 운영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참여: 수혜 공동체가 사업의 기획과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책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권리 주체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셋째, 비차별: 성별, 연령, 장애, 경제·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가장 취약한 집단부터 접근해야 한다. 넷째, 권한부여: 수혜자를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세워야 한다. 다섯째, 국제인권기준과의 연계: 사업 목표와 지표를 인권조약 기준과 연결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존중·보호·실현이라는 3중 의무 가운데 특히 실현 의무를 원조로 뒷받침하는 방법이다.

4. 제시문 2 사례의 평가

한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중점협력대상국별 전략 수립으로 원조를 제도화했고, UNDP, WFP, UNICEF와 협력하며 인도적 위기 피해자의 생존권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 생존권 보

호와 국제협력 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인권적 의미가 있다. 일본의 대중국 원조가 사회기반시설 중심에서 환경보호, 내륙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사회개발로 확대된 것도 성장 중심 원조에서 생활수준과 건강·교육권 중심 원조로의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취약국과 소외 집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비차별 원칙과 조화되어야 하고, 차관 중심 원조는 상환 부담이 사회권 예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결론

공적개발원조는 국제인권법상 국제협력 의무를 실천하는 수단이다. 원조의 정당성은 규모가 아니라 권리 주체의 참여와 책무성, 취약계층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원조가 수원국의 인권 상황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최소한의 조건이다.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국제적 원조와 협력), 존중·보호·실현의 3중 의무, 인권기반접근의 다섯 요소

예시답안 — 2016 학제통합논술 I 제2문

자유주의는 국가가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며, 상호의존과 국제제도, 공유된 규범을 통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공여국의 원조 동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 상호의존과 공동의 이익

상업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깊어질수록 상대국의 번영은 자국의 이익이 된다. 개도국의 경제발전은 공여국에 새로운 시장과 투자처를 만들고, 빈곤과 분쟁이 낳는 난민, 질병, 테러 같은 초국경 위협을 줄인다. 원조는 제로섬의 이전이 아니라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섬 투자이다. <제시문 2> (2)에서 일본의 대중국 원조가 연해 지역 사회기반시설에서 시작된 것은 경제 교류의 기반을 넓혀 양국의 상호의존을 심화하는 동기로 이해할 수 있다. 엔차관과 기술협력은 일본 기업의 진출과 교역 확대로 이어지는 경로가 되었다.

2. 국제제도와 다자협력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제도가 거래비용을 줄이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협력을 촉진한다고 본다. 원조는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빈곤과 인도적 위기라는 지구적 공공재 문제를 다룬다. 공여국이 UNDP, WFP, UNICEF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고(<제시문 2> (1)), 국제사회의 인도적 메커니즘과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원조의 중복을 줄이고 효과성을 높이며 부담을 분담하려는 동기이다. 또한 원조 규범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여국은 국제제도 안에서 발언권과 평판을 얻는다.

3.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공유된 가치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보편적 가치로 본다. <제시문 1> 처럼 빈곤을 인권의 박탈로 보면, 원조는 이 가치를 국경 너머로 확장하는 도덕적 의무이다. 또 민주평화론에 따르면 개도국의 발전과 민주화는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만든다. 인권기반접근의 참여, 책무, 권한부여 원칙은 원조를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산하려는 동기를 반영한다. 한국이 해외긴급구호 법률을 제정하고 피해자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를 늘리는 것도 인도주의 규범을 내면화한 결과이다.

4. 국가 정체성과 책임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경험을 갖고 있다.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ODA를 확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하려는 동기로 볼 수 있다.

5.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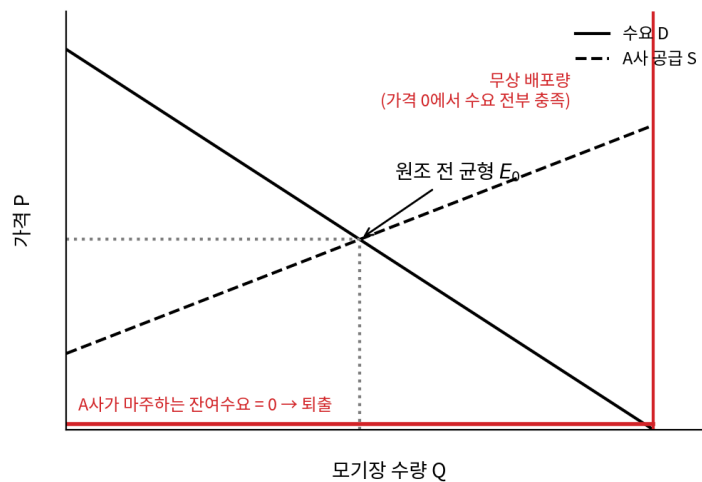
자유주의 관점에서 원조 동기는 공여국의 이익과 수원국의 이익이 함께 실현되는 데 있다. 다만 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설명이 원조의 전략적·상업적 목적을 가린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원조가 수원국의 필요와 인권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다자 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의 세 갈래(상호의존·제도·규범)로 동기를 나누고, 제시문의 한국·일본 사례를 각각 배치

예시답안 — 2016 학제통합논술 I 제3문

1. 모기장 원조의 효과

원조 전 모기장 시장은 수요곡선 D와 A사의 공급곡선 S가 만나는 E_0 에서 균형을 이룬다. A사는 주당 약 500개를 생산하고, 균형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만 모기장을 산다. 말라리아를 막기에는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제시문의 서술은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작다는 뜻이다. 모기장 사용은 모기를 줄여 이웃의 감염 위험도 낮추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므로, 시장 균형량은 사회적 최적보다 작다.



서구 정부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양을 무상 배포하면, 소비자는 가격 0에서 원하는 만큼 모기장을 얻는다. 그러면 유료 모기장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고 A사가 마주하는 잔여수요는 0이 된다. A사는 어떤 양수 가격에서도 팔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단기적 효과는 모기장 보급의 확대와 말라리아 감소라는 분명한 편익이지만, 동시에 다음 비용이 생긴다. 첫째, A사 직원 10명이 일자리를 잃고 150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생계를 잃는다. 둘째, 현지의 유일한 생산 기반이 사라져, 원조가 끝나거나 모기장이 낡아 교체가 필요할 때 공급자가 없다. 즉 시장 공급곡선 자체가 사라져 장기적으로 외부 원조에 대한 의존이 고착된다. 셋째, 지역의 생산 기술과 유통망, 공급자로서의 학습 기회도 사라진다.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핵심은 원조를 시장 밖에서 공급하지 않고 시장 안으로 넣는 것이다.

첫째, 현지 구매이다. 공여국이 해외에서 만든 모기장을 들여오는 대신 A사로부터 모기장을 사서 배포하면, 원조 물량이 A사에 대한 추가 수요가 되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A사는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비가 낮아질 수 있다. A사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생산 설비 확충을 함께 지원한다.

둘째, 수요 측 보조이다. 무상 배포 대신 소비자에게 바우처를 주거나 가격의 일부를 보조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낮아지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유지되어 거래량이 늘어난다. 외부효과를 반영해 거래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피구 보조금과 같은 원리이다. 가장 가난한 계층에게는 전액 바우처를 주고 나머지에게는 부분 보조를 주어 목표를 정밀하게 맞출 수 있다.

셋째, 공급 측 보조이다. A사에 생산 보조나 기술 지원을 하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아래쪽)으로 이동하여 가격이 내리고 거래량이 늘어난다. 시장이 유지되면서 보급도 확대된다.

넷째, 경쟁의 촉진이다. 원조 자금으로 현지 생산자의 진입을 도와 공급자를 늘리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더 낮아지고 원조 종료 후에도 공급이 지속된다.

이 방안들은 모두 수요와 공급의 기본 구조를 살려 둔 채 거래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늘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상 배포가 단기 보급과 장기 자립을 맞바꾸었다면, 시장 친화적 원조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 이는 원조의 효과를 공급량이 아니라 수원국의 자립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무상 배포는 시장가격을 0으로 만들어 국내 생산자의 잔여수요를 없앤다. 해결책은 '원조를 시장 안으로' — 현지 구매, 수요 측 보조(바우처), 공급 측 보조

예시답안 — 2016 학제통합논술 I 제4문

1. 공여국의 ODA 정책이 수원국에 주는 영향: 국제법적 관점

첫째, 주권과 불간섭의 문제이다. 원조에 붙는 조건(정책 개혁, 구매처 제한 등)은 수원국의 경제·사회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 수원국이 동의한 합의에 따른 조건은 그 자체로 불간섭 원칙 위반이 아니지만, 원조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조건이 사실상 강제로 작동하면 경제적 자결권과 정책 자율성이 약해진다.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이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수원국 제도의 활용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개발권과 인권의 실현이다. <제시문 1>의 인권기반접근에 따른 원조는 수원국의 사회권 실현을 돕고, 참여와 책무 원칙을 통해 수원국 정부의 인권 의무 이행을 강화한다. 반대로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원조는 억압적 정권을 지원하여 수원국 국민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

셋째, 공여국의 역외 인권의무, 특히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이다. <제시문 3>에서 무상 모기장 배포는 건강권을 증진했지만 A사 노동자 10명과 그 가족의 노동권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권규약의 국제협력 의무는 권리를 증진하는 것뿐 아니라 협력 과정에서 다른 권리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원조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넷째, 원조 형태에 따른 법적 효과이다. 무상원조와 달리 차관은 수원국에 상환 의무를 지우는 조약상 채무이며, 과도한 부채는 수원국의 사회권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 일본의 대중국 원조가 엔차관을 포함한 것처럼 원조의 구성은 수원국의 재정 주권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

2. 공여국의 ODA 정책: 정치적·경제적 이익 실현의 관점

<제시문 4>는 정부가 국민 세금을 다른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공여국과 국민에게 효과가 있어야 합리적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주의는 원조를 국가이익을 위한 외교 정책 수단으로 본다.

정치적 이익으로는 첫째, 우호국 확보와 영향력 확대가 있다. 원조는 수원국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기구 표결에서 지지를 얻는 수단이 된다. 둘째, 안보 이익이다. 분쟁 지역과 취약국의 안정은 테러, 난민, 해적 같은 위협을 줄인다. 셋째, 국가 이미지와 소프트파워의 강화이다. 한국이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를 확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하다.

경제적 이익으로는 첫째, 시장 개척과 기업 진출이 있다. 일본의 대중국 원조는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엔차관을 통해 일본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만들었고, 기술협력은 일본식 기준과 장비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둘

째, 자원 확보이다. 자원 부국에 대한 원조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 선정과 유·무상 원조 통합 전략은 원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협력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3. 종합

두 관점은 긴장 관계에 있다. 공여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구속성 원조나 전략적 배분은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인권을 해쳐 원조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반대로 공여국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원조는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ODA 정책은 수원국의 개발과 인권 실현을 목적으로 삼되, 그 성과가 안정과 번영이라는 형태로 공여국에도 돌아온다는 ‘계몽된 국가이익’의 논리로 국내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반부: 주권·불간섭, 개발권과 주인의식, 공여국의 역외 인권의무(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 후반부: 현실주의적 국가이익(정치·경제)

2018 학제통합논술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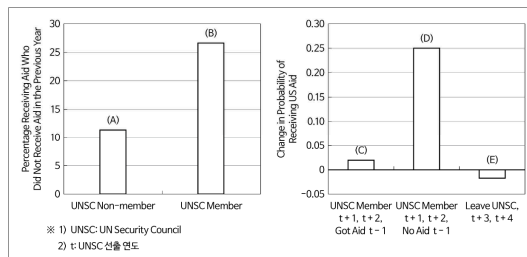
해외원조의 동기, 부작용과 부패

총 100점 · 제1문 35점, 제2문 35점, 제3문 30점 · 국제정치(동기·민주주의) + 국제법(원조 의무·반부패협약) + 경제(네덜란드병·부패 모형)

〈제시문 1〉

원조에는 인도주의적 요구와 지구공동체적 관점이 중요한 명분과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원조를 제공받는 수혜국 관료들의 생계처럼 원조를 공여하는 사람들의 생계도 원조에 달려 있다. 해외원조 단체의 원조 성공 여부는 대체로 원조 포트폴리오 규모에 의해 평가된다. 해외원조 단체의 내부적인 동기로 인해, 부패한 국가에도 원조를 공여하는 현상이 지속된다. 또한 다음 〈그림〉과 같이 원조 공여국 차원의 동기도 존재한다.

〈그림〉 UN 안전보장이사국 선출에 따른 해외원조 수혜 증대



〈제시문 2〉

(1) 사회권규약 제2조

-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take steps,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by all appropriate means, ...

(2) 개발권선언 제3조

- State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cre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favourabl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
- States have the du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ensuring development and eliminating obstacles to development. ...

(3) 마스트리히트 원칙, 원칙 9

A State has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ny of the following: ... b) situations

over which State acts or omissions bring about foreseeable effects on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ether within or outside its territory; ...

- ※ 1) 사회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2) 개발권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UNGA Res. 41/128 (1986)
 3) 마스트리히트 원칙: Maastricht Principles on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11)

〈제시문 3〉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부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그러나 자원의 부존량과 소득 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많은 국가의 소득수준을 볼 때, 장기적으로 천연자원의 존재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1960년대 네덜란드 해안의 천연가스 개발이 네덜란드 제조업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천연자원의 존재가 자국의 제조업에 해가 될 수 있는 현상을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해외 무상원조는 값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천연자원의 수출에서 획득하는 재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4〉

비민주적 정부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 없이 해외원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원조는 혁명 후의 정부가 그 이전의 정부보다 더 독재적일 가능성을 높인다.

다음 〈표〉를 보면, 인권 개선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빈곤의 완화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또 빈곤의 완화는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 특히 기존 연구에 따르면 비민주적 사회는 부유할수록 인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달리 인권 증진은 빈곤의 후속적 완화를 가져다 준다.

〈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빈곤 (t: 기준 연도)

구분	t-4에서 t 까지 민주 주의 수준 의 변화	t-4에서 t 까지 인권 의 변화	t-4에서 t까지 1인 당 국민소 득의 변화
t-5에서 t-1 까지 인권의 변화	긍정적 (+)	긍정적 (+)	긍정적 (+)
t-5에서 t-1 까지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긍정적 (+)*	부정적 (-)	긍정적 (+)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단, 나머지 부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제시문 5〉

빈곤국 X국의 수혜원조 집행 담당자가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Y기업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제안받았을 때, 합리적 행위자인 해당 담당자의 사익(私益)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 담당자의 뇌물에 대한 이윤함수(π)는 받은 뇌물의 금액(B), 뇌물을 받은 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감수해야 하는 법적 처벌을 환산한 금액(C), 뇌물을 받음으로 인한 개인적 양심의 가책을 환산한 금액(E)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구체적인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pi(B) = B - C(B) - E(B), \quad C'(B) > 0, E'(B) > 0$$

여기서, $C(B) = \alpha B + \beta$, $E(B) = \gamma B + \delta$ 이다. (단, $\alpha, \beta, \gamma, \delta$ 는 상수)

〈제시문 6〉

UN 반부패협약
제13조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 to promo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and groups outside the public sector, such as civil societ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in the prevention of and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

The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by such measures as:

- (a)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and promoting the contribution of the public to decision-making processes;
- (b) Ensuring that the public has effective

access to information;

(c) Undertaking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non-tolerance of corruption, as well as public education programmes, including school and university curricula; ...

제30조

1. Each State Party shall make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liable to sanc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gravity of that offence.

...

〈문제〉

제1문. 해외원조의 동기 및 근거에 관한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35점)

- 1) 해외원조의 동기를 국가 수준과 비국가 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십시오. (15점)
- 2) 국제법상 국가의 해외원조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논하십시오. (20점)

제2문. 해외원조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35점)

- 1) 천연자원의 존재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상원조’가 ‘천연자원의 수출에서 획득하는 자원’에 비유되는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논하십시오. (15점)
- 2) 해외원조, 빈곤, 인권,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해외원조가 수혜국 국민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국제정치적 방안에 대해 논하십시오. (20점)

제3문. 해외원조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그 대책에 관한 〈제시문 5〉와 〈제시문 6〉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30점)

- 1) X국 담당자가 ‘뇌물을 받지 않는 경우’와 ‘뇌물을 받는 경우’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십시오. (단, x 축은 B , y 축은 $C(B) + E(B)$) (15점)
- 2) 수혜국이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UN 반부패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원조의 동기(그림), 원조 의무의 법적 존재 여부, 원조의 부정적 효과(네덜란드병, 민주주의·인권과의 관계), 부패의 경제 모형과 UN 반부패협약을 연결한다. <표>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을 정확히 읽는 것이 제 2문 2)의 출발점이다.

연결 개념 안보리 이사국과 원조(그림 A~E), 관료적 유인,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과 연성법, 지출효과·자원이 동효과, 지대국가, 선형 비용의 임계 뇌물액, 반부패협약 제13·30조.

합정 ① 그림을 ‘이사국이 되면 원조가 늘어난다’로만 요약하고 (C)·(E)를 놓치는 답안. ② <표>의 유의하지 않은 양(+)의 부호를 근거로 소득→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답안. ③ 제3문 1)에서 $\alpha + \gamma \geq 1$ 인 경우를 빠뜨리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 국가·비국가 수준 동기 2) 해외원조 의무의 존재 여부	그림 (A) 약 11% (B) 약 27% (D) 약 0.25, 사회권규약, 개발권선언, 마스트리히트 원칙	1,600~2,100자
2	1) 자원의 저주와 무상원조의 비유 2) 원조·빈곤·인권·민주주의와 정책	지출효과·자원이동효과, 지대국가, <표>의 인과 방향, 선별성·경로 다변화	1,600~2,100자
3	1) 뇌물 수수 조건과 그래프 2) 반부패협약 이행 방안	$\pi = (1 - \alpha - \gamma)B - (\beta + \delta)$, B^* , 협약 제 13·30조	1,400~1,800자

예시답안 — 2018 학제통합논술 II 제1문**1) 해외원조의 동기: 국가 수준과 비국가 수준**

국가 수준의 동기는 첫째, 전략적·정치적 동기이다. <제시문 1>의 그림에 따르면 직전 해에 원조를 받지 않던 국가 가운데 그해 원조를 받은 국가의 비율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아닌 국가(A)가 약 11%인 데 비해 이사국(B)은 약 27%이다. 또 이사국 임기 중 미국 원조를 받을 확률의 변화는 직전에 원조를 받지 않던 국가(D)에서 약 0.25로 크게 오르고, 이미 받던 국가(C)는 약 0.02로 거의 변하지 않으며, 임기가 끝난 뒤(E)에는 오히려 약간 떨어진다. 이는 공여국이 안보리 표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원조를 사용한다는 증거이다. 둘째, 경제적 동기로 시장 개척과 자원 확보, 자국 기업 진출이 있다. 셋째, 인도주의와 지구 공동체적 관점이다. <제시문 1>처럼 인도적 요구는 원조의 중요한 명분이자 현실이며, <제시문 2>의 국제규범은 이를 국가의 책무로 뒷받침한다.

비국가 수준의 동기는 원조를 집행하는 조직과 개인의 이해관계이다. <제시문 1>에 따르면 원조를 공여하는 사람들의 생계도 원조에 달려 있고, 해외원조 단체의 성과는 대체로 원조 포트폴리오의 규모로 평가된다. 그 결과 원조 기관은 원조의 효과보다 집행 규모를 늘리려는 관료적 유인을 갖고, 부패한 국가에도 원조를 계속한다. 수혜국 관료 역시 원조를 생계와 권력의 원천으로 삼으므로 원조의 지속을 원한다. 이처럼 공여국과 수혜국의 원조 관련 행위자들이 원조의 계속에 공통의 이해를 가지는 것이 원조가 효과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이유이다.

2) 국제법상 국가의 해외원조 의무가 존재하는가

의무 긍정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문 2> (1)의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은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국제적 원조와 협력을 통하여’ 규약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게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헌장 제55조, 제56조와 함께 이 조항을 근거로 국제협력이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해석하였다. 둘째, <제시문 2> (2)의 개발권선언 제3조는 국가가 개발을 보장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데 서로 협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한다. 셋째, <제시문 2> (3)의 마스트리히트 원칙은 국가의

작위나 부작위가 자국 영토 밖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향유에 예견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를 진다고 본다.

의무 부정론의 근거도 있다. 첫째,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은 조치를 ‘취할’ 의무와 ‘점진적’ 실현을 규정할 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원조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는다. 문언상 ‘원조와 협력을 통하여’는 수단을 말할 뿐이며, 특히 원조를 ‘받는’ 국가의 권리를 창설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개발권선언은 총회 결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마스트리히트 원칙은 전문가들이 작성한 해석 원칙으로서 연성법에 해당한다. 셋째, 국민총소득의 0.7%를 원조로 제공한다는 목표도 정치적 약속에 그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한 선진국의 실행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법적 확신이 없다. 따라서 원조 제공을 요구하는 관습국제법도 성립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제법상 국가에게 특정 수준의 해외원조를 제공할 구체적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권규약 당사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권리 실현에 기여할 일반적 의무를 지고, 적어도 자국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인권 향유를 해치지 않을 존중 의무는 점차 인정되고 있다. 원조 의무는 연성법 규범을 통해 형성 중인 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1)에서 본 것처럼 원조가 전략적 동기에 좌우되는 현실은, 법적 의무가 약하기 때문에 원조의 배분이 공여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의 (A)~(E)를 수치로 읽어 국가 수준 동기의 근거로 쓴다. 2)는 '일반적 협력 의무는 있으나 구체적 원조 의무는 없다'가 통설적 결론

예시답안 — 2018 학제통합논술 II 제2문

1) 천연자원과 성장, 무상원조의 비유

천연자원이 많으면 부유해질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자원의 저주). 〈제시문 3〉의 네덜란드 사례에서 1960년대 천연가스 개발은 두 경로로 제조업을 위축시켰다. 첫째, 지출효과이다. 가스 수출로 외화가 대량 유입되면 자국 통화가 절상되고, 늘어난 소득이 비교역재(서비스, 건설) 수요를 높여 그 가격이 오른다. 그 결과 실질환율이 절상되어 국제가격을 받아들여야 하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둘째, 자원이동효과이다. 자원 부문과 비교역재 부문의 임금과 수익이 높아지면 노동과 자본이 제조업에서 빠져나간다. 제조업은 기술 학습과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므로, 제조업 위축은 장기 성장률을 낮춘다. 여기에 자원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 자원 지대를 둘러싼 지대추구와 부패가 더해진다. 산유국에서 석유 수입에 의존한 재정이 제조업과 농업을 쇠퇴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낳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무상원조가 천연자원 수출 재원에 비유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원조도 외화의 대량 유입이므로 같은 지출효과를 낳는다. 원조 자금이 국내에서 지출되면 실질환율이 절상되고 비교역재 가격이 올라 수혜국의 수출 제조업이 위축된다. 둘째, 원조는 값을 필요가 없고 국내의 생산 활동 없이 정부에 들어오는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자원 지대와 같다.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 필요가 줄어들면 국민에 대한 책무성이 약해지고, 지대를 장악하려는 경쟁과 부패가 커진다(지대국가 효과). 셋째, 원조의 규모와 시기가 공여국 사정에 따라 변동하므로 자원 가격처럼 불안정한 수입원이 된다. 따라서 원조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생산적 투자와 수출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쓰여야 한다.

2) 원조, 빈곤, 인권, 민주주의의 관계와 국제정치적 방안

〈표〉에 따르면 인권의 개선은 이후 민주주의 수준, 인권, 1인당 국민소득을 모두 향상시킨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민주주의 수준을 높인다고 할 수 없고(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오히려 인권 상

황을 악화시킨다. 즉 인과의 방향이 ‘인권 → 민주주의·빈곤 완화’이지 ‘빈곤 완화 → 인권·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를 원조에 적용하면, 빈곤 완화만을 목표로 비민주적 정부에 제공된 원조는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제시문 4> 처럼 비민주적 정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도 원조 자금을 쓸 수 있으므로, 원조는 억압 기구를 유지하고 지지 세력에게 보상하는 재원이 된다. 소득이 늘어도 인권이 악화될 수 있으며, 원조가 혁명 이후의 정부를 더 독재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높다. 1)의 지대 효과와 같은 원리이다.

원조가 수혜국 국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기 위한 국제정치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 원조를 인권 개선과 거버넌스 개혁에 연계하는 조건부 원조와, 인권 상황이 나은 국가에 원조를 더 주는 선별적 배분을 활용한다. 둘째, 원조 경로를 다변화한다. 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 대신 시민 사회, 지방 공동체, 국제기구를 통해 직접 주민에게 전달하면 정권의 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공여국 간 조정을 강화한다. 공여국들이 전략적 이유로 경쟁하면 수혜국 정부는 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다자 협의체에서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원조의 정치화를 줄인다. 제1문의 안보리 표결과 연계된 원조처럼 공여국의 전략적 동기가 앞서면 인권 조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다섯째,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원조 정보의 공개와 독립적 평가, 수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은 원조가 독재 정권의 지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신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이다.

네덜란드병의 두 경로: 지출효과(실질환율 절상)와 자원이동효과. <표> : 인권→민주주의·소득(+), 소득→인권(-)

예시답안 — 2018 학제통합논술 II 제3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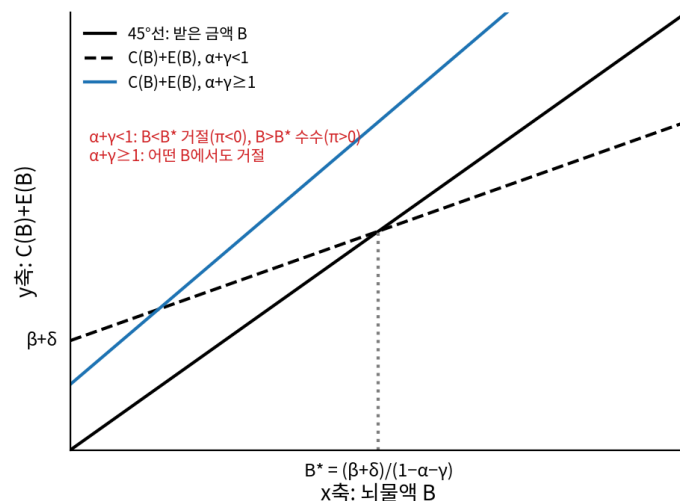
1) 뇌물을 받지 않는 경우와 받는 경우의 조건

이윤함수에 비용함수를 대입하면

$$\pi(B) = B - (\alpha B + \beta) - (\gamma B + \delta) = (1 - \alpha - \gamma)B - (\beta + \delta)$$

이다. α 와 γ 는 뇌물 1단위가 늘 때 늘어나는 처벌 비용과 양심 비용(한계비용)이고, β 와 δ 는 뇌물 액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적 처벌 비용과 양심의 가책이다. 합리적인 담당자는 $\pi(B) > 0$ 일 때 뇌물을 받는다.

그래프에서 x 축은 B , y 축은 $C(B) + E(B) = (\alpha + \gamma)B + (\beta + \delta)$ 이다. 뇌물의 편익은 받은 금액 B 자체이므로 45°선으로 나타난다. 비용선은 절편이 $\beta + \delta$, 기울기가 $\alpha + \gamma$ 인 직선이다. 45°선이 비용선 위에 있으면 뇌물을 받는다.



첫째, $\alpha + \gamma \geq 1$ 이면 비용선의 기울기가 45°선 이상이고 절편도 양수이므로 비용선이 항상 45°선 위에 있다. 어떤 금액이 제시되어도 $\pi(B) < 0$ 이므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 한계 처벌과 한계 양심 비용이 뇌물 1원보다 크면 금액을 키워도 유혹이 생기지 않는다.

둘째, $\alpha + \gamma < 1$ 이면 비용선이 45°선보다 완만하므로 두 선이 $B^* = \frac{\beta + \delta}{1 - \alpha - \gamma}$ 에서 만난다. $B < B^*$ 이면 뇌물을 받지 않고, $B > B^*$ 이면 받는다. 즉 작은 뇌물은 거절하지만 충분히 큰 뇌물은 받는다.

따라서 부패 억제 정책은 $\alpha, \beta, \gamma, \delta$ 를 높이는 것이다. 적발 확률과 처벌 수위를 높이면 α 와 β 가 커지고, 공직윤리 교육과 사회적 비난은 γ 와 δ 를 키운다. 목표는 $\alpha + \gamma \geq 1$ 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B^* 를 실제 제안 가능한 뇌물 규모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2) UN 반부패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패방지정책

1)의 모형과 연결하여 수혜국은 다음과 같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첫째, 처벌의 강화이다. 협약 제30조 제1항은 협약에 따른 범죄를 그 중대성을 고려한 제재의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공무원 뇌물수수를 범죄화하고 뇌물 액수에 비례하는 처벌을 도입하면 α 가 커지고, 공직 박탈 같은 고정적 제재는 β 를 높인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내부고발자 보호로 적발 확률을 높이는 것도 같은 효과이다.

둘째, 사회의 참여이다. 제13조는 시민사회, NGO, 지역사회 단체가 부패 방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a)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대중의 기여 촉진, (b) 정보에 대한 실효적 접근 보장, (c) 부패에 대한 무관용 문화를 위한 홍보와 학교·대학 교육과정을 포함한 공교육을 요구한다. 원조 집행 내역과 조달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감시단이 원조 사업을 점검하게 하면 적발 확률(α)이 높아지고, 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교육은 양심의 비용(γ, δ)을 키운다.

셋째, 예방적 제도이다. 원조 자금의 조달 절차를 경쟁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담당자의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신고, 순환 근무를 도입하여 특정 기업과의 유착을 막는다.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를 두어 정책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국제협력이다. 공여국과 협력하여 원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해외로 빼돌린 부패 자금을 환수하는 협력 체계를 갖춘다. 원조 공여국도 원조 조건으로 협약 이행을 요구하고 감시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협약 이행은 부패의 기대 비용을 높이고 편익을 줄여 담당자의 합리적 선택을 ‘거절’로 바꾸는 유인 설계라는 점에서, 1)의 경제학적 분석과 직접 연결된다.

$$\pi(B) = (1 - \alpha - \gamma)B - (\beta + \delta). \alpha + \gamma \geq 1 \text{이면 언제나 거절, } \alpha + \gamma < 1 \text{ 이면 } B > (\beta + \delta) / (1 - \alpha - \gamma) \text{ 일 때 수수}$$

제6장

통상·제재·국제정치경제

2부 주제별 기출 | 수록: 2016 학제 II (특혜관세·전략적 무역·무역구제), 2020 학제 I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2022 학제 II (경제제재), 2023 학제 II (미중 기술패권과 공정무역)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6-1 핵심 개념	109
6-2 기출 풀이	112
2016 학제통합논술 II 특혜관세, 전략적 무역정책과 무역구제	112
2020 학제통합논술 I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와 반덤핑	118
2022 학제통합논술 II 경제제재: 근거, 후생, 표적제재와 인권	125
2023 학제통합논술 II 미중 기술패권, 공정무역과 중견국	132

6-1 핵심 개념

통상과 제재 문제지는 경제학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래프와 수식으로 후생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WTO 규범의 요건과 국제정치의 동기로 해석하는 순서가 정형화되어 있다. 경제 분석이 ‘누가 얼마를 얻고 잃는가’를 보여 주면, 법은 ‘그 조치가 허용되는가’를, 정치학은 ‘왜 그 조치를 택하는가’를 답한다.

전략적 무역정책과 이윤 이전

과점적 국제시장에서 정부 보조금은 자국 기업의 진입·생산 공약을 신빙성 있게 만들어 외국 기업을 퇴출시키고 초과이윤을 자국으로 옮길 수 있다(브랜더-스펜서). 그러나 상대국도 보조금을 주면 두 기업 모두 생산하여 이윤이 줄고, 보조금을 뺀 국민후생은 음수가 되는 보조금 전쟁(죄수의 딜레마)이 된다. 이익은 제3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대립 구도

신무역이론(이윤 이전) ↔ 보복·지대추구·정보 부족

쓰이는 기출 2016 학제Ⅱ 제2문

답안 속 문장

“보조금 15로 X기업의 생산이 강우월전략이 되자 Y기업이 퇴출된다. 그러나 B국도 맞보조금을 주면 양국의 국민후생은 각각 $5 - 15 = -10$ 이 된다.”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의 비교

세이프가드(GATT 제19조, 세이프가드협정)는 공정한 수입의 급증에 대한 긴급 구제로, 심각한 피해, 차별 없는 적용, 기간 제한, 보상을 요구한다. 반덤핑(GATT 제6조, 반덤핑협정)은 정상가격 미만의 수출이라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구제로, 실질적 피해와 인과관계로 충분하고 특정 수출자에게 덤핑마진 이하의 관세를 부과한다. 경제적으로는 외국 독점기업이 반덤핑관세를 가격 인상으로 회피하면 수입국은 관세수입 없이 가격만 오르고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대립 구도

긴급 구제(공정무역) ↔ 불공정무역 구제(가격차별)

쓰이는 기출 2016 학제Ⅱ 제3문, 2020 학제Ⅰ 제1·2문

답안 속 문장

“반덤핑관세의 위협은 외국 독점기업이 가격을 올리게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외국기업의 이윤으로 옮긴다.”

비시장경제와 대체국 방식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국가의 상품은 국내 가격과의 엄격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GATT 제6조 제1항 주해). 중국 가입의정서 제15조 (a)는 중국 생산자가 시장경제 조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3국 가격·비용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중 (a)(ii)는 가입 15년 후(2016년 12월) 만료된다(제15조 (d)). 대체국은 대개 비용이 높아 덤핑마진이 커진다.

대립 구도

자동 시장경제지위 부여론(중국) ↔ 시장 왜곡 시 대체 방법 유지론(미국·EU)

쓰이는 기출 2020 학제 I 제2·4문

답안 속 문장

“중국이 받는 불이익은 덤핑마진 산정 방식에서 나오며, 그 정당성은 가입의정서 제15조의 해석에 달려 있다.”

중상주의(경제민족주의)

부는 권력의 기초이고 국제경제는 상대적 이익을 다투는 제로섬이라고 본다. 무역흑자, 산업 육성, 보호는 국가 건설과 안보의 수단이다. 상대의 중상주의에 대한 대응도 중상주의적일 수 있으며, 시장경제지위의 거부, 수출통제, 보조금 조건은 상대국의 부상을 늦추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대립 구도

중상주의(상대적 이익·국가) ↔ 자유주의(절대적 이익·시장)

쓰이는 기출 2020 학제 I 제3문, 2016 학제 II 제1문, 2023 학제 II 제1·3문

답안 속 문장

“미국의 입장은 중상주의가 비판하는 상대국의 중상주의에 중상주의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포괄적 제재와 표적제재

UN 헌장 제41조에 근거한 경제제재는 안보리의 제39조 결정을 전제로 하며 회원국을 구속한다(제25조). 포괄적 제재는 사회 전체에 고통을 주어 지도부를 압박하려 하지만 지도자는 피해를 피하고 권력을 강화하며 인도적 위기를 낳는다. 표적제재는 책임 있는 개인·단체를 겨냥하지만 지정 절차의 적법절차·재산권 문제를 낳는다. 제재 성공률에 관해서는 허프바우어 등의 낙관적 평가와 페이프의 회의론이 대립한다.

대립 구도

포괄적 제재(경제적 타격·인도적 비용) ↔ 표적제재(정밀성·절차적 권리 문제)

쓰이는 기출 2022 학제 II 제1·3문, 2019 학제 II 제1문

답안 속 문장

“갑국 제재의 문제는 표적을 잘못 맞히는 데 있고, 을국 제재의 문제는 연대를 유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제재의 후생손실: 전도된 무역자유화

제재로 수입이 막히면 무역의 이익이 사라진다. 소국의 후생 손실은 국제가격과 자급가격 사이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드는 삼각형이며, 선형 모형에서 $\Delta W = 1/2(P_A - P_w)M$ 이다. 수요가 가격에 둔감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손실이 크므로 제재 효과가 크다. 기술 이전 금지의 공급곡선을 위로 이동시켜 생산자까지 타격한다.

대립 구도

제재 효과의 극대화(비탄력적 재화) ↔ 인도적 고려(생필품)

쓰이는 기출 2022 학제 II 제1문 2)·제2문 1)

답안 속 문장

“a가 작은 시장, 즉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재화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급 가격차별

시장을 분리할 수 있는 독점기업은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공통의 한계비용과 같게 한다. $MR = P(1 - 1/\varepsilon)$ 이므로 $P_A(1 - 1/\varepsilon_A) = P_B(1 - 1/\varepsilon_B)$ 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시장에서 가격이 높다. 차익거래가 불가능해야 한다. 가격차별은 착취적이지만 단일가격에서 배제될 저소득 시장을 공급하여 후생을 늘릴 수도 있다. 국제통상에서는 덤핑과 같은 구조이다.

대립 구도

소비자 잉여의 흡수 ↔ 시장 확대와 접근성 향상

쓰이는 기출 2023 학제Ⅱ 제2문 2)

답안 속 문장

“같은 영화를 더 좋아하고 지불 능력이 큰 소비자일수록 더 비싸게 지불한다. 그러나 가격차별 덕분에 B국 소비자는 영화를 볼 수 있다.”

교역조건과 상대공급·상대수요(RS·RD)

두 재화 모형에서 수출재의 상대가격이 교역조건이다. 대국의 수입관세는 국내에서 수입재의 상대가격을 높여 생산을 수입재 쪽으로, 소비를 수출재 쪽으로 옮기므로 세계 상대가격(교역조건)을 개선한다. 수출보조금은 반대로 수출재의 세계 상대가격을 떨어뜨려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후생을 분명히 줄인다.

대립 구도

수입관세(교역조건 개선 가능) ↔ 수출보조금(교역조건 악화)

쓰이는 기출 2023 학제Ⅱ 제3문 1), 2025 제3문 1)

답안 속 문장

“같은 보호무역정책이라도 대국의 수입관세는 교역조건을 개선할 수 있지만 수출보조금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6-2 기출 풀이

2016 학제통합논술 II

특혜관세, 전략적 무역정책과 무역구제

총 100점 · 제1문 30점, 제2문 30점, 제3문 40점 · 국제정치(패권) + 국제법(GATT 제1·6·19조, 허용조항) + 경제(게임·독점과 관세)

〈제시문 1〉

일반특혜관세제도를 통한 특혜공여는 정부 간 원조나 다른 기타 원조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자극하여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도국을 위한 우호적인 시장접근(preferential market access) 제공에 대한 논의는 1963년 GATT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964년 제1차 UNCTAD 총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의를 거쳐 1968년 제2차 UNCTAD 총회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채택되었다. 또한 GATT에서는 1966년 ‘제4부: 무역 및 개발’이 신설된 이후, 1979년에 이르러 ‘Decision of 28 Nov. 1979 (L/4903) :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가 채택되었다.

〈제시문 2〉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Decision of 28 November 1979 (L/4903)

Following negoti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CONTRACTING PARTIES decide as follow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 of the GATT, contracting parties may accord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without according such treatment to other contracting parties.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pply to the following:
 - 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ccorded by 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to products originating in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제시문 3〉

1983년 미국의 모터사이클 제조업체인 Harley-Davidson은 누적된 생산성 악화와 일본 회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큰 적자를 겪고 있었다. 1980년대 초반, 일본 회사인 Honda, Kawasaki, Suzuki, Yamaha가 가격전쟁에 돌입한 후, 미국 시장에서 미국산 중대형 모터사이클의 재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Harley-Davidson은 일본산 중대형 모터사이클의 수입 증가에 직면하여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중대형 모터사이클 산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승인하여 관세가 부과되었다.

〈제시문 4〉

반덤핑관세는 수입국에 의해 부과되지만, 외국기업의 수출가격 조정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의 자국 내 가격이 10달러이고 수입국 시장으로의 수출가격이 6달러라고 가정하면, 수입국은 가격차 4달러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만일 외국기업이 6달러가 아닌 8달러로 수출가격을 책정한다면, 수입국은 가격차 2달러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는 외국기업이 자국 내 가격과 동일하게 수출가격을 10달러로 책정한다면, 반덤핑관세를 완전히 회피할 수도 있다.

〈제시문 5〉

A국의 X기업과 B국의 Y기업만이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 그중 한 기업만이 이 재화를 생산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지만, 두 기업이 모두 생산하면 두 기업 모두 손해를 본다. X기업과 Y기업은 이 재화를 생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 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X기업과 Y기업의 보수행렬표이다. 각 기업이 단독으로 생산하면 20만원의 이득을 얻지만, 두 기업이 함께 생산하면 두 기업 모두 10만원씩 손해를 본다.

〈X기업과 Y기업의 보수행렬표〉

		Y기업	
		생산	생산하지 않음
X기업	생산	-10, -10	20, 0
	생산하지 않음	0, 20	0, 0

〈제시문 6〉

무역자유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치열한 무역경쟁으로 인해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중상주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은 ‘근린공핍화정책(beggar-thy-neighbour)’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상주의 정책 중 대표적인 예가 ‘전략적 무역정책’이다. 이는 과점적 국제시장에서 자국 산업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다른 중상주의 정책은 외국기업이 자국 내 판매가격보다 낮게 상품을 수출하는 데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이다.

〈문제〉

제1문.

1) 1960~70년대 미국은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도입과 제도화를 용인한 반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전략적 무역정책을 이전보다 더 많이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시문 1〉과 〈제시문 6〉을 참고하여, 두 시기 간 미국의 무역정책이 변화한 이유를 국제정치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15점)

2)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고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가 WTO 법체계 하에서 GATT 제1조의 예외로 인정되는 의의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오. (15점)

제2문.

1) (1) 〈제시문 5〉의 보수행렬표의 상황에서 Y기업만이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국 정부가 〈제시문 6〉에서 언급된 전략적 무역정책 수단으로 X기업에 15만달러의 생산보조금을 지급할 때, 새로운 보수행렬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국의 해당 재화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5점)

(2) 이후 B국 정부도 Y기업에 15만달러의 생산보조금을 지급할 때, 새로운 보수행렬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국의 해당 재화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5점)

2) 〈제시문 6〉에서 언급된 전략적 무역정책 수단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측면에서 각각 논하시오. (20점)

제3문.

1)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참고하여, 수입국이 WTO 법체계 하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2)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참고하여, 수입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를 소비자 잉여, 관세수입, 교역조건 이득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단, 두 경우 모두 관세는 t 만큼 부과되며, 외국기업은 독점기업으로 한계비용이 일정하고 반덤핑관세를 완전히 회피한다고 가정한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를 패권의 성쇠로 설명하고(제1문 1)), 최혜국대우의 예외인 GSP의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1)2)), 보조금 게임(제2문)과 두 무역구제 조치의 요건·효과 비교(제3문)로 이어진다.

연결 개념 패권안정이론, 허용조항(L/4903), GATT 제4부, EC 특혜관세 사건, 이윤 이전과 보조금 전쟁, 셰이프가드협정 대 반덤핑협정, 독점기업의 관세 흡수.

함정 ① 제2문 1)(1)에서 보조금 전 상황(Y만 생산)에서 출발하여 균형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는 답안. ② 국민후생에서 보조금 비용을 빼지 않는 답안. ③ 제3문 2)에서 반덤핑관세가 회피되었는데도 관세수입을 계산하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 1960~70년대와 1980년대 이후의 정책 변화 2) GSP의 의의와 법적 근거	패권안정이론, 신무역이론, GATT 제1조, 허용조항 제1항·제2항 (a)	1,400~1,800자
2	1) 보조금 후 보수행렬과 생산 2) 보조금의 국제·국내정치적 결과	(35, 0) 균형 → (5, 5) 균형, 국민후생 20 → -10, 올슨, 보조금협정	1,400~1,800자
3	1) 두 조치의 법적 요건 차이와 이유 2) 소비자 잉여·관세수입·교역조건 비교	GATT 제19조·셰이프가드협정, GATT 제6조·반덤핑협정, 선형수요 독점의 $t/2$ 흡수	1,800~2,400자

예시답안 — 2016 학제통합논술 II 제1문**1) 미국 무역정책 변화의 국제정치적 이유**

1960~70년대 미국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용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권국의 지위이다. 패권안정이론에 따르면 압도적 경제력을 가진 패권국은 개방적 무역질서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며,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 특혜는 미국 시장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둘째, 냉전 경쟁이다. 탈식민으로 늘어난 신생국들이 UNCTAD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개발에 유리한 국제경제질서를 요구하자, 미국은 이들을 서방 진영에 묶어 두기 위해 시장 접근이라는 혜택을 제공했다. <제시문 1> 처럼 GSP가 원조보다 효과적인 개발 수단으로 평가된 것도 정당화의 근거였다. 셋째, 개도국 문제를 GATT 제4부(무역과 개발)와 1979년 결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다자체제의 정당성을 높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전략적 무역정책을 더 많이 채택한 이유는 첫째, 패권의 상대적 쇠퇴이다. 일본과 서유럽의 추격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지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았다. 패권국이 공공재 공급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무임승차자에게 부담을 요구하고 자국 이익을 앞세운다. 둘째, 상대적 이익의 중시이다. 반도체, 항공기처럼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가 큰 과점 산업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선점한 국가가 초과이윤과 기술 우위를 가져가므로, 산업 경쟁이 국가 간 권력 경쟁이 되었다. <제시문 6>의 근린공평화적 중상주의 정책이 확산된 배경이다. 셋째, 국내 정치의 압력이다. 수입 경쟁에 시달린 산업과 노동이 보호를 요구했고(<제시문 3>의 할리데이비슨 사례), 의회가 행정부에 공정무역을 압박했다. 넷째, 신무역이론은 보조금으로 외국 기업의 이윤을 자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했다. 요컨대 미국의 정책 변화는 자유주의 패권의 후원자에서 상대적 이익을 다투는 경쟁자로 위치가 바뀐 데서 비롯되었다.

2) GSP가 GATT 제1조의 예외로 인정되는 의의와 법적 근거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은 어느 회원국에 부여한 관세상 혜택을 모든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개도국 상품에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GSP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법적 근거는 〈제시문 2〉의 1979년 11월 28일 체약국단 결정(L/4903), 이른바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이다. 제1항은 GATT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이 개도국에게 다른 체약국에 부여하지 않는 차등적이고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 (a)는 그 대상으로 GSP에 따라 선진 체약국이 개도국 원산 상품에 부여하는 특혜관세를 명시한다. 이전에는 1971년의 한시적 의무면제(waiver)에 의존했으나, 허용조항으로 GSP는 영구적 법적 근거를 얻었다. WTO 출범 시 1994년 GATT는 체약국단의 결정을 그 일부로 포함하였으므로 허용조항은 WTO 법체계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의의는 첫째,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개도국 특별·차등 대우’를 다자무역체제 안에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발전 수준이 다른 국가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둘째, GATT 제4부가 선진국이 개도국에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 원칙과 함께, 무역을 개발의 수단으로 삼는 규범적 기반이 되었다. 셋째, 다만 특혜는 선진국의 재량적 부여이므로 수혜 대상과 품목의 선정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WTO 상소기구는 EC 특혜관세 사건(2004)에서 같은 상황에 있는 개도국들에게는 동일한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재량을 제한하였다.

1) 패권안정이론(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정책 전환), 2) 최혜국대우(GATT 제1조)의 예외로서 1979년 허용조항(L/4903)

예시답안 — 2016 학제통합논술 II 제2문

1) (1) A국만 X기업에 보조금 15를 지급하는 경우

X기업이 생산할 때의 보수에 15가 더해진다.

X \ Y	생산	생산하지 않음
생산	(5, -10)	(35, 0)
생산하지 않음	(0, 20)	(0, 0)

X기업은 Y가 생산하면 생산($5 > 0$), Y가 생산하지 않아도 생산($35 > 0$)하므로 생산이 강우월전략이 된다. 이를 아는 Y기업은 생산하면 -10, 생산하지 않으면 0이므로 생산을 포기한다. 유일한 내쉬균형은 (X 생산, Y 불생산)이다. 처음에는 Y기업만 생산하고 있었지만 보조금으로 X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공약이 신빙성을 얻어 Y기업이 퇴출된다. A국은 기업 이윤 35에서 보조금 15를 뺀 20의 국민후생을 얻고, B국의 이윤은 20에서 0이 된다. 보조금이 외국 기업의 독점이윤을 자국으로 옮기는 이윤 이전 효과이다.

1) (2) 이후 B국도 Y기업에 보조금 15를 지급하는 경우

X \ Y	생산	생산하지 않음
생산	(5, 5)	(35, 0)
생산하지 않음	(0, 35)	(0, 0)

이제 두 기업 모두 생산이 강우월전략이므로 균형은 (생산, 생산)이며 보수는 (5, 5)이다. 두 기업이 모두 생산하지만, 각국의 국민후생은 기업 이윤 5에서 보조금 15를 뺀 -10이다. 보조금이 없던 원래 상황(한 기업만 생산해 20)보다 양국 모두 나빠진다. 보조금 경쟁은 양국을 죄수의 딜레마에 빠뜨리고, 이득은 늘어난 공급으로 가격이 내려간 제3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2) 보조금 지급의 결과: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국제정치 측면에서 첫째, 보복과 보조금 경쟁이 일어난다. 전략적 무역정책은 상대의 이윤을 빼앗는 근린 공핍화 정책이므로 상대국은 1)의 (2)처럼 맞보조금으로 대응하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소모전이 된다. 항공기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장기 분쟁이 그 예이다. 둘째, 무역분쟁이 제도화된다. WTO 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와 분쟁해결을 허용하므로, 보조금은 법적 분쟁으로 번진다. 셋째, 현실주의적으로는 첨단산업의 선점이 기술력과 군사력으로 연결되므로 상대적 이익을 둘러싼 경쟁이 안보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자유주의적으로는 보조금 경쟁의 비효율을 인식한 국가들이 다자 규범으로 보조금을 규율하려는 협력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국내정치 측면에서 첫째, 이익집단의 지대추구가 늘어난다. 보조금의 이익은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의 납세자에게 분산되므로, 조직된 산업은 보조금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한다(울슨의 집단행동 논리). 둘째, 정부가 승자를 고를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1)의 분석은 정부가 보수 구조를 정확히 안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어느 산업이 초과이윤을 낳을지 알기 어렵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산업이 선택될 위험이 크다. 셋째, 재정 부담과 분배의 문제이다. 상대국이 보복하면 보조금은 국민후생을 오히려 줄이며, 다른 산업과 소비자는 아무 이익 없이 비용만 부담한다. 넷째, 한 번 도입된 보조금은 수혜 집단의 반대로 폐지하기 어려워 경로의존적으로 지속된다. 결국 전략적 무역정책은 이론상 이윤 이전의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의 보복과 국내 정치의 왜곡을 고려하면 실제 성과는 불확실하다.

보조금 15: X만 → 균형 (생산, 불생산)=(35, 0) / 양국 → (생산, 생산)=(5, 5)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16 학제통합논술 II 제3문

1)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관세의 법적 요건과 그 차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GATT 제19조와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한다. 요건은 첫째, 예견하지 못한 사태 전개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둘째, 그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수입 증가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조치는 원칙적으로 출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수입에 적용해야 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범위와 기간에 한정되며(원칙적으로 4년, 연장 포함 최대 8년), 영향을 받는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상대국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시문 3〉의 할리데이비스 사례는 일본산 수입 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이다.

반덤핑관세는 GATT 제6조와 반덤핑협정에 근거한다. 요건은 첫째, 덤핑이 존재해야 한다. 즉 수출가격이 수출국 국내 판매가격 등 정상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둘째,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관세는 특정 수출자에게 부과되고, 덤핑마진을 넘을 수 없으며(〈제시문 4〉의 가격차 4달러 또는 2달러), 원칙적으로 5년 후 재검토된다. 상대국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다.

차이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 즉 외국 기업의 정상적인 경쟁 우위로 인한 수입 증가에 대한 긴급 구제이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심각한’ 피해라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차별 없이 적용하며, 보상을 통해 양허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반덤핑관세는 수출가격의 가격차별이라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이므로 ‘실질적’ 피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으로 충분하고, 덤핑한 수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부과하며 보상이 필요 없다. 이 차이 때문에 수입국은 요건이 덜 엄격한 반덤핑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제시문 6〉처럼 반덤핑은 보호주의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다.

2) 두 조치의 경제적 효과 비교

외국기업은 한계비용 c 가 일정한 독점기업이고, 수입국 시장의 수요가 선형($P = a - bQ$)이라고 하자. 세이프가드 관세 t 를 부과하면 외국기업의 실효 한계비용이 $c + t$ 가 된다. 이윤극대화 가격은 $\frac{a+c}{2}$ 에서 $\frac{a+c+t}{2}$ 로 오르므로, 소비자가격은 $\frac{t}{2}$ 만큼 오르고 외국기업이 받는 순가격은 $\frac{t}{2}$ 만큼 떨어진다.

- 소비자 잉여: 가격이 $\frac{t}{2}$ 올라 감소한다.
- 관세수입: 줄어든 수입량에 t 를 곱한 만큼 수입국 정부가 얻는다.
- 교역조건: 수입국이 외국에 지불하는 가격이 $\frac{t}{2}$ 하락하므로 교역조건 이득이 생긴다. 관세의 절반을 외국 독점기업이 부담하는 것이다.

반덤핑관세는 외국기업이 이를 완전히 회피한다고 가정했으므로, 외국기업은 수출가격을 덤핑마진만큼 올려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제시문 4〉). 관세 t 에 해당하는 가격차를 없애려면 수출가격을 t 만큼 올려야 한다.

- 소비자 잉여: 가격이 t 만큼 올라 세이프가드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 관세수입: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0이다.
- 교역조건: 수입국이 외국에 지불하는 가격이 올라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가격 인상분은 외국기업의 수입으로 돌아간다.

구분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완전 회피)
소비자 잉여	감소(가격 $+t/2$)	더 크게 감소(가격 $+t$)
관세수입	발생	없음
교역조건	개선(수출가격 $-t/2$)	악화(수출가격 $+t$)

결론적으로 수입국의 국민후생 측면에서는 반덤핑관세가 세이프가드보다 불리하다. 반덤핑관세의 위협은 외국 독점기업이 가격을 올리게 하는 담합 유도 장치처럼 작동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외국기업의 이윤으로 옮긴다. 국내 생산자는 두 경우 모두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지만, 그 비용은 반덤핑의 경우가 더 크다.

세이프가드: 공정무역에 대한 긴급구제(심각한 피해, 보상) / 반덤핑: 불공정 가격에 대한 구제(실질적 피해). 2)에서 선형수요라면 독점기업은 관세 t 의 절반을 흡수

2020 학제통합논술 I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와 반덤핑

총 100점 · 각 25점 · 경제(관세 후생·가격 조정) + 국제법(반덤핑협정·가입의정서) + 국제정치(중상주의)

〈제시문 1〉

미국은 제27차 미·중 합동상무위원회를 통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 국내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2016년 3월에 미국제조업연합회, PET 레진협회, 알루미늄협회, 미국섬유제조협회, 국제산업섬유협회, 전국섬유협회, 미국산업섬유연구소, 미국철강협회 등 8개 제조업 단체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덤핑 조치를 지속할 경우, 시장경제지위가 부여된 국가에 부과되는 것보다 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외자기업들도 고율의 덤핑관세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외자기업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계속해서 미룰 경우,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제시문 2〉

(1) WTO 출범 당시에는 회원국이 모두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국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비시장경제지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비시장경제지위에 관한 문제들이 부각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국유기업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시장경제지위 또는 비시장경제지위는 무역구제조치, 특히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WTO 규정에서는 시장경제지위와 비시장경제지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미국은 통상법에서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조사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1988년에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을 통해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였다. 미국 통상법에서 ‘비시장경제국가’라 함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가격

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상품유통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한다.

(3) 반덤핑조치가 적용될 경우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는 대상 국가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덤핑물품의 수출국이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덤핑마진의 산정기준이 달라지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반덤핑관세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제시문 3〉

(1) From eighteenth-century mercantilists to present-day protectionists, advocates of trade protection have desired to achieve certain political, economic, and other objectives more than the economic benefits for the entire society of free trade. However, the specific objectives sought by protectionists have varied over time and space. Economic nationalists regard trade protection as a tool of state creation and statecraft; for example, a trade surplus is considered beneficial for national security... In developed economies, proponents of trade protection reject free trade and other forms of globalization as threats to jobs, wages, and domestic social welfare; organized labor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ncreasingly advocates protection against imports from low-wage economies with inadequate labor standards.

(2) Given continued mercantilist activities, including subsidization, industrial planning, currency misalignment policies, overcapacity and state-owned enterprises, we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he longstanding policy of treating China as a non-market economy... Granting China market economy status would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our trade enforcement policies used to combat unfairly priced Chinese imports. It is vital that these policies continue to prevent domestic producers from being driven out of

business and workers from being laid off due to continued Chinese central planning and non-market policies.

(3) Some WTO members use comparable price of the like product in a third country to calculate the value of Chinese imports. That has imposed an extra financial burden on Chinese enterprises aspiring to “go global”. Fearing that Beijing’s growing influence over global trade may bode ill for their employment and industrial recoveri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till refuse to grant China market economy status. They have sought to intentionally play up excessive output of steel to contain China’s rise. Apart from simultaneously launching anti-dumping and anti-subsidy investigations against Chinese enterprises on a regular basis since 2006, Washington has more than once used market economy status as a bargaining chip in exchange for Beijing’s concessions in trade negotiations.

2)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 및 전략을 중상주의 시각에서 논하시오. (15점)

제4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경우와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각각 상정하여, 국제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통상법적 측면에서 WTO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25점)

〈문제〉

제1문. 제시문을 참고하여 1), 2)의 물음에 그래프를 이용하여 답하시오. (총 25점)

1)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고하여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후생 변화를 생산자 및 소비자 잉여, 관세수입 변화로 구분하여 논하시오. (10점)

2) 〈제시문 3〉을 참고하여 시장경제지위 인정 이후 잔존하는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 중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수출가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미국의 생산자 및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제시문 2〉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WTO협정에 따른 반덤핑관세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WTO협정상 반덤핑조치 요건을 설명하고, 시장경제지위와 비시장경제지위를 가진 국가의 상품에 대한 덤핑판정의 차이를 덤핑판정 요건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제3문.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참고하여 1), 2)의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1) 중국의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이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시장경제지위라는 하나의 쟁점을 후생 분석(제1문), WTO법상 덤핑 판정(제2문), 중상주의 해석(제3문), 인정·불인정 시나리오의 종합 평가(제4문)로 분석하게 했다. 영문 제시문 (2)·(3)은 미국 업계와 중국 측의 상반된 시각이다.

연결 개념 관세 인하의 후생 면적, 가격약속과 교역조건, 반덤핑 3요건(덤핑·피해·인과관계), GATT 제6조 제1항 주해, 가입의정서 제15조, 경제민주주의.

합정 ①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반덤핑관세의 ‘완전 철폐’로 단정하는 답안(관세율 인하). ② 제2문에서 일반 요건만 쓰고 정상가격 산정의 차이를 놓치는 답안. ③ 제4문에서 세 측면 중 하나를 빠뜨리는 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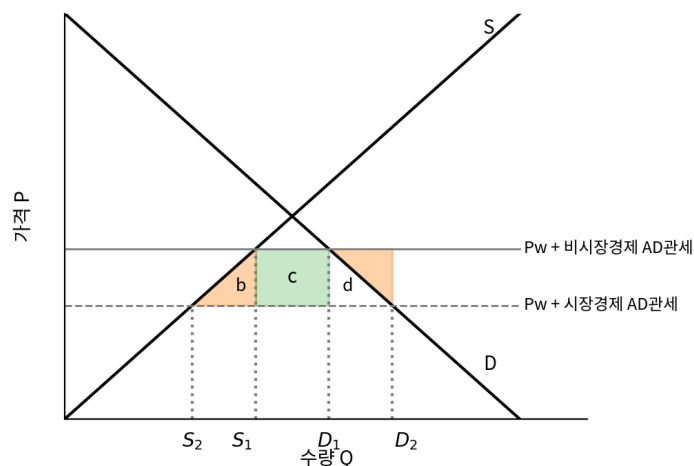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 인정 시 잉여·관세수입 변화 2) 수출가격 조정과 장·단기 잉여	관세 인하 그래프(a, b, c, d), 가격약속, 교역조건 악화, 상계관세·생산 이전	1,100~1,500자
2	반덤핑 요건과 시장/비시장경제의 판정 차이	반덤핑협정 제2·3조, GATT 제6조 주해, 가입의정서 제15조 (a)·(d)	1,100~1,500자
3	1) 중국 중상주의와 안보 2) 미국의 입장과 전략	경제민주주의, 상대적 이익, 협상 카드	1,100~1,500자
4	인정/불인정 × 무역·투자, 국제정치, WTO 체제	2×3 비교표	1,100~1,500자

예시답안 — 2020 학제통합논술 I 제1문

1)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따른 미국의 후생 변화

〈제시문 1〉과 〈제시문 2〉(3)에 따르면 비시장경제국가에는 제3국 가격 등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므로 덤핑마진과 반덤핑관세가 높아진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면 중국의 실제 국내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반덤핑관세율이 낮아진다. 이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낸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공급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단순화하면 다음 그래프로 분석할 수 있다.



국내가격이 ‘Pw + 비시장경제 반덤핑관세’에서 ‘Pw + 시장경제 반덤핑관세’로 낮아진다. 국내 생산은 S_1 에서 S_2 로 줄고, 소비는 D_1 에서 D_2 로 늘며, 수입이 증가한다.

- 소비자 잉여: 두 가격선 사이 수요곡선 왼쪽 면적($a + b + c + d$)만큼 증가한다.

- 생산자 잉여: 두 가격선 사이 공급곡선 왼쪽 면적(a)만큼 감소한다. 철강, 알루미늄, 섬유 등 제조업 단체가 반대 성명을 낸 이유이다.
- 관세수입: 기존 관세수입 중 c 가 사라지고, 낮아진 세율에 늘어난 수입량을 곱한 만큼만 남는다. 세율 인하 효과가 물량 증가 효과보다 크면 관세수입은 감소한다.
- 순후생: 생산 왜곡(b)과 소비 왜곡(d)이 줄어 사회 전체 후생은 증가한다.

2) 잔존 반덤핑관세 회피를 위한 수출가격 조정과 미국 잉여의 장·단기 변화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아도 여전히 덤핑마진이 있으면 반덤핑관세가 남는다. 중국 기업은 이를 피하려고 대미 수출가격을 중국 국내가격 수준까지 올리거나, 미국 당국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수출하겠다는 가격 약속을 맺을 것이다. <제시문 3> (3)이 말하는 중국 기업의 추가 재정 부담을 피하는 방법이다.

단기에는 수입가격이 올라 미국 시장가격이 관세를 매겼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른다. 미국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국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그러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관세수입은 사라지고, 그만큼이 가격 인상분으로 중국 기업에 돌아간다. 미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같은 가격 수준에서 관세를 매길 때보다 미국 전체 후생은 더 작다.

장기에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하다. 첫째, <제시문 3> (2)·(3)처럼 미국이 반덤핑 대신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등 다른 무역구제 수단을 동원하고 시장경제지위를 협상 카드로 쓰는 경우이다. 이때는 수입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생산자 잉여는 보호되지만 소비자 잉여의 손실이 지속되며,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관세수입이 일부 회복된다. 둘째, 중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옮기고(<제시문 1>) 제3국 공급자와의 경쟁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미국 시장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어느 경로든 장기적으로 미국의 생산자 보호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보호 수단이 관세에서 가격 인상으로 바뀔수록 그 비용이 국외로 유출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시장경제지위 인정 = 반덤핑관세를 인하와 같은 효과(그래프의 상단 가격선 → 하단 가격선). 미국을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수용자로 단순화

예시답안 — 2020 학제통합논술 I 제2문

1. WTO협정상 반덤핑조치의 요건

GATT 제6조와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수입국은 다음 요건이 충족될 때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첫째, 덤핑의 존재이다. 수출가격이 정상가격, 즉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통상적 거래로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국내 판매가 없거나 비교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3국 수출가격이나 생산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쓴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가 덤핑 마진이다.

둘째, 피해의 존재이다. 덤핑 수입으로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어야 한다. 피해는 수입 물량, 국내 가격에 대한 영향, 국내 산업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토로 판단한다.

셋째, 인과관계이다. 덤핑 수입이 피해를 초래했어야 하며,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덤핑 수입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넷째, 절차적 요건이다. 국내 산업의 신청 등 적법한 조사 개시, 이해관계자의 증거 제출 기회 보장을 거쳐야 하며, 관세는 덤핑마진을 넘을 수 없다.

2. 시장경제지위와 비시장경제지위에 따른 덤핑판정의 차이

차이는 첫째 요건, 특히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생긴다. 시장경제국가의 상품은 그 국가의 실제 국내 판매 가격이나 실제 생산비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비시장경제국가에서는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므로 국내 가격과 비용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GATT 제6조 제1항의 주해는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고 국내 가격을 정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 가격과의 엄격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a)는 중국 생산자가 해당 산업에 시장경제 조건이 지배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이지 못하면 수입국이 중국의 국내 가격이나 비용과의 엄격한 비교에 기초하지 않는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입국은 〈제시문 3〉 (3)처럼 제3국의 동종 상품 가격이나 비용(대체국 방식)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대체국은 대개 중국보다 비용이 높으므로 정상가격이 높아지고, 덤핑마진과 반덤핑관세가 커진다. 또 입증책임이 사실상 중국 생산자에게 지워진다.

3. 중국 주장의 평가

가입의정서 제15조 (d)는 위 (a)항 (ii)의 대체국 방식에 관한 규정이 가입일로부터 15년 후(2016년 12월)에 만료된다고 정한다. 중국은 이 시점 이후 대체국 방식을 쓰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시장경제국가와 같은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등은 〈제시문 2〉 (1)처럼 WTO 규정이 시장경제지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만료되는 것은 특정 규정일 뿐 시장경제지위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시장이 왜곡된 경우에는 반덤핑협정상 국내 가격이나 비용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 2〉 (2)의 미국 통상법은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국가를 비시장경제국가로 정의하여 국내법으로 차별적 절차를 유지한다.

결국 중국이 받는 불이익은 덤핑마진 산정 방식에서 나오며, 그 정당성은 가입의정서 제15조의 해석에 달려 있다. 이 문제는 국유기업과 보조금으로 대표되는 국가자본주의를 기존 WTO 규범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구조적 공백을 보여준다.

GATT 제6조와 반덤핑협정 제2·3조. 비시장경제: GATT 제6조 제1항 주해, 중국 가입의정서 제15조 (a)(ii)와 (d)

예시답안 — 2020 학제통합논술 I 제3문

1) 중국의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상주의(경제민족주의)는 국가가 부를 권력의 기초로 보고, 무역 흑자와 산업 육성을 통해 국력을 키운다고 본다. 〈제시문 3〉 (1)은 경제민족주의자에게 무역보호가 국가 건설과 국정 운영의 수단이며 무역 흑자가 국가안보에 이롭다고 설명한다.

긍정적 영향으로 첫째,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는 경제적 위기에 대한 완충력과 대외 영향력을 키운다. 둘째, 보조금, 산업계획, 국유기업 등을 통한 제조업 육성(〈제시문 3〉 (2))은 철강, 조선, 전자 등 군수와 연결되는 산업 기반과 기술을 확보하게 한다. 셋째, 세계 공급망에서의 비중이 커지면 상대국이 중국에 의존하게 되어 외교적 지렛대가 생긴다.

부정적 영향도 있다. 첫째, 수출 의존이 커질수록 상대국 시장 접근에 취약해진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와 시장경제지위 거부 등 중국의 성장을 제약하는 수단이 된다. 둘째, 과잉생산과 흑자는 주요국의 경계를 불러 견제와 균형을 낳는다(〈제시문 3〉 (3)의 “중국의 부상 억제”). 경제적 상대 이익의 추구가 안보 딜레마처럼 상대의 대응을 불러 중국의 안보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킨다. 셋째, 외자기업이 생산기지를 인도와 동남아로 옮기면(〈제시문 1〉) 중국의 산업 기반과 고용이 약해질 수 있다. 결국 중상주의는 단기적으로 국력을 키우지만 장기적으로 견제와 고립의 위험을 키운다.

2) 시장경제지위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전략: 중상주의 시각

중상주의 시각에서 미국의 시장경제지위 거부는 자유무역의 원칙 문제가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한 권력 정치이다.

첫째, 자국 산업과 고용의 보호이다. 〈제시문 3〉 (2)는 시장경제지위 부여가 무역구제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려 국내 생산자가 퇴출되고 노동자가 해고될 것이라고 말한다. 비시장경제 취급은 높은 반덤핑관세를 유지하는 장치이며, 〈제시문 1〉의 8개 제조업 단체와 조직된 노동의 요구에 부응한다.

둘째, 상대적 이익과 패권 유지이다. 중상주의는 국제경제를 제로섬으로 본다. 〈제시문 3〉 (3)에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자국의 고용과 산업 회복이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해 철강 과잉생산을 부각하며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미국에게 시장경제지위의 거부는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과 기술 추격을 늦추어 상대적 국력 격차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셋째, 협상 카드로서의 활용이다. 미국은 2006년 이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정기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시장경제지위를 여러 차례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는 카드로 사용했다(〈제시문 3〉 (3)). 지위의 부여 여부를 미국 국내법의 기준에 묶어 둔 것도(〈제시문 1〉) 결정권을 미국이 쥐려는 전략이다.

넷째, 경제 체제를 둘러싼 경쟁이다.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중심의 중국 모델을 시장경제로 인정하면 국가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높여 주므로, 미국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제경제 규칙의 주도권을 지키려 한다.

이처럼 미국의 입장은 중상주의가 비판하는 상대국의 중상주의에 중상주의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지만, 보복과 다자체제의 약화라는 비용을 동반한다.

중상주의: 부는 권력의 수단이고 국제경제는 제로섬. 2)는 시장경제지위를 '협상 카드'이자 '견제 수단'으로 읽는 것이 핵심

예시답안 — 2020 학제통합논술 I 제4문

주요 선진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세 측면의 영향을 비교한다.

1. 인정하는 경우

국제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반덤핑관세가 낮아져 중국산 제품의 수출이 늘고, 수입국 소비자와 중국산 중간재를 쓰는 기업은 이익을 얻는다(제1문 1)). 반면 수입경쟁 산업은 위축된다. 고율 관세를 피해 인도나 동남아로 옮기려던 외자기업은 중국에 남을 유인이 커지므로(〈제시문 1〉)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유지된다. 다만 잔존 덤핑마진을 피하기 위한 가격 인상(제1문 2))으로 일부 이익은 중국 기업에 돌아간다.

국제정치 측면에서 중국은 국제경제 규칙의 정당한 일원으로 인정받아 위상과 협상력이 높아지고,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정당성도 강화된다. 미중 간 통상 마찰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제조업과 노동계의 반발로 정치적 비용이 생긴다. 또 시장경제지위라는 협상 카드가 사라져 선진국의 대중 지렛대가 약해진다.

WTO 체제 측면에서 가입의정서 제15조의 해석 분쟁이 해소되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회원국 간 차별적 대우가 줄어 다자주의의 원칙이 강화된다. 그러나 국유기업과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다룰 수단이 약해져 무역구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보조금과 국유기업에 관한 새 규범 협상의 필요성이 커진다.

2.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국제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높은 반덤핑관세가 유지되어 중국산 수입이 억제되고 수입국 생산자는 보호받지만 소비자와 수요 산업은 비용을 부담한다. 외자기업은 중국에서 인도와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등 공급망이 재편되고, 무역이 중국에서 제3국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고 전환 비용이 생긴다.

국제정치 측면에서 미중 간 통상 갈등이 지속되고 보복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은 이를 부상 억제
로 인식하여(〈제시문 3〉 (3)) 대응 수단을 강화하고, 경제 갈등이 전략적 경쟁으로 확대된다. 선진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지렛대로 중국의 개혁을 압박할 수 있지만, 중국이 지역 경제협력과 대체 제도로 영향력
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WTO 체제 측면에서 중국은 가입의정서 제15조 (d)의 만료를 근거로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것이고, 판
정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 주요국이 국내법 기준으로 일방적 조치를 지
속하면 규칙 기반 체제의 권위가 약해지고, 회원국 간 차별이 고착된다. 반면 WTO 규범이 시장 왜곡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로 삼아 규범을 현대화하는 개혁 논의가 촉진될 수도 있다.

3. 종합

측면	인정	불인정
무역·투자	교역 확대, 소비자 이익, 중국 중심 공급망 유지	보호와 무역전환, 공급망 이전
국제정치	중국 위상 강화, 마찰 완화, 지렛대 상실	갈등 지속, 견제와 대항의 강화
WTO 체제	법적 안정, 무역구제 실효성 약화	분쟁과 일방주의, 규범 개혁 압력

어느 선택이든 비용이 있다. 시장경제지위 문제의 근본 해결은 지위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국유기업, 산
업보조금, 과잉생산을 규율하는 새로운 다자 규범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인정/불인정 × (무역·투자, 국제정치, WTO 체제)의 2×3 구조로 빠짐없이 쓴다

2022 학제통합논술 II

경제제재: 근거, 후생, 표적제재와 인권

총 100점 · 제1문 30점, 제2문 35점, 제3문 35점 · 국제법(헌장 제7장·인권법) + 경제(수입 금지의 후생) + 국제정치(제재의 효과)

〈제시문 1〉

국제법상 ‘제재(sanction)’의 개념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채택하는 조치(measures)를 포함한다. 유엔 헌장 제7장에 의한 조치에 경제적 조치와 무력적 조치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는 경제적 제재와 무력적 제재로 구분된다. 경제적 제재는 다시 포괄적 제재와 표적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경제제재 중 국가에 대한 전면적 경제봉쇄 등 포괄적 제재는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만 실제 제재를 받아야 할 지도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포괄적 제재보다는 제재를 받아야 할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1267호를 통해 알 카에다 및 탈레반 구성원, 그리고 이들과 관련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자금 및 금융자산 동결, 무기금수, 여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1518호를 통해 이라크의 특정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무기금수, 여행금지 등 표적제재를, 이후 2011년 결의 제1970호를 통해 카다피 정권과 핵심 지배층에 대해 자산동결, 여행금지, 무기금수, 항공기 운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표적제재와 관련하여 많은 법적 및 국제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표적제재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재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재 결과가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실수가 있는 경우 그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시문 2〉

경제제재는 대상 국가의 대내외적 정책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타 국가 혹은 국가들이 시행하는 일련의 경제적 강제조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제재는 테러·마약 등 국제적 범죄 방지, 영토분쟁 해결,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체제전복,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기타 국제분쟁 해결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하는 통상 및 재정 관계의 철회로 규정되기도 한다. 경제제재의 방식으로 원조와 경제협력 중단, 수출입 제한 혹은 금지, 기술 이전 금지, 경제봉쇄 등이 사용되고 있다.

허프바우어(G. Hufbauer) 등은 1914년부터 1990년까지 관찰된 전체 115개 제재사례 중 40개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실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반해 페이프(R. Pape) 등은 같은 사례를 재분석하여 실제 성공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국내 혹은 대외적 요인, 제재국과 제재대상국의 정치·경제적 특징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제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재국의 비용이 클수록, 국제기구가 관여할수록 제3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고, 제재대상국의 정치 체도가 민주주의에 가까울수록, 제재국과 제재대상국의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제재의 성공확률이 높아진다고 분석되고 있다.

〈제시문 3〉

(1)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XXXX (XXXX)

The Security Council,

Expressing grave concern at the situation in State A and condemning the violence and use of force against civilians, [...]

1. Demands an immediate end to the violence and calls for steps to fulfill the legitimate demands of the population;
2. Decides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entry into or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ies of individuals listed in Annex I of this resolution or designated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24 below;
3. Decides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freeze without delay all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which are on their territories, which are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individuals or entities listed in Annex II of this resolution and decides further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ny funds, financial assets or economic resources are prevented from being available by any individuals or ent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individuals or entities listed in Annex II of this resolution;

(2) Targeted sanctions on individuals and entities are increasingly utilized by the United Nations. The targeted sanctions are intended to be political and preventive measures, rather than punitive ones. Despite several reform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the current procedures of listing and delisting still fall short of meeting basic human rights standards. For instance, legal scholars have pointed out that access to justice and due process are denied for sanctioned individuals and entitie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rovided the following:

“It is appropriate to examine the claims made by Mr. Kadi with regard to the breach of the rights of the defence, in particular the right to be heard, and of the right to effective judicial review, caused by the measures for the freezing of funds as they were imposed on the appellants. In this regard, in the light of the actu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inclusion of the appellants’ names in the contested regulation, it must be held that the rights of the defence, in particular the right to be heard, and the right to effective judicial review of those rights were patently not respected. In addition, it must be considered whether his right to property was respected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contested regulation was adopted without furnishing any guarantee enabling him to pu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t must therefore be held that the imposition of the restrictive measures constitutes an unjustified restriction of his right to property.”

〈제시문 4〉

(1) 전형적인 신고전학파의 무역이론은 전통적인 이론을 역으로 해석하여 목표시장의 모든 수출과 수입을 중지시키는 완전한 보이콧(complete boycott) 또는 완전한 수출금지(complete embargo)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국제교역이 개방(자유화)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도된 무역자유화모형(inverted trade

liberalization model)’에 의하면 경제제재가 실시되기 전에 목표시장의 제재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클수록, 그리고 목표시장의 소비선호와 생산구조의 유연성이 적을수록 경제제재가 목표시장에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

(2)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국가 간 경제 제재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제재의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표시될 경우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국은 소국(small country)이며 경제제재 이전에 X재화를 수입하고 있다. A국의 국내 수요 및 국내 공급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수요: $Q_D = 11 - aP$
- 국내 공급: $Q_S = -1 + P$
- X재 국제 가격 = 2

여기서, Q_D 는 A국의 X재 국내 수요량, Q_S 는 A국의 X재 국내 공급량, P 는 A국의 X재 국내 가격을 나타낸다. (단, a 는 양의 상수이다)

다음과 같은 X재에 대한 A국 경제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상황 1: 자유무역

상황 2: 포괄적 경제제재(A국으로의 수출 금지)

상황 3: 수출 금지 이후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금지(기술 이전을 금지할 경우, A국의 X재 단위당 생산비는 b 만큼 상승하며, b 는 0보다 크다)

〈제시문 5〉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갑국(소국)’의 국내 인도주의적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경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포괄적 경제제재로 ‘갑국’의 대외무역이 대폭 감소되면서, 대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는 반면, 실제 정책 결정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제재대상국의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암시장 형성 등을 통해 제재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을국(대국)’이 주변국을 침략하자, ‘병국(대국)’은 ‘을국’에 대한 곡물 및 어업권 제한, 전략물자와 기술 이전 제한,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수출 제한, 문화·과학 교류중단, 올림픽 보이콧 등 제재를 가하였다. 그러나 역내 다른 국가들은 ‘을국’에 대한 곡물 수출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을국’ 석유와 자국 곡물을 거래하기도 하였다. 당시 ‘을국’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병국’의 동맹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병국’ 내 이익집단과 의회에서도 제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고, ‘을국’ 내에서도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문제〉

제1문. (총 30점)

1)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고하여, 유엔 헌장상 포괄적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근거, 절차 및 제재 조치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논하시오. (15점)

2) 〈제시문 2〉와 〈제시문 4〉를 참고하여, A국 경제가 ‘상황 1’일 경우, A국의 X재 국내시장 균형 조건과 X재 수입량을 구하시오. 또한 A국 경제가 ‘상황 1’에서 ‘상황 2’로 변할 경우, A국의 X재에 대한 총후생(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상이한 a 값을 가지는 재화 시장이 존재할 경우, 제재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자중손실(deadweight loss)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총 35점)

1) 〈제시문 2〉와 〈제시문 4〉를 참고하여, A국 경제가 ‘상황 2’에서 ‘상황 3’으로 변할 경우, A국의 X재 국내 균형과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후생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시오. (단, a 값은 2로 가정한다) (15점)

2) 〈제시문 2〉와 〈제시문 5〉를 참고하여,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갑국’과 ‘을국’에 대한 포괄적 경제제재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러한 제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비의도적인 도전요인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20점)

제3문. (총 35점)

1)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의 (2)를 참고하여,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경우, 제재사유가 제재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제재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국제정치적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5점)

2)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참고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경우 야기되는 국제인권법적 문제를 기술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제재의 법적 근거와 구속력(헌장), 제재의 경제적 비용(수입 금지와 기술 이전 금지), 제재의 정치적 효과와 비의도적 결과, 표적제재의 인권 문제(카디)를 하나로 엮었다.

연결 개념 헌장 제39·41·25·27·48·103조, 소국의 자급 균형과 후생 손실, 수요의 가격 민감도 a , 공급곡선의 상향 이동, 허프바우어와 페이프, 제재 누수, 청문권·실효적 구제·재산권.

함정 ① 상황 1의 수입량을 a 의 함수로 쓰지 않는 답안. ② a 가 클수록 효과적이라고 거꾸로 쓰는 답안(후생 손실은 a 의 감소함수). ③ 상황 3에서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답안(생산비 상승은 공급 감소).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 포괄적 제재의 근거·절차·구속력 2) 상황 1 균형·수입량, 상황 2 후생, a 와 자중손실	헌장 제39·41·25·27·103조, $M = 10 - 2a$, $\Delta W = 2(5 - a)^2 / (1 + a)$	1,400~1,800자
2	1) 상황 3의 균형과 잉여 2) 갑국·을국 제재의 특성과 비의도적 도전	$P = 4 + b/3$, $Q = 3 - 2b/3$, $CS = Q^2/4$, $PS = Q^2/2$, 제재 누수·동맹 균열	1,600~2,100자
3	1) 제재사유와 효과, 효과 제고 방안 2) 개인·단체 제재의 인권법적 문제	표적제재의 예방적 성격, 옴부즈퍼슨, 자유권 규약 제2·12·14·17조, 카디	1,600~2,100자

예시답안 — 2022 학제통합논술 II 제1문

1) 포괄적 경제제재의 근거, 절차, 법적 구속력

근거는 UN 헌장 제7장이다. 안보리는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제41조에 따라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조치로서 경제관계와 교통·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외교관계 단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포괄적 경제제재는 경제관계의 ‘전부’ 중단에 해당한다.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 제40조의 잠정조치를 먼저 요구할 수도 있다. 〈제시문 1〉처럼 ‘제재’라는 용어 자체는 헌장에 없지만,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는 이 조치를 포함한다.

절차는 첫째, 제39조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사항에 관한 결정이므로 제27조 제3항에 따라 15개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관행상 거부로 보지 않는다. 셋째, 안보리는 결의로 제재의 범위를 정하고, 이행을 감독하는 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을 둔다. 넷째, 회원국은 제48조에 따라 결정을 직접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이행하며, 국내법을 정비하여 집행한다. 제재로 특별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제3국은 제50조에 따라 안보리와 협의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첫째,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41조에 따른 ‘결정’은 권고와 달리 회원국을 구속한다. 둘째, 제103조에 따라 헌장상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에 우선하므로, 회원국은 통상조약이나 투자협정을 이유로 제재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셋째, 제2조 제6항에 따라 UN은 비회원국도 평화 유지에 필요한 한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다만 〈제시문 2〉의 연구처럼 구속력과 실효성은 다르며, 제3국의 협력과 집행 의지가 제재의 성패를 좌우한다.

2) 상황 1의 균형과 수입량, 상황 2로의 변화와 자중손실

상황 1(자유무역)에서 소국인 A국은 국제가격 2를 받아들인다. 국내시장의 균형 조건은 국내 수요량 = 국내 공급량 + 수입량, 즉 $Q_D(2) = Q_S(2) + M$ 이다. $Q_D = 11 - 2a$, $Q_S = -1 + 2 = 1$ 이므로 수입량은 $M = 10 - 2a$ 이다($a < 5$ 일 때 수입국).

상황 2(수출 금지)에서는 수입이 막혀 국내 수요와 공급이 국내에서 일치해야 한다. $11 - aP = -1 + P$ 에서 자급 가격 $P_A = \frac{12}{1+a}$, 거래량 $\frac{11-a}{1+a}$ 이다.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오르므로 소비자 잉여는 크게 줄고 생산자 잉여는 늘지만, 총후생은 무역의 이익만큼 감소한다. 그 크기는 국제가격과 자급가격 사이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드는 삼각형으로

$$\Delta W = \frac{1}{2}(P_A - 2)M = \frac{1}{2} \cdot \frac{10 - 2a}{1 + a} \cdot (10 - 2a) = \frac{2(5 - a)^2}{1 + a}$$

이다. 예컨대 $a = 2$ 이면 수입량 6, 자급가격 4, 총후생 감소는 6이다.

이 후생 감소는 a 에 대해 감소함수이다($d\Delta W/da = 2(a-5)(a+7)/(1+a)^2 < 0$). a 가 작다는 것은 수요가 가격에 둔감하다는 뜻이다. 생필품처럼 가격이 올라도 수요를 줄이기 어려운 재화는 제재 전 수입량이 많고 자급 가격의 상승 폭도 커서 자중손실이 크다. 따라서 제재국 입장에서는 a 가 작은 시장, 즉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재화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제시문 4〉 (1)의 전도된 무역자유화 모형이 말하는 “무역의존도가 클수록, 소비 선호와 생산 구조의 유연성이 적을수록 제재의 타격이 크다”는 결론과 일치한다. 다만 이런 재화가 식량이나 의약품이면 고통이 일반 국민에게 집중되므로 인도적 고려와의 충돌이 생긴다.

2) 상황 1: 수입 $10 - 2a$ / 상황 2: 자급가격 $12/(1+a)$, 후생감소 $2(5-a)^2/(1+a)$, a 가 작을수록 큼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22 학제통합논술 II 제2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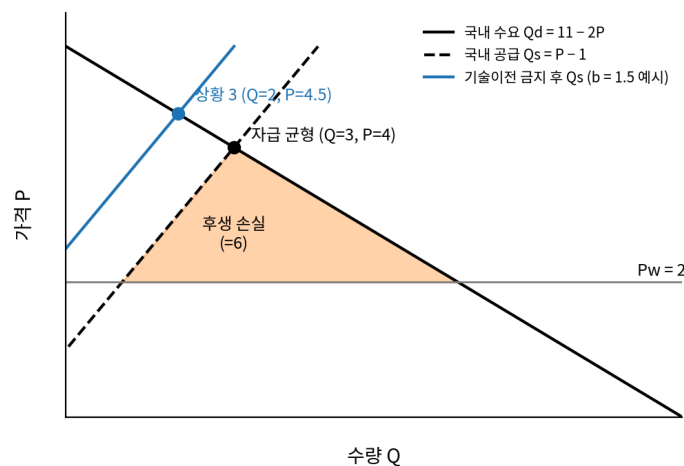
1) 상황 2에서 상황 3으로의 변화 ($a = 2$)

상황 2에서 수요는 $Q_D = 11 - 2P$, 공급은 $Q_S = P - 1$ 이므로 $P = 4$, $Q = 3$ 이다.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의 가격 절편 5.5를 이용해 $\frac{1}{2}(5.5 - 4) \times 3 = 2.25$, 생산자 잉여는 $\frac{1}{2}(4 - 1) \times 3 = 4.5$, 총후생은 6.75이다. 상황 3에서 기술 이전이 금지되면 단위당 생산비가 b 만큼 올라 공급곡선이 위로 b 만큼 이동한다. $Q_S = P - 1 - b$ 이다. 균형은 $11 - 2P = P - 1 - b$ 에서

$$P = 4 + \frac{b}{3}, \quad Q = 3 - \frac{2b}{3} \quad (0 < b < 4.5)$$

이다. 가격은 $\frac{b}{3}$ 만큼 오르고 거래량은 $\frac{2b}{3}$ 만큼 준다. 공급 비용 상승분 b 가운데 3분의 1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전가되고 나머지는 생산자가 부담한다. 수요의 기울기(가격 1 상승에 수요 2 감소)가 공급보다 탄력적이어서 생산자의 부담이 더 크다.

잉여는 새 거래량 Q 로 나타내면 소비자 잉여 $Q^2/4$, 생산자 잉여 $Q^2/2$, 총후생 $3Q^2/4$ 이다. Q 가 3보다 작아지므로 셋 모두 감소한다. 예컨대 $b = 1.5$ 이면 $P = 4.5$, $Q = 2$, 소비자 잉여 1, 생산자 잉여 2, 총후생 3으로 상황 2의 6.75에서 3.75가 줄어든다.



기술 이전 금지는 수입 금지로 이미 자급 상태에 놓인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피해를 생산자에게까지 넓힌다. 수출 금지가 소비자 중심의 타격이라면, 기술 이전 금지는 제재대상국의 대체 생산 능력을 겨냥한 추가적 압박이다.

2) 갑국과 을국에 대한 포괄적 제재의 특성과 비의도적 도전요인

갑국에 대한 제재의 특성은 첫째,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다자 제재이다. 국제기구가 관여하므로 제3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쉽고 정당성이 높다(〈제시문 2〉). 둘째, 대상이 소국이어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경제적 타격이 크다. 셋째, 목표는 인도적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라는 정책 변화이다. 을국에 대한 제재는 첫째, 대국인 병국의 일방적 제재이다. 둘째, 대상도 대국이어서 자원과 대체 시장이 있다. 셋째, 침략에 대한 처벌과 억지라는 목표를 갖는다.

비의도적 도전요인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갑국의 경우 첫째, 제재의 고통이 대다수 국민에게 집중되고 정책 결정자는 피해를 받지 않는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지도자는 희소한 자원을 측근에게 배분하여 권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적을 내세워 내부를 결속시킨다. 둘째, 시간이 지나면 암시장과 밀수로 제재에 적응하여 효과가 줄어든다. 〈제시문 2〉의 연구처럼 제재대상국이 비민주적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와 맞는다. 셋째, 인도적 위기는 제재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한다.

을국의 경우 첫째, 제재의 누수이다. 역내 다른 국가들이 곡물 수출을 늘리고 석유와 곡물을 교환하면서 제재의 공백을 메웠다. 대국에 대한 일방 제재는 제3국의 무임승차와 기회주의를 부른다. 둘째, 제재국 내부의 분열이다.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동맹국의 반대가 병국의 이익집단과 의회로 이어져, 제재 비용이 제재국에 되돌아온다. 이는 동맹의 결속을 해친다. 셋째, 반면 을국 내에서 정부 비판이 나타난 것은 제재가 정치적 압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보여준다.

비교하면, 갑국 제재의 문제는 표적을 잘못 맞히는 데 있고 을국 제재의 문제는 연대를 유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앞의 문제는 표적제재로, 뒤의 문제는 다자화와 제3국 협력의 확보로 대응해야 한다. 1)의 분석과 연결하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를 대상으로 하되, 대체 공급원이 차단될 때만 제재가 효과를 낸다.

1) $a=2$: 상황 2 $P=4$, $Q=3$, $CS=2.25$, $PS=4.5$ / 상황 3 $P=4+b/3$, $Q=3-2b/3$, $CS=Q^2/4$, $PS=Q^2/2$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22 학제통합논술 II 제3문

1) 제재사유가 제재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높이는 방안

〈제시문 3〉 (2)처럼 표적제재는 처벌이 아니라 정치적·예방적 조치로 의도된다. 즉 대상자의 행동을 바꾸거나 위협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제재사유는 다음과 같이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사유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행위와 연결되어 있으면, 대상자는 무엇을 바꾸면 제재가 해제되는지 알 수 있다. 제재가 행동 변화의 유인을 주는 것이다. 반대로 사유가 모호하거나 대상자의 과거 지위나 관계만을 근거로 하면, 행동을 바꿔도 해제될 길이 없으므로 대상자는 협조할 이유가 없다. 둘째, 사유의 근거와 증거가 투명하면 회원국 정부와 법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근거가 불투명하면 〈제시문 3〉 (2)의 카디 판결처럼 지역 법원이 이행 조치를 무효로 하고, 각국이 이행을 주저하여 제재망에 구멍이 생긴다. 셋째, 〈제시문 1〉처럼 선정 과정의 실수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잘못 지정된 사례가 알려지면 제재 체제 전체의 정당성과 국제적 지지가 떨어진다.

제재효과를 높이는 국제정치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 사유 요약을 공개하며, 해제 기준을 미리 제시한다. 둘째, 독립적인 해제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옴부즈퍼슨 제도를 다른 제재 체제로 확대하고 정기적 재검토와 일몰 조항을 둔다. 셋째, 〈제시문 2〉의 연구처럼 국제기구의 관여는 제3국의 협력을 끌어내므로, 안보리 제재를 지역기구와 주요국의 독자 제재, 국제 금융망의 이행과 연계한다. 넷째, 이행 능력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하고 제재 회피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강화한다. 다섯째, 제재를 협상과 결합하여 해제와 보상을 협상 카드로 쓰는 등 강압과 유인을 함께 사용한다. 여섯째, 인도적 예외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정당성을 유지한다.

2) 안보리의 개인·단체 제재가 야기하는 국제인권법적 문제

첫째, 적법절차의 문제이다. 대상자는 지정 사실과 이유를 통지받지 못하거나 늦게 알고, 증거에 접근하여 반박할 기회가 제한된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의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와 청문권에 어긋난다. <제시문 3> (2)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카디의 방어권, 특히 청문권과 실효적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가 명백히 존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실효적 구제의 부재이다. 안보리는 사법기관이 아니고 독립적인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대상자는 자국 법원에 호소해도, 국내 법원은 안보리 결의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다. 이는 규약 제2조 제3항의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와 충돌한다.

셋째, 재산권 침해이다. 자산동결은 기간의 제한 없이 지속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몰수와 다르지 않다. 카디 판결은 보장 장치 없이 부과된 동결 조치를 재산권의 부당한 제한으로 보았다.

넷째, 이전의 자유와 사생활·명예의 침해이다. <제시문 3> (1)의 여행금지는 규약 제12조의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테러 관련자로 공개 지정되는 것은 명예와 사생활(제17조)을 침해한다.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형사처벌에 가까워 무죄추정 원칙과의 긴장이 생긴다.

다섯째, 의무의 충돌이다. 회원국은 헌장 제25조와 제103조에 따라 결의를 이행해야 하는 동시에 인권조약상 의무를 진다. 안보리 자신은 인권조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헌장 제24조 제2항에 따라 UN의 목적과 원칙, 즉 인권 존중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 충돌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이행 조치를 기본권 기준으로 심사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안보리는 해제 청원을 받는 연락창구를 두고, 알카에다 제재 체제에 옴부즈퍼슨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옴부즈퍼슨은 사법기관이 아니고 다른 제재 체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독립적 사법심사라는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2) 청문권·공정한 재판·실효적 구제, 재산권, 이전의 자유, 명예와 사생활. 카디 판결(2008), 옴부즈퍼슨(안보리 결의 1904, 2009)

2023 학제통합논술 II

미중 기술패권, 공정무역과 중견국

총 100점 · 제1문 35점, 제2문 30점, 제3문 35점 · 국제정치(신고전 현실주의·이익균형) + 국제법(WTO 원칙·수용과 외교적 보호)
+ 경제(가격차별·교역조건)

〈제시문 1〉

(1)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은 주로 무정부성과 권력의 배분 등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독립변수로, 일국의 대외정책을 종속변수로, 국내요인을 두 변수 사이의 매개변수로 본다.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에서 위협에 대응하는 균형정책이나 편승정책은 국가의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고, 국가가 어떤 것을 이익으로 선호하는가에 따라 선택된다.

(2) 쉬웰러(Randall L. Schweller)의 이익균형론(balance of interests theory)에 의하면, 국가는 현상유지가 주는 이익과 현상타파가 주는 이익을 비교하여 현상유지 국가가 되거나 현상타파 국가가 되어 균형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편승을 추구하기도 한다. 쉬웰러는 국가를 4종류의 동물(사자, 양, 자칼, 늑대)에 비유하여 구분하고 있다. 사자는 현재에 만족하며 현상파괴 국가에 대하여 높은 비용을 지불 하더라도 균형을 추구하거나 책임전가의 경향을 보인다. … (중략) … 늑대는 제한적이지 않은 목적을 가진 현상타파 국가로서 국제질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는 야심적인 국가를 지칭한다.

〈제시문 2〉

(1) 2017년 3월 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대통령 통상정책 의제(President’s Trade Policy Agenda)’는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은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방법으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 고용창출, 상호주의 증진, 제조업 기반 강화 및 농업·서비스의 수출 확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 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②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장벽 철폐, ③ 농업, 제조업,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의 이익 보호, ④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 보호, ⑤ 덤핑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 규제를 위한 미국 통상법 집행 강화, ⑥ 기존 무역협정의 노동규정 이행 강화, ⑦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거나 협정상 혜택을 약화시키는 WTO 규정 해석의 거부, ⑧ 제조업 강화를 위한 통상정책 추진, ⑨ 모든 미국 근로자의 이해관계 대변.

(2)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관련 기업은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여 미국 내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이들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 시 10년 내에 첨단 반도체 생산설비를 5% 이상 증설하지 못한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첨단산업 분야 정책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의 성장을 억제하여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3) 중국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공정무역’과 첨단기술 정책에 대하여 이는 자유무역질서가 아닌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전후 세계 경제의 번영을 견인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첨단기술과 무역에 관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미국이 상호의존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3〉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독점적 지위를 굳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낮은 임금, 환경 및 WTO 무역 규범의 철저하지 않은 이행 등을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나아가 규모와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수출국이 되었다. 이러한 통상 상황으로 인하여 국가 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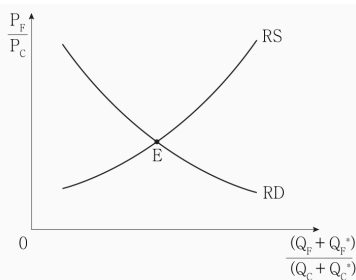
2022년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Commission)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셀 제조 능력의 76%, 미국 페니실린 수입량의 41.6%, 희토류 화합물 수입량의 78%를 점유하는 등 주요 공급망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일부 주요 분야에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전 세계 공급망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분명히 밝혀 왔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무역 경쟁력과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제시문 4〉

A국과 B국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알파 영화사는 올해 제작한 영화 1편을 두 국가 모두에서 상영할 계획이다. B국 소비자들은 영화 관람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관람료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영화 관람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A국 소비자들은 영화를 볼 때 관람료에 특별히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아 재미있는 영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람료를 지불할 의향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사전 정보를 가진 알파 영화사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관람료를 검토하였다. 이번에 상영될 영화는 재미있는 영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알파 영화사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A국 내 관람료를 B국 내 관람료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시문 5〉

두 국가가 2개 재화(식품(F)과 섬유(C))만을 생산·교역하는 표준적인 무역모형을 고려하자. 외국은 자국이 수입하는 재화를 수출하고, 자국은 외국이 수입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2개 국가만 있는 세계를 가정한다. 각국 경제는 생산가능곡선과 가장 높은 등가치선(iso-value lines)이 접하는 점에서 생산하며, 여기서 상대공급곡선이 도출된다. 또한, 이들 경제는 생산측면에서 결정된 등가치선이 가능한 가장 높은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점에서 소비하며, 이를 통해 상대수요곡선이 도출된다. 식품의 상대공급곡선은 식품의 상대가격(P_F/P_C)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이고, 식품의 상대수요곡선은 식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를 가진다. 자국과 외국의 상대공급곡선과 상대수요곡선을 결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세계 상대공급곡선(RS)과 세계 상대수요곡선(RD)을 그릴 수 있으며,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E)에서 상대가격(교역조건)과 상대적 생산량이 결정된다.



※ *는 외국을 표시

〈문제〉

제1문. (총 35점)

1)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참조하여, 〈제시문 1〉의 (1)의 관점에서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설명하시오. 또한, 최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중 양국의 입장을 〈제시문 1〉의 (2)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참조하여 자유무역과 국가주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WTO 체제의 법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 (총 30점)

1)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상황에서 한 국가가 타국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였다고 가정하자. 그 기업의 국적국이 가해국을 상대로 기업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와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WTO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함) (15점)

2) 〈제시문 4〉를 참고하여, 독점기업(알파 영화사)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B국에 비해 A국에서 더 높은 관람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수식을 이용하여 제시하시오. 이에 더해, 이러한 조건이 갖는 가격차별의 역설적 함의에 대해 간략히 논하시오. (단, 영화공급의 한계비용은 일정하며, A국 내 관람료는 P_A , B국 내 관람료는 P_B , A국 관람객수는 Q_A , B국 관람객수는 Q_B 로 표시함. 수요의 가격탄력성 (ϵ_P) = $-\frac{\partial Q}{\partial P} \frac{P}{Q}$) (15점)

제3문. (총 35점)

1) 미국이 보호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 부과와 수출보조금 지급을 고려할 경우, 〈제시문 2〉와 〈제시문 5〉를 참조하여 각각의 정책이 미국의 교역조건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단, 미국은 식품을 수출하고 섬유를 수입한다고 가정함) (15점)

2) 미중 협력 시기 미국의 동맹국이며 민주주의 국가인 K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번영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K국과 같은 중견국들은 편승정책, 균형정책, 중립정책, 회피정책, 자주정책 등에 대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를 참조하여, 이들 중견국의 시각에서 미국의 공정무역 정책을 미중관계의 체제수준, 그리고 미국과의 양자관계의 수준에서 분석하시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중견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논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미중 기술 경쟁을 국제정치 이론으로 설명하고(제1문 1)), WTO의 주권 조화 원칙(1)2)), 자산 몰수에 대한 외교적 보호(제2문 1)), 가격차별(2)2)), 관세·수출보조금의 교역조건 효과(제3문 1)), 중견국 외교전략(3)2))을 묻는다.

연결 개념 신고전 현실주의(매개변수), 쉬웰러의 사자·늑대, GATT 제1·3·11·20·21조, 수용의 적법 요건, 바르셀로나 트랙션, 국내구제 완료, $MR = P(1 - 1/\epsilon)$, $RS \cdot RD$ 이동.

합정 ① 제2문 1)에서 WTO 논의를 섞는 답안(문제가 명시적으로 제외). ② 가격차별 조건을 ‘소득이 높으면 비싸다’로만 쓰고 탄력성 식을 쓰지 않는 답안. ③ 수출보조금이 교역조건을 개선한다고 쓰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 기술패권 갈등과 미중의 입장 2) 자유무역과 주권의 조화 원칙	체제(독립)-국내(매개)-정책(종속), 사자·늑대, 무차별·양허·예외·무역구제·분쟁해결	1,600~2,100자
2	1) 몰수에 대한 국적국의 근거·요건 2) 가격차별 조건과 역설	수용 요건, 호르쇼 공장, ILC 초안 제9·14조, $\epsilon_A < \epsilon_B$	1,400~1,800자
3	1) 관세·수출보조금의 교역조건과 후생 2) 중견국의 분석과 외교전략	$RS \cdot RD$ 그래프, 헤징·전략적 필수성·유사입장 국 연합	1,600~2,100자

예시답안 — 2023 학제통합논술 II 제1문**1) 신고전 현실주의로 본 미중 기술패권 갈등과 이익균형론**

신고전 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권력 배분을 대외정책의 독립변수로, 지도자의 인식과 국내 정치·제도 같은 국내요인을 매개변수로 본다. 이 틀에서 미중 기술패권 갈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독립변수인 체제 수준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미중 간 권력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제시문 3>처럼 중국은 세계 배터리 셀 제조 능력의 76%, 미국 희토류 화합물 수입의 78%를 차지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수출국이 되었다. 첨단기술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원천이므로, 기술 분야의 권력 이동은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된다.

매개변수인 국내 수준에서 미국은 제조업 쇠퇴와 노동자의 불만이라는 국내 정치를 배경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공정무역을 내세웠고(<제시문 2> (1)),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으로 산업에 직접 개입하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첨단 설비 증설을 10년간 5% 이내로 제한했다(<제시문 2> (2)). 중국은 당 주도의 산업정책과 공급망 장악이라는 국가 구조를 통해 대응한다. 같은 체제 압력이라도 이러한 국내 요인이 정책의 구체적 형태, 즉 보조금, 수출통제,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결정한다.

쉬웰러의 이익균형론으로 보면 미국은 현재의 질서에 만족하고 현상유지를 위해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균형을 추구하는 사자이다. 미국은 중국을 현존 질서를 바꿀 능력과 무제한적 목적을 가진 늑대로 인식하고, 기술 통제와 동맹 결집으로 균형화한다. 반면 중국은 자신을 전후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질서의 수호자로 묘사하며(<제시문 2> (3)), 오히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와 상호의존의 무기화로 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즉 양국은 서로를 현상파와 국가로 규정하며 자신을 현상유지 국가로 정당화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견국들은 이익에 따라 편승하는 자갈이나 양의 선택지 사이에 놓인다.

2) 자유무역과 국가주권을 조화시키는 WTO 체제의 법원칙

첫째, 무차별 원칙이다. 최혜국대우(GATT 제1조)와 내국민대우(제3조)는 국가 간, 국산품과 수입품 간 차별을 금지하여 자유무역의 기반을 이룬다. 동시에 관세 양허(제2조)는 국가가 스스로 약속한 범위에서만 관세 주권을 제한하므로, 개방의 정도를 국가가 협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수량제한 금지(제11조)와 보조금 규율이다. 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과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다른 회원국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규율한다. 〈제시문 2〉 (2)의 반도체 보조금과 그 조건은 이 기준에서 검토될 수 있다.

셋째, 예외를 통한 주권 존중이다. 제20조의 일반적 예외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 보존 등을 위한 조치를 허용하되,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되지 않도록 두문의 요건을 둔다. 제21조의 안보 예외는 국가가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허용한다. 공급망 안보와 첨단기술 통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오늘날 핵심 쟁점이다. WTO 패널은 안보 예외가 전적으로 자기판단적인 것은 아니며 일정한 객관적 심사를 받는다고 본 바 있다.

넷째, 무역구제이다. 반덤핑·상계관세(제6조와 관련 협정)와 세이프가드(제19조)는 불공정 무역이나 급격한 수입 증가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하여, 개방에 따른 국내 정치적 부담을 흡수하는 안전판이 된다. 〈제시문 2〉 (1)의 ‘덤핑과 보조금 수입품 규제’도 이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분쟁해결절차이다. 일방적 보복 대신 규칙에 따른 판정과 승인된 대응조치로 분쟁을 해결하여, 강대국의 일방주의를 억제하고 약소국의 주권을 보호한다. 〈제시문 2〉 (1)의 ‘WTO 규정 해석의 거부’는 이 원칙과 긴장한다.

이 원칙들은 시장 개방의 이익과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함께 보장하는 균형 장치이다. 그러나 안보 예외의 확대 해석과 분쟁해결절차의 약화는 이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안보와 통상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규범 개혁이 필요하다.

1) 신고전 현실주의(체제 = 독립변수, 국내요인 = 매개변수), 쉬월러의 사자·늑대. 2)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와 제20조·제21조 예외, 무역구제, 분쟁해결

예시답안 — 2023 학제통합논술 II 제2문

1) 자산 몰수에 대한 국적국의 국제법적 근거와 요건

국적국이 주장할 국제법적 근거는 첫째, 수용에 관한 관습국제법이다. 국가는 영토 안의 외국인 재산을 수용할 권리가 있지만, 적법한 수용이 되려면 공공목적, 비차별, 적법절차, 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신속·충분·실효적 보상을 요구하는 견해와 ‘적절한 보상’을 말하는 천연자원 영구주권 결의(1962) 사이에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 투자협정 실행은 시장가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방향이다. 〈제시문 2〉·〈제시문 3〉의 맥락처럼 경쟁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몰수이거나 보상이 없다면 위법한 수용이다.

둘째, 국가책임법이다. 위법한 수용은 국제위법행위로서 가해국은 원상회복, 그것이 불가능하면 금전배상을 포함한 완전한 배상 의무를 진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호르쥔 공장 사건(1928)이 확립한 원칙이다. 양국 사이에 투자협정이 있으면 협정의 수용 조항과 공정·형평 대우 조항도 근거가 된다.

셋째,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외교적 보호이다. 국적국은 자국민이 입은 피해를 자국의 청구로 채택하여 외교교섭이나 국제재판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교적 보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ILC 2006년 외교적 보호 초안).

- ① 피해자의 국적: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립지국이 국적국이다. 다만 법인이 다른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지배되고 설립지국에서 실질적 영업 활동이 없으며 경영 본거지와 재정 통제가 다른 국가에 있으면 그 국가가 국적국이 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1970)에서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국적국이 아니라 회사의 국적국이 보호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 ② 국적의 계속성: 피해 발생일부터 청구의 공식 제기일까지 국적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③ 국내구제 완료: 피해자는 가해국의 이용 가능한 국내 구제 수단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실효적 구제의 합리적 가능성이 없거나 구제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④ 국제위법행위의 존재와 귀속: 물수는 국가기관의 행위이므로 국가에 귀속되며, 위의 수용 요건을 위반해야 한다.

외교적 보호는 국가의 재량이고, 국제재판에 회부하려면 별도의 관할권 근거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2) A국에서 더 높은 관람료를 책정하는 조건과 가격차별의 역설

알파 영화사는 두 시장을 분리할 수 있는 독점기업이므로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공통의 한계비용과 같게 한다($MR_A = MR_B = MC$). 한계수입은 가격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MR = P(1 - 1/\varepsilon_P)$ 로 쓸 수 있으므로

$$P_A \left(1 - \frac{1}{\varepsilon_A}\right) = P_B \left(1 - \frac{1}{\varepsilon_B}\right) = MC \Rightarrow \frac{P_A}{P_B} = \frac{1 - 1/\varepsilon_B}{1 - 1/\varepsilon_A}$$

이다. 따라서 $P_A > P_B$ 일 조건은 $\varepsilon_A < \varepsilon_B$, 즉 A국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B국보다 작은 것이다(양국 모두 $\varepsilon > 1$ 인 영역에서 생산). <제시문 4>에서 A국 소비자는 소득이 높고 관람료에 민감하지 않으며, B국 소비자는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관람을 포기하므로 이 조건이 충족된다. 이 밖에 두 시장 사이의 재판 매(차익거래)가 불가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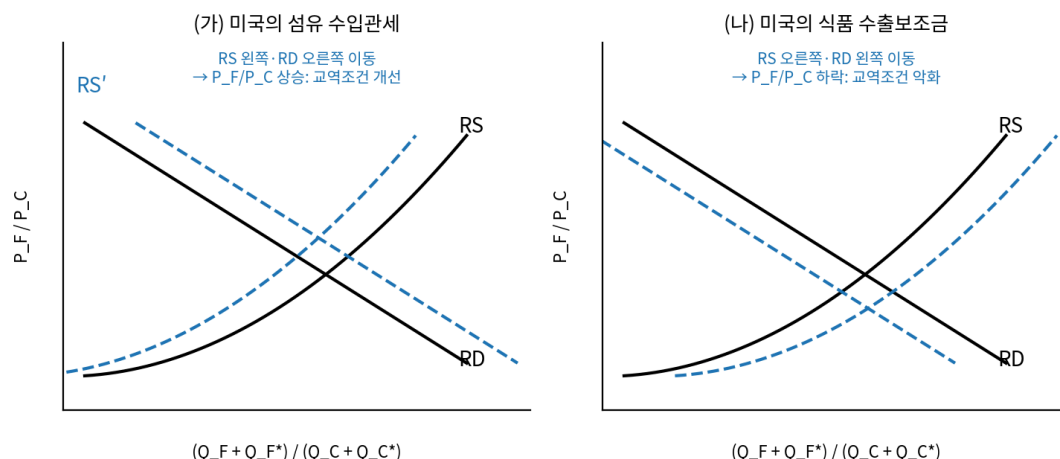
역설적 함의는 첫째, 같은 영화를 더 좋아하고 지불 능력이 큰 소비자일수록 더 비싸게 지불한다는 점이다. 선호가 강할수록 독점기업에 더 많은 잉여를 빼앗기는 구조이다. 둘째, 그럼에도 가격차별이 소득이 낮은 B국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다. 단일가격을 매기면 높은 가격 때문에 B국 시장이 아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데, 가격차별로 B국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고 총거래량과 사회후생이 늘어날 수도 있다. 독점의 착취적 관행으로 비판받는 가격차별이 접근성을 넓히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셋째, 국제통상에서 이 논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싸게 파는 덤핑과 같은 구조여서, 기업의 합리적 가격 전략이 상대국에서는 불공정무역으로 규제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1) 수용의 적법 요건과 외교적 보호(법인의 국적, 국내구제 완료). 2) $MR_A = MR_B = MC \rightarrow P_A(1-1/\varepsilon_A) = P_B(1-1/\varepsilon_B)$

예시답안 — 2023 학제통합논술 II 제3문

1) 관세와 수출보조금이 미국의 교역조건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식품을 수출하고 섬유를 수입하므로, 미국의 교역조건은 식품의 상대가격 P_F/P_C 이다. 미국은 세계 상대공급과 상대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국이다.



첫째, 섬유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미국 국내에서 섬유의 상대가격이 오르므로(식품의 국내 상대가격 하락) 미국 생산자는 섬유를 더 생산하고 식품을 덜 생산한다. 세계 식품 상대공급(RS)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미국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섬유를 덜 소비하고 식품을 더 소비하므로 세계 식품 상대수요(RD)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두 이동 모두 세계시장의 식품 상대가격 P_F/P_C 를 높이므로 미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미국의 후생은 교역조건 개선의 이익과 생산·소비 왜곡의 손실을 비교하여 결정되며, 관세가 적절히 낮으면 후생이 늘 수 있다(최적관세 논리). 반면 외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어 후생이 줄어드는 근린궁핍화 효과가 있고, 외국이 보복하면 양국 모두 손해를 본다.

둘째, 식품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미국 국내에서 식품의 상대가격이 올라 생산자는 식품을 더 생산하고(RS 오른쪽 이동), 소비자는 식품을 덜 소비한다(RD 왼쪽 이동). 그 결과 세계시장의 식품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미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미국은 보조금의 재정 비용, 생산·소비 왜곡, 교역조건 악화를 모두 부담하므로 후생이 분명히 감소한다. 이익은 더 싼 식품을 사게 된 외국에 돌아간다.

정리하면 같은 보호무역정책이라도 대국의 수입관세는 교역조건을 개선할 수 있지만 수출보조금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제시문 2> (1)의 공정무역 정책이 수출 확대를 목표로 보조금을 쓴다면 미국의 후생에 불리하고, 관세는 교역조건 이익을 얻더라도 상대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

2) 중견국 시각에서 본 미국의 공정무역 정책과 외교전략

체제 수준에서 미국의 공정무역 정책은 미중 전략경쟁의 일부이다. 신고전 현실주의로 보면 중국의 부상이라는 체제 압력이 미국 국내 정치를 거쳐 보호무역과 기술 통제로 나타난 것이다(제1문). 그 결과 공급망은 진영별로 분리되고, 상호의존은 무기화되며(<제시문 2> (3)), 중국의 공급망 장악(<제시문 3>)이 맞대응 수단이 된다. 중견국에게 이는 개방적 다자무역체제라는 번영의 기반이 약해지고,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압력이 커지는 환경이다.

양자관계 수준에서 K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정책은 동맹국에게도 비용을 지운다. 반도체지원법은 보조금을 받으려는 K국 기업의 중국 내 첨단 설비 증설을 제한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기회를 줄인다. 동맹의 안보딜레마 측면에서 K국은 미국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방기의 위험을, 지나치게 따르면 중국과의 갈등에 연루될 위험을 안는다.

중견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협분산(헤징) 전략이다. 안보는 동맹에 두되 경제는 다변화하여 순수한 편승이나 균형보다 유연한 위치를 유지한다. <제시문 4>의 가격차별처럼 시장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관여를 하되, 기술 유출 우려를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전략적 필수성의 확보이다. 반도체처럼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과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면 협상력이 커진다. 셋째, 유사입장국 연합이다. 다른 중견국과 함께 규범 기반 질서와 WTO 개혁을 주도하

여 강대국의 일방주의를 제약한다. 넷째, 양자 협상을 통한 예외와 유예의 확보이다. 동맹으로서의 기여를 근거로 미국의 규제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예외를 끌어낸다. 다섯째, 공급망 회복력의 강화이다. 핵심 소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과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어느 쪽의 경제적 강압에도 취약하지 않게 한다. 이러한 전략의 공통점은 선택을 강요받기 전에 선택지를 넓히는 데 있다.

1) 대국 미국(식품 수출, 섬유 수입): 섬유 관세 $\rightarrow P_F/P_C$ 상승(교역조건 개선) / 식품 수출보조금 $\rightarrow P_F/P_C$ 하락(교역조건 악화)

제7장

환경·기후 협력

2부 주제별 기출 | 수록: 2019 학제 I (미세먼지), 2023 학제 I (미국·캐나다와 한중 환경협력), 2021 학제 II (파리협정과 감축 게임), 2024 학제 II (기후 레짐과 배출 규제 수단)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7-1 핵심 개념	140
7-2 기출 풀이	143
2019 학제통합논술 I 월경성 미세먼지와 한중 협력	143
2023 학제통합논술 I 미국·캐나다 협력과 한중 환경협력	150
2021 학제통합논술 II 파리협정, 감축 게임과 패권	157
2024 학제통합논술 II 기후 레짐, 유럽 기후법과 규제 수단	164

7-1 핵심 개념

환경·기후는 11개년 동안 네 차례 출제된 최다 빈출 주제이다. 깨끗한 대기와 기후 안정은 공공재이므로 무임승차가 생기고(경제), 이를 극복할 국제규범은 예방과 절차적 의무 중심으로 발전했으며(국제법), 협력의 성패는 상대적 이익, 국내 정치, 제도화에 달려 있다(국제정치). 계산 문제는 대부분 이 세 축의 연결고리로 출제된다.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과 절차적 의무

국가는 자국 관할 아래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권 밖의 환경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진다(트레일 제련소 중재판정, 스톡홀름선언 원칙 21, 리우선언 원칙 2). 이는 상당한 주의 의무이며, 중대한 월경 피해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펄프공장 사건, 2010), 사전 통보와 신의성실한 협의(리우선언 원칙 19)로 구체화된다.

대립 구도

영토 이용의 주권 ↔ 타국 환경을 해치지 않을 의무

쓰이는 기출 2019 학제 I 제2문, 2023 학제 I 제2문

답안 속 문장

“이 의무는 결과책임이 아니라 상당한 주의 의무이다. 배출 규제, 감시, 평가를 게을리했다면 위반이 된다.”

한계저감비용과 배출 규제 수단

배출량을 수평축에 두면 한계피해(MD)는 우상향, 한계저감비용(MAC)은 우하향한다. 최적 배출량은 $MAC = MD$ 인 점이며, 직접규제(그 양을 상한으로), 배출부과금(그 점의 한계값을 단위당 부과), 저감보조금(같은 액수를 감축 단위당 지급)이 단기에 같은 결과를 낸다. 저감기술이 발전하면 MAC가 내려가 최적 배출량이 줄고, 가격 수단은 기술 개발의 동태적 유인을 준다.

대립 구도

직접규제(수량 확실성) ↔ 가격 수단(비용 효율성·동태적 유인)

쓰이는 기출 2019 학제 I 제3문, 2024 학제 II 제2문 2)

답안 속 문장

“부과금을 $t^* = MD(e^*) = MAC(e^*)$ 로 정하면 오염원은 MAC가 부과금과 같아지는 점까지 감축하므로 배출량은 e^* 가 된다.”

공공재 감축 게임: 할당 대 자율

각국 이익이 총감축량에 비례하고(bD) 비용이 자국 감축의 제곱에 비례하면(cd_i^2), 자율적 결정에서 각국은 자국 편익 b 만 고려하여 $d_i = b/(2c)$ 를 감축한다. 구속력 있는 할당은 모든 국가의 편익 Nb 를 고려하게 하여 $d = Nb/(2c)$ 로 사회적 최적을 달성한다. 자율적 감축은 최적의 $1/N$ 에 그친다.

대립 구도

하향식 할당(효율·참여 저조) ↔ 상향식 자율(참여 확대·과소 감축)

쓰이는 기출 2021 학제 II 제1문 2)

답안 속 문장

“각국은 자국 감축 1단위가 다른 $N - 1$ 개국에 주는 이익을 무시하므로 과소 감축한다.”

국제환경협약의 안정성

가입국 수 M 의 협약은 가입국이 탈퇴할 유인이 없고(내적 안정성: $v_c(M) \geq v_n(M - 1)$) 미가입국이 가입할 유인이 없을 때(외적 안정성: $v_c(M + 1) \leq v_n(M)$) 안정적이다. 협약의 이익을 미가입국도 누리므로 가입국이 늘수록 무임승차의 유인이 커져, 안정적인 협약은 대개 소규모이다. 선택적 혜택이 이를 보완한다.

대립 구도

넓은 참여 $\leftrightarrow$ 깊은 감축(넓을수록 알아짐)

쓰이는 기출 2021 학제Ⅱ 제2문 1)

답안 속 문장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협약의 가입국 수는 2개 또는 3개이며, 모든 국가가 가입하는 협약은 유지되지 않는다.”

반복게임과 할인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배신이 우월전략이지만, 무한 반복에서 방아쇠 전략을 쓰면 협력의 현재가치 $R/(1 - \delta)$ 가 배신의 이득 $T + \delta P/(1 - \delta)$ 이상일 때 협력이 유지된다. 문제에 따라 ‘할인율’이 할인인자(곱하는 값)인지 이자율형 할인율($\delta = 1/(1 + r)$)인지 명시하고 풀어야 한다.

대립 구도

일회성 게임(배신) $\leftrightarrow$ 반복게임(미래의 그림자와 협력)

쓰이는 기출 2023 학제Ⅰ 제4문 ①, 2019 학제Ⅰ 제4문

답안 속 문장

“미래를 충분히 중시하면 두 국가가 매기 협력하는 것이 부분게임완전균형이 된다. 1909년부터 이어진 미국과 캐나다의 상호작용이 이 조건을 뒷받침했다.”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

조약은 국가 간 서면 합의로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며 명칭과 관계없이 당사국을 구속한다(조약법협약 제2조 제1항 (a), 제26조). 의향서(MOI)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 의사가 없으면 정치적 약속에 그친다. 지방정부는 국가의 위임이 없는 한 조약 체결 능력이 없다. 당사국총회 결정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조약이 위임한 사항(예: 파리협정 제6조의 지침)은 조약을 근거로 구속적 운영 규칙이 된다.

대립 구도

구속력·국가책임 $\leftrightarrow$ 유연성·신속성

쓰이는 기출 2023 학제Ⅰ 제4문 ②, 2019 학제Ⅰ 제4문, 2024 학제Ⅱ 제1문 1), 2017 학제Ⅱ 제2문 2)

답안 속 문장

“MOI는 교섭의 틀과 신의성실의 기대를 만들어 1991년 협정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가격 대 수량(와이트먼)과 혼합정책

저감비용이 불확실할 때, 한계저감비용곡선이 한계편익곡선보다 가파르면 가격을 고정하는 부과금의 기대 손실이 수량을 고정하는 배출권보다 작다. 배출권에 가격 상한(부과금)과 하한(보조금)을 붙인 혼합정책은 비용 유형별 최적점의 한계편익을 상·하한으로 정하면 각 유형에서 최적 저감을 달성한다(로버츠·스펜스).

대립 구도

부과금(가격 확실성) ↔ 배출권(수량 확실성) ↔ 혼합(상·하한)

쓰이는 기출 2024 학제Ⅱ 제2문 2)·제3문 2)

답안 속 문장

“같은 정보 오류에서 배출부과금의 손실(5)이 배출권거래제(80)보다 훨씬 작다. 한계저감비용곡선이 가파르면 수량 고정은 큰 비용 손실로 이어진다.”

양면게임

협상 대표는 국제 협상(1수준)과 국내 비준(2수준)을 동시에 고려한다. 국내에서 비준될 수 있는 합의의 집합인 윈셋이 작으면 협상력은 커지지만 합의 가능 범위가 좁아지고, 비준 실패에 따른 비자발적 배반의 위험이 커진다(퍼트넵). 정권 교체로 윈셋이 바뀌면 공약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대립 구도

작은 윈셋(협상력) ↔ 합의 가능성과 신뢰성

쓰이는 기출 2024 학제Ⅱ 제3문 1), 2021 학제Ⅱ 제2문 2)

답안 속 문장

“미국의 작은 윈셋은 국제 협상에서 강경한 요구의 근거가 되지만, 합의의 범위를 좁히고 이행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지구 환경 보호는 모든 국가의 공통 책임이지만 기여와 능력이 다르므로 책임의 정도는 차별화된다(리우 선언 원칙 7). 교토의정서는 이를 부속서 I 국가만의 감축 의무라는 이분법으로, 파리협정은 ‘각자의 능력, 상이한 국가별 상황에 비추어’(제2조 제2항, 제4조 제3항)라는 자기차별화와 선진국의 지원 의무(제4조 제5항, 제9조)로 반영했다.

대립 구도

역사적 책임(남) ↔ 현재의 배출과 능력(북)

쓰이는 기출 2021 학제Ⅱ 제3문, 2024 학제Ⅱ 제1문 2)

답안 속 문장

“파리협정은 CBDR을 폐기하지 않고, 고정된 이분법에서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자기차별화와 지원 의무로 재해석하였다.”

7-2 기출 풀이**2019 학제통합논술 I****월경성 미세먼지와 한중 협력**

총 100점 · 제1·2·3문 각 22점, 제4문 34점 · 국제정치(협력 이론) + 국제법(국가책임·조약) + 경제(MAC·MD, 보수행렬)

〈제시문 1〉

(1) 동북아에서의 월경성 오염(transboundary pollution) 저감 협력의 한 방안으로 측면보상(side-payment)을 통해 중국에서 더 큰 범위의 오염저감을 진행하는 것이 한국에서 오염감축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오염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경우 오염감축의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산성비 문제와 관련하여 구소련과 핀란드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긍정적인 해법으로 한국이 환경 공적개발원조(ODA)의 방식을 통해 중국에게 오염저감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2) 전 지구적 오염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전 지구적 오염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모든 국가들의 일관된 협력을 도출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협력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동북아 국가들은 다자간 환경협력을 통해 동북아 황사 문제에 대응하는 공동관측망 및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동북아 지역에서 이동하는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모델링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동북아 다자환경협력은 환경기술 개발, 수출 및 교류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시문 2〉

(1) 국가는 다른 국가에 손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역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서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이른바 ‘no harm principle’)이라고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어느 국가든지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 또는 자국 관할권 범위 밖의 환경에 손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령 A국과 B국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A국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B국의 환경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2)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과 같은 환경문제는 개별 국가 간의 분쟁이라기보다는 초국가적 또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의문이 있어도 특정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가별로 책임의 정도를 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가해국이기도 하고 피해국이기도 하다. 공해수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와 같은 경우 국가관할권 밖에서 발생하고, 피해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제시문 3〉

국가들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조약’과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합의’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정부 내 개별 부처나 산하기관들이 국제교류나 교섭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관 업무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성립되기도 한다. 교섭 시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국가들과 그룹을 구성하여 교섭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도 쟁점별로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그룹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시문 4〉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비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 또한 증가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을 경우에는 오염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나 특정 생물만 피해를 입게 되어 한계피해(marginal damage)가 작으나, 배출량이 많아지면 대부분의 사람이나 생물이 피해를 입게 되어 피해가 커지므로 오염으로 인한 한계피해는 통상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외부로 배출되기 이전에 후처리 기술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저감기술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나갈 때 석탄화력발전소는 처음에는 비교적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저감방법을 사용하지만, 배출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생산공정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등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저감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은 통상적으로 배출량을 줄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

제1문. 〈제시문 1〉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 간 양자적, 다자적 협력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1〉의 (1)과 (2)에서 제시된 양국 간 협력방안의 한계점을 논하시오. (22점)

제2문. 〈제시문 2〉를 참고하여 월경성 미세먼지로 타국에 손해를 야기한 국가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 또한 분쟁해결 시 국제환경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환경규범의 이행확보 방안을 제시하시오. (22점)

제3문.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직접규제, 배출부과금 부과 또는 저감보조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제시문 4〉를 참고하여 각 정책에 따른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배출량, 배출부과금, 저감보조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발전이 상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단, 그림에서 배출량과 한계비용은 각각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나타내시오) (22점)

제4문. 한국과 중국은 월경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공동개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고 있다.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을 참고하여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보수행렬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가능한 합의의 형태를 국제법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양국의 협력이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국제정치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4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미세먼지라는 국내 관심사를 국제정치(양자·다자 협력의 한계), 국제법(국가책임의 성립과 이행확보), 경제학(최적 배출과 규제 수단), 게임이론(합의의 조건)으로 차례로 분석하게 했다. 제4문은 보수행렬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개방형 문항이다.

연결 개념 측면보상과 오염자부담, 과학적 불확실성, 국가책임 초안 제2조, 상당한 주의, 펄프공장 사건, 비준수 절차, MAC·MD 그래프, 피구세, 죄수의 딜레마와 방아쇠 전략, 조약과 기관 간 약정, 인식공동체.

합정 ① 제3문에서 축을 바꾸어 그리는 답안(수평축 = 배출량이 조건). ② 저감기술 발전으로 MAC가 위로 이동한다고 쓰는 답안. ③ 제4문에서 보수행렬을 제시하지 않고 말로만 ‘협력하면 이득’이라고 쓰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측면보상과 다자협력의 한계	오염자부담, 도덕적 해이, 검증, 과학적 불확실성, 비구속성	1,000~1,300자
2	국가책임 성립요건, 이행확보 방안	초안 제2조, 트레일 제련소, 펄프공장, 몬트리올 의정서 비준수 절차, 제48조	1,000~1,300자
3	최적 배출량·부과금·보조금, 기술 발전 효과	MAC = MD 그래프, $t^* = s^*$, MAC 하향 이동	1,000~1,300자
4	합의 조건(보수행렬), 합의 형태, 저해 요인과 극복 조건	죄수의 딜레마, $\delta \geq 1/5 \cdot 1/3$, 측면보상 $s > 1$, 조약법협약, 인식공동체	1,500~2,000자

예시답안 — 2019 학제통합논술 I 제1문

〈제시문 1〉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양자적 측면보상(1)과 다자 환경협력(2)이라는 두 방안을 제시한다. 두 방안은 각각 경제적 효율과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1. (1) 측면보상을 통한 양자협력의 한계

측면보상은 한계저감비용이 낮은 중국에서 감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첫째, 오염자부담 원칙과 충돌한다. 피해국인 한국이 가해국의 감축 비용을 부담하면, 오염을 일으킨 쪽이 비용을 지는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뒤집히고 한국 국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둘째,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보상을 기대한 중국은 자체 감축을 늦추거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오염을 줄이지 않을 유인을 갖는다. 셋째, 감축 효과의 검증이 어렵다. 보상으로 실제 감축이 이루어졌는지, 그 감축이 한국의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공동의 체계가 없다. 넷째, 중국은 자국 오염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책임 인정으로 비칠 것을 우려할 수 있다. 다섯째, 환경 ODA는 대개 개발 수요가 큰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을 원조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내 여론과 원조 원칙 모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구소련과 핀란드의 산성비 사례도 일시적 감축 효과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체계로 이어지려면 구속력 있는 틀이 필요했다.

2. (2) 다자적 협력의 한계

첫째, 과학적 불확실성이다. 〈제시문 1〉(2)가 지적하듯 피해의 규모와 원인이 확실하지 않아 국가들이 일관되게 협력하기 어렵다. 국가별 기여도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감축 의무를 배분할 수 없다. 둘째, 협력의 내용이 정보 공유와 공동관측, 모델링, 기술 교류에 머물러 있다. 이는 협력의 기초이지만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셋째, 구속력이 없다. 동북아의 다자 협력은 대부분 비구속적 합의나 연구 사업 형태여서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을 다룰 장치가 없다. 넷째, 집단행동의 문제이다. 깨끗한 대기는 공공재이므로 각국은 다른 나라의 감축에 무임승차하려 한다. 다섯

째, 지정학적 경쟁과 역사적 불신이 환경협력의 제도화를 가로막는다. 유럽의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처럼 기본협약과 감축 의정서로 발전한 사례와 달리, 동북아에는 그러한 지역 레짐이 없다.

3. 평가

결국 (1)은 효율적이지만 형평성과 검증에서, (2)는 포괄적이지만 구속력과 감축 성과에서 한계가 있다. 두 방안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볼 수 있다. 다자협력으로 과학적 기여도를 합의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 위에서 감축 의무와 기술·재정 지원을 연계한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만들어야 측면보상의 도덕적 해이와 다자협력의 무력함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

(1) 양자 측면보상의 한계: 오염자부담 원칙과의 충돌, 도덕적 해이, 검증. (2) 다자협력의 한계: 과학적 불확실성, 비구속성, 무임승차

예시답안 — 2019 학제통합논술 I 제2문

1. 월경성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ILC 국가책임 초안 제2조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는 작위나 부작위가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되고,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할 때 성립한다.

첫째, 귀속이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장과 발전소는 대부분 사기업이므로 그 배출 행위 자체가 국가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 관할권과 통제 아래 있는 활동이 타국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할 의무를 지므로, 이를 소홀히 한 국가기관의 부작위가 국가에 귀속된다. 국영기업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발전소의 배출은 직접 귀속될 수 있다.

둘째, 국제의무 위반이다. <제시문 2> (1)의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은 트레일 제련소 중재판정 이래 확립되어 스톡홀름선언 원칙 21과 리우선언 원칙 2에 반영되었고, 국제사법재판소도 핵무기 권고적 의견(1996)에서 일반국제법의 일부로 확인하였다. 이 의무는 결과책임이 아니라 상당한 주의 의무이다. 펄프공장 사건(2010)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가 관할권 안의 활동이 타국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중대한 월경 피해의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배출 규제, 감시, 평가를 게을리했다면 위반이 된다.

셋째, 손해와 인과관계이다. 국가책임 일반에서 손해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배상의 범위 문제로 보지만, 환경 분쟁에서는 ‘중대한’ 월경 피해와 그 원인이 특정 국가의 활동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실질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미세먼지는 여러 국가와 국내 배출원이 섞이고 기상 조건에 좌우되므로 인과관계 증명이 가장 큰 난관이다.

2. 국제환경문제의 특수성과 이행확보 방안

<제시문 2> (2)처럼 국제환경문제는 원인의 과학적 입증이 어렵고, 책임의 배분이 어렵고, 모두가 가해국이자 피해국이며, 피해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후적 손해배상 소송 중심의 분쟁해결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사전 예방 중심의 절차적 의무이다. 환경영향평가, 사전 통보와 협의, 정보 교환 의무를 조약으로 명확히 하여 피해가 생기기 전에 분쟁을 관리한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위험이 있으면 조치를 미루지 않는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둘째, 공동 감시와 과학적 평가 체계이다. 공동관측망과 배출목록, 기여도 모델링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인과관계 입증의 부담을 줄인다.

셋째, 비준수 절차이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처럼 위반을 처벌하기보다 원인을 진단하고 재정·기술 지원으로 이행을 돕는 촉진적 준수 메커니즘을 둔다. 국가보고와 검토로 투명성을 확보한다.

넷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른 지원이다. 이행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여 이행 의지를 높인다.

다섯째, 단계적 분쟁해결이다. 협의와 교섭, 공동위원회의 조정과 사실조사를 우선하고, 필요하면 중재나 국제재판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피해국 특징이 어려운 공동 환경의 침해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로서 피해국이 아닌 국가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논의(국가책임 초안 제48조)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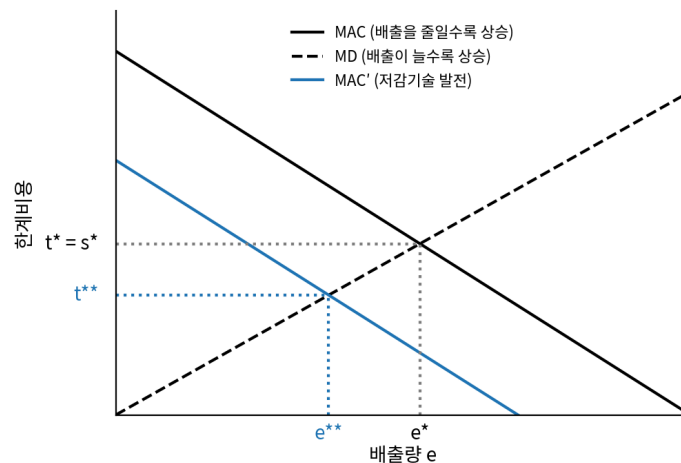
결국 국제환경규범의 이행은 사후적 책임 추궁보다 예방, 투명성, 지원을 결합한 레짐의 설계에 달려 있다.

성립요건: 귀속 + 국제의무 위반(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상당한 주의) + (환경 사안에서) 중대한 월경 피해와 인과관계. 트레일 제련소 중재, 펄프공장 사건(2010)

예시답안 — 2019 학제통합논술 I 제3문

1. 사회적 최적 배출량과 정책별 결정 과정

〈제시문 4〉에 따르면 한계피해(MD)는 배출량이 늘수록 증가하고, 한계저감비용(MAC)은 배출량을 줄일수록 증가한다. 수평축을 배출량 e 로 두면 MD는 우상향, MAC는 우하향하는 곡선이다(배출량이 적을수록, 즉 왼쪽으로 갈수록 저감비용이 커진다).



사회적 최적 배출량 e^* 는 MAC와 MD가 같아지는 점이다. e^* 보다 배출이 많으면 1단위를 더 줄일 때 피해 감소(MD)가 저감비용(MAC)보다 크므로 줄이는 것이 이롭고, e^* 보다 적으면 반대이다. 규제가 없으면 발전소는 저감비용을 들이지 않으므로 MAC가 0이 되는 수준까지 배출한다.

직접규제는 정부가 배출 상한을 e^* 로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MAC와 MD를 정확히 알면 최적을 바로 달성한다.

배출부과금은 배출 1단위마다 t^* 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발전소는 1단위를 더 줄이는 비용(MAC)이 부과금보다 작으면 줄이고 크면 부과금을 내므로, $MAC = t^*$ 가 되는 점까지 감축한다. 부과금을 $t^* = MD(e^*) = MAC(e^*)$ 로 정하면 배출량은 e^* 가 된다. 이는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피구세이다.

저감보조금은 기준 배출량에서 1단위를 줄일 때마다 s^* 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발전소는 보조금이 MAC보다 크면 감축하므로 $MAC = s^*$ 인 점까지 줄인다. $s^* = t^*$ 로 정하면 단기적으로 같은 e^* 가 달성된다. 감축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포기하므로 보조금도 배출의 기회비용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조금은 산업의 이윤을 높여 진입을 늘리므로 산업 전체의 배출이 늘 수 있고, 재정 부담이 있으며 오염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차이가 있다.

2. 저감기술 발전이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저감기술이 발전하면 같은 양을 줄이는 비용이 낮아지므로 MAC 곡선이 아래로(MAC') 이동한다. MD는 변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회적 최적 배출량은 $e^{**} < e^*$ 로 줄고, 최적 부과금도 t^{**} 로 낮아진다. 저감이 싸지면 더 많이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직접규제를 e^* 로 고정해 두면 발전소는 기술 발전에도 기준 이상으로 줄일 유인이 없어 배출량이 e^* 에 머문다. 기술 발전의 이익은 비용 절감에만 쓰인다. 배출부과금을 t^* 로 유지하면 발전소는 새 MAC'가 t^* 와 같아지는 점까지 줄이므로 배출량은 e^{**} 보다도 더 줄어든다. 이는 과도한 감축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부과금을 t^{**} 로 조정해야 한다. 저감보조금도 같은 이유로 배출을 더 줄인다. 따라서 가격 수단(부과금·보조금)은 기술 개발과 도입의 동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직접규제는 기준을 주기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기술 발전의 성과를 배출 감소로 연결하지 못한다.

수평축 = 배출량. MAC는 배출을 줄일수록(왼쪽으로 갈수록) 상승, MD는 배출이 늘수록 상승. 교점 e^* 에서 $t^* = s^*$

예시답안 — 2019 학제통합논술 I 제4문

1. 합의가 이루어질 조건: 보수행렬

한국과 중국이 저감기술 공동개발에 협력(C)하거나 비협력(D)한다고 하자. 협력에는 연구 비용이 들고, 성과인 대기질 개선과 기술은 상대방에게도 돌아간다. 미세먼지의 피해를 주로 받는 한국이 협력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 보수(한국, 중국)를 둔다.

한국 \ 중국	협력	비협력
협력	(4, 2)	(-1, 3)
비협력	(5, -1)	(0, 0)

양국 모두 상대의 선택과 관계없이 비협력이 유리하므로(한국 $5 > 4$, $0 > -1$, 중국 $3 > 2$, $0 > -1$) 1회 게임의 균형은 (비협력, 비협력)이다. 그러나 둘 다 협력하면 (4, 2)로 모두 나아지는 죄수의 딜레마이다. 합의가 이루어질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과 장래의 그림자이다. 협력이 무한히 반복되고 배신하면 영원히 비협력으로 돌아가는 방아쇠 전략을 쓰면, 할인인자 δ 가 $(T - R)/(T - P)$ 이상일 때 협력이 유지된다. 한국은 $(5 - 4)/(5 - 0) = 1/5$, 중국은 $(3 - 2)/(3 - 0) = 1/3$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의 기준이 더 높으므로, 중국이 미래의 협력 이익을 충분히 중시하도록 장기적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측면보상이다. <제시문 1> (1)처럼 한국이 중국의 협력을 조건으로 s 를 지급하면 중국의 협력 보수가 s 만큼 늘어난다. $s > 1$ 이면 중국에게 협력이 우월전략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은 보상만 하고 자신의 연구 분담을 피하려는 유인이 남으므로, 한국의 기여를 묶어 두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 함께 필요하다.

셋째, 집행과 검증이다. <제시문 2>의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과 같은 규범이 비협력의 비용을 높이고, 공동관측으로 이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능한 합의의 형태: 국제법적 측면

<제시문 3>에 따르면 국가는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를 활용한다. 첫째, 조약이다. 국가 간 서면 합의로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며 당사국을 구속한다(조약법협약 제2조, 제26조). 공동개발의 비용 분담이나 측면 보상을 약속하면 한국에서는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를 필요할 수 있다. 처음에는 원칙과 협력 틀만 정한 기본협약을 맺고, 과학적 합의가 쌓이면 감축 의정서를 추

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둘째,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 사이의 기관 간 약정이다. 소관 업무의 구체적 협력을 신속하게 정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 의사가 없으면 비구속적 합의에 그친다. 셋째, 양해각서 같은 비구속적 합의이다. 정치적·도덕적 무게는 있지만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구속력과 유연성 사이의 선택은 1의 분석과 연결된다. 측면보상과 한국의 기여를 묶으려면 조약이, 신뢰가 쌓이기 전 단계에서는 비구속적 합의가 적합하다. 다자 교섭에서는 입장이 비슷한 국가와 그룹을 구성하여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를 저해하는 요인과 극복 조건

저해 요인은 첫째,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상대적 이익의 우려이다. 공동개발로 얻은 기술이 상대의 산업 경쟁력과 국력을 키운다면, 절대적 이익이 있어도 협력을 꺼린다. 둘째, 주권과 책임 인정에 대한 거부감이다. 중국은 월경 오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 위신과 국내 정통성에 부담이 된다고 본다. 셋째, 지정학적 경쟁과 불신이다. 안보 갈등과 미중 경쟁이 환경 의제로 번진다. 넷째, 과학적 불확실성과 이해의 비대칭이다. 피해국과 가해국의 이해가 달라 공통 인식이 형성되지 않는다.

극복 조건은 첫째, 신자유제도주의가 말하는 제도화이다. 상설 공동위원회와 공동관측·검증 체계를 두면 정보 비대칭과 배신의 우려가 줄고 반복게임의 협력이 유지된다. 둘째, 인식공동체의 형성이다. 양국 과학자가 공동으로 기여도를 산정하면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 수렴하고 책임 논쟁이 과학적 문제로 바뀐다. 셋째, 기능주의적 확산이다. 정보 공유, 기술 교류처럼 정치적 부담이 적은 분야에서 시작해 감축 협력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넷째, 쟁점 연계와 보상이다. 기술 이전, 환경 산업 협력, 재정 지원을 함께 묶어 중국의 이익을 키운다. 다섯째,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공동체 정체성이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교류로 ‘공동의 대기’라는 인식을 넓히면 상대적 이익보다 공동 이익이 부각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양국 협력은 일회적 사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보수행렬은 설명용 가상 수치(죄수의 딜레마). 임계 할인인자 한국 1/5·중국 1/3, 측면보상 $s > 1$ 이면 중국의 협력이 우월전략 (check/games.py)

2023 학제통합논술 I

미국·캐나다 협력과 한중 환경협력

총 100점 · 제1문 20점, 제2문 25점, 제3문 15점, 제4문 40점 · 국제정치(현실주의·자유주의) + 국제법(환경법 원칙·조약 지위) + 게임이론(일회·반복)

〈제시문 1〉

미국 몬태나주와 캐나다 앨버타주 및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걸쳐있는 글레이셔(Glacier)－워터턴(Waterton) 지역은 주정부들이 주도한 미국과 캐나다 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R) 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지역에서 국제로터리 등이 20세기 초부터 연구, 자원관리, 공공교육을 포함한 국제협력을 추진했고, 1932년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글레이셔－워터턴레이크 국립공원을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1970~1980년대 브리티시컬럼비아 북플래트헤드강의 지류에 노천 석탄광산 개발이 계획된 이후, 수질 및 어장의 악화를 우려한 시민들은 수질자문기구인 플래트헤드유역위원회(FBC) 설립을 건의해 성사시켰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는 국제공동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IJC)로 하여금 북플래트헤드강 석탄광산 사업의 초국경 수질 및 어업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고, 1988년 IJC는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에 석탄광산채굴 금지와 ‘조화롭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강 유역 관리전략 개발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1991~1992년 FBC는 미국 지역의 공공·민간 부문 전략관리계획을 수립했고, 1993년에는 글레이셔－워터턴의 BR 매니저와 과학자들이 이를 캐나다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제시문 2〉

한국과 중국 간 환경협력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상당히 확대되었다.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및 지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포용적 성장’의 정책 기조를 대내외에 천명함에 따라, 한중 간 환경협력 분야에서도 양적 증가세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에 걸맞은 협력 내용 및 실행의 질적 발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과적인 운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듯 협력이란 상호 간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제되었을 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경우 환경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환경보전이라는 절대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책학적 갈등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단일 행위자로서 국가는 상대적 이익의 고려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양국 사이에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주도로 환경협력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최근 한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 A도(道)와 중국의 B성(省) 사이에 환경협력의 원활한 실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3〉

미국과 캐나다 간 국경을 넘는 오염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은 1900년대 초에 시작되었고 1909년 ‘경계수역(境界水域)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이 조약은 양국 간의 물(수질 및 수량)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이 조약에 의해 양국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위원회(IJC)가 설립되었는데, 동 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 간 제기된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당초 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수질문제의 해결에 있었지만 양국은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협상하기 위해서도 이 위원회를 활용하였다. 또한 양국은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Memorandum of Int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concern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1981)’(MOI)를 체결하였다. 이후 양국은 조속한 협정의 체결을 촉구하고 있는 등 MOI에 따라 교섭을 벌인 결과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Air Quality(1991)’(Agreement)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1996년 IJC 보고서는 이산화황의 배출량이 1980년 이래 51% 감소되는 등 미국과 캐나다 간 대기오염 문제에 관한 환경협력 성과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력관계는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제시문 4〉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Air Quality (1991)
Article V (Assessment, Notification, and Mitigation)

1. Each Party shall, as appropriate and as required by its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assess those proposed actions, activities and projects within the area under its jurisdiction that, if carried out, would be likely to cause significant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cluding consideration of appropriate mitigation measures.
2.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concerning a proposed action, activity or project subject to assessment under paragraph 1 as early as practicable in advance of a decision concerning such action, activity or project and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at its reque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Consultations).
3. In addition, each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consul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Consultations) concerning any continuing actions, activities or projects that may be causing significant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s well as concerning changes to its laws, regulations or policies that, if carried out, would be likely to affect significantly transboundary air pollution. [...]
5. Each Party shall, as appropriate, take measures to avoid or mitigate the potential risk posed by actions, activities or projects that would be likely to cause or may be causing significant transboundary air pollution. [...]

Article XIII (Settlement of Disputes)

1. If, after consult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Consultations), a dispute remains between the Parties over the interpretation 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y shall seek to resolve such dispute by negotiations between them. Such negotiations shall commence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ninety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negoti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2. If a dispute is not resolved through negotiation, the Parties shall consider

whether to submit that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IJC) in accordance with either Article IX(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or Article X(Review and Assessment) of the Boundary Waters Treaty. If, after such consideration, the Parties do not elect either of those options, they shall,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submit the dispute to another agreed form of dispute resolution.

〈제시문 5〉

H국과 S국은 D강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각국이 모두 D강을 협력적으로 이용할 경우, 각각 α 의 순편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두 국가가 모두 D강을 비협력적으로 이용할 경우, 양국은 0의 순편익을 얻게 된다. 만약 H국은 D강을 협력적으로 이용하고 S국이 비협력적으로 이용할 경우, H국은 $-\frac{\beta}{2}$ 의 순편익을 얻고 S국은 β 의 순편익을 얻게 된다. 반대로 H국이 비협력적으로 이용하지만 S국이 협력적으로 이용할 경우, H국과 S국의 순편익은 각각 β 와 $-\frac{\beta}{2}$ 가 된다. (단, $0 < \alpha < \beta$)

〈문제〉

제1문. 현실주의 및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적 시각의 핵심 가정에 입각하여 〈제시문 1〉 사례와 〈제시문 2〉 사례의 환경협력 양상을 비교분석하시오. (20점)

제2문.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참조하여 ‘미국과 캐나다 간 Agreement’ 제5조의 당사자 의무는 국제환경법상의 원칙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양국 간의 국제법적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3문. 〈제시문 5〉를 참고하여 H국과 S국이 각각 상대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H국과 S국의 순편익을 나타내는 보수행렬(payoff matrix)을 제시하고, 두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협력 여부를 한 번만 선택한다면, 각국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그 해를 도출하고 해석하시오. (15점)

제4문.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 〈제시문 5〉를 참조하여 국가 간 환경협력의 다양한 노력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제시문 1〉과 〈제시문 3〉의 사례와 같이 양국이 오랜 시간 끊임없이 반복하여 협력 여부를 선택한다면, 〈제시문 5〉의 H국과 S국의 선택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그 해를 도출하고 함의를 설명

하시오. (단, 순편익에 대한 할인율(discount rate)은 ρ 이다($0 < \rho < 1$)) 또한, ②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4>를 참조하여 ‘미국과 캐나다 간 MOI’, ‘미국과 캐나다 간 Agreement’,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A도(道)와 중국 B성(省) 간 MOU’의 국제법적 지위와 효력을 비교설명하고, ③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4>, <제시문 5>를 참조하여 한중 간 환경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4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성공 사례(미국·캐나다)와 정체 사례(한중)를 이론으로 비교하고, 협정 제5조에 담긴 환경법 원칙과 분쟁해결 절차, 공유 하천 게임의 일회·반복 해, 세 문서(MOI·Agreement·MOU)의 법적 지위를 연결하게 했다.

연결 개념 상대적 이익 대 절대적 이익, 다층적 거버넌스, 환경영향평가·통보·협약·예방, IJC, 죄수의 딜레마, 방아쇠 전략, 조약법협약 제2·26조, 지방정부의 조약 체결 능력.

합정 ① 할인율 ρ 를 할인인자로 볼지 이자율형 할인율로 볼지 밝히지 않는 답안(둘 다 쓰는 것이 안전). ② MOI를 조약으로 보는 답안. ③ 제2문에서 제13조의 단계(협약 → 90일 내 교섭 → IJC 검토 → 합의된 방법)를 빠뜨리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두 사례의 현실주의·자유주의 비교	핵심 가정 4개씩, 비교표	900~1,200자
2	제5조의 환경법 원칙, 분쟁해결 방법	트레일 제련소, 펄프공장, 리우선언 원칙 2·17·19, 협정 제13조, 경계수역조약 제9·10조	1,100~1,500자
3	보수행렬과 일회성 해	비협력 강우월, (0, 0), 죄수의 딜레마	700~900자
4	① 반복게임의 해 ② 세 문서의 지위 ③ 한중 협력 방안	$\rho \geq (\beta - \alpha)/\beta$ (또는 $\rho \leq \alpha/(\beta - \alpha)$), 조약법 협약 제2조 제1항 (a)	1,800~2,400자

예시답안 — 2023 학제통합논술 I 제1문

1. 두 이론의 핵심 가정

현실주의는 첫째,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이며, 둘째, 단일하고 합리적인 국가가 핵심 행위자이고, 셋째, 국가는 생존과 권력을 위해 상대적 이익을 중시하며, 넷째, 국제제도는 강대국 이익의 반영에 불과해 독자적 효과가 작다고 본다. 자유주의는 첫째, 국가 외에 지방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같은 다양한 행위자가 중요하고, 둘째, 상호의존이 협력의 이익을 키우며, 셋째, 국가는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고, 넷째, 제도가 정보와 신뢰를 제공하여 협력을 촉진한다고 본다.

2. 두 사례의 비교분석

기준	〈제시문 1〉 미국·캐나다 글레이셔－워터턴	〈제시문 2〉 한국·중국
주도 행위자	주정부, 국제로터리, 시민, 과학자와 BR 매니저	중앙정부(단일 행위자로서 국가)
이익의 계산	환경보전의 공동 이익(절대적 이익)	지정학적 갈등 속 상대적 이익 우선
제도	국제평화공원, FBC, IJC 등 제도의 축적	협력의 양적 증가, 실행 제도 미흡
결과	광산채굴 금지 권고, 관리계획의 국경 간 확대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성과 미흡

〈제시문 1〉의 성공은 자유주의 가정으로 잘 설명된다. 20세기 초부터 국제로터리 같은 비국가 행위자가 연구, 자원관리, 교육 협력을 이끌었고, 석탄광산 개발에 대해 시민들이 수질자문기구인 FBC의 설립을 이끌어 냈다. 양국 정부는 IJC에 영향평가를 맡겼고, IJC는 채굴 금지와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를 권고했다. 미국 지역의 관리계획이 과학자 네트워크를 통해 캐나다 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제도가 협력을 축적한 과정이다. 동맹이자 안보 위협이 없는 양국 관계에서는 상대적 이익의 우려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이 점은 현실주의도 인정할 수 있는 배경 조건이다.

〈제시문 2〉의 정체는 현실주의 가정으로 설명된다. 중국의 ‘포용적 성장’ 기조로 협력은 양적으로 늘었지만, 지정학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단일 행위자인 국가는 환경보전이라는 절대적 이익보다 상대적 이익을 우선한다. 환경협력이 상대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을 높이거나, 오염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하므로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다. 다만 제시문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주도의 협력, 예컨대 A도와 B성의 MOU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자유주의적 처방이다. 국가 간 상대적 이익 경쟁을 우회하여 하위 행위자 사이에 신뢰와 이익을 쌓는 방법이다.

3. 종합

두 사례의 차이는 협력의 이익이 아니라 행위자 구성과 안보 관계에서 나온다. 현실주의는 한중 협력이 정체인 이유를, 자유주의는 미국·캐나다 협력이 성공한 이유와 한중 협력의 돌파구를 잘 설명한다. 그러나 지방정부 협력도 결국 중앙정부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한중 협력이 미국·캐나다 수준에 이르려면 하위 행위자의 협력이 국가 간 제도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

핵심 가정(행위자·이익·제도의 역할)을 먼저 세우고, 두 사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표를 활용

예시답안 — 2023 학제통합논술 I 제2문

1. 제5조의 당사자 의무와 국제환경법 원칙

첫째,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과 예방의 원칙이다. 제5조 제5항은 중대한 월경 대기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일으키고 있는 활동의 잠재적 위험을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는 자국 관할 아래의 활동이 타국 환경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할 책임(트레일 제련소 중재판정, 리우선언 원칙 2)을 구체화한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 뒤의 배상이 아니라 발생 전의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예방의 원칙을 반영한다. ‘가능성이 있는(likely to cause)’ 위험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전주의적 접근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의무이다. 제5조 제1항은 시행되면 중대한 월경 대기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계획 사업을 완화 조치의 검토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펄프공장 사건(2010)에서 중대한 월경 피해의 위험이 있는 산업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국제법상 의무로 보았다(리우선언 원칙 17).

셋째, 사전 통보와 협의 의무이다. 제5조 제2항은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결정 전에 가능한 한 일찍 상대방에 통보하고, 요청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한다. 제3항은 계속 중인 활동과 관련 법령·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도 요청 시 협의하도록 한다. 이는 리우선언 원칙 19와 라누호 중재판정(1957)에서 확인된 신의성실한 통보·협의 원칙을 반영한다. 다만 협의는 상대방의 동의권을 뜻하지 않는다.

넷째, 이 의무들은 ‘각 당사자의 법령과 정책에 따라’ 이행되도록 되어 있어, 국제 의무를 국내 제도를 통해 실현하는 이행 구조를 취한다. 의무의 성격은 결과의무가 아니라 상당한 주의의 행위의무이다.

2. 의무 위반 시 양국 간 분쟁해결 방법

협정은 단계적 분쟁해결 절차를 둔다(제13조). 첫째, 제11조에 따른 협의를 거친다. 둘째, 협의 후에도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분쟁이 남으면 교섭으로 해결을 모색하며, 교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늦어도 90일 안에 시작해야 한다. 셋째,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수역조약에 따라 국제공동위원회(IJC)에 회부할지 검토한다. 경제수역조약 제9조의 회부는 사실 조사와 보고를 위한 것이어서 IJC의 판단이 구속력을 갖지 않고, 제10조의 회부는 양국의 동의를 전제로 결정을 맡기는 방식이다. 넷째, 두 방식을 모두 택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분쟁을 ‘합의된 다른 분쟁해결 방법’에 회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재, 조정,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 방법은 다시 합의가 필요하다.

이 절차의 특징은 첫째, 사법적 판단보다 외교적·협의적 해결을 우선한다. 둘째, 1909년부터 축적된 IJC라는 상설 공동기구를 활용하여 과학적 조사와 신뢰에 기초한 해결을 꾀한다. 셋째, 마지막 단계에서 제3자 해결에 회부할 의무를 둬으로써 분쟁이 미해결로 남는 것을 막는다. <제시문 3> 처럼 이 체계 아래에서 이산화황 배출이 1980년 이래 51% 감소한 것은 절차적 의무와 공동기구가 결합된 레짐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위반이 확정되면 위반국은 국가책임법에 따라 위반을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조 =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예방)·환경영향평가·사전 통보와 협의·위험 완화. 분쟁해결 = 협의 → 90일 내 교섭 → IJC 회부 검토 → 합의된 다른 방법

예시답안 — 2023 학제통합논술 I 제3문

1. 보수행렬

H국과 S국은 동시에, 상대의 선택을 모른 채 협력적 이용(C)과 비협력적 이용(N) 중 하나를 고른다. <제시문 5>의 순편익을 (H국, S국)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H국 \ S국	협력	비협력
협력	(α, α)	$(-\frac{\beta}{2}, \beta)$
비협력	$(\beta, -\frac{\beta}{2})$	$(0, 0)$

2. 해의 도출

H국의 입장에서 S국이 협력하면 협력 시 α , 비협력 시 β 를 얻는다. $0 < \alpha < \beta$ 이므로 비협력이 낫다. S국이 비협력하면 협력 시 $-\frac{\beta}{2}$, 비협력 시 0이므로 역시 비협력이 낫다. 따라서 H국에게 비협력은 강우월전략이다. S국도 대칭적으로 비협력이 강우월전략이다. 두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 고려하여 한 번만 선택하면 유일한 내쉬균형은 (비협력, 비협력)이고, 순편익은 (0, 0)이다.

3. 해석

이 결과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이다. 두 국가가 모두 협력하면 각각 $\alpha > 0$ 을 얻어 모두 나아지는데도,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집단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무임승차의 유혹이다. 상대가 강을 아껴 쓸 때 자국은 마음껏 쓰면 β 라는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 둘째, 착취의 두려움이다. 자국만 협력하면 상대에게 이용당해 $-\frac{\beta}{2}$ 의 손실을 본다.

D강은 공유자원이다. 각국이 수량을 과다하게 쓰거나 오염을 배출하는 비용의 일부는 상대국에 전가되므로, 자국 비용만 고려하는 국가는 사회적 최적보다 과도하게 이용한다.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이다. 또 한 번만 선택하는 게임에서는 배신에 대한 보복이 없고, 상대의 약속을 믿을 근거도 없다. 따라서 협력을 실현하려면 게임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반복적 상호작용으로 미래의 보복 가능성을 만들거나(제4문 ①), 구속력 있는 협정과 공동기구로 배신의 비용을 높이고 이행을 감시하거나,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수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 <제시문 3>의 미국과 캐나다가 IJC와 협정을 통해 협력한 것은 일회성 게임을 제도화된 반복게임으로 바꾼 사례로 볼 수 있다.

$\beta > \alpha$, $0 > -\beta/2$ 이므로 비협력이 강우월전략. 균형 (비협력, 비협력) = (0, 0) — 죄수의 딜레마

예시답안 — 2023 학제통합논술 I 제4문

① 무한반복게임의 해와 합의

양국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협력 여부를 선택한다면, 제3문의 일회성 균형과 달리 협력이 균형이 될 수 있다. 각국이 “상대가 협력하는 한 협력하고, 한 번이라도 배신하면 이후 영원히 비협력한다”는 방아쇠 전략을 쓴다고 하자. 문제의 ρ 를 미래 순편익에 곱하는 기간당 할인인자로 보면, 계속 협력할 때의 현재가치는

$$\alpha + \rho\alpha + \rho^2\alpha + \dots = \frac{\alpha}{1-\rho}$$

이고, 이번 기에 배신하면 이번에 β 를 얻은 뒤 이후에는 영원히 (0, 0)이므로 현재가치는 β 이다. 협력이 유지될 조건은

$$\frac{\alpha}{1-\rho} \geq \beta \Leftrightarrow \rho \geq 1 - \frac{\alpha}{\beta} = \frac{\beta - \alpha}{\beta}$$

이다. 따라서 미래를 충분히 중시하면(ρ 가 클수록) 두 국가가 매기 협력하는 (협력, 협력)이 부분게임완전 균형이 된다. 만약 ρ 를 이자율과 같은 할인율로 보아 할인인자를 $1/(1+\rho)$ 로 두면, 조건은 $\rho \leq \alpha/(\beta - \alpha)$ 가 되어 할인율이 충분히 낮아야 한다. 어느 해석이든 결론은 같다.

합의는 첫째, 미래의 그림자가 길수록 협력이 쉬워진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1909년부터 IJC를 통해 수십 년간 상호작용해 왔고, 이 장기적 관계가 협력을 뒷받침했다. 둘째, 협력의 이익 α 가 클수록, 배신의 유혹 β 가 작을수록 협력 조건이 완화된다. 셋째, 반복게임의 협력은 배신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유지되므로 감시와 정보 공유 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다른 균형도 존재하므로 협력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가 협력 균형으로의 조정을 돕는다.

② MOI, Agreement, MOU의 국제법적 지위와 효력

1981년 ‘미국과 캐나다 간 MOI’는 양국 정부가 대기오염 협정의 체결을 위한 의사를 표명한 문서이다. 법적 구속 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교섭 방향을 밝힌 것이므로 조약이 아니며, 위반해도 국가책임이 생기지 않는 비구속적 합의이다. 다만 교섭의 틀과 신의성실의 기대를 만들어 1991년 협정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1991년 ‘미국과 캐나다 간 Agreement’는 국가 간에 서면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합의로서 조약이다(조약법협약 제2조 제1항 (a)). 명칭과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은 신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제26조). 위반 시 국가책임이 발생하고, 제13조의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된다.

‘한국 A도와 중국 B성 간 MOU’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이다. 국제법상 조약 체결 능력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제기구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MOU는 그러한 위임이나 구속 의사가 없으므로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고, 양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지방정부 간 행정적·정치적 약속으로서 협력의 실천적 토대가 될 뿐이다.

비교하면 구속력은 Agreement가 가장 강하고, MOI와 MOU는 비구속적이다. 그러나 MOI는 국가 정부 간 문서로서 조약 체결로 이어지는 공식 교섭의 출발점이었고, MOU는 국가보다 하위 단위의 협력이라는 차이가 있다.

③ 한중 환경협력을 증진할 국제정치적 방안

첫째, 제도화이다. 미국·캐나다의 IJC처럼 상설 공동위원회를 두어 조사, 감시, 분쟁 조정을 맡기면 정보 비대칭이 줄고, ①에서 본 반복게임의 협력이 안정된다. 둘째, 단계적 법제화이다. MOI에서 Agreement로 발전한 경로처럼, 비구속적 합의로 신뢰를 쌓은 뒤 통보·협의·환경영향평가(〈제시문 4〉 제5조) 같은 절차적 의무를 담은 조약으로 나아간다. 셋째, 다층적 거버넌스이다. 〈제시문 1〉처럼 지방정부, 시민사회, 과학자 네트워크가 중앙정부 간 상대적 이익 경쟁을 우회하여 협력의 실적을 쌓게 하고, 이를 국가 간 제도로 연결한다. 넷째, 과학적 인식공동체의 형성이다. 공동 관측과 연구로 오염의 원인과 기여도에 대한 공통 인식을 만들면 책임 논쟁이 줄어든다. 다섯째, 보수 구조의 변경이다. 기술 협력, 환경 산업 투자, 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협력의 이익 α 를 키우고 배신의 유혹을 줄인다. 여섯째, 정치적 갈등과 환경 의제의 분리이다. 환경을 지정학적 경쟁과 분리된 기능적 협력 분야로 관리하여 상대적 이익의 우려를 완화한다. 이러한 방안은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를 제도화된 반복게임으로 바꾸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

① ρ 를 기간당 할인인자로 읽으면 협력 조건 $\rho \geq (\beta - \alpha)/\beta$. 할인율 r 로 읽어 할인인자 $1/(1+r)$ 를 쓰면 $r \leq \alpha/(\beta - \alpha)$ (두 해석 병기 권장)

2021 학제통합논술 II

파리협정, 감축 게임과 패권

총 100점 · 제1문 35점, 제2문 30점, 제3문 35점 · 국제법(파리협정·리우선언) + 경제(공공재·협약 안정성) + 국제정치(패권안정·레짐)

〈제시문 1〉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의 주요 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반영되었다. 이 원칙은 비록 모든 국가가 세계 기후변화의 책임을 떠맡아야 하지만, 평균온도 상승을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과다배출의 일차적 책임은 산업화의 수혜자인 선진국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즈음, 고속성장하고 있는 남반구의 신흥발전국 역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국가들의 ‘개별적 능력’이 변했기 때문이다. 2011년 6개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총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다(중국 29%, 미국 16%, 유럽연합 11%, 인도 6%, 러시아 5%, 일본 4%). 따라서 새로운 기후협정에 대한 협상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필수감축량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찾는 일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의 ‘탄소공간(carbon space)’ 허용치가 선진국들의 과거 배출량에 의해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계속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1인당 배출량은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들 사이에 여전히 큰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 국가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 배출량의 상당 부분은 상품생산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중국으로 이전된 직접적인 결과인 측면도 있다.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상이한 국가별 상황에 비추어’라는 구절을 덧붙였다. 파리협정문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발전국, 그리고 군소도서국에 부과된 의무사항들이 미묘하게 다르다.

〈제시문 2〉

The Paris Agreement

Article 3

A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ll

Parties are to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as defined in Articles 4, 7, 9, 10, 11 and 13 with the view to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s set out in Article 2. The efforts of all Parties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over time, while recognizing the need to support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4

...

2. Each Party shall prepare, communicate and maintain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at it intends to achieve. Parties shall pursue domestic mitigation measures,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objectives of such contributions.

...

4.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taking the lead by undertaking economy-wide absolute emission reduction targets.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enhancing their mitigation efforts, and are encouraged to move over time towards economy-wide emission reduction or limitation target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5. Support shall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10 and 11, recognizing that enhanced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will allow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actions.
6.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ay prepare and communicate strategies, plans and actions for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reflecting their special circumstances.

...

9. Each Party shall communicate a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every five years in accordance with decision 1/CP.21 and any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d be informed by the outcomes of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 위에서 언급된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rticle 2(objective), 4(reduction), 7(adaptation), 9(financial assistance), 10(technology transfer), 11(capacity-building), 13(transparency), 14(global stocktake)

〈제시문 3〉

(1) 온실가스 감축은 분명한 공공재이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 이러한 혜택은 특정 국가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역시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무임승차를 회피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비용이 들지만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모든 국가가 누리기 때문이다.

(2) N 개의 동질적인 국가가 있으며, 각 국가 i 는 온실가스 감축을 d_i 만큼 할 수 있다. $D = \sum_{i=1}^N d_i$ 는 전 세계 온실가스 총감축량이다. 온실가스 총감축량 D 로부터 얻는 각 국가의 이익은 $b \times D$ 로 동일하고, 각 국가가 d_i 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c \times d_i^2$ 로 동일하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개별 국가의 감축량을 구속력 있는 할당방식으로 배분하는 경우, 각 국가의 선호와 비용함수가 동질적일 때 총감축량 D 가 결정되면 각 국가는 $\frac{D}{N}$ 만큼을 감축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감축량을 결정하는 경우, 총감축량 D 는 $\sum_{i=1}^N d_i$ 이다. (단, b, c 는 파라미터이며, $b, c > 0$ 이다)

〈제시문 4〉

전 세계에는 N 개 국가가 있고, 이 중 M 개의 국가가 국제협약에 가입하며 나머지 $N - M$ 개는 가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국가들은 모두 동질적이고 협약 가입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조건은 모두 같다고 하자. 그렇다면 각 국가는 가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크기의 M 에서 국제협약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국제

협약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협약 가입국의 탈퇴 의사가 없어야 하고, 동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협약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 가입국 이든 미가입국이든 자신의 위치를 바꿀 때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즉 가입국의 수가 M 일 때 $v_c(N, M)$ 와 $v_n(N, M)$ 을 각각 가입국과 미가입국의 이익이라 하면, 다음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M 개의 국가가 가입한 국제협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 내적 안정성: $v_c(N, M) \geq v_n(N, M - 1)$

• 외적 안정성: $v_c(N, M + 1) \leq v_n(N, M)$

내적 안정성은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서 탈퇴할 유인을 갖지 않을 조건이고, 외적 안정성은 협약 미가입국이 협약에 가입할 유인을 갖지 않을 조건이다.

〈제시문 5〉

(1)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 3월 미국이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비준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교토의정서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 인도와 같은 인구대국을 포함한 세계의 80%에 이행의무를 면제해 주고, 미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기 때문이다.”

(2) “In 2014, President Xi and I* stood together in Beijing to announce landmark climate targets for our two countries to meet. That announcement set us on the road to Paris by jumpstarting an intense diplomatic effort to put other countries on the same course. ... This year, in 2016, we meet again to commit formally to joining the agreement ahead of schedule, creating the prospect that the agreement might enter into force ahead of schedule, as well.”

* Barack Obama

(3) “Therefore, in order to fulfill my solemn duty to protect America and its citizens,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 but begin negotiations to reenter either the Paris accord or an - really entirely new transaction, on terms that are fair to the United States, its businesses, its workers, its people, its taxpayers.”

(4)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

Sec. 102. Purpose. This order builds on and reaffirms actions my Administration has

already taken to place the climate crisis at the forefront of this Nation's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planning, including submitting the United States instrument of acceptance to rejoin the Paris Agreement.”

〈문제〉

제1문. (총 35점)

- 1) 〈제시문 2〉를 참고하여 국가결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의 의의와 절차를 설명하고, 그 내용 준수의 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 2) 〈제시문 3〉을 참고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결정에서 구속력 있는 할당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두 방식에 대해 ① 개별 국가가 선택하려는 감축량, ②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 그리고 ③ 전 세계 순이익을 구하여 비교하시오. (20점)

제2문. (총 30점)

- 1) 전 세계에 5개 국가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표〉는 협약 가입국 수에 따른 가입국과 미가입국의 이익을 나타낸다. 〈제시문 4〉에 근거하여, 국제협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입국의 수와 유지될 수 없는 가입국의 수가 결정되는 과정을 모두 설명하시오. (15점)

이익 \ M	1	2	3	4	5
$v_c(N, M)$	4.5	5.0	6.5	9.0	12.5
$v_n(N, M)$	4.5	6.5	10.5	16.5	24.5

- 2)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5〉를 참고하여 교토의정서 발효와 파리협정 체결, 그리고 미국의 파리협정 가입, 탈퇴 및 재가입 과정을 패권안정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5점)

제3문. (총 35점)

- 1)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는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5〉를 참고하여 이 둘의 주요 차이를 세계화, 국제레짐,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남북 갈등, 미중 갈등 등의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20점)
- 2)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고하여 국제규범의 발전과정 측면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의미를 기술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의 개념과 동 원칙이 파리협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파리협정의 NDC 구조(법), 할당과 자율 감축의 비교(경제), 협약 안정성 표 해석(경제·게임), 미국의

가입·탈퇴·재가입(패권안정이론), 교토와 파리의 차이(국제정치), CBDR의 반영(법)을 묻는다. 영문 조문과 대통령 발언을 정확히 인용하는 것이 점수 차를 만든다.

연결 개념 파리협정 제3·4·13·14조, 절차적 의무 대 결과의무, $bD - cd_i^2$ 의 최적화, 내적·외적 안정성, 킨들버거·코헤인, 리우선언 원칙 7.

합정 ① NDC 내용의 달성까지 법적 의무라고 쓰는 답안. ② 할당 방식에서 각국이 자국 편익 b 만 고려한다고 계산하는 답안(할당이면 Nb 를 고려). ③ 협약 안정성에서 $M = 2$ 와 $M = 3$ 중 하나만 안정이라고 쓰는 답안.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 NDC의 의의·절차·구속력·특성 2) 할당 대 자율의 감축량과 순이익	제4조 제2·4·9항, 제13·14조, $Nb/(2c)$ 대 $b/(2c)$, $N^3b^2/(4c)$ 대 $N(2N-1)b^2/(4c)$	1,600~2,100자
2	1) 안정적 가입국 수 2) 교토·파리·미국의 행보와 패권안정이론	$M = 2, 3$ 안정, 1·4·5 불안정, 킨들버거, 미중 공동 발표	1,400~1,800자
3	1) 교토와 파리의 국제정치적 차이 2) 리우선언의 의의와 CBDR의 반영	세계화·레짐·구조·남북·미중, 원칙 7, 제2조 제2항·제4조 제3~6항·제9조	1,600~2,100자

예시답안 — 2021 학제통합논술 II 제1문

1) 국가결정기여(NDC)의 의의, 절차, 구속력과 제도적 특성

의의는 첫째, 모든 당사국이 감축에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하향식으로 부과했다면, 파리협정은 각국이 스스로 기여 수준을 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택했다. 둘째, 각국의 다른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력이 진전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제3조).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당사국은 달성하고자 하는 NDC를 연속적으로 준비하고 통보하며 유지해야 한다(제4조 제2항). NDC는 5년마다 통보하며, 제14조의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제4조 제9항). 각 차기 NDC는 이전보다 진전되어야 한다. 이행 상황은 제13조의 투명성 체계에 따라 보고되고 검토된다.

법적 구속력은 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NDC를 준비, 통보, 유지하고 5년마다 제출하는 절차적 의무는 ‘shall’로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다. 국내 감축 조치를 추진하는 것도 ‘shall pursue’로 규정되었지만 그 목적은 ‘기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서, NDC의 내용을 반드시 달성할 결과의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할 행위의무이다. 선진국이 경제 전반의 절대량 감축목표를 계속 주도해야 한다는 제4조 제4항은 ‘should’로 규정되어 권고적이다. 즉 ‘제출은 의무, 달성은 비구속’이라는 혼합 구조이다.

제도적 특성은 첫째, 서약과 검토(pledge and review)이다. 구속력 대신 투명성, 동료 압력, 평판에 기대어 이행을 촉진한다. 둘째, 진전 원칙과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결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표를 상향하는 톱니바퀴(ratchet) 구조를 이룬다. 셋째, 개도국에 대한 지원(제4조 제5항)과 최빈국·군소도서국의 유연성(제4조 제6항)으로 차별화를 내재화했다. 이 구조는 참여의 폭을 넓혔지만, 목표 달성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구속력 있는 할당 방식과 자율적 결정 방식의 비교

각국의 순이익은 $bD - cd_i^2$ 이다.

구속력 있는 할당 방식에서는 모든 국가가 같은 양 $d = D/N$ 을 감축하므로, 대표적 국가의 순이익은 $bNd - cd^2$ 이다. 이를 극대화하면 $bN = 2cd$ 에서 ① 개별 국가의 감축량 $d = Nb/(2c)$, ② 전 세계 감축량 $D = N^2b/(2c)$, ③ 전 세계 순이익 $N(bD - cd^2) = N^3b^2/(4c)$ 이다. 각국은 자국 감축이 모든 국가에 주는 이익을 함께 고려하게 되므로, 이는 전 세계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최적과 같다.

자율적 결정 방식에서는 각국이 다른 국가의 감축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국의 순이익만 극대화한다. $b = 2cd_i$ 에서 ① $d_i = b/(2c)$, ② $D = Nb/(2c)$, ③ 전 세계 순이익은 $N(b \cdot Nb/(2c) - c \cdot b^2/(4c^2)) = N(2N - 1)b^2/(4c)$ 이다.

구분	구속력 있는 할당	자율적 결정
① 개별 감축량	$Nb/(2c)$	$b/(2c)$
② 전 세계 감축량	$N^2b/(2c)$	$Nb/(2c)$
③ 전 세계 순이익	$N^3b^2/(4c)$	$N(2N - 1)b^2/(4c)$

자율적 결정에서 각국의 감축량은 할당 방식의 $1/N$ 에 불과하고, 전 세계 순이익은 $N(N - 1)^2b^2/(4c)$ 만큼 작다. 국가가 많을수록 그 격차는 커진다. 각국은 자국 감축 1단위가 다른 $N - 1$ 개국에 주는 이익 $(N - 1)b$ 를 무시하므로 과소 감축한다. 이것이 〈제시문 3〉 (1)이 말한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이다. 이 결과는 구속력 있는 할당이 효율적임을 보여주지만, 1)에서 본 파리협정은 참여를 넓히기 위해 자율적 결정을 택했다. 따라서 진전 원칙과 이행점검으로 자율적 기여를 할당 수준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것이 파리 체제의 과제이다.

2) 할당: $d = Nb/2c$, $D = N^2b/2c$, 순이익 $N^3b^2/4c$ / 자율: $d = b/2c$, $D = Nb/2c$, 순이익 $N(2N-1)b^2/4c$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21 학제통합논술 II 제2문

1) 안정적 가입국 수의 결정

〈제시문 4〉에 따라 각 M 에 대해 내적 안정성 $v_c(N, M) \geq v_n(N, M - 1)$ 과 외적 안정성 $v_c(N, M + 1) \leq v_n(N, M)$ 을 확인한다. 내적 안정성은 가입국 하나가 탈퇴하여 가입국이 $M - 1$ 개가 될 때 얻는 미가입국 이익보다 현재의 가입국 이익이 크거나 같은지, 외적 안정성은 미가입국 하나가 가입하여 $M + 1$ 개가 될 때 얻는 가입국 이익이 현재의 미가입국 이익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묻는다.

M	내적 안정성	외적 안정성	판정
1	— (탈퇴하면 협약이 사라짐)	$5.0 \leq 4.5$ 불성립	불안정
2	$5.0 \geq 4.5$ 성립	$6.5 \leq 6.5$ 성립	안정
3	$6.5 \geq 6.5$ 성립	$9.0 \leq 10.5$ 성립	안정
4	$9.0 \geq 10.5$ 불성립	$12.5 \leq 16.5$ 성립	불안정
5	$12.5 \geq 16.5$ 불성립	— (미가입국 없음)	불안정

$M = 1$ 은 미가입국이 가입하면 이익이 4.5에서 5.0으로 늘므로 가입 유인이 있어 외적으로 불안정하다(가입국이 0개일 때의 이익은 표에 없지만, 외적 안정성이 깨지므로 판정에 영향이 없다). $M = 2$ 와 $M = 3$ 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특히 $M = 2$ 에서는 추가 가입의 이익과 미가입의 이익이 6.5로 같고, $M = 3$ 에서는 탈퇴의 이익과 잔류의 이익이 6.5로 같아 경계에서 안정이다. $M = 4$ 에서는 가입국 하나가 탈퇴하면 이익이 9.0에서 10.5로 늘고, $M = 5$ 에서는 12.5에서 16.5로 늘어 탈퇴 유인이 있으므로 내적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협약의 가입국 수는 2개 또는 3개이며, 모든 국가가 가입하는 협약(5개)은 유지되지 않는다. 미가입국의 이익이 언제나 가입국 이익 이상이라는 표의 구조, 즉 협약의 이익을 미가입국도 누리는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가입국이 늘수록 무임승차의 유인이 커진다. 이는 환경협약이 넓은 참여와 깊은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탈퇴 유인을 줄이기 위해 가입국에만 주는 선택적 혜택(기술·재정 지원, 무역 연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 패권안정이론으로 본 교토의정서 발효, 파리협정 체결, 미국의 가입·탈퇴·재가입

패권안정이론에 따르면 국제협력 같은 공공재는 이를 공급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패권국이 있을 때 형성되고 유지된다. 〈제시문 3〉처럼 온실가스 감축은 공공재이므로 무임승차를 막을 지도력이 필요하다.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지도력 없이 발효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중국, 인도 등 세계의 80%에 의무를 면제하고 미국 경제에 손실을 준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했다(〈제시문 5〉 (1)). 패권국이 공공재 공급의 비용 분담이 불공평하다고 보아 이탈한 것이다. 의정서는 유럽연합의 주도로 발효되었지만, 최대 배출국 미국이 빠지고 신흥국에는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었다. 이는 패권국 없이도 제도가 존속할 수 있지만 약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파리협정은 패권국과 부상국의 공동 지도력으로 체결되었다. 〈제시문 1〉처럼 국제체제의 구조가 바뀌어 중국이 최대 배출국이 되자, 미국 단독의 지도력으로는 협정을 만들 수 없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함께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2016년 함께 조기 가입을 약속하여(〈제시문 5〉 (2)),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협정의 조기 발효를 가능하게 했다. 미국이 중국의 참여를 확보하여 부담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자 공공재 공급의 의사가 생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제시문 5〉 (3))는 패권국이 공공재 공급의 의사를 철회한 사례이다. 미국 납세자와 노동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이유는 교토 거부의 논리와 같다. 그러나 다른 당사국들은 협정을 유지했다. 이는 패권 이후에도 제도가 유지된다는 신자유제도주의의 설명과 맞는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가입(〈제시문 5〉 (4))은 기후 위기를 외교와 국가안보의 중심에 두어 패권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이 과정은 패권안정이론의 설명력과 한계를 함께 보여준다. 미국의 참여 여부가 체제의 실효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은 이론을 뒷받침하지만, 패권국이 이탈해도 체제가 유지되고 중국과 유럽이 공동 지도력을 보완한다는 점은 다극화된 구조에서 공공재가 집단적 지도력으로 공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국내 정치에 따라 공약이 바뀌는 것은 패권국 지도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1) 안정적 가입국 수 $M = 2, 3$ / 불안정 $M = 1$ (외적 불안정), 4·5(내적 불안정). $v_n(N,0)$ 은 표에 없음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21 학제통합논술 II 제3문

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차이: 국제정치적 측면

측면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국제레짐	하향식, 부속서 I 국가에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상향식 NDC, 모든 국가 참여, 절차적 의무와 투명성
체제 구조	선진국 중심의 배출 구조 전제	중국 등 신흥국이 최대 배출국인 구조 반영
남북 갈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법적 차별화	상이한 국가별 상황에 따른 자기차별화
미중 관계	미국 불참, 중국 의무 없음	미중 공동 발표로 협상 전인

첫째, 세계화의 측면에서 생산의 국제적 이전이 배출 구조를 바꾸었다. 〈제시문 1〉처럼 중국 배출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유럽의 상품 생산이 중국으로 옮겨 간 결과이다. 교토의 선진국 중심 감축은 생산의 해

외 이전으로 배출이 다른 국가로 새는 문제를 막지 못했고,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를 포함하여 이 문제를 줄이려 했다.

둘째, 국제레짐의 측면에서 교토는 구속력 있는 목표와 시한을 정한 규제적 레짐이었지만, 미국의 불참과 일부 국가의 이탈로 참여가 좁아졌다. 파리협정은 구속력을 절차적 의무로 낮추는 대신 참여를 보편화하여, 깊이보다 넓이를 택한 레짐이다. 서약과 검토, 이행점검과 진전 원칙이 핵심 장치이다.

셋째, 국제체제의 구조 변화이다. 2011년 6개 주요국이 세계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이 29%로 최대 배출국이 되었다. 신흥국의 '개별적 능력'이 커진 구조에서는 이들이 빠진 협정이 성립할 수 없었다.

넷째, 남북 갈등이다. 개도국은 과거 배출에 따른 선진국의 책임, 탄소공간의 선점, 1인당 배출의 격차를 근거로 선진국의 출산을 요구한다. 교토는 이를 엄격한 이분법으로 반영했고, 파리는 '상이한 국가별 상황에 비추어'라는 구절로 차별화를 유연하게 만들었다. 선진국의 지원 의무는 남북 간 타협의 고리이다.

다섯째, 미중 갈등과 협력이다. 교토 당시 미국은 중국과 인도의 의무 면제를 이유로 비준을 거부했다. 파리 협상에서는 미중이 2014년 공동 발표로 상호 참여를 보장하여 협상을 이끌었다. 다만 이후 미국의 탈퇴와 재가입처럼 미중 경쟁과 미국 국내 정치가 체제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2) 리우선언의 의의와 CBNDR 원칙의 반영

국제규범의 발전 과정에서 1992년 리우선언은 1972년 스톡홀름선언을 계승하여 환경과 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한 문서이다.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이지만,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 2),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 7), 사전주의적 접근(원칙 15), 오염자부담(원칙 16), 환경영향평가(원칙 17)와 같은 원칙을 체계화했다. 같은 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기후변화협약 등 조약의 기본 원칙이 되었고, 일부 원칙은 이후 국제판례를 통해 관습국제법으로 발전하였다. 즉 리우선언은 연성법이 경성법을 낳는 규범 형성의 출발점이었다.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NDR)은 지구 환경의 보호가 모든 국가의 공통 책임이지만, 환경 악화에 대한 기여와 이용 가능한 기술·재원이 다르므로 책임의 정도는 차별화된다는 원칙이다. 선진국은 과거의 배출과 능력을 이유로 더 큰 책임을 진다. 기후변화협약은 이를 각국의 능력을 고려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으로 규정하였다.

파리협정은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첫째, 협정의 이행이 '상이한 국가별 상황에 비추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반영한다고 명시하였다(제2조 제2항, 제4조 제3항). 둘째, 선진국은 경제 전반의 절대량 감축목표를 계속 주도하고, 개도국은 감축 노력을 강화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전반의 목표로 나아가도록 권장된다(제4조 제4항). 셋째,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제4조 제5항), 재정 지원은 선진국이 제공한다(제9조). 넷째, 최빈국과 군소도서국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전략과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제4조 제6항). 다섯째, 투명성 체계에서도 개도국에 유연성을 준다.

결국 파리협정은 CBNDR을 폐기하지 않고, 부속서에 따른 고정된 이분법에서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자기 차별화와 지원 의무로 재해석하였다. 이는 모든 국가의 참여라는 '공통'의 요소를 강화하면서 '차별화'를 유연화한 것이다.

2) 리우선언 원칙 7(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파리협정 제2조 제2항·제4조 제3~6항·제9조

2024 학제통합논술 II

기후 레짐, 유럽 기후법과 규제 수단

총 100점 · 제1문 35점, 제2문 30점, 제3문 35점 · 국제법(법원의 지위·EU법) + 국제정치(정부 형태·양면게임) + 경제(가격 대 수량·혼합정책)

〈제시문 1〉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26)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하였다.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목표의 추가 상향,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재원 확대 등의 정치적 선언을 담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 전문(前文)의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중립(net-zero)에 대한 주요 국가의 달성 목표 시한에 대해 2050년을 목표로 선언한 대한민국,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중국은 2060년 그리고 인도는 207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국제사회 환경단체들의 비난 대상이 되었다.

COP26의 최대의 성과는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의 당사국총회 결정으로 파리협정 제6조의 탄소배출권 교환 체제를 확립하는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Rulebook)을 채택한 것이다.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은 파리협정 제6조의 탄소시장에 대해 기존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보완하여 시장 내 거래뿐 아니라 시장 외 거래도 포함하는 등 확대 개선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OP25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의 작성이 완료되었다.

〈제시문 2〉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EU는 2019년 그린딜(Green Deal)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서 가장 먼저 선언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EU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EU 차원의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의 입법안을 지침(directive) 형태가 아닌 규칙(regulation) 형태로 채택하였다. 유럽 기후법은 회원국에게 2050년 탄소중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자문기구(European Scientific Advisory Body on Climate Change)를 설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EU 회원국의 국내 조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시문 3〉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1970년대 이래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협약, 선언 그리고 국제기구 및 레짐 등의 다양한 제도가 구축되어 왔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는 지구환경 문제가 처음으로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113개 참가국은 인간환경선언을 발표하고 UN 환경계획을 설립하였다. 지구환경 문제들은 그 성격이 복잡하고 해결 방안의 도출을 위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공통된 인식을 갖는 네트워크인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 다국적기업 등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도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환경정치는 국가들이 더 큰 권력과 물질적인 부 등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여 집단적인 공공의 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영토로 구분된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 행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들의 헤게모니 갈등이 협력 도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지구환경레짐은 교섭 당사국들의 복합적인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들과 맞물려 경제적 성격의 협약으로 변질되어 왔다. 환경협약의 경제협약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갈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과 선진국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시문 4〉

국가안보 차원으로 다루어질 기후변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와 국제협력의 주요 주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으로 미국은 기후변화 국제협력 무대에서 사라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파리협정 재가입을 표방함으로써 이전 트럼프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미국의 기후변화 외교와 국제협력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G7 정상회의와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와 같은 다자협력의 장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선언하면서 동맹(alliance)과 함께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의 복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국제레짐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

다.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했던 트럼프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다자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기조는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이 필수적인 기후변화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미중 경쟁·협력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력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제시문 5〉

환경오염 배출을 비용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배출부과금(emission charge)과 배출권거래제(marketable emission permit)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고, 미국도 지역별 배출권거래제가 있고, 우리나라 역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우선 도입하는 데에는 최소한 초기에는 배출권을 무상배분하여 산업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고, 특히 EU의 경우 공동의 조세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난점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탄소세와 같은 부과금 혹은 조세제도가 더 유용한 정책수단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의 불확실성 문제이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온실가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므로 정책을 시행하는 당해 연도의 여건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비용은 에너지가격, 식량문제, 금융위기, 저감기술 측면의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들 요인은 매년 높은 불확실성을 가진다. 또한 온실가스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은 불확실할 뿐 아니라 한계편익곡선(Marginal Benefit Curve)이나 한계피해곡선(Marginal Damage Curve)에 비해 훨씬 더 가파를 것으로 여겨진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대기 중 농도가 변해도 그 피해는 선형으로 서서히 변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피해곡선이나 한계편익곡선의 기울기는 급하지 않으나, 저감량을 늘릴수록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저감대책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저감비용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더 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시문 6〉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목표관리제, 배출

권거래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정책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당히 높게 설정된 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세제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석탄과 전력 등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에너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으나, 적용대상을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온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시행 초기인 배출권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가격을 통제하는 배출부과금과 배출보조금이나 수량을 통제하는 배출권거래제 중 어느 하나만 사용하지 말고 두 정책을 혼합한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즉, 오염원이 보유 배출권 이상을 배출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납부하게 하고, 보유 배출권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혼합정책이 그것이다.

〈문제〉

제1문. (총 35점)

1) 〈제시문 1〉과 〈제시문 4〉를 참조하여 글래스고 기후합의, 파리협정,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등 세 가지 국제문서의 국제법 연원으로서 지위 및 효력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20점)

2) 국제사회에서 EU 회원국, 미국 등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시각이 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조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 형태별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총 30점)

1) 〈제시문 2〉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 이론을 바탕으로 EU 회원국 내에서 「유럽 기후법」의 지위 및 효력을 설명하시오. (15점)

2) 환경 오염원은 자신의 한계저감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나, 정부는 환경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자. 오염원의 실제 한계저감비용 $MAC_{실제}$, 정부가 잘못 알고 있는 한계저감비용 $MAC_{추정}$ 그리고 한계편익 MB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단, a 는 저감량이다)

$$MAC_{\text{실제}} = 2a + 10, \quad MAC_{\text{추정}} = 2a - 10, \quad MB = -\frac{1}{2}a + 50$$

〈제시문 5〉와 〈제시문 6〉을 참조하여 오염 배출에 대한 배출부과금과 배출권거래제의 영향 및 사회적 후생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① 배출부과금과 배출권거래제의 사회적 손실을 계산하시오.

② ①의 결과를 참고하여 효율성의 측면에서 배출부과금과 배출권거래제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시오.

제3문. (총 35점)

1)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고 그 영향이 초국가적으로 확산되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하다.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참조하여,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국가 간 협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양면게임(two-level game)이론을 적용하여 논하시오. (15점)

2) 정부는 오염원의 한계편익곡선이 $MB = -\frac{1}{2}a + 50$ 임을 알고 있으나, 한계저감비용곡선의 경우 $MAC_1 = 2a + 10$ 일 확률이 π , $MAC_2 = 2a - 10$ 일 확률이 $(1 - \pi)$ 임을 알고 있다. (단, a 는 저감량이며, $0 < \pi < 1$ 이다) 오염원은 자신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이 MAC_1 인지 MAC_2 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제시문 5〉와 〈제시문 6〉을 참조하여 혼합정책의 효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① 위험중립적인 정부의 배출권 발행의 기준이 되는 저감량과 더불어 단위당 배출부과금 및 단위당 배출보조금을 구하시오.

② ①에 기초하여 배출권 균형가격의 형성 범위와 개별 기업의 최적 저감량을 구하고 혼합정책의 사회적 효율성을 평가하시오.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세 국제문서의 법원으로서의 지위, 정부 형태별 기후 외교, EU 규칙의 국내적 효력, 정보 오류 아래 부과금과 배출권의 손실, 양면게임, 불확실성 아래의 혼합정책을 묻는다. 경제 계산 두 문항이 각각 와이츠먼과 로버츠·스펜스의 고전적 결과를 수치로 재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결 개념 ICJ 규정 제38조, 당사국총회 결정, 파리협정 제6조, 일원론·이원론, EU기능조약 제288조, 직접효력·우위, 퍼트넘, MAC·MB의 기울기, 가격 상·하한.

합정 ① 정부가 ‘추정’ MAC로 정한 부과금 아래에서 오염원이 ‘실제’ MAC로 반응한다는 점을 놓치는 답안. ② 혼합정책에서 부과금과 보조금을 같은 값으로 두는 답안. ③ 민주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를 국가 이름으로만 나누고 결정과정을 설명하지 않는 답안(인도는 민주국가라는 점에도 주의).

■ 답안 개요

문	핵심 논점	쓸 이론·조문·식	권장 분량
1	1) 글래스고 합의·파리협정·세부이행규칙의 지위 2) 정부 형태별 결정과정	ICJ 규정 제38조, 조약법협약 제26조, 제6조 위임, 다원주의·거부권 행사자	1,600~2,100자
2	1) 유럽 기후법의 지위·효력 2) 부과금·배출권의 손실과 합의	반 겐트 엔 로스, 코스타 대 에넬, 제288조, 손실 5 대 80, 와이츠먼	1,400~1,800자
3	1) 양면가입 2) 혼합정책의 기준·부과금·보조금, 가격 범위와 효율성	원셋, $\bar{a} = 24 - 8\pi$, 42·38, 가격 38~42, 저감 16·24, 기대손실 $80\pi(1 - \pi)$ 대 0	1,600~2,100자

예시답안 — 2024 학제통합논술 II 제1문

1) 세 국제문서의 국제법 연원으로서 지위와 효력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은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을 국제법의 연원으로 들고, 국제기구나 당사국총회의 결정은 명시하지 않는다. 세 문서를 이 기준으로 검토한다.

파리협정은 국가 간 서면 합의로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조약이다. 당사국은 이를 신의에 따라 이행해야 하므로(조약법협약 제26조)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다만 제1문 1)에서 보았듯 조항마다 구속력의 강도가 다르다. NDC의 제출과 투명성 보고처럼 ‘shall’로 규정된 절차적 의무는 구속력이 강하고, 1.5도 목표는 전문과 목적 조항에 담긴 지향점이며, 감축 목표의 달성 자체는 구속적 결과의무가 아니다.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COP26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파리협정 당사국회의의 결정으로 채택된 문서이다. 당사국총회 결정은 그 자체로 조약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제시문 1〉처럼 그 내용은 적응 지원 강화, 감축목표 상향,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재원 확대에 관한 ‘정치적 선언’이다. 그러나 당사국의 합의를 반영하므로 정치적·도덕적 무게가 크고, 조약 해석에서 당사국 간 후속 합의로서 고려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실행을 통해 관습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은 파리협정 당사국회의의 결정이지만, 글래스고 기후합의와 성격이 다르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감축 결과의 이용과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당사국회의가 채택하는 지침과 규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위임한다. 따라서 세부이행규칙은 조약이 수권한 범위에서 조약의 이행 방법을 구체화하는 2차적 규범이며, 제6조의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당사국에게는 사실상 구속적인 운영 규칙으로 기능한다. 그 효력의 근거는 결정 자체가 아니라 파리협정이라는 조약이다.

정리하면 파리협정은 구속력 있는 조약, 세부이행규칙은 조약의 위임에 따른 이행 규칙,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결정이다. 기후 레짐은 조약의 틀 위에 당사국총회 결정을 겹겹이 쌓아 규범을 발전시키는 구조를 가진다.

2) 정부 형태별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차이

민주국가의 결정과정은 첫째, 다원적이다. 유권자의 여론, 환경 NGO, 과학자 공동체, 언론, 산업계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 피해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녹색 정당의 성장이 정부를 압박하므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일 유인이 생긴다. 둘째, 제도적이다. 〈제시문 2〉의 EU는 집행위원회가 입법안을 제출하고 의회와 이사회가 채택하는 절차로 유럽 기후법을 규칙 형태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법적 의무로 고정했다. 과학자문기구나 정기 평가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셋째, 정책의 가변성이다. 선거로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재가입은 의회와 행정부, 정당 간 대립이 기후 공약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거부권 행사자가 많아 국제 약속의 국내 비준이 어렵다.

권위주의 국가의 결정과정은 첫째, 중앙집권적이다. 소수의 지도부가 결정하므로 일단 결정되면 일관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 둘째, 정권의 정통성이 경제성장에 크게 의존하므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우선하고, 감축 목표를 장기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제시문 1〉에서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셋째,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가 제한되어 사회의 환경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가 좁고, 이행 실적의 투명성도 낮다.

다만 정부 형태만으로 대응의 적극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인도는 민주국가이지만 207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경제 발전 단계, 1인당 배출량, 에너지 구조, 선진국의 지원 여부도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민주국가가 적극적이라는 시각은 다원적 압력과 법제화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발전 단계라는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조약(파리협정) / 당사국총회 결정(글래스고 기후합의·세부이행규칙)의 구별. 2) 민주국가: 다원적·개방적 결정과 정책의 가변성, 권위주의 국가: 집중적 결정과 성장 우선

예시답안 — 2024 학제통합논술 II 제2문

1) EU 회원국 내에서 유럽 기후법의 지위와 효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해 일원론은 둘을 하나의 법질서로 보아 국제법이 별도의 변형 없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이원론은 별개의 법질서로 보아 국제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국내법으로의 변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마다 헌법이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조약의 국내적 효력이 달라진다.

EU법은 이 구분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법질서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반 겐트 앤 로스 사건(1963)에서 EU법이 회원국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질서라고 보아 직접효력을 인정했고, 코스타 대 에넬 사건(1964)에서 EU법이 회원국 국내법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회원국의 헌법이 이원론을 취하더라도 EU법은 국내법으로의 변형 없이 효력을 가지며, 그 효과는 일원론에 가깝다.

유럽 기후법은 지침이 아니라 규칙으로 채택되었다(〈제시문 2〉). EU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르면 규칙은 전체로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된다. 반면 지침은 달성할 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고 형식과 방법은 회원국에 맡겨 국내 입법을 통한 전환이 필요하다. 규칙 형태를 택한 것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회원국의 국내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유럽 기후법은 각 회원국에서 별도의 국내 입법 없이 직접 적용되고, 이와 충돌하는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회원국의 행정기관과 법원은 이를 적용해야 하며, 회원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조치를 마련하고 집행위원회의 정기 평가를 받는다.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위원회가 의무 불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회원국 헌법재판소는 EU법 우위에 헌법적 한계를 유보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결국 유럽 기후법은 국제법상 조약 의무인 파리협정을 EU 차원의 직접 적용 규범으로 전환하여, 국제 약속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는 장치이다.

2) 배출부과금과 배출권거래제의 사회적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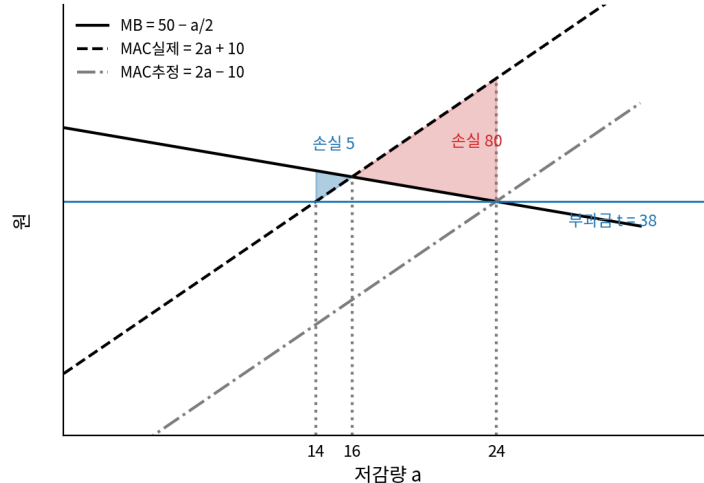
① 실제 사회적 최적 저감량은 $MAC_{\text{실제}} = MB$ 에서 $2a + 10 = -a/2 + 50$, 즉 $a^* = 16$ (이때 한계값 42)이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로 $2a - 10 = -a/2 + 50$, 즉 $a = 24$ 를 최적으로 판단하고 그 점의 한계값 38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한다.

배출부과금을 단위당 38로 부과하면, 오염원은 실제 한계저감비용이 부과금과 같아지는 $2a + 10 = 38$, 즉 $a = 14$ 까지 저감한다. 최적보다 2만큼 적게 저감하므로, 저감량 14~16 구간에서 한계편익이 한계저감비용을 넘는 부분이 손실이다.

$$L_{\text{부과금}} = \int_{14}^{16} \left[\left(50 - \frac{a}{2} \right) - (2a + 10) \right] da = \frac{1}{2} \times 2 \times 5 = 5$$

배출권거래제로 저감량을 24로 정하면(배출권 총량을 그만큼 줄이면) 오염원은 24를 저감해야 한다. 최적보다 8만큼 과다 저감하므로 16~24 구간에서 한계저감비용이 한계편익을 넘는 부분이 손실이다.

$$L_{\text{배출권}} = \int_{16}^{24} \left[(2a + 10) - \left(50 - \frac{a}{2} \right) \right] da = \frac{1}{2} \times 8 \times 20 = 80$$



② 같은 정보 오류에서 배출부과금의 손실(5)이 배출권거래제(80)보다 훨씬 작다. 이는 와이츠먼(M. Weitzman)의 ‘가격 대 수량’ 논리와 일치한다. 한계저감비용곡선의 기울기(2)가 한계편익곡선의 기울기(1/2)보다 가파르면, 수량을 고정하는 정책은 비용에 대한 오류가 큰 비용 손실로 이어진다. 반면 가격을 고정하는 정책은 오염원이 실제 비용에 맞게 저감량을 스스로 조정하므로 수량의 오차가 작다. <제시문 5> 처럼 온실가스의 피해는 축적량에 따라 서서히 변하므로 한계편익곡선이 완만하고, 저감비용은 불확실하고 가파르다.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탄소세 같은 배출부과금이 우월하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총배출량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초기 무상할당으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며, 국가 간 시장 연계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제시문 6> 은 두 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정책을 권고한다.

2) 실제 최적 a=16, 정부 추정 최적 a=24, 부과금 38 → 실제 저감 14, 손실: 부과금 5, 배출권 80 (check/games.py)

예시답안 — 2024 학제통합논술 II 제3문

1) 양면게임이론으로 본 미국 기후정책의 협력 곤란

퍼트넘(R. Putnam)의 양면게임이론에 따르면 국제협상의 대표는 상대국과 협상하는 국제 수준(1수준)과 국내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 국내 수준(2수준)에서 동시에 게임을 한다. 국내에서 비준될 수 있는 합의의 집합인 윈셋(win-set)이 클수록 국제 합의가 쉽고, 작을수록 합의가 어렵지만 협상력은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기후정책은 다음 이유로 윈셋이 작고 불안정하다. 첫째, 제도적 요인이다. 조약 비준에 상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여 비준 문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미국은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행정부 차원의 수락에 의존하게 된다. 둘째, 정당 양극화와 이익집단이다. 화석연료 산업과 이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강한 반면 기후 대응을 지지하는 세력도 강해, 정권 교체에 따라 윈셋 자체가 바뀐다. <제시문 4> 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재가입을 표방했다. 이러한 정책의 급변은 상대국에게 미국의 약속이 다음 정부에서 지켜질지 의심하게 만든다. 셋째, 비자발

적 배반의 위험이다. 협상 대표가 합의해도 국내에서 비준이나 이행이 좌절되면 의도와 무관하게 약속이 깨진다. 이 위험을 아는 상대국은 미국과의 합의에 많은 것을 걸지 않는다.

국제 수준의 요인도 맞물린다. <제시문 3> 처럼 환경협약은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과 결합해 경제협약으로 변질되었고, 갈등은 선진국과 개도국, 선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전개된다. 미국 의회는 중국 등 개도국의 감축 의무가 약하면 미국 산업의 경쟁력만 떨어진다고 보아 비준을 거부한다. 강대국 간 헤게모니 갈등, 특히 미중 경쟁은 상대적 이익의 계산을 강화하여 공유지의 비극을 심화한다. 결국 미국의 작은 윈셋은 국제 협상에서 강경한 요구의 근거가 되지만, 합의의 범위를 좁히고 합의 후의 이행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가 간 협력을 어렵게 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국내 지지 연합을 넓히는 산업정책과 결합하거나, 비준이 필요 없는 유연한 협정 형식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혼합정책의 효과

① 위험중립적 정부는 기대 한계저감비용 $E[MAC] = \pi(2a + 10) + (1 - \pi)(2a - 10) = 2a + 20\pi - 10$ 을 한계편익과 같게 하여 배출권 발행의 기준이 되는 저감량을 정한다.

$$2a + 20\pi - 10 = -\frac{a}{2} + 50 \Rightarrow \bar{a} = 24 - 8\pi$$

단위당 배출부과금(보유 배출권을 넘는 배출, 즉 기준보다 적은 저감에 부과)은 MAC_1 형의 최적점 $a = 16$ 에서의 한계편익인 42로, 단위당 배출보조금(사용하지 않은 배출권, 즉 기준보다 많은 저감에 지급)은 MAC_2 형의 최적점 $a = 24$ 에서의 한계편익인 38로 정한다.

② 배출권 가격은 부과금보다 높을 수 없고(그보다 비싸면 배출권을 사지 않고 부과금을 냄) 보조금보다 낮을 수 없다(그보다 싸면 배출권을 팔지 않고 반납해 보조금을 받음). 따라서 균형가격은 $38 \leq p \leq 42$ 의 범위에서 형성된다. MAC_1 형 오염원은 기준 저감량 $\bar{a} \geq 16$ 에서 한계저감비용이 42를 넘으므로 부과금을 내고 한계저감비용이 42가 되는 $a = 16$ 까지만 저감하며, 가격은 42가 된다. MAC_2 형 오염원은 $\bar{a} \leq 24$ 에서 한계저감비용이 38보다 낮으므로 추가로 저감하여 보조금을 받고, 한계저감비용이 38이 되는 $a = 24$ 까지 저감하며, 가격은 38이 된다.

두 경우 모두 실제 한계저감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사회적 최적(16 또는 24)이 달성되므로 혼합정책의 사회적 손실은 0이다. 비교하면 기준 저감량 $\bar{a}$ 로 수량만 고정하는 배출권거래제는 비용 유형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 저감이 생겨 기대 손실이 $80\pi(1 - \pi)$ 이다. 혼합정책은 수량 통제를 기본으로 하되 가격 상한(부과금)과 하한(보조금)으로 비용의 불확실성을 흡수하여, 정부가 오염원의 비용 유형을 모르더라도 오염원 스스로 최적 저감을 선택하게 만든다. 다만 실제로는 비용의 분포가 연속적이고 한계편익도 불확실하므로 완전한 효율은 근사적으로만 달성되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상하한 수준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과제가 남는다.

2) 배출권 기준 저감량 $24 - 8\pi$, 부과금 $42(=MB(16))$, 보조금 $38(=MB(24))$, 가격 범위 $38 \sim 42$, 저감량 MAC_1 형 16· MAC_2 형 24, 순수 배출권의 기대손실 $80\pi(1 - \pi)$ (check/games.py)

부록

참조 자료

부록 A 연도별 문항 일람 · 부록 B 주제 색인 · 부록 C 자주 쓰는 조문과 공식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부록 A 연도별 문항 일람	172
부록 B 주제 색인	173
부록 C 자주 쓰는 조문과 공식	175

부록 A 연도별 문항 일람

2016~2024년은 학제통합논술 I (I)과 학제통합논술 II(II)를 구분하여 적었다. 수록 장은 그 문제지 전체가 실린 장이다.

연도	문	주제	배점	수록 장
2016 I	제1문	ODA와 국제인권법	25	5장
	제2문	원조 동기의 자유주의적 설명	25	
	제3문	모기장 원조의 시장 효과와 해법	25	
	제4문	ODA의 국제법적 영향과 공여국 이익	25	
2016 II	제1문	미국 무역정책 변화, GSP의 법적 근거	30	6장
	제2문	전략적 무역정책 보조금 게임	30	
	제3문	세이프가드 대 반덤핑: 요건과 후생	40	
2017 I	제1문	1990년대 실패국가 급증	22	3장
	제2문	주권과 인권: 현장 해석과 사례	22	
	제3문	내전 개입 전개형 게임	22	
	제4문	ICC: 구조-행위자, 관할 원칙, 기소 게임	34	
2017 II	제1문	동맹 방위비 분담 반응곡선	35	2장
	제2문	사회후생함수, 방위비분담 합의의 효력	30	
	제3문	민주국가의 전쟁 지출, 전시지원협정 부록	35	
2018 I	제1문	안보통합과 국가주권	25	4장
	제2문	최적통화지역과 유로존의 비용	25	
	제3문	안보리 결의와 EU법의 충돌(카디)	25	
	제4문	안보·통화·사법 통합의 이득	25	
2018 II	제1문	원조 동기와 원조 의무	35	5장
	제2문	네덜란드병, 원조·인권·민주주의	35	
	제3문	부패 모형과 UN 반부패협약	30	
2019 I	제1문	한중 미세먼지 협력의 한계	22	7장
	제2문	월경 오염의 국가책임과 이행확보	22	
	제3문	최적 배출량·부과금·보조금 그래프	22	
	제4문	합의 조건·형태, 환경공동체의 조건	34	
2019 II	제1문	포괄적·스마트 제재, UN의 기대보수	30	4장
	제2문	A국의 군사지원 조건, UN 가입 요건	35	
	제3문	총회와 안보리의 차이와 권한	35	
2020 I	제1문	시장경제지위 인정의 후생 효과	25	6장
	제2문	반덤핑 요건과 비시장경제 판정	25	
	제3문	중국 중상주의와 미국의 전략	25	
	제4문	인정·불인정 시나리오 종합	25	
2020 II	제1문	난민 보호 규범의 발전, 지원금 방식별 보수	30	3장
	제2문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기론, 지급방식 선호	35	
	제3문	인간안보, 해상난민 상륙	35	
2021 I	제1문	관세 인하의 시장 효과(소국)	20	4장
	제2문	조화게임과 죄수의 딜레마	25	
	제3문	특별보고관의 소송면제	25	
	제4문	국제기구의 세 역할	30	
2021 II	제1문	NDC, 할당 대 자율 감축	35	7장
	제2문	협약 안정성, 패권과 기후 레짐	30	

연도	문	주제	배점	수록 장
	제3문	교토와 파리의 차이, 리우선언과 CBDR	35	
2022 I	제1문	소년병 지속의 세 수준	24	3장
	제2문	소년병 차출 게임의 균형	26	
	제3문	18세 미만 징집의 국제의무 위반	24	
	제4문	최소 원조, 개인 처벌, NGO	26	
2022 II	제1문	제재의 현장상 근거, 수입 금지의 후생	30	6장
	제2문	기술이전 금지, 소국·대국 제재 비교	35	
	제3문	표적제재의 효과와 인권 문제	35	
2023 I	제1문	두 환경협력 사례의 이론적 비교	20	7장
	제2문	협정 제5조의 원칙, 분쟁해결	25	
	제3문	공유 하천 일회성 게임	15	
	제4문	반복게임, MOI·MOU 지위, 한중 방안	40	
2023 II	제1문	미중 기술패권, WTO의 주권 조화 원칙	35	6장
	제2문	자산 몰수와 외교적 보호, 가격차별	30	
	제3문	관세·수출보조금의 교역조건, 중견국 전략	35	
2024 I	제1문	크메르루즈 정책의 현실주의적 설명	20	3장
	제2문	환경난민, 난민·무국적자의 외교적 보호	20	
	제3문	B국의 반박, NGO 귀속, 관찰 가능 계약	40	
	제4문	관찰 불가 계약과 대리인 비용	20	
2024 II	제1문	기후 문서의 법원 지위, 정부 형태와 기후 외교	35	7장
	제2문	유럽 기후법의 효력, 부과금 대 배출권	30	
	제3문	양면게임, 혼합정책	35	
2025	제1문	미·덴마크 접근과 한계, 무력 편입의 위법성	30	2장
	제2문	베이즈—내쉬균형, 제3국의 의무	35	
	제3문	대국의 관세 후생, 체제 안정성	35	
2026	제1문	안보리·총회·ICC, 억지 실패와 신기능주의	35	2장
	제2문	국유화의 후생, 투자분쟁 해결 비교	30	
	제3문	수요독점·쌍방독점, BIT·ISDS	35	

부록 B 주제 색인

개념 카드의 제목을 기준으로, 그 개념이 답안의 핵심 도구로 쓰인 문항을 모았다. 표기는 “연도·문제지·문”이다 (예: 2017 II -1은 2017년 학제통합논술 II 제1문, 2025-2는 2025년 제2문).

개념(개념 카드)	기출 문항(연도·문제지·문)
동맹 공공재·무임승차	2017 II -1
무력행사 금지·침략·불승인	2025-1·2, 2026-1, 2019 II -2
억지(거부·응징)	2026-1
베이즈—내쉬균형·기대보수	2025-2, 2019 II -1·2
패권안정이론	2016 II -1, 2021 II -2, 2025-3
대국 관세·교역조건	2025-3, 2023 II -3
수요독점·쌍방독점	2026-3
외교적 보호·ISDS·수용	2023 II -2, 2024 I -2, 2026-2·3
인도적 개입·R2P	2017 I -2, 2024 I -3
전개형 게임·부분게임완전균형	2017 I -3·4
ICC 관할 원칙	2017 I -4, 2022 I -4, 2026-1

개념(개념 카드)	기출 문항(연도·문제지·문)
치킨게임·원조로 보수 변경	2022 I -2·4
주인-대리인 계약	2024 I -3·4, 2020 II -1·2
난민 정의·강제송환금지	2024 I -2, 2020 II -1·3
국가책임의 귀속·상당한 주의	2024 I -3, 2022 I -3, 2019 I -2
인간안보·안보화	2020 II -3, 2019 II -1
소국 관세 후생	2021 I -1, 2020 I -1, 2022 II -1
죄수의 딜레마·반복게임·상호주의	2021 I -2, 2023 I -3·4, 2019 I -4, 2016 II -2
국제기구 특권·면제	2021 I -3·4
안보리·총회 권한 배분	2019 II -3, 2026-1
최적통화지역	2018 I -2·4
헌장 제103조·카디 판결	2018 I -3, 2022 II -3
신기능주의	2018 I -4, 2026-1
인권기반접근·국제협력 의무	2016 I -1·4, 2018 II -1
원조의 시장 왜곡	2016 I -3
네덜란드병·지대국가	2018 II -2
부패의 합리적 선택	2018 II -3
연성법	2018 II -1, 2021 II -3, 2024 II -1
전략적 무역정책	2016 II -1·2
세이프가드·반덤핑	2016 II -3, 2020 I -1·2
비시장경제·대체국 방식	2020 I -2·4
중상주의	2020 I -3, 2023 II -1
포괄적·표적제재	2022 II -1·3, 2019 II -1
가격차별	2023 II -2
신고전 현실주의·이익균형론	2023 II -1·3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EIA	2019 I -2, 2023 I -2
MAC·MD와 규제 수단	2019 I -3, 2024 II -2
공공재 감축 게임	2021 II -1
협약의 내적·외적 안정성	2021 II -2
조약 대 비구속적 합의	2023 I -4, 2019 I -4, 2024 II -1, 2017 II -2
가격 대 수량·혼합정책	2024 II -2·3
양면게임	2024 II -3
CBDR	2021 II -3, 2024 II -1

부록 C 자주 쓰는 조문과 공식

■ UN 헌장

조문	내용
제1조 제3항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제2조 제1·4·7항	주권평등 ·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 금지 · 국내관할 사항 불간섭(제7장 강제조치는 예외)
제4조	회원국 가입: 평화애호국, 헌장 의무의 수락과 이행 능력·의사 / 안보리 권고에 따른 총회 결정
제10~14조	총회의 토의·권고 권한, 제12조 제1항의 제한
제24·25조	안보리의 일차적 책임 · 안보리 결정의 수락과 이행 의무
제27조 제3항	실질사항: 상임이사국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국 찬성
제39·41·42조	위협의 결정 · 비군사적 조치 · 군사적 조치
제51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제55·56조	생활수준 향상과 인권 존중을 위한 협력의 약속
제103조	헌장상 의무의 우선
제105조	기구의 특권과 면제

■ 국가책임·외교적 보호(ILC 초안)

조문	내용
책임 제2조	국제위법행위 = 귀속 + 국제의무 위반
책임 제4·5·8·11조	국가기관 ·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실체 · 지시·통제 아래의 사인 · 사후 인정
책임 제16조	다른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원 또는 원조
책임 제41조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협력 의무, 불승인, 상황 유지에 대한 원조 금지
책임 제48조	피해국 이외 국가의 책임 추궁(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등)
보호 제3·8·9·14조	국적국의 보호 · 무국적자·난민의 거주국 보호 · 법인의 국적 · 국내구제 완료

■ 게임이론

개념	공식·판정
내쉬균형	모든 경기자가 상대 전략에 대한 최적반응을 하는 전략 조합
반복 죄수의 딜레마	방아쇠 전략의 협력 조건 $\delta \geq (T - R)/(T - P)$
기대보수 임계 확률	$qR_1 + (1 - q)R_2 = qS_1 + (1 - q)S_2$ 를 q 에 대해 풀기
베이즈-내쉬균형	유형별 최적반응 + 정보 없는 쪽의 기대보수 극대화
주인-대리인	참여제약: $E[u] \geq \bar{u}$, 유인제약: $E[u e^*] \geq E[u e']$

■ 후생 분석

모형	공식
소국 관세 철폐	$\Delta CS = a + b + c + d$, $\Delta PS = -a$, 관세수입 $-c$, 순후생 $+(b + d)$
대국 관세	순후생 = 교역조건 이득 $(P_w - P^*)M$ - 자중손실
수입 금지(선형)	$\Delta W = 1/2(P_A - P_w)M$
독점	$MR = MC$, DWL = 경쟁 산출과의 사이 삼각형
3급 가격차별	$P_A(1 - 1/\varepsilon_A) = P_B(1 - 1/\varepsilon_B)$
수요독점	$MRP = ME$, 착취 = MRP - 지급 가격
공공재 자발적 공급	$b = 2cd_i$ (자율) 대 $Nb = 2cd$ (할당)
가격 대 수량	MAC 기울기 $>$ MB 기울기 $\rightarrow$ 가격(부과금)의 기대 손실이 작음

AI 논술 첨삭 서비스

써봄

writegrow.net

직접 쓴 답안, 이제 바로 첨삭받으세요.

Google Gemini 3.1 Pro를 활용한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네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고칠 곳을 짚어 줍니다

논리구조

단락의 배치와 흐름이 논지를 따르는가

근거타당성

이론·조문·자료가 주장을 실제로 뒷받침하는가

주장명확성

입장과 결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가

언어표현

문장이 정확하고 간결한가

영역별 점수와 함께 **강점 · 개선점 · 구체적 제언**을 담은 상세 피드백을 제공하고, 첨삭 결과는 PDF 리포트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DF·DOCX·TXT 파일을 올릴 수 있고, 여러 편을 한 번에 올리는 일괄 첨삭(최대 10편)도 지원합니다.

이 책과 함께 쓰는 법

- 1 기출 문항을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씁니다**
예시답안을 보기 전에 답안 개요를 세우고 끝까지 씁니다.
- 2 답안을 써봄에 올려 첨삭을 받습니다**
손글씨 답안은 옮겨 적어 TXT·DOCX로 올리면 됩니다. 영역별 점수와 고칠 곳이 바로 나옵니다.
- 3 책의 출제 포인트·예시답안과 비교해 다시 씁니다**
첨삭에서 약하게 나온 영역을 중심으로 같은 문항을 한 번 더 씁니다.

회원가입하면 3회 무료 분석

요금제	월 이용료
개인 — 수험생	9,900원
교사 — 교사·학원	29,900원

요금과 제공 내용은 2026년 9월 writegrow.net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writegrow.net

QR 코드로 바로 접속